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의「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에 대한 분석연구


이 유 봉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의「부정청탁 및 0ㅣ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분석연구이 유 봉

# 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의 <br>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분석연구
Legislative Analysis on 「Bill on the Prevention of Unjust Solicitations and Conflicts of Interest ${ }_{\lrcorner}$， a Comprehensive Response to Public Corruption

연구자 ：이유봉（부연구위원）<br>Lee，Eubong

2012．7． 30.

## 요 약 문

## I．배경 및 목적

$\square$ 분석 배경과 목적
○ 국제적인 평가에 비추어 보면，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발전 이나 기타 사회발전수준에 비해 공직의 청렴정도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이는 국가발전에 있어 잠재적인 장애요 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본 분석연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에서 부정청탁을 금 지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부 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에 있어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 및 법제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함
$\square$ 법제분석 방법

○ 본 분석연구는 분석대상인「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을 법제상의 체계 및 적용상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기 위 하여，관련 현행법들의 내용 및 법률안과의 체계상의 관계분석， 관련 사례분석，비교법 분석방식을 적용함

○ 특히，사례분석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적용상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사례들을 추출하여，대상 법률안이 적용되는 경우의 법률 효과를 가상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분석함

○ 비교법분석에 있어서는，관련 조선시대법제，국제법，그리고 독 일，프랑스，미국，캐나다，영국，호주，일본의 관련 국내법제들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그리고 이해충돌에 관한 내용별로 각각 검토함

## П．주요 내용

입법목적○ 현실적으로 발생한 공직부패관련 사례 중에는 특히 금품 등의 수 수나 예산목적 외 사용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이러한 행위들 의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내부 징계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사법처리된 사건들 중에도 공직부패사건의 경우 법정형과 선고형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특히 항소심에서의 실 형선고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법집행의 현실상 범죄억지력이 약화된 상황을 감안하여，「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은 잠재적으로 부패를 형성할 수 있는 행위유형들을 유형화하고 이를 감지하는 시스 템을 체계화하는 공직부패에 대한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법규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련 법들과 차별화됨
$\square$ 법체계적 분석

○ 본 분석연구는 분석대상인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의 주요 내용과 관련 현행법，즉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공직자윤리법」，「공무원행동강령」，「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변호사법」등 의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대상 법률 안과의 법체계상의 관계성을 분석함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7조는 대상 법률안과 관련 법 령들이 경합적용될 경우 법률안이 우선 적용되나 다른 법에서 더 중한 형벌을 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다고 하고 있음

○ 대상 법률안에서 부과되는 제재는 징역，벌금，과태료와 징계처 분이 있고，형벌 중 자유형의 경우，최장＇ 3 년 이하의 징역＇에 서，＇ 2 년 이하＇，＇ 1 년 이하＇의 세 가지가 있는데，＇ 5 년 이하의 징 역＇을 과하는 형법 제 129 조의 수뢰죄 기타 그보다 더 중한 형 을 부과하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해 보아 법률효과 면에서는 다 소 낮은 수준으로 정하고 있음

○ 한편，대상 법률안은 형법 등의 현행법 상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품수수가 없는 부정청탁행위와 직무상 대가관계가 없 는 금품수수의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데，이는 형법 등 과 비교하여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정행위의 구성요건해당 행위 영역을 확장함
$\bigcirc$ 다만，대상 법률안은 제 11 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조항에서는 직 무와 관련하여 수수되는 금품 중에서 대가관계 있는 금품은 제 외함으로써 「형법」상 뇌물죄의 해석상 요구되어지는＇직무상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는 형법의 적용을 받도록 대상 법률안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 8 조의 부정청탁금지의 경우 금품수수가 수반된 경우는 제 2 장의 부정청탁금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하고 제 3 장의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대상 법률이 정하는 구성요건은 형법이 요구하는 구성요건행위보다는 다소 행위의 위법성 면에서 낮게 평가되어 질 수 있으므로 법률효과 또한 비례적으로 낮게 설정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금품 수수에 수반된 청탁의 유무，청탁의 부정함 여부에 있어서의 위 법성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 $\square$ 사례 분석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에 관하여 법적용 상의 한계를 보이고 있 는 기존의 법원 판결，국민권익위원회 심의－의결례，감사원 감 사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현행법 적용상의 흠결과 대상 법률안 의 법 적용에 있어 실효성을 분석함

○ 대상 법률안은 제 8 조에서 부정청탁행위를 금하고 청탁을 받은 공 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현행법은「형법」상 ‘제3 자뇌물공여죄＇，＇배임수재죄＇，그리고「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상 ‘부정한 청탁’을 요구하고 있는데，반드시 청탁이 위법 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요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또한，대상 법률안은 공직자의 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행위 도 벌하고 있는데，이는 형법상＇직권남용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판례상 직권남용죄가 결과범인데 반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청탁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음

○ 법원의 사례들에 나타난 직무관련성과 이 법률안의 금품 등의 수수죄（제 11 조 및 제 36 조）상의 직무관련성을 동일하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으나，만일 대상 법률안의 입법목적을 감 안할 때 법률안의＇직무관련성＇이 형법상 요구되어지는 것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다면 현행법 하에서 직무관련성이 부정된 다 수의 사례들의 경우 이 법률안에 의하면 금품 등의 수수금지죄 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 대상 법률안 제 20 조 및 제 21 조는 예산•공용재산 등의 사적 사용 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존에 관행상 이루어져오던 행위이나 현행 법상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의 징계에 머물던 것을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square$ 비교법 분석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관련 비교법적 분석에 있어, 과거와 현재 의 법제, 즉 조선시대법제, 국제법, 그리고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의 관련 국내법제들을 부정청탁 및 금 품수수, 그리고 이해충돌에 관한 내용별로 폭넓게 검토하여 각 법제의 특성과 국내법제와의 규율방식의 차이를 밝히고 대상 법률안 개선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함

○ 금전 등의 수수와는 별도로 부정청탁 자체만을 일반적으로 규 제하고 있는 별도의 입법은 외국입법례에서는 찾기 어려우나, 조선시대에서는 인사청탁 자체를 금하기 위하여 일정범위의 영 향력을 보유한 관리를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를 두었음

○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법률안의 부정청탁금지의 주로 예외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로비행위로서 허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위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음

○ 금품수수 등과 관련해서는 비교법적으로 볼 때, 직무상의 대가 관계가 요구되는 수뢰죄와 별도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벌하는 행위를 형법상 구 성요건으로 두는 경우가 많음

○ 그러한 입법례로는，독일의 이익수수죄（Vorteilsannahme），미국의 불법 사례수수행위（Illegal Gratitute），호주의 부정이득죄（Corrupting Benefit）와，조선시대의＇당률소의＇와＇대명률＇의 관할지역내의 이 익취득죄（受所監臨）등이 있음

○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하여서는，별도의 입법을 두는 경우로서， 캐나다의 「이해충돌법（Conflict of Interest Act，2006）」，최근 2011 년 12월 발의된 프랑스의 「공직활동의 투명성과 이해충돌 방지 에 관한 법안」과 형법과의 혼합적 규율방식으로서 미국의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Bribery，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1962）」，영국，호주，일본 등과 같이，공직수행에 관한 윤리기준 에 의하여 규율하는 경우가 있음

○ 외국법제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현행법에 입법상의 흠결이 존재 한다고는 볼 수 있으나，비교법적으로 볼 때 부정청탁，금품수 수，이해충돌에 대한 모든 경우를 망라하여 부패방지에 관한 종 합적 단일 입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일반적이지는 않음

## III．기대효과

$\square$ 학술적 효과

○ 공직부패관련 국내법 뿐 아니라 외국 입법례 및 전통입법례를 망 라하여 정리•분석함으로써 종래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공직부패 관련 법제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여 제정추진중인「부정청탁 및 이 해충돌 방지법안」의 입법목적의 차별성 및 그에 따른 기존법령 과의 체계적 관계분석을 통해 본 입법안의 입법적 의의를 분명 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례분석을 통해 현행 법제하의 법적용의 결과와 대상 입법이 적용될 경우의 결과를 가상적으로 비교•검토함으로써 본 입법 의 법집행상의 실질적 의의를 드러낼 것으로 기대됨
$\bigcirc$ 대상 법률안이 공직사회에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의도에 맞게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함

주제어 : 공직부패, 부정청탁, 이해충돌, 금품수수, 부패방지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O In light of international standards, Korea falls short on public integrity, given its level of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s. The lack of public integrity can undermine Korea's national development.

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main contents of 「Bill on the Prevention of Unjust Solicitations and Conflicts of Interest」 (the Bill) - which is submitted to the Assembly for legislation by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with the purpose of preventing unjust request and encouraging integrity of public service - and to analyze its legislative issues.

## П. Main Contents

Purpose of legislationO Most of public corruption cases relate to bribery and misappropriation, many of which are dealt by a disciplinary measure and thereby immune from criminal penalties.

O Moreover, public corruption cases show a larger gap between a statutory and sentenced punishment rate than that in other criminal
cases. They also have a very low imprisonment sentence rate on appeal.

O Accordingly, upon current failures to deter corruption, the Bill is distinguishable from other laws in that it provides the most comprehensive and precautionary regulations for categorizing the types of behavior that may lead to corruption and devising the legal system to detect such behavior, with the purpose of building up the trust of the people upon public office.Methodology of this study

O To analyze the Bill's systematic adaptation and anticipated problems in enforcement, this study is conducted upon systematic analysis, case analysis, and comparative law analysis.

O To conduct case analysis, this study selects cases that have limited applicability under current law, and analyze the potential legal effect of the Bill's enactment in such cases.

O To perform comparative law analysis, this study reviews various anti-corruption laws including the traditional law in the Choseon dynasty as well as current laws in Germany, France, US, UK, Australia, Japan and international laws.

## III. Expected Effect

Academic effectO Among researches on anti-corruption laws, this study most widely and comprehensively reviews and analyzes modern and transitional laws including not only current foreign laws but also old East Asian laws.

## $\square$ Effect in Policy

O This analysis is expected to make clear legislative significance of「Bill on the Prevention of Unjust Solicitations and Conflicts of Interest」 by comparing the Bill's legislative purpose with other legislations and examining its relations with other laws within the whole legal system.

O This analysis is expected to describe the practical meaning of the Bill in enforcement by hypothetically evaluating and comparing the result of applying the Bill and the court decisions under current laws.

O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legislation in achieving its purposes to prevent unjust request and enhance the integrity of public service.
2. Key Words : misuse of public office, unjust request, conflict of
interest, anti-corruption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11
제 1 장 서 론 ..... 21
제 1 절 연구목적 ..... 21
제 2 절 연구방법 ..... 22
제 2 장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의의 ..... 25
제 1 절 제정배경 ..... 25
제 2 절 공직부패 현황 ..... 29
제 3 절 입법적 의의 ..... 36
제4절 여론 동향 ..... 39
1．공직부패에 대한 국민인식 ..... 39
2．한국의 부패상황에 대한 국제여론 ..... 42
3．법제정에 대한 여론 동향 ..... 43
제 3 장「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법률안의
주요내용 ..... 45
제 1 절 개 관 ..... 45
제 2 절 규율대상 및 정의 ..... 46
제 3 절 규율 행위 ..... 50
제4 절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 58
제 4 장 국내 현행 관련 법 ..... 61
제 1 절「형 법」 ..... 61
제 2 절「특정범죄 가중처벌법」 ..... 63
제 3 절 「국가공무원법」 ..... 65
제 4 절 「공직자윤리법」 ..... 65
제 5 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69
제 6 절 「국민투표법」 ..... 70
제 7 절「변호사법」 ..... 72
제 8 절 「공공감사기준」 ..... 72
제 9 절 공무원행동강령 ..... 74
제 10 절 현행법의 한계 ..... 76
제 5 장 관련 사례분석 ..... 77
제 1 절 부정청탁 ..... 77
제 2 절 금품수수 ..... 92
제 3 절 이해충돌 ..... 110
제 6 장 비교법 분석 ..... 117
제 1 절 조선시대 법제 ..... 117
1．부정청탁금지 ..... 117
2．금품수수금지 ..... 122
제 2 절 국제협약 ..... 127
1．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 128
2．이해충돌방지 ..... 135
제 3 절 독 일 ..... 138

1. 부정청탁 금지 ..... 138
2. 금품수수 금지 ..... 139
3. 이해충돌방지 ..... 147
제 4 절 프랑스 ..... 152
4.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 152
5. 이해충돌방지 ..... 156
제 5 절 미 국 ..... 165
6. 부정청탁금지 ..... 165
7. 금품수수금지 ..... 175
8. 이해충돌방지 ..... 183
제 6 절 캐나다 ..... 190
9. 부정청탁금지 ..... 190
10. 금품수수금지 ..... 195
11. 이해충돌방지 ..... 197
제 7 절 영 국 ..... 201
12.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 202
13. 이해충돌방지 ..... 204
제 8 절 호 주 ..... 206
14.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 206
15. 이해충돌방지 ..... 209
제9절 일 본 ..... 212
16.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 212
17. 이해충돌방지 ..... 215
제 7 장 법률안에 대한 종합분석 ..... 217
제 1 절 법안의 각 조문별 분석 ..... 217
18. 정의규정 ..... 217
19.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20
20. 부정청탁의 금지 ..... 221
21. 금품등의 수수 금지 ..... 224
22. 사적 이해관계의 직무수행 금지 ..... 228
23. 외부활동의 제한 ..... 230
24. 사업자등과의 거래 제한 ..... 231
25. 예산, 공용재산 등의 사적사용 금지 ..... 232
26.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 232
27. 징 계 ..... 233
28. 비밀누설의 죄 ..... 234
29. 벌 칙 ..... 236
30. 과태료 부과 ..... 239
31. 양벌규정 ..... 240
제 2 절 쟁점별 분석 ..... 241
32. 입법목적 ..... 241
33. 다른 법과의 관계 ..... 244
34. 구성요건의 명확성 ..... 247
35. 헌법상 논점 ..... 257
36. 처벌규정의 적절성 ..... 260
＜부 록＞
【부록 1】「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 275
【부록 2】「프랑스의 공직자의 투명성과 이해충돌방지법（안）」， （2011．10．19．） ..... 301
【부록 3】 일본 관련법 정리 ..... 312
참 고 문 헌 ..... 333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목적

본 분석연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에서 부정청탁을 금지하 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에 있어 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 및 법제상의 문제점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첫째，한국에서 공식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부패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적 부패상황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위 법률의 입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현재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 사항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국내 현행법을 검토하고 문제해결에 있어서의 제도적인 또는 법 적용상의 한계와 대상 법률안과의 체계적 정합성에 있어 문제점이 없 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법적용상의 한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부정청 탁 및 이해충돌에 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기존의 사례들을 검토함 으로써 현행 법 적용상의의 흠결과 시도되는 법률안의 법 적용에 있 어 실효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넷째，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한 주요 외국의 입법례（미국， 캐나다，영국，호주，독일，일본 등）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 입법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위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법」의 입법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 적용상 나타날 수 있는 법률상 의 문제점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절 연구방법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부정 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안의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림 1］「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안 법제분석 절차

```
제정배경 및 제정경과
```



첫째，현재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패현상의 정도를 부패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국제적인 부패판단척도인 부패인식지수를 통해 객관적 으로 검토하고，부패행위의 유형 및 발생정도를 국민권익위원회 심의 의결 사례，감사원의 감사사례를 통하여 통계적으로 파악한다．

둘째，관련 현행법 및 법체계분석에 있어 현행 관련 법규정（「형법」，「특가법」，「공직자윤리법」，「공무원행동강령」，「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에 관한 법률」등）을 검토하고 각 법에 있어서의 구성요건 및 법률효 과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와 같은 현행법의 법적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함에 있어 다양한 관 련 담당공무원, 전문연구자 들에 대한 자문을 거쳐 연구내용의 객관 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셋째, 사례분석에 있어서는 기존의 법원에서 사법처리된 사건을 중 심으로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을 검토한다. 이러한 사례분석에 있어서 는 기존에 구성요건의 흠결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동일한 사안에 새로운 법률안의 내용이 적용될 경우의 법적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올 것인가를 가상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한다.

넷째, 비교법적 분석에 있어 부패방지를 위한 각 국내법의 법개정에 있어 지침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협약, 유럽연합법 등 국제법 과 더불어, 최근 국내•외적 상황에 힘입어 법개정 및 새로운 입법이 시도되고 있는 프랑스, 캐나다를 비롯하여, 독일,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입법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입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주요 외국의 입법에 대한 비교법 분석과 아울러, 현대 한 국사회의 모태를 형성하고 있는 조선시대에 적용되었던 부패관련 법제 를 통해 사회적 관행과 의식에서 비롯된 부패현상을 제도적으로 대처 하고자 했던 과거의 입법적 논의를 오늘날의 문제상황에 비추어 살펴 봄으로써 한국사회의 법감정 및 의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위와 같은 비교법 분석을 함에 있어 각 법제의 관련 전문가들 로 구성된 전문가 워크숍을 통하여 비교법적 분석에 전문성을 기하였 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5차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표 1] 본 연구관련 개최 워크솝

| 일 시 | 주 제 | 발제 및 토론자 |
| :---: | :---: | :---: |
| 2012. | - 국제협약상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법 | 박영길, 이근우 |
| 6.11 | • EU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법 | 김용훈, 김대인 |


| 일 시 | 주 제 | 발제 및 토론자 |
| :---: | :---: | :---: |
|  | - 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법 | 이성기, 김경락 |
| 6.18 | - 호주의 부정부패관련 법과 정책 | 김혜련, 이혜미 |
| 6.26 | - 전통 동아시아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법 <br> - 일본법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법 | 김대홍, 조지만 <br> 김현숙, 류부곤 |
| 7.4 | - 캐나다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법 <br> - 영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법 <br> - 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법 | 윤혜선, 이희정 이상현, 윤태범 김세진, 최준혁 |
| 7.25 | - 독일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법 <br> - 프랑스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법 | 최준혁, 강지은 |

위와 같은 분석방식들을 통하여, 법률안에서의 규율대상 및 적용범 위를 명확화하고, 동 법률안의 시행시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적용상의 실효성의 정도와 범위를 분석하였으며, 다른 법들과의 체계적 정합성 과 균형이 맞는지 여부를 분석하였고, 헌법과의 관계 하에 위헌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검토 및 분석하는데 있어 다수의 관련 전문가 들과의 질의 및 자문을 통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비교법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내용구성을 대상 법률안의 내용에 맞추어 부정청탁방지, 금품수수방지, 이해충돌방지로 나누었는 데, 일차적으로는, 부정청탁의 경우에도 금품수수가 동반되는 경우는 주로 금품수수의 문제로 다루었으며, 뇌물과 같이 부정청탁이 금품수 수를 수반하여 부정청탁만을 따로 대상으로 삼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 는 경우에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문제를 함께 다루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제 2 장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의의

## 제 1 절 제정배경

공직부패는 자원낭비와 분배구조의 왜곡을 초래함으로써 국정의 효 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며，이러한 관행이 체계적으 로 고착된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체제자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1）

우리나라의 경우，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2）가 수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0개 국가 중 22－24위에 불과하여 경제발전도에 비해 공직사회의 부패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 발표된 부패인식지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4점으로 이전 해 39 위에서 43 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OECD 가입 34 개국 중에서는 27 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2010년의 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어떤 대상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 으며，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으며（2．4／10），지 방공무원（3．8／10），중앙정부（3．9／10）공무원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3）

이는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할 공무집행과정에 있어，공무상의 투명성 저하 등의 공직자의 공평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소

1）송삼현，「공직부패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비교형사법연구』，제 11 권 제2호，2009， 561.
2）부패인식지수（CPI）는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3 개 이상의 원천자료，즉 여러 국제평가기관에서 국내 외 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 관련 인식조사 결과와 국가분석전문가의 평가결과의 집계로서 평가되어진다．＂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11．12．1）．
3）이는 닐슨컴퍼니 코리아（Nielsen Company Korea）가 2010년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및 4 대 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00 명을 대상으 로 12 개 직업군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10 점 만점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임．＇우리 나라 국민，교사 신뢰하고 국회의원 불신한다’，「세계일보」，（2010．12．23），http：／／www． 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1223000698\＆subctg1＝\＆subctg2＝．

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의 건전한 발전 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각종 지연 및 학연에 기초한 공 직자에 대한 청탁행위와 향응•접대 등 온정주의적 문화가 공직자의 합법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함으로써 부패행위로 직결되는 폐 해를 낳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반면, 공무상 부패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및 향 응 수수, 그리고 공무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 한 제도적 및 법제적 수단이 미흡한 상황이어서 현행 법제도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과 효과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표 2] 2011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4)

| 순 위 | 국 가 | CPI 점수 | 2010 CPI <br> 점수/순위 |  | 2009 |
| :---: | :---: | :---: | :---: | :---: | :---: |
| 1 | 뉴질랜드 | 9.5 | 9.3 | 1 | 9.4 |
| 2 | 덴마크 | 9.4 | 9.3 | 1 | 9.3 |
| 2 | 핀란드 | 9.4 | 9.2 | 4 | 8.9 |
| 4 | 스웨덴 | 9.3 | 9.2 | 4 | 9.2 |
| 5 | 싱가포르 | 9.2 | 9.3 | 1 | 9.2 |
| 6 | 노르웨이 | 9.0 | 8.6 | 11 | 8.6 |
| 7 | 네덜란드 | 8.9 | 8.8 | 6 | 8.9 |
| 8 | 호주 | 8.8 | 8.7 | 8 | 8.7 |
| 8 | 스위스 | 8.8 | 8.7 | 8 | 9.0 |
| 10 | 캐나다 | 8.7 | 8.9 | 6 | 8.7 |
| 11 | 룩셈부르크 | 8.5 | 8.5 | 11 | 8.2 |
| 12 | 홍콩 | 8.4 | 8.4 | 13 | 8.2 |
| 13 | 아이슬란드 | 8.3 | 8.5 | 11 | 8.7 |
| 14 | 독일 | 8.0 | 7.9 | 15 | 8.0 |
| 14 | 일본 | 8.0 | 7.8 | 17 | 7.7 |
| 16 | 오스트리아 | 7.8 | 7.9 | 15 | 7.9 |

4)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http://cpi.transparency.org/cpi2011/.

| 순 위 | 국 가 | CPI 점수 | $\begin{aligned} & 2010 \text { CPI } \\ & \text { 점수/순위 } \end{aligned}$ |  | 2009 |
| :---: | :---: | :---: | :---: | :---: | :---: |
| 16 | 바베이도스 | 7.8 | 7.8 | 17 | 7.4 |
| 16 | 영국 | 7.8 | 7.6 | 20 | 7.7 |
| 19 | 벨기에 | 7.5 | 7.1 | 22 | 7.1 |
| 19 | 아일랜드 | 7.5 | 8.0 | 14 | 8.0 |
| 21 | 바하마 | 7.3 | 신규 |  |  |
| 22 | 칠레 | 7.2 | 7.2 | 21 | 6.7 |
| 22 | 카타르 | 7.2 | 7.7 | 19 | 7.0 |
| 24 | 미국 | 7.1 | 7.1 | 22 | 7.5 |
| 25 | 프랑스 | 7.0 | 6.8 | 25 | 6.9 |
| 25 | 세인트루시아 | 7.0 | 신규 |  |  |
| 25 | 우루과이 | 7.0 | 6.9 | 24 | 6.7 |
| 28 | 아랍에미리트 | 6.8 | 6.3 | 28 | 6.5 |
| 29 | 에스토니아 | 6.4 | 6.5 | 26 | 6.6 |
| 30 | 사이프러스 | 6.3 | 6.3 | 28 | 6.6 |
| 31 | 스페인 | 6.2 | 6.1 | 30 | 6.1 |
| 32 | 보츠와나 | 6.1 | 5.8 | 33 | 5.6 |
| 32 | 포르투갈 | 6.1 | 6.0 | 32 | 5.8 |
| 32 | 대만 | 6.1 | 5.8 | 33 | 5.6 |
| 35 | 슬로베니아 | 5.9 | 6.4 | 27 | 6.6 |
| 36 | 이스라엘 | 5.8 | 6.1 | 30 | 6.1 |
| 36 | 세인트 빈센트 가르든 | 5.8 | 신규 |  |  |
| 38 | 부탄 | 5.7 | 5.7 | 36 | 5.0 |
| 39 | 몰타 | 5.6 | 5.6 | 37 | 5.2 |
| 39 | 푸에르토리코 | 5.6 | 5.8 | 33 | 5.8 |
| 41 | 카보베르데 | 5.5 | 5.1 | 45 | 5.1 |
| 41 | 폴란드 | 5.5 | 5.3 | 41 | 5.0 |
| 43 | 대한민국 | 5.4 | 5.4 | 39 | 5.5 |
| 44 | 브루나이 | 5.2 | 5.5 | 38 | 5.5 |
| 44 | 도미니카 | 5.2 | 5.2 | 44 | 5.9 |
| 46 | 바레인 | 5.1 | 4.9 | 48 | 5.1 |
| 46 | 마카오 | 5.1 | 5.0 | 46 | 5.3 |
| 46 | 모리셔스 | 5.1 | 5.4 | 39 | 5.4 |


| 순 위 | 국 가 | CPI 점수 | $\begin{aligned} & 2010 \text { CPI } \\ & \text { 점수/순위 } \end{aligned}$ |  | 2009 |
| :---: | :---: | :---: | :---: | :---: | :---: |
| 49 | 르완다 | 5.0 | 4.0 | 66 | 3.3 |
| 50 | 코스타리카 | 4.8 | 5.3 | 41 | 5.3 |
| 50 | 리투아니아 | 4.8 | 5.0 | 46 | 4.9 |
| 50 | 오만 | 4.8 | 5.3 | 41 | 5.5 |
| 50 | 세이셸 | 4.8 | 4.8 | 49 | 4.8 |
| 54 | 헝가리 | 4.6 | 4.7 | 50 | 5.1 |
| 54 | 쿠웨이트 | 4.6 | 4.5 | 54 | 4.1 |
| 56 | 요르단 | 4.5 | 4.7 | 50 | 5.0 |
| 57 | 체코공화국 | 4.4 | 4.6 | 53 | 4.9 |
| 57 | 나미비아 | 4.4 | 4.4 | 56 | 4.5 |
| 57 | 사우디아라비아 | 4.4 | 4.7 | 50 | 4.3 |
| 60 | 말레이시아 | 4.3 | 4.4 | 56 | 4.5 |
| 61 | 쿠바 | 4.2 | 3.7 | 69 | 4.4 |
| 61 | 라트비아 | 4.2 | 4.3 | 59 | 4.5 |
| 61 | 터키 | 4.2 | 4.4 | 56 | 4.4 |
| 64 | 조지아 | 4.1 | 신규 |  |  |
| 64 | 남아공 | 4.1 | 4.5 | 54 | 4.7 |
| ... | 중략 |  |  |  |  |
| 177 | 수단 | 1.6 | 1.6 | 172 | 1.5 |
| 177 | 투르크메니스탄 | 1.6 | 1.6 | 172 | 1.8 |
| 177 | 우즈베키스탄 | 1.6 | 1.6 | 172 | 1.7 |
| 180 | 아프가니스탄 | 1.5 | 1.4 | 176 | 1.3 |
| 180 | 미얀마 | 1.5 | 1.4 | 176 | 1.4 |
| 182 | 북한 | 1.0 | 신규 |  |  |
| 182 | 소말리아 | 1.0 | 1.1 | 178 | 1.1 |

[표 3]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변화 추이(1995~2011) ${ }^{5)}$

| 연 도 | CPI 지수 | 순 위 | 조사대상국 |
| :---: | :---: | :---: | :---: |
| 1995 | 4.29 | 27 위 | 41 개국 |
| 1996 | 5.02 | 27 위 | 54 개국 |

5) Id.

| 연 도 | CPI 지수 | 순 위 | 조사대상국 |
| :---: | :---: | :---: | :---: |
| 1997 | 4.29 | 34 위 | 52 개국 |
| 1998 | 4.2 | 43 위 | 85 개국 |
| 1999 | 3.8 | 50 위 | 9 개국 |
| 2000 | 4.0 | 48 위 | 101 개국 |
| 2001 | 4.2 | 42 위 | 91 개국 |
| 2002 | 4.5 | 40 위 | 102 개국 |
| 2003 | 4.3 | 50 위 | 133 개국 |
| 2004 | 4.5 | 47 위 | 146 개국 |
| 2005 | 5.0 | 40 위 | 159 개국 |
| 2006 | 5.1 | 42 위 | 163 개국 |
| 2007 | 5.1 | 43 위 | 180 개국 |
| 2008 | 5.6 | 40 위 | 180 개국 |
| 2009 | 5.5 | 39 위 | 180 개국 |
| 2010 | 5.4 | 39 위 | 178 개국 |
| 2011 | 5.4 | 43 위 | 183 개국 |

## 제 2 절 공직부패 현황

최근 각종 통계를 통해 나타난 바로는 공직자 부패범죄의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이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착된 공 직비위사건의 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1）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처 리하도록 되어있는데，6）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공무원행동강령위반 사건의 수는 지난 8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행위유형별로는 금품 등의 수수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며，공금의 예산외 목적의 사용，알선• 청탁－이권개입，공용물의 사적 사용，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6）「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08．2．29，「부패방지법」의 폐지로 법률 제8878호로 제정，2012．2．17 법률 제11327호로 최종 개정），제12조 14 호．
[표 4] 공무원행동강령위반사건의 행동강령 위반 유형별 현황
('11.12.31.기준 / 단위: 명)

| 위반유형 | 합 계 | $\begin{aligned} & ‘ 03 . \\ & 5 \sim \end{aligned}$ | '04 | '05 | '06 | '07 | '08 | '09 | ${ }^{\prime} 10$ | ${ }^{\prime} 11$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begin{gathered} 8,29 \\ 8 \end{gathered}$ | 367 | 842 | 937 | 678 | 679 | 764 | $\begin{gathered} 1,08 \\ 9 \end{gathered}$ | $\begin{gathered} 1,43 \\ 6 \end{gathered}$ | $\begin{gathered} 1,50 \\ 6 \end{gathered}$ |
| 금품등 수수 | $\begin{gathered} 4,51 \\ 5 \end{gathered}$ | 259 | 624 | 737 | 428 | 392 | 283 | 381 | 760 | 651 |
| 예산의 목적외 사용 | $\begin{gathered} 2,23 \\ 1 \end{gathered}$ | 32 | 75 | 84 | 133 | 121 | 346 | 464 | 424 | 552 |
| 알선, 청탁, 이권개입 | 392 | 21 | 53 | 31 | 20 | 37 | 17 | 70 | 63 | 80 |
| $\begin{aligned} & \text { 공용물 } \\ & \text { 사적사용 } \end{aligned}$ | 348 | 29 | 45 | 28 | 21 | 16 | 21 | 60 | 49 | 79 |
| 외부강의 등 신고의무 위반 | 299 | 5 | 4 | 9 | 6 | 36 | 72 | 65 | 50 | 52 |
| 금전차용의 <br> 금지 위반 | 98 | - | 1 | 3 | 15 | 7 | 6 | 30 | 21 | 15 |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 84 | - | 1 | 3 | 4 | 39 | 3 | 8 | 9 | 17 |
| 경조사 통지, 경조 금품 | 66 | 7 | 11 | 15 | 7 | 6 | 5 | 2 | 9 | 4 |
| 기 타 | 265 | 14 | 28 | 27 | 44 | 25 | 11 | 9 | 51 | 56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에 대한 처분 유형가운데는 징계처분이 $46 \%$, 주의•경고가 $42 \%$ 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징계처분 중에서는 견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행동강령위반사건의 경우 형사 처벌에 이르지는 않고 징계처분에 그친다는 점에서 범죄의 억지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표 5] 공무원행동강령위반사건의 징계처분 유형별 현황
('11.12.31.기준 / 단위: 명)

| 처분유형 | 합 계 | '03.5~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 }^{\prime} 11$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8,298 | 367 | 842 | 937 | 678 | 679 | 764 | 1,089 | 1,436 | 1,506 |
| 소 계 | 3,885 | 198 | 429 | 468 | 409 | 386 | 304 | 377 | 734 | 580 |
| 파 면 | 651 | 27 | 63 | 52 | 65 | 74 | 56 | 92 | 130 | 92 |
| 해 임 | 466 | 18 | 42 | 53 | 54 | 60 | 63 | 48 | 74 | 54 |
| 처 강 등 | 11 | - | - | - | - | - | - | - | 4 | 7 |
| 분 정 직 | 802 | 52 | 81 | 123 | 73 | 77 | 55 | 79 | 150 | 112 |
| 감 봉 | 900 | 45 | 114 | 98 | 108 | 78 | 60 | 67 | 178 | 152 |
| 견 책 | 1,055 | 56 | 129 | 142 | 109 | 97 | 70 | 91 | 198 | 163 |
| 주의• 경고 | 3,502 | 126 | 254 | 383 | 181 | 173 | 425 | 582 | 623 | 755 |
| $\begin{aligned} & \text { 기타 }(\text { 인사 } \\ & \text { 조치 } \\ & \text { 훈계 등) } \end{aligned}$ | 803 | 43 | 157 | 83 | 77 | 107 | 34 | 128 | 70 | 104 |
| 진행중 | 108 | - | 2 | 3 | 11 | 13 | 1 | 2 | 9 | 67 |

한편, 위원회에 신고된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 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하여는 형사상 수사나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고,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7)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항.
［표 6］부패방지 심의•의결 사례의 처리결과8）

|  | 기 소 | 불구속 <br> 기소 | 경찰 <br> 무혐의 | 검찰 <br> 무혐의 | 행정기관 <br> 주의조치 | 조사중 | 합 계 |
| :---: | :---: | :---: | :---: | :---: | :---: | :---: | :---: |
| $\mathbf{2 0 1 1}$ | 5 | 16 | 3 | 2 | 11 | 33 | 70 |
| $\mathbf{2 0 1 0}$ | 10 | 27 | 7 | 11 | 17 | 7 | 79 |
| 합 계 | 15 | 43 | 10 | 13 | 28 | 40 | 149 |

［표 7］부패방지 심의 • 의결 사례 중 불처벌 사례 비율9）

|  | 경찰 무혐의 | 검찰 무혐의 | 합 계 | 전 체 | 비 율 |
| :---: | :---: | :---: | :---: | :---: | :---: |
| $\mathbf{2 0 1 1}$ | 3 | 2 | 5 | 70 | $7 \%$ |
| $\mathbf{2 0 1 0}$ | 7 | 11 | 18 | 79 | $23 \%$ |
| 합 계 | 10 | 13 | 23 | 149 | $15.4 \%$ |

## （2）감사원 고발사건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을 수행하며，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 다．${ }^{10)}$ 감사원에서 공직비리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 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요청한 것은 2010년 모두 54건 113명에서 2011년 모두 114건 20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범죄행위 유형별， 범죄발생 기관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8） 2011,2012 년 간행된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 심의 의결례집」에 수록된 사례들을 대 상으로 함．유의미한 정도의 수는 아니나 부패방지 심의－의결 사례 중 경찰 및 검찰의 무혐의 처분사례는 2010년，2011년 평균 $30 \%$ 에 이르고 구속기소된 사례는 $15 \%$ 였다．
9）Id．
10）「감사원법」（1963．3．5，법률 제 1286 호로 제정，2012．7．1 법률 제 11206 호로 최종 개정， 2012．7．1 시행），제 35 조．

1）2011년 고발 수사요청사건 수
［표 8］감사원 고발 수사요청 사건 수（2011）${ }^{11)}$
（단위：건，명）

| 2011 | 합 계 |  | 국가기관 |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 |  | 기타단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 수 | 인 원 | 건 수 | 인 원 | 건 수 | 인 원 | 건 수 | 인 원 | 건수 | 인원 |
| 합 계 | 114 | 206 <br> $(135)$ | 61 | 112 <br> $(101)$ | 33 | 58 <br> $(23)$ | 2 | 6 <br> $(4)$ | 18 | 30 <br> $(7)$ |
| 업무상 <br> 횡령•배임 | 62 | 103 <br> $(73)$ | 42 | 67 <br> $(59)$ | 9 | 16 <br> $(9)$ | - | - | 11 | 20 <br> $(5)$ |
| 공문서 <br> 위조•변 <br> 조와 <br> 동행사 | 10 | 18 <br> $(9)$ | 5 | 6 <br> $(6)$ | 4 | 10 <br> $(2)$ | - | - | 1 | 2 <br> $(1)$ |
| 증•수뢰 | 20 | 35 <br> $(12)$ | 2 | 5 <br> $(2)$ | 11 | 17 <br> $(6)$ | 2 | 6 <br> $(4)$ | 5 | 7 |
| 법령위반 <br> 등 | 22 | 50 <br> $(41)$ | 12 | 34 <br> $(34)$ | 9 | 15 <br> $(6)$ | - | - | 1 | 1 <br> $(1)$ |

주）（ ）는 사인（私人）으로 전체 인원수에 포함됨
2）2010년 고발 수사요청사건 수
［표 9］감사원 고발 수사요청 사건 수（2010）${ }^{12)}$
（단위：건，명）

| 2010 | 합 계 |  | 국가기관 |  | 지방자치단체 |  | 공공ㄱㄱ관 |  | 기타단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 합 계 | 54 | 113 <br> $(68)$ | 23 | 34 <br> $(23)$ | 15 | 42 <br> $(28)$ | 2 | 2 <br> $(-)$ | 14 | 35 <br> $(17)$ |
| 업무상 <br> 횡령 $\cdot$ 배임 | 27 | 50 <br> $(30)$ | 13 | 13 <br> $(7)$ | 4 | 19 <br> $(16)$ | - | - | 10 | 18 <br> $(7)$ |

11）감사원，『2011 감사연보』，감사원（2011），p．67．
12）감사원，『2010 감사연보』，감사원（2011），p． 65

| 2010 | 합 계 |  | 국가기관 |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 |  | 기타단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 공문서 <br> 위조•변조와 <br> 동행사 | - | - | - | - | - | - | - | - | - | - |
| 증•수뢰 | 16 | 46 <br> $(26)$ | 2 | 9 <br> $(6)$ | 9 | 20 <br> $(12)$ | 2 | 2 | 3 | 15 <br> $(8)$ |
| 법령 위반등 | 11 | 17 <br> $(2)$ | 8 | 12 <br> $(10)$ | 2 | 3 | - | - | 1 | 2 <br> $(2)$ |

주）（ ）는 사인（私人）으로 전체 인원수에 포함됨

## （3）검찰 기소사건

2010년 한 해동안 뇌물수수，제 3 자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알선뇌 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예는 342 건이고 뇌물공여로 기소된 사건은 46 건이었다．그 중 뇌물수수의 경우 구속건수는 104 건이었고，뇌물공여 의 경우는 4건이었다．형법상 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의 수는 1998년을 전후로 최고조에 달하다가 차츰 줄어들었으나 최근 수년 사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러나 뇌물죄에 있어 총 처리사건 또는 접 수사건 대비 기소비율은 2000 년대 이전에는 $50 \%$ 를 상회하다가 차츰 낮아지는 경향을 띄고 있다．
［표 10］형법상 뇌물죄로 기소된 사건

| 연 도 | 공무원의 형법상 뇌물죄 <br> 기소인원 | 총처리인원 $\cdot$ 총접수인원에 <br> 대한 기소율（\％） |
| :---: | :---: | :---: |
| 1990 | 66 | 61.7 |
| 1991 | 141 | 68.1 |
| 1992 | 91 | 63.2 |

13）검찰청，『검찰연감』（2010）및 검찰청，『검찰연감』（2011）중 관련 통계 재구성，기소 율에 있어 1994년까지의 수치는 총 처리사건 인원에 대한 기소율이고，1995년부터의

| 연 도 구 분 | 공무원의 형법상 뇌물죄 기소인원 | 총처리인원 • 총접수인원에 대한 기소율(\%) |
| :---: | :---: | :---: |
| 1993 | 284 | 70.8 |
| 1994 | 272 | 59.5 |
| 1995 | 287 | 62.7 |
| 1996 | 297 | 61 |
| 1997 | 311 | 72.3 |
| 1998 | 531 | 52.9 |
| 1999 | 374 | 42 |
| 2000 | 197 | 47.3 |
| 2001 | 212 | 45.2 |
| 2002 | 155 | 50.8 |
| 2003 | 149 | 49.8 |
| 2004 | 137 | 41.0 |
| 2005 | 87 | 22.8 |
| 2006 | 123 | 34.5 |
| 2007 | 114 | 29.7 |
| 2008 | 161 | 38.5 |
| 2009 | 215 | 41.1 |
| 2010 | 342 | 28.5 |

자료: 검찰연감(2010, 2011)

## (4) 법원 판결 사건

최근의 통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뇌물의 수수 등으로 법원의 판 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 선고형이 1 년 미만인 비율이 높고, 집행유예 가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항소심에서의 실형선고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0]［표 11］7년간（1987－1993）의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의 사법처리결과14）

|  | 10 년 이 상 | $\begin{gathered} \text { 5년 } \\ \text { 이 } \\ \text { 상 } \end{gathered}$ | $\begin{gathered} 3 ㄴ ㅕ ㄴ ~ \\ \text { 이 } \\ \text { 상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1년 } \\ \text { 이 } \\ \text { 상 } \end{gathered}$ | 1년 <br> 미 <br> 만 | $\begin{aligned} & \text { 집 } \\ & \text { 행 } \\ & \text { 유 } \\ & \text { 예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선 } \\ & \text { 고 } \\ & \text { 유 } \\ & \text { 예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무 } \\ & \text { 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기 } \\ & \text { 타 } \end{aligned}$ | 처 <br> 리 <br> 합 <br> 계 | $\begin{aligned} & \text { 상 } \\ & \text { 소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87 제1심 |  | 1 |  | 14 | 23 | 96 | 14 | 2 | 22 | 172 | 38 |
| 항소심 |  |  |  | 2 | 2 | 13 | 22 | 4 | 52 | 95 | 17 |
| 1988 제1심 |  | 1 |  | 3 | 25 | 89 | 5 | 1 | 29 | 153 | 60 |
| 항소심 |  |  | 1 |  | 2 | 20 | 14 | － | 40 | 77 | 18 |
| 1989 제1심 |  |  |  | 16 | 23 | 106 | 16 | 5 | 19 | 185 | 70 |
| 항소심 |  |  |  |  | 6 | 17 | 4 | 5 | 60 | 92 | 17 |
| 1990 제1심 |  | 2 | 2 | 28 | 17 | 146 | 14 | 1 | 67 | 277 | 97 |
| 항소심 |  |  |  | 5 | 19 | 36 | 17 | 2 | 62 | 141 | 25 |
| 1991 제 1심 |  |  |  | 39 | 44 | 243 | 21 | 2 | 50 | 399 | 116 |
| 항소심 |  |  | 2 | 8 | 5 | 52 | 16 | － | 105 | 188 | 19 |
| 1992 제 1심 |  |  | 4 | 37 | 51 | 285 | 44 | 1 | 70 | 492 | 179 |
| 항소심 |  |  | 2 | 14 | 27 | 54 | 38 | 3 | 119 | 257 | 17 |
| 1993 제 1심 |  |  | 3 | 65 | 48 | 411 | 38 | 11 | 106 | 682 | 224 |
| 항소심 |  |  | 1 | 15 | 21 | 74 | 62 | 6 | 149 | 330 | 38 |

자료：사법연감

## 제 3 절 입법적 의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사회에서 만연된 부정청탁금 지，금품 등의 수수 제한，직무수행과 관련된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14）오영근，「공무원범죄와 양형」，『형사정책연구』，제 20 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4． 12），p． 105 ．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청 렴성을 증진코자 하는 의도에서 입법이 추진되어 왔다．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공직자윤리법」，등 기존의 유사사항 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들이 존재하나 이들 법들의 입법취지를 검토해 볼 때，「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15)}$ 은 잠재적으로 부패 를 형성할 수 있는 행위유형들을 유형화하고 이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공직자들에 대한 경보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즉，공직 부패에 대한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법규를 통해 공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 ［표 12］부패방지 관련 현행 법률의 입법목적

| 현행 법 | 법의 목적 |
| :---: | :---: |
| 「형법상 뇌물죄」 | －게르만법제：직무의 순수성－불가침 $\rightarrow$ 공무원의 부정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함 <br> －로마법제：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rightarrow$ 공무원의 부정행 위를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음 <br> －현행법：게르만법과 로마법의 혼합 $\longrightarrow$ 대가있는 이익수 수만으로 처벌하되，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 <br>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 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 호법익＂으로 함（판례） |
|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 －「형법」，「관세법」，「조세범 처벌법」，「지방세기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 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br>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함 |

15）이하에서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줄여서 ‘대상 법률안＇으로 칭하기로 한다．본 연구에서는，2012년 6월에 공표된 법률안을 분석대상으로 함에 유의할 것．시민단체 합동 주최，「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토론회」 자료집， （2012．6．21），p．29이하

| 현행 법 | 법의 목적 |
| :---: | :---: |
| 「국가공무원법」 |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br>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 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퇴직공직 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br>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 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함．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 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 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함 |
| 「공공감사기준」 |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 30 조의 2 및 제 52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부문 에 대한 감사（이하＂공공감사＂라 한다）의 수행에 필 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부패의 발생 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br>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 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 을 그 목적으로 함 <br> －부패행위：（1）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 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2）공공기관의 예산 사용，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 |


| 현행 법 | 법의 목적 |
| :---: | :---: |
|  | 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 해를 가하는 행위，（3）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
| 「공무원행동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 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 －공직사회에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금품 등의 수수를 제한하며，직무수행과 관련된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 써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 의 청렴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 제4 절 여론 동향

## 1．공직부패에 대한 국민인식

각종 부패근절을 위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공직사회에서 뇌물수수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인식하 는 것으로 보인다．2011년 8월，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 면，공직사회에서의 알선 및 청탁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부패라는 인식이 대다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직자는 $90.0 \%$ ，일반 국민의 경우， $87.7 \%)^{16}$ ）현시점에서 다소 시차가 있는 조사이기는 하 나，또 다른 조사에 따르더라도（박주봉，김용세，1998）， $85 \%$ 이상의 응 답자가 이를 긍정하고 있었다．${ }^{17)}$

16）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공직사회 알선 청탁 인식조사결과』，（2011．9），p．1．이 조사는 TNS Research International Korea에 의해 일반국민 1,000 명，공직자 1,000 명을 대상으로 $95 \%$ 신뢰수준 하에서 최대허용오차 $\pm 3.1 \%$ p로 행해졌다．
17）박주봉，김용세，「뇌물에 관한 일반인식 조사연구」，『법학연구』9（1），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1998．10），pp．207－228

그러나 알선 및 청탁의 심각성에 대하여는 일반국민 응답자의 $84.5 \%$ 가 매우 또는 다소＇심각하다＇고 답한 반면，공직자의 경우， $21.8 \%$ 만이＇심각하다＇고 응답하여 국민과 공직자 간의 인식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
［표 13］우리사회에 뇌물수수가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关응답내용 | 응답자수 | 백분율（\％） |
| :---: | :---: | :---: |
| （1）아주 흔하다． | 174 | 39.8 |
| （2）얼마간 있다． | 200 | 45.8 |
| （3）별로 없다． | 35 | 8.0 |
| （4）거의 없다 | 28 | 6.4 |
|  | 계 | 437 |

국민들과 공직자들 사이의 인식차이는 여러 부분에서 발견되는데， 알선•청탁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대가나 수단에 대하여，공직자의 $44.0 \%$ 가 식사 또는 술접대라고 답했으며，일반국민의 $52.5 \%$ 가 금품이 라고 답하였다．${ }^{19)}$ 또한，알선 및 청탁이 공직자의 업무처리 결과에 영 향을 주는가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45.1 \%$ 만이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반면，국민의 $87.3 \%$ 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하여，국민들이 향응 및 금품제공에 대한 동기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20）

그러나，인정상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선물 내지 접대에 대한 평가 에 있어서는 상당히 관대하거나 혼동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 다．1998년도의 조사에서＇돈이나 선물을 받았더라도 부당한 직무집행 이 없었다면 뇌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3.7 \%$ 에 이르렀으며，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받았다면，부당한 직무집행의 여부를 불문

18）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2011．9），p．1．
19）Id．，p． 6.
20）Id．，p．7．

하고 뇌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23.1 \%$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 다．（박주봉，김용세，1998）
［표 14］「뇌물」과 뇌물이 아닌 「선물 내지 인사」는 어떻게 구별된다고 생각합니까？${ }^{21)}$

| 응답내용 | 응답자수 | 백분율（\％） |
| :---: | :---: | :---: |
| （1）돈이나 선물을 받았더라도 부당한 직무집 행이 없었다면 뇌물이 아니다． | 191 | 43.7 |
| （2）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받았다면，부당 한 직무집행의 여부를 불문하고 뇌물이다． | 145 | 33.2 |
| （3）직무상 관련있는 사람에게서 받았다면，청 탁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뇌물이다． | 101 | 23.1 |
| 계 | 437 | 100.0 |

그러나 청탁에 응했더라도 부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면 뇌물이 아니 라고 답한 경우는 $21.4 \%$ 로，선물 등과 더불어 청탁과 부당한 직무집행 이 모두 있는 경우는 뇌물인 경우로 확실히 인식되고 있으나，청탁이나 부정한 직무집행이 결여된 경우에는 인식의 혼란을 보여주고 있다．
［표15］공무원이 돈이나 물건을 받았거나，음식이나 술을 대접받았다면 직무에 관계된 부탁을 받았든 안 받았든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22）

| 응답내용 | 응답자수 | 백분율（\％） |
| :--- | :---: | :---: |
| （1）뇌물이다． | 157 | 35.3 |
| （2）부탁을 받은 경우에만 뇌물이다． | 143 | 32.1 |
| （3）부탁을 들어주지만 않으면 뇌물이 아니다． | 32 | 7.2 |

21）박주봉，김용세，（1998．10），p． 213.
22）Id．，p． 214.

| 응답내용 | 응답자수 | 백분율（\％） |
| :---: | :---: | :---: |
| （4）부탁을 들어주었더라도，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br> 뇌물이 아니다． | 95 | 21.4 |
| （5）모르겠다． | 18 | 4.0 |
|  | 계 | 445 |

결국，최근 및 과거의 조사를 통해서 보건데，청탁•알선 및 금품 등의 제공자는 자신 및 의뢰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공행위를 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며，공직자는 이로부터 직무수행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생각함으로써，사회•윤리적 평가 및 형사적 제재를 피하게 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청탁•알선 및 금 품 등의 제공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그러한 일반인의 심리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얻게 되는 공직자로부터 그러한 이익취 득을 방지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2．한국의 부패상황에 대한 국제여론

프랑스의 대표적 언론인 「르몽드」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한국에서 극적인 경제성장과 동반한 고질적인 문제인＇부패＇와 중소기업 영역까 지 집어삼키는＇재벌（chaebols）＇의 탐욕의 연관성을 언급하면서 유교사 회의 친인척 관계와 지연 등이 한국인의 의식 속에 깊게 자리잡고 있 으며，군사독재의 유산까지 가세해 부패 관행의 모태를 형성하고 있 다고 지적하고 있다．（2011년 8월）

또한 미국의 주요 언론 중 하나인，LA타임스는 한국 사회 내 재벌 의 특혜에 대해 한국 전쟁 이후 경제성장에 대한 강박관념에 재벌이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재벌에 대해 엄격 한 처벌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2010년 12월）

또한，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정치경제•권력에 관대한 한국적 상황을 비판하면서，가족 기업인 재벌이 경제를 지배하는 한국에서 대기업 총수가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르고 대통령 사면을 받는 일은 흔한 일이라고 지적하는 기사를 쓴 바 있다．（2009년 12월）

## 3．법제정에 대한 여론 동향

2011년 6월 14일 고질적인 공직부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 여 국무회의에서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된 이후，수차례의 공개 토론회를 거쳐 입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언론 및 오피니언 리더의 의견동향을 보면，원론적인 차원에서 공직 부패에 대한 대응필요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특 히 현실은 사회지도층의 도덕과 사회적 책임의 가치가 상당히 약화되 어 있고，일반 국민들은 공동체적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의사결정권자들의 이해가 편파적으로 반영되기 쉽다고 인식하 는 것이 각종 사회조사들에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이 법의 입법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반영하는 의견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해야 하며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 행해야 한다．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정파적 이해와 공익이 충돌 할 때 청렴의무를 잘 이행하면 정치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국가경쟁 력이 높아진다．새 국회에서는 최근 논의 중인＇김영란법＇（가칭 「부 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23)}$

[^1]
## 제 3 장「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법률안의 주요내용

## 제 1 절 개 관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총칙，부정청탁의 수수 금 지，금품등 수수 금지，공직활동에서의 이해충돌 방지，보칙，징계 및 벌칙의 총 6 장， 39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4)}$
［표 16］「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법률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25）

| 해당조항 |  |  |
| :--- | :--- | :---: |
| 제1장 | 조문의 내용 |  |
| 제 1 조 | 목적 |  |
| 총 칙 |  |  |
| 제 3 조 | 정의 |  |
| 죽민의 책무 |  |  |
| 제5조 | 국가 등의 책무 |  |
| 제6직자의 의무 |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  |
| 제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제2장 | 부정청탁의 수수 금지 등 |  |
| 제8조 | 부정청탁의 금지 |  |
| 제9조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
| 제10조 | 부정청탁의 신고•처리 |  |
| 제3장 | 금풍 등의 수수 금지 등 |  |
| 제11조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
| 제12조 | 사례금 수수 제한 |  |
| 제13조 | 기부금 등의 수수 및 사용 제한 |  |

24）2012년 4월에 공표된 법률안에는 총 6장， 37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25）본 장에서 서술하는「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법률안에 관한 내용은 2012년 6 월에 공표된 법률안의 내용을 토대로 함．

| 해당조항 | 조문의 내용 |
| :---: | :---: |
| 제14조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 제4장 | 공직활동에서의 이해충돌 방지 |
| 제 15 조 | 사적 이해관계의 직무수행 금지 |
| 제 16 조 | 외부활동의 제한 |
| 제17조 | 사업자등과의 거래 제한 |
| 제18조 | 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
| 제19조 | 소속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 |
| 제20조 | 예산 등의 부정사용 금지 |
| 제21조 | 공용재산•직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 |
| 제22조 |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
| 제23조 | 공무수행 사인의 행위제한 등 |
| 제 24 조 | 제척 - 기피•회피 |
| 제 25 조 |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관리 |
| 제 26 조 | 외부활동 신고 등 |
| 제 5 장 | 보 칙 |
| 제 27 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
| 제28조 | 신고자등의 보호•보상 |
| 제29조 | 직무처리의 중지 - 취소 등 |
| 제 30 조 | 부당이득의 환수 등 |
| 제31조 | 비밀의 준수 |
| 제32조 |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
| 제6장 | 징계 및 벌칙 |
| 제33조 | 징계 등 |
| 제 34 조 | 비밀누설의 죄 |
| 제 35 조 | 부정청탁의 죄 |
| 제 36 조 | 금품 등 수수의 죄 |
| 제37조 | 벌칙 |
| 제 38 조 | 과태료 부과 |
| 제 39 조 | 양벌 규정 |
|  | 부 칙 |

## 제 2 절 규율대상 및 정의

## （1）공공기관（법률안 제 2 조 제 1 호）

대상 법률안에서 의미하는＇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 1 호，제 2 조 1．）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 「국회법」에 따른 국회，「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헌법재판 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 관리위원회，「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공직자윤리법」제 3 조제 1 항 제 12 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2）공직자（법률안 제 2 조 제 2 호）

이 법률안에서 의미하는＇공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 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 3 조 제 1 항 제 12 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3）가족 및 친족（법률안 제 2 조 제 10 호 및 제 11 호）

이 법률안에서 의미하는 ‘가족 및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 자의 형제자매
［표 17］가족과 친족의 범위

|  | 가 족 | 친 족 |
| :---: | :---: | :---: |
| 법률안 | 제2조 10 호 | 제2조 11 호 |
| 원용 <br> 근거법령 | 「민법」 제779조 | 「민법」 제767조의 친족 중 <br> 4촌 이내의 친족 |
|  | •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 |  |
| 제•자매 |  |  |
| 범 위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 <br> 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 <br>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 <br>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4）직무（법률안 제 2 조 제 3 호）
이 법률안에서 의미하는＇직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또는「민원사무처리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업무
－수사•심리•심사•심판•결정•중재•재결•조정•판결 또는 이 에 준하는 업무
－공사，물품 및 용역 등의 구매를 위한 계약•검사•검수•대금지 급－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의 배정•지급 등에 관한 업무
－조세의 조사•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
－감독 • 검사－단속 • 행정지도 • 지원 • 징집－소집－동원 등에 관한 업무
－예산•인사•감사•상훈 • 평가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업무

- 그 밖에 공직자가 법령상 또는 관례상•사실상 수행하거나, 자신의 직무 및 직책에 따라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업무


## (5) 사적 이익 및 금품 (법률안 제2조 제6호 및 제7호)

이 법률안에서 의미하는 '사적 이익'은 공직자 및 공직자와 개인적인 연고관계에 있는 자에 귀속되는 금품 등 유형 - 무형의 이익을 말한다.

또한 이 법률안에서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은 일체의 금전적 이 익을 포함하여, 접대•향응, 편의제공, 출장•행사경비, 취업 등 이권 개입 등으로 얻는 이익, 기타 유•무형의 이익을 포괄한다.
[표 18]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내용

|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 (법률안 제2조 제6호) |  |
| :--- | :--- |
| $\mathbf{1}$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br>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명목을 불문한 일체의 금전적 이익 |
| $\mathbf{2}$ | 음식물 • 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 $\mathbf{3}$ | 국내외의 출장 • 행사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 숙박비 • 식비 • 행사비 • <br> 관람료 등의 경비 |
| $\mathbf{4}$ | 사업자등에게 취업을 요구 • 알선하거나 사업자등의 이권 등에 개입함 <br> 으로써 취득한 이익 |
| $\mathbf{5}$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형 • 무형의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6) 이해충돌 (법률안 제 2 조 제 8 호)

이 법에서 '이해충돌'이라 함은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공 직자 자신의 사적 이익과 연고관계(이하 "사적 이해관계"라 한다)가 개입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 는 상황 또는 저해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말한다.

## 제 3 절 규율 행위

## （1）부정청탁금지

## 1）부정청탁 수수 금지（법률안 제2장）

（1）부정청탁（법률안 제8조）
이 법률안에서 ‘부정청탁’이란 직무•고용관계，사회적 영향력 또는 연고관계 등을 이용하여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의 위 반，지위•권한의 남용 또는 직무수행의 기준•절차•방법 등을 벗어 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강요•요구•위 협•알선•개입•지시•접촉•청탁 등의 부정한 의사전달 행위를 말 한다．（법률안 제2조 5호）여기서＇특정직무＇란 열거한（법률안 제2조 3 호）직무 중에 공직자가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할 것이 명백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를 말한다．（법률안 제2조 4호）그러 나 특정직무의 이해관계자의 문의나 요청 등의 의사소통행위에 대하 여는 부정청탁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다음 표 참조）
［표 19］허용되는 이해관계자의 청탁행위의 내용

|  | 허용되는 이해관계자의 청탁행위（법률안 제8조 제1항 단서） |  |
| :--- | :--- | :---: |
| $\mathbf{1}$ | 공공기관에 특정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 • 요구하거 <br> 나 그 진행상황 •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 문의 등을 하는 행위 |  |
| $\mathbf{2}$ | 특정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 증명 등을 신청 • 요구하는 행위 <br> $\mathbf{3}$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특정직무에 관한 법령 • 제도•절차 등에 <br>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
| $\mathbf{4}$ | 「청원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 <br> 구제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  |


| 허용되는 이해관계자의 청탁행위（법률안 제8조 제1항 단서） |  |
| :--- | :--- |
|  | （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 <br> 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 |
| $\mathbf{5}$ |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견조회•자료제출 등을 <br> 요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의견 등을 제출하는 행위 |
| 6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또는 사업자등의 권익보호에 <br> 필요한 것으로서 공직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절차•방 <br> 법•기회를 이용하는 행위 |

직무관련 당사자가 아닌 제 3 자의 경우에도，입법 활동，공공기관에 대한 의견개진，직무상 이해당사자를 대리하는 행위 등은 부정청탁행 위로 보지 않고 있다．（다음 표 참조）
［표 20］허용되는 제 3 자의 청탁행위의 내용

| 허용되는 제 $\mathbf{3}$ 자의 청탁행위（법률안 제 8 조 제 2 항 단서） |  |
| :---: | :---: |
| 1 | 「변호사법」，「공인회계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직무에 관하여 이해당사자를 대리하는 행위 |
| 2 |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공직자에 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
| 3 | 「행정절차법」，「국회법」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청문회•공청 회•공개토론회 등에서 그 절차•방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하거나 의 견－증거 등을 제출하는 행위 |
| 4 |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연설•기고 • 발표 등을 하는 행위 |
| 5 | 정책의 입안•수행•평가 등을 위해 공공기관과 사업자등이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하여 자문•고문•진정•탄원•협의 등을 하는 행위 |
| 6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를 위배하지 아 니하는 것으로서 공식적•공개적인 절차•방법 등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신하는 행위 |

（2）청탁의 주체
이 법률안은＇국민의 건전한 의사소통 및 권익보호’와＇부정청탁 근 절을 통한 공직사회 신뢰회복＇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조화하기 위하여 청탁주체를 이해당사자와 제3자로 구분하고 있다．${ }^{26}$ 이해당사자의 경 우는 본인의 문제에 대해 자신이 직접 이야기 하는 것은 최대한 언로 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부정청탁의 규제범위를 최소한으로 좁게 한 정하고 있으며，27）（법률안 제8조 제1항）제 3 자의 경우는 영향력 및 연 고주의를 이용한 청탁관행을 근절하려는 취지하에 부정청탁을 자신의 일이 아닌 타인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규제범위 를 넓게 파악하고 있다．28）（법률안 제8조 제2항）
［표 21］청탁의 주체 구분

| 주 체 | 금지 행위 |
| :---: | :---: |
| 이해당사자의 청탁 | 특정직무에 관한 이해당사자가 징직자겁 거는 믕백히 위 3 자법한 직무수행을 청탁 <br> 강요 • 요구•제의 • 유인 하거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br>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
| 제3자의 청탁 | 특정 직무에 관하여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 3 자가 공직 <br> 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 개입 <br>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

## 2）부정청탁의 신고•처리（법률안 제 10 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이 법률안은 청탁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있으며，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26）한국법제연구원，「제2회 입법정책포럼 자료：부패방지를 위한 입법제안」，（2012．4．19），p．6．
27）Id．
28）Id．

있다. 금지방식은 우선적으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금 지•신고 의무 부여하고, 부정청탁자 및 이에 위반한 공직자에 대하여 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부정청탁 신고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22] 부정청탁 신고 처리•절차

|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 |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즉시 <br> 소속기관장 등에게 서면으로 신고 |
| :---: | :--- |

$\Omega$

|  | 소속기관장등은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의 <br> 경위, 취지, 내용, 증거자료 댕응 용에 대한 확인 <br> 신고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br> 신속하게 확인 |
| :---: | :---: |

$\Omega$

| 수사기관에 통보 |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 결과 수사의 <br>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br> 수사기관에 통보 |
| :---: | :---: |

$\Omega$

부정청탁에 관한 기록•관리

소속기관장 등은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내용과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관리

## 3) 부정청탁 행위에 대한 처벌 (법률안 제35조)

이 법률안은 청탁에 따라 직무가 왜곡되는 폐해를 막기 위하여 부 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게 청탁사실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공 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자와 해당 공 직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제재의 정도는 이해당사자, 일반인인 제 3 자, 공직자의 순으로 가중하고 있으며, 이해당사자나 일반인인 제3 자의 경우 공직자와는 달리 형벌이 아닌 과태료에 처하고 있다.
(1) 부정청탁자에 대한 제재
[표 23] 부정청탁자에 대한 제재

| 구성요건 |  |  | 법률효과 |
| :---: | :---: | :---: | :---: |
| 행위주체 |  | 청탁자의 행위 유형 |  |
| 유형1 | 유형2 |  |  |
| 이해당사자 |  |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 3 자 | 일반 <br> 사인 |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 2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재직 <br> 중인 <br> 공직자 |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 2 년 이하의 징역,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

(2) 부정청탁에 따른 공직자에 대한 제재
[표 24] 부정청탁에 따른 공직자에 대한 제재

| 구성요건 |  | 법률효과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 유형 |  |
| 공직자 | 부정청탁에 따라 위법 - 부당하게 <br> 직무수행 | 2년 이하의 징역, <br> 2천 만원 이하의 벌 |

## (2) 금품수수금지

1)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직책에 따른 영향력 을 통해 사업자등 또는 다른 공직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

는 경우, 형법과는 달리 직무수행과의 대가관계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한다.(법률안 제 11 조 제 1 항, 제 36 조) 그러나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는 이 법률안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대 가관계가 없는 금품수수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직자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금품 등을 직접•간접으로 제공•기부하거나 후원하는 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법 률안 제 11 조 제 3 항, 제 36 조)
이 법은 원칙적으로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 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사업자등이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금품 등(그 직무수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품 등 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법률안 제 11 조 제1항) 예외적으로 통사적인 사료나 일정 가액 이하의 선물 등, 특정직무 상대방인 사업자가 아닌 친족의 부조, 기념 품 등의 수수에 대하여 면책되는 예외를 두고 있다.
[표 25] 허용되는 금품 등의 수수의 내용

| 허용되는 금품 등의 수수 (법률안 제 11 조 제 1 항 단서) |  |
| :---: | :---: |
| 1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통상적인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 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경우 |
| 2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 |
| 3 | 공직자의 친족이 부조의 목적으로 경조 관련 금품 또는 그 밖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다만, 그 친족이 공직자의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사 업자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5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거나 경 연•추첨을 통해 받게 되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인 경우 |


| 허용되는 금품 등의 수수 (법률안 제11조 제1항 단서) |  |
| :--- | :--- |
| 6 | 공공기관의 직원상조회 등을 통해 제공되거나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 <br> 운 처지에 있능 긱자를 돕기 위하여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br> 믐품등인 경우 |
| 7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직자의 가족은 공직자 본인의 경우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 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법률안 제11조 제2항) 또한 사업자등 또는 다른 공직자는 공직자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금품 등 을 직간접으로 기부•후원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하거나 약 속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법률안 제11조 제3항)

## 2) 사례금 수수 제한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 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 미나•공청회 그 밖의 회의 등에서 수행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 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법률안 제 12 조 제 1 항) 만일 공 직자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 부강의 등의 요청 내역 등을 소속기관장등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법률안제12조 제2항)

## 3) 기부금 등의 수수 및 사용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공공 기관의 직무상 지휘•감독•규제•지원 등을 받는 사업자 등이나 다 른 공공기관(산하기관)으로부터 소속 공직자가 직간접으로 수혜를 받 는 기부금 또는 후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법률안 제13조 제1항)

공공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수 및 사용 내역을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법률안 제 13 조 제2항)

## 4)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공직자가 금품 등을 받은 때에는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소 속기관장에게 인도하는 등 처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법률안 제14조)
(3) 이해충돌방지

1) 사적 이해관계의 직무수행 금지

이 법률안은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하고자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안 제 15 조) 또한 일정 고위 공직자는 공공기관에 임용되기 전 2 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사업자등 또는 대리•고문•자문•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던 고객 등과 관계된 특정직무를 임용 이후 2 년간 수 행하지 못한다. (법률안 제 15 조 제 2 항)

## 2)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가 직무권한과 관련된 사업 또는 영리행위를 사실상 관리•운 영하거나, 사업자등에게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외국 정부•기관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법률안 제16조)

## 3) 사업자등과의 거래 제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 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부정한 거래를 통해 재산증식을 도모하 거나 편법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법률안 제17조)

4）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이 법률안은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하고자 고위공직자와 인사담당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안 제18조）

## 5）소속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

조달행정의 공정성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와 계약담당 공직자 가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제한되어진다．（법률안 제19조）

## 6）예산•공용재산 등의 사적사용 금지

공직자의 희박한 공•사 구분의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공용재 산의 사적사용은 금지된다．（법률안 제20조 및 제21조）

## 7）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 개발정보，금융관련 정 보 등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법률안 제22조）

## 제 4절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이 법률안은 각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형벌，과태료，징 계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의 표과 같이 제재수준과 정도에 차등을 두고 있다．
［표 26］「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법률안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 구 분 | 위반 행위 | 처 벌 |
| :---: | :---: | :---: |
| 형 벌 | •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제34조） |  |


| 구 분 | 위반 행위 | 처 벌 |
| :---: | :---: | :---: |
|  |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제36조） <br>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후원한 자（제36조） <br>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공직자（제 37 조 제 1 항 제 1 호） <br>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제37조 제1항 제2호） | 3년 <br> 이하의 <br> 징역 <br> 또는 <br> 3천만원 <br> 이하의 <br> 벌금 |
|  |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제 35 조 제 1 호） <br>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제35조 제2호） <br> －가족을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한 공직자（제 37 조 제 2 항 제 1 호） <br>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과의 조달계약을 체결하도 록 한 공직자（제 37 조 제 2 항 제 2 호） <br>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 조제 6 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자（제 37 조 제 2 항 제 3 호） <br>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자에게 확정된 보호조 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 37 조 제 2 항 제 4 호） | 2년 <br> 이하의 <br> 징역 <br>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제37 조 제 3 항 제 1 호） <br> －예산 등의 부정사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을 얻거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공직자（제37조 제3항 제2호） <br> －공용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거나 타인에 게 사용 수익하게 한 공직자（제37조 제3항 제3호） <br> －부정청탁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 도록 강요한 자（제 37 조 제 3 항 제4호） <br>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 조제 6 호나목부터 사목까 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제 37 조 제 3 항 제 5 호） | 1년 <br> 이하의 <br> 징역 <br> 또는 <br> 1천만원 <br> 이하의 <br> 벌금 |
| 과태료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출석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제38조 제1항） | 3천만원 이하 |
|  |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제 3 자（제 38 조 제 2 항 제 1 호） <br> －금지된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제38조 제2항 제2호） | 2천만원 이하 |


| 구 분 | 위반 행위 | 처 벌 |
| :---: | :---: | :---: |
|  | -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체결한 공직자(제 38 조 제 2 항 제3호) <br> - 사업자 등에게 사적으로 노무제공을 받은 공직자 (제 38 조 제 2 항 제 4 호) <br> - 임용되기 전 2 년 이내의 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제38조 제2항 제5호) |  |
|  | -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이해관계인(제 38 조 제 3 항 제1호) <br> - 기준을 초과한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제38조 제 3항 제 2 호) <br> - 소속기관 명칭, 직위 등을 사적으로 이용한 공직자 (제 38 조 제 3 항 제 3 호) <br> - 이해관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공직자(제 38 조 제3항 제4호) <br> - 외부활동의 중지 종료에 관한 소속기관장등의 요 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직자(제 38 조 제 3 항 제 5 호) | 1천만원 이하 |
|  | -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그 사실을 축소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공직자(제 38 조 제 4 항 제 1 호) <br> - 100 만원 미만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한 공직자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제 38 조 제4항 제2호) <br> - 금품등의 제공자에게 반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제38조 제4항 제3호) | 500만원 이하 |
| 징계 <br> 처분 | - 이 법에 따른 형벌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제 33 조 제 1 호) <br> - 공직자가 외부 강의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제 33조 제2호) <br> - 재직 중 외부활동 사실을 1 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제 33 조 제 3 호) <br> - 외부활동에 관해 소명요청에 불응한 경우(제 33 조 제4호) |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부과처분 |

## 제 4 장 국내 현행 관련 법

## 제 1 절 「형 법，

「형법」은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 122 조에서 135 조까지）에 서 공무상 비밀누설죄，직권남용죄，수뢰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는데，가장 주요한 공무원범죄는 뇌물에 관한 범죄이며，이는 수뢰， 사전수뢰（제 129 조），제삼자뇌물제공（제 130 조），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 뢰（131조），알선수뢰（132조），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각각의 범죄의 유형의 구성요건과 법 률효과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7］「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 죄 명 | 구성요건 |  | 법률효과 |
| :---: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 유형 |  |
| 직권남용 <br> （제123조） | 공무원 |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무상의 <br> 비밀누설 <br> （제127조） | 공무원， <br> 공무원이 <br> 었던 자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수뢰죄 <br> （129조 <br> 제1항） | 공무원， 중재인 |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약속 | 5년 이하의 징역，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사전 수뢰죄 $\begin{aligned} & \text { (129조 } \\ & \text { 제2항) } \end{aligned}$ | 공무원， <br> 중재인이 <br> 될 자 |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됨 | 3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죄 명 | 구성요건 |  | 법률효과 |  |
| :---: | :---: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 유형 |  |  |
| 제삼자 뇌물공여죄 (130조) | 공무원, <br> 중재인 |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 3 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 | 5년 이하의 징역,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  |
| 수뢰 후 부정처사 | 공무원, <br> 중재인 | 수뢰 등 및 제삼자뇌물공여 등 + 부정한 행위 | 1년 <br> 이상의 <br> 징역 | 10년 <br> 이하의 <br> 자격 |
| 제1항 및 <br> 제2항) |  | 부정한 행위 + 수뢰 등 및 제삼자 뇌물공여 등 |  |  |
| 사후수뢰 <br> (131조 <br> 제3항) | 공무원, <br> 중재인 |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 한 행위 + 수뢰 등 및 제삼자뇌물 공여 등 | 5년 <br> 이하의 <br> 징역, 10년 <br> 이하의 <br> 자격정지 | 정지 <br> (임의적 <br> 병과) |
| 알선수뢰 <br> (132조) | 공무원 |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 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대가로 뇌물 을 수수, 요구 | 3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 |  |

한편, 공무원 범죄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직무관련 부패범죄로서「형 법」 제 40 장 횡령과 배임에 관한 장에서는 업무상의 임무에 반하는 행 위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한 범죄로는 업무상 횡령죄 와 배임죄, 배임수증죄가 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관한 각각의 범 죄유형상의 구성요건과 법률효과는 다음과 같다.
[표 28]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관한 죄

| 죄 명 | 구성요건 |  | 법률효과 |
| :---: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 유형 |  |
| 업무상의 <br> 횡령 <br> (제356조) | 타인의 재물을 <br> 보관하는 자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br>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 | 10 년 이하의 징 역, <br> 3 먼 만원 이하의 벌금 <br> $+10 ㄴ ㅕ ㄴ ~ ㅇ ㅣ ㅎ ㅏ ㅇ ㅢ ~$ |


| 죄 명 | 구성요건 |  | 법률효과 |
| :---: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 유형 |  |
| 업무상의 <br> 배임 (제356조) | 타인의 <br>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 자격정지 （임의적 병과） |
| 배임수재 （제357조 제1항） | 타인의 <br> 사무를 처리하는 자 |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 년 이하의 자격 정지（임의적 병과） |
| 배임증재 <br> （제357조 <br> 제2항） | 제한없음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 | 2년 이하의 징역， <br> 500 만원 이하의 <br> 벌금 +10 년 이하의 <br> 자격정지 <br> （임의적 병과） |

## 제 2 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공무원부패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또 하나의 주요 법률로는「특정범 죄 가중처벌법」이 있는데，이 법은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행위 （「형법」제 129 조•제 130 조•제 132 조）에 대하여 그 뇌물의 가액이 일정 액을 초과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조）「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안인 경우，법정형이 최저 5 년 이상의 징역이므로，사실상 집행유예는 불가능한 결과가 된다．29）

29）송삼현，「공직부패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비교형사법연구』，제 11 권 제2호，（2009），p． 566 ．
［표 29］「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 2 조의 내용

| 죄 명 |  | 수뢰액 | 법률효과 |  |
| :---: | :---: | :---: | :---: | :---: |
| 수뢰죄 | 129조 <br> 제1항 | 1억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수뢰액의 <br> 2 배 이상 |
| $\begin{gathered} \text { 사전 } \\ \text { 수뢰죄 } \end{gathered}$ | 129조 <br> 제2항 | 5천만원 이상 | 7년 이상의 | 5배 이하의 |
| 제삼자뇌 |  | 1억원 미만 | 유기징역 |  |
| 물공여죄 |  | 3 천만원 이상 | 5 년 이상의 |  |
| 알선수뢰 | 제132조 | 5천만원 미만 | 유기징역 |  |

또한，형법상의 알선수뢰죄（132조）는 알선의 주체가 지위를 이용하 는 공무원인데 반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알선의 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표 30］「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

| 죄 명 | 구성요건 |  | 법률효과 |
| :---: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 유형 |  |
| 알선 <br> 수재죄 <br> （3조） | 제한 | 없음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br>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br>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 |
| 5년 이하의 징역， | 1천 만원 이하의 |  |  |
| 벌금 |  |  |  |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정 범위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단체의 간부 직원에 형법상 뇌물죄（「형법」 제129조－제132조）를 확대적용하고 있다． （제4조）
［표 31］「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공무원의 범위

## 공무원에 준하여 보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 분의 1 이상 1 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 는 단체 기본재산의 2 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公共性） 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 의 임면（任免）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제 3 절 「국가공무운법」

「국가공무원법」은 주로 공무원의 인사행정과 직제，보수，능률향상을 위한 제도，신분보장，징계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복무상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그러한 의무에는 성실의무（제56조），친절•공 정의 의무（제59조），비밀엄수의 의무（제60조），청렴의 의무（제61조），품 위유지의 의무（제63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제64조），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의무（제65조，제66조）등이 있다．

## 제 4 절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 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제한되는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금지되는 행위유형으로는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제 18 조의 4），재직자 등의 취업청탁（제 18 조의 5）등이 있다．또한 이 법 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직자의 재 산등록30），선물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퇴직공직자 등에 대해 부과되는 부정청탁•알선의 금지행위의 구성 요건과 법률효과는 다음과 같다．（제 18 조의 4）
［표 32］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의 내용

| 구성요건 |  | 법률효과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 유형 |  |
| 퇴직공직자 | 퇴직 전 소속기관의 공직자에게 <br>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br> 청탁 $\cdot$ 알선 금지 | 1 년 이하의 징역， <br> 1 천 만원 이하의 <br> 벌금 |

재직자 등이 자신의 퇴직 후를 염두한 취업청탁에 대하여도 제한을 두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 18 조의 5）
［표 33］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의 내용

| 구성요건 |  | 법률효과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 유형 |  |
| 재직 중인 <br> 취업 <br> 심사대상자 |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와 밀접한 <br> 관련이 있는 업무와 관련한 사기업체등을 <br> 상대로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 |  |
| 취업심사대상 <br> 자의 <br> 재직기관의 장 |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와 밀접한 <br> 관련이 있는 업무와 관련한 사기업체등을 <br> 상대로 취업심사대상자를 위한 취업의 알선 | 없음 <br> （관할공직윤 <br> 리위원회의 <br> 시정권고）31） |

그 밖에，이 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에 따른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

30）재산등록의무자는 4급이상의 공무원 및 판•검사 등이 해당된다．「공직자윤리법，
（2011．7．29．법률 제 10982 호로 개정，2012．7．1시행），제 3 조．
31）「공직자윤리법」，제 23 조．

도록 하고 있으며，（제2조의 2）이를 위하여 특정 공무원의 경우 재산 등록 및 주식거래 등을 신고할 것과，외국에서 공무상 받은 선물의 신고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표 34］「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의무의 구체적 내용

| 이해충돌 방지의무 |  |
| :---: | :---: |
| 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 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
| 2 |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 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3 |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 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 |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 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은 총칙，재산등록 및 공개，주식의 매각 및 신탁，선 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데，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주로 징 계 및 과태료에 의하고 있다．이 법의 구성은 총 6 장， 30 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문의 내용과 전체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35］「공직자윤리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 해당조항 |  | 조문의 내용 |
| :---: | :--- | :--- |
| 제1장 | 총칙 |  |
| 제1조 | 목적 |  |
| 제2조 | 생활보장 등 |  |
| 제2조의2 | 이해충돌방지의무 |  |


| 해당조항 | 조문의 내용 |
| :---: | :---: |
| 제2장 | 재산등록 및 공개 |
| 제3조 | 등록의무자 |
| 제 3 조의 2 | 공직유관단체 |
| 제4조 | 등록대상재산 |
| 제5조 |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
| 제6조 | 변동사항 신고 |
| 제6조의 2 |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
| 제6조의 3 |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
| 제6조의 4 | 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
| 제7조 | 등록기간의 연장 |
| 제8조 | 등록사항의 심사 |
| 제 8 조의 2 | 심사결과의 처리 |
| 제9조 | 공직자윤리위원회 |
| 제 10 조 | 등록재산의 공개 |
| 제 10 조의 2 |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
| 제11조 | 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
| 제 12 조 | 성실등록의무 |
| 제 13 조 |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
| 제14조 | 비밀엄수 |
| 제14조의 2 |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
| 제14조의3 | 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등 금지 |
| 제 2 장의 2 |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
| 제14조의 4 |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
| 제14조의5 | 주식백지신착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
| 제14조의 6 | 주식취득의 제한 |
| 제14조의7 |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
| 제14조의 8 | 신탁상황의 보고 등 |
| 제14조의9 |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
| 제 14 조의 10 | 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
| 제 3 장 | 선물신고 |
| 제 15 조 |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
| 제 16 조 | 선물의 국고 귀속 등 |
| 제4장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


| 해당조항 | 조문의 내용 |
| :---: | :---: |
| 제17조 |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
| 제18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
| 제18조의 2 |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
| 제18조의 3 | 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
| 제 18 조의 4 |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
| 제18조의5 |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
| 제 19 조 |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
| 제19조의 2 | 취업 여부 확인방법 등 |
| 제5장 | 보칙 |
| 제20조 | 기획－총괄기관 |
| 제 20 조의 2 | 국회 등에 대한 보고 |
| 제21조 | 위임규정 |
| 제6장 | 징계 및 벌칙 |
| 제22조 | 징계등 |
| 제23조 | 시정 권고 |
| 제24조 | 재산등록 거부의 죄 |
| 제 24 조의 2 |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
| 제 25 조 | 거짓 자료 제출등의 죄 |
| 제 26 조 | 출석거부의 죄 |
| 제27조 | 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
| 제28조 | 비밀누설의 죄 |
| 제 28 조의 2 |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
| 제 29 조 | 취업제한，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
| 제 30 조 | 과태료 |
|  | 부칙 |

## 제 5 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사법의 정당성과 신뢰를 높 이기 위하여 배심원에 대한 청탁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그러한 규정 으로는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제51조，제56조），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제56조）가 있다．
［표 36］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의 내용 ${ }^{32)}$

| 구성요건 |  |  | 법률효과 |
|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 유형 |  |  |
| 제한없음 |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 및 이었던 자와 첩촉 | 없음 |
|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 |  |  |

［표 37］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의 내용33）

| 구성요건 |  |  | 법률효과 |
|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 유형 |  |  |
| 제한없음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  | 배심원 후보자에게 |  |  |

## 제 6 절 「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은 투표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표에 영향 을 미치는 매수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표 38］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내용34）

| 행위유형 |  | 법률효과 |
| :---: | :---: | :---: |
| 찬성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투표권자에게 <br> 즘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br>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한 자 | 졍 이학의이 <br> 금고 |  |

32）「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6．1 법률 제8495호로 제정，2012．1．17， 법률 제11155호로 일부개정，2012．7．1 시행），제51조．
33）Id．，제 56 조．
34）「국민투표법」，（1962．10．12，법률 제1166호로 제정，2009．2．12 법률 제9467호로 최 종개정，2009．2．12 시행），제99조．

| 행위유형 |  | 법률효과 |
| :--- | :--- | :---: |
| 2 |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지 아 <br> 니하거나 또는 그 알선•권유에 대한 보수를 목적으로 투 <br> 표권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  |
| 3 | 투표를 하였거나 아니하였다는 보수로서 투표권자에게 제 <br> 1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  |
| 4 |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br> 공공기관 $\cdot$ 단체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 <br> 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 이하의 <br> 벌금 |
| 5 |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 <br> 유를 한 자 |  |
| 6 |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 <br> 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  |

[표 39] 다수인 매수 청탁죄의 내용35)

| 죄 명 | 구성요건 |  | 법률효과 |
| :---: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 유형 |  |
| 다수인 매수 및 다수인 이해유 도죄 (제100조) | 제한없음 |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 로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 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투표권 자에 대하여 제99조제 1 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매수 및 이해유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금고, 50-250만원 벌금 |
|  |  | 위의 행위를 할 것을 청탁받거 나 청탁받게 한 자 |  |

35) Id. 제 100 조.

## 제 7 절 「변호사법」

「변호사법」은＂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 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근 절시켜 공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공무관련 청탁•알선수뢰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36）

이 법은 주로 변호사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관련 청탁•알선수뢰행위를 금하고 있는 제 111 조는 행위주체를 변호사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표 40］공무관련 청탁•알선수뢰의 내용

| 구성요건 |  |  | 법률효과 |
|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 유형 |  |  |
| 제한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 금품향응，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1천 만원 이하 벌금（병과） |
| 없음 | 관하여 청탁－ 알선의 명목으로 | 제 3 자에의 이익 <br> 공여•공여를 약속한 자 |  |

이 때，알선의 전제가 되는＇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37)}$

## 제 8 절 「공공감사기준」

공공감사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의 규정38）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36）헌법재판소 2012．4．24．2011헌바 40 ．
37）「변호사법」，（1949．11．7，법률 제63호로 제정，2011．7．25 법률 제10922호로 최종개 정，2012．1．26시행），제111조 제2항．
38）「감사원법」，제 30 조의 2 및 제 52 조．

구체적으로 감사직무 등，인사조치에 관한 청탁 등에 대한 보고의무 （제8조 제4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표 41］「공공감사기준」의 체계 및 주요내용 ${ }^{39)}$

| 해당조항 | 조문의 내용 |
| :---: | :---: |
| 제1장 | 총칙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정의 |
| 제3조 | 적용범위 |
| 제4조 | 공공감사기준의 준수 |
| 제5조 | 공공감사의 목적과 방향 |
| 제6조 | 공공감사의 기획과 연계•지원등 |
| 제2장 | 일반기준 |
| 제7조 | 일반기준의 적용 |
| 제8조 | 독립성 |
| 제9조 | 전문성 |
| 제10조 | 감사자세 |
| 제11조 | 정당한 주의의무 |
| 제12조 | 감사업무에 대한 조정•통계 |
| 제13조 | 감사정보의 보안유지와 공개 |
| 제 3 장 | 실시기준 |
| 제14조 | 실시기준의 적용 |
| 제15조 | 감사의 준거 |
| 제16조 | 감사위험과 중요성 |
| 제17조 | 감사준비 |
| 제18조 | 감사계획의 수립 |
| 제19조 | 관리통제의 평가 |
| 제20조 | 전산화된 환경에서의 감사 |
| 제21조 | 일반적 감사실시절차 |
| 제22조 | 감사인에 대한 감독 |
| 제23조 | 선행감사결과의 후속조치 |

39）「공공감사기준」，（1999．8．28，감사원규칙 제 137 호로 제정， 1999.8 .28 시행）．

| 해당조항 | 조문의 내용 |  |  |  |  |
| :--- | :--- | :--- | :---: | :---: | :---: |
| 제24조 | 감사증거 |  |  |  |  |
| 제25조 | 감사조서 | 보고기준 |  |  |  |
| 제4장 |  |  |  |  |  |
| 제26조 | 보고기준의 적용 |  |  |  |  |
| 제27조 | 보고의 원칙 |  |  |  |  |
| 제28조 | 보고서와 보고사항 |  |  |  |  |
| 제29조 | 감사결과처분（요구） |  |  |  |  |
| 제30조 | 감사보고서등의 배포 |  |  |  |  |
| 제5장 |  |  |  |  |  |
| 제31조 | 회계감사기준의 준용 | 보칙 |  |  |  |
| 제32조 | 세부사항 및 주석서 |  |  |  |  |
|  |  |  |  |  | 부칙 |

## 제 9 절 공무운행동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8조 에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구체적으로는 공무원이 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0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1조）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만일 공무원행동강령 상의 금지사항에 위반한 경우，누구든지 그 공무 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또는 국민권익위 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 게 보고해야 한다．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 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0)}$

4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12．2．17 법률 제11327호 로 개정，2012．2．17 시행），제20조．
[표 42]「공무원행동강령」의 체계 및 주요내용

| 해당조항 | 조문의 내용 |
| :---: | :---: |
| 제1장 | 총칙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정의 |
| 제3조 | 적용범위 |
| 제2장 | 공정한 직무수행 |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 제5조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 제6조 | 특혜의 배제 |
| 제7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 제8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 제9조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 제 3 장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 제 10 조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 제 10 조의 2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 제11조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 제 12 조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 제 13 조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
| 제 14 조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 제 14 조의 2 |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
| 제4장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 제 15 조 |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신고 |
| 제 16 조 | 금전의 차용 금지 등 |
| 제 17 조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 제5장 | 위반 시의 조치 |
| 제 18 조 |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 제 19 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 제 20 조 | 징계 등 |
| 제21조 |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
|  | 보칙 |
| 제22조 | 교육 |
| 제 23 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 해당조항 | 조문의 내용 |
| :---: | :---: |
| 제24조 |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
|  | 부칙 |

## 제 10 절 현행법의 한계

여러 부패방지 관련 법 규정들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다수의 법규 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적용상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첫째，「형법」의 경우는 전통적인 부패행위유형으로서의 공무원의 수 뢰，직권남용，일반적 직무범죄로서 횡령•배임 행위 등을 범죄로 규율 하고 있는데，이는 구성요건상의 제한과 죄형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형법해석상의 한계로 인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부패행위의 경우 형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특히 수뢰죄에 있어 요구되어지는 직무상 대가성요건으로 인해 구체적 직무상 대가관계가 없는 금품 등의 이익취득행위의 경우 법적용이 어렵게 되어 있다．
둘째，「국가공무원법」은 청렴의무，겸직금지의무，비밀준수의무，성 실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이는 복무상 지켜야 할 의무를 추상적 으로 선언한 형태여서，위반시 일정한 처벌 및 부담이 따르는 구체적 인 행위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있다．
셋째，「공직자윤리법」은 주로 재산등록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적용범위가 이해충돌행위 전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넷째，「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이해충돌행위에 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자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강령수준의 행위기준으 로 위반시 징계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직접적으로 법적 구속 력있는 제재수단이 부여되지는 않다는 한계가 있다．

## 제 5 장 관련 사례분석

이 장에서는 공무원 범죄에 있어 구체적 사안에서의 법 해석을 통 한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살펴보고, 더불어 법해석상의 한계를 검토함 으로써, 법률안의 실질적인 입법효과를 검토하기로 한다.

대상 법률안에서 다소 포괄적인 의미로 규정된 '부정청탁', '이해충돌' 등의 의미를 현실적인 행위의 유형들을 통하여 구체화하며, 현행법상 규 정된 유사용어에 대해 법원이 해석하고 있는 바를 검토함으로 법률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개념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대상 법률안의 실질적인 입법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의 부정 청탁, 금품수수, 이해충돌관련 사례들 중 현행법상 사법처리가 불가능 한 사례들을 추출하여, 동 법률안의 적용가능성여부 그리고 동 법률 안을 적용한 결과 현행법 하에서의 법률효과에 비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가상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41)}$

본 장에서 검토할 사례들은 법원 판례, 국민권익위원회 심의•의결 사례, 감사원 감사결과사례, 언론보도 등으로부터 선정하였다.42)

## 제 1 절 부정청탁

## (1) 부정청탁의 의의

## 1) 제 3 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 ○ 제 3 자 뇌물수수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4도4959, 판결

- 형법 제 130 조의 제 3 자 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 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 3 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41) 본 절에서의 사례분석에 적용되는 법률안은 2012년 6월에 공표된 내용을 토대로 함에 유의할 것.
42) 여기서의 판례자료 수집 및 정리에 수고해준 김태희 석사와 김주현 석사에 감사드림.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 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과 아울러 직무 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 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 도 1911 판결, 2002. 3. 15. 선고 2001 도 970 판결 등 참 조). 따라서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 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 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부정한 청탁'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 도 3424 판결 참조), 이러한 청탁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으 며,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 피고인은 도시설계변경 및 건축허가에 대한 권한을 가진 성남시장으로서, 1999. 7. 31.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도시설계지침상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 을 제한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백궁•정자지구에 있는 중심상업지역의 일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설계변경을 해 달라 는 건의를 받고 1999. 8. 말경부터 시의회 설명, 주민설명회, 시민단체 토 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으로 도시설계변경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점, 공소외 1 은 위와 같은 도시설계변경이 추진되기 이전인 1999. 5. 24. 도시설계지침상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이 제한되어 있던 중심상업지역의 쇼핑단지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 토지를 매수한 다음 성남시가 위 토지에 대하여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도시설계변경을 하는 것을 전제로 그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관계로 그에 관한 권한을 가진 피고인으로부터 도시설계변 경 및 건축허가를 받아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성남시 장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당시 컴퓨터 등 집기를 지원받는 등으로 알 고 지내던 공소외 2 의 부탁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한 도시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중요한 갈림길에 있던 시기인 1999. 10. 및 1999. 12.경 피고인의 수 행비서인 공소외 3을 시켜 " 공소외 1 이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건축설계용역을 공소외 2 가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주 식회사 건축설계사무소 건원(이하 '건원'이라고 한다)에게 도급하여 달라." 는 부탁을 하고, 공소외 1 이 피고인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며 피고인의 부

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시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설계용역을 특 정업체에게 도급해 달라고 부탁을 한 점, 공소외 1 은 도시설계변경에 대한 권한을 가진 피고인의 위 부탁을 그 전제가 되는 도시설계변경과 건축허가 를 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건원에게 건축설계용역에 참가하는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서는 공소외 1 이 위 토지에 관한 도시설계변경과 주상복합아파트에 관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하에 피고인의 부탁대로 건원에게 건축설계용역에 참가하는 이익을 제 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도시설계변경을 추진하여 공소외 1 이 건축하고자 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적법한 업무집행권한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건축허가 대상인 당해 건축물 의 설계용역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위 업무에 관련한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심히 의심받게 하 는 행위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2)「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적용상 ‘부정한 청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에서의 '부정한 청탁'
대법원 2006.6.15, 선고, 2004 도 3424 , 판결

- 형법 제 130 조의 제 3 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 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 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한다.
- 형법 제 130 조 뇌물죄에 있어서의 뇌물성은 형법 제 129 조 뇌물죄에 있어서 와 마찬가지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고, 그 뇌물을 받 는 제 3 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뇌물을 제 3 자에게 공여하게 한 동기를 묻지 아니하므로, 어떤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라면 그것이 시주의 형식으로 교부되었고 또 불심에 서 우러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뇌물임을 면할 수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동통신회사가 속한 그룹의 구조조정 본부장으로부터 당해 이동통신회사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

받으면서 특정 사찰에의 시주를 요청하여 시주금을 제공케 한 사안에서, 그 부탁한 직무가 피고인의 재량권한 내에 속하더라도 형법 제 130 조에 정 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위 시주는 기업결합심사와 관련되어 이루어 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 3 자뇌물수수의 죄책을 인정.

## 3) 수뢰후부정청사죄상의 '부정한 행위'

○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 및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03.6.13, 선고, 2003 도 1060 판결

-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 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 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 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 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 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수뢰후부정 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 까지를 포함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 제 1 호는 경찰관이 행하는 직무 중의 하나로 '범 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들고 있고, 이와 같이 범죄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고, 수사하여야 할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는 피고인이 도박장개 설 및 도박범행을 묵인하고 편의를 봐주는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금 품을 수수하고, 나아가 도박장개설 및 도박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경찰관으로서 직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 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원주경찰서 교통계에 근무하고 있어 도박범행의 수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를 담 당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 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 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 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 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는바(대법원 1996. 1. 23. 선고 94 도 302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 고인은 홍천경찰서 경비과 교통지도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음주운전 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같은 경찰서 같은 과 소속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 당하는 자로서 피단속자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 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운전면허취소업무가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담 당하지 않은 직무이라거나 금원의 수수시기가 피고인이 단속에 관하여 작성한 서류를 인계한 후라고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와의 관 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4) 배임수재죄상의 '부정한 청탁'

$\bigcirc$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10.9.30, 선고, 2009도5793, 판결

-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 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 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9. 선고 99 도2165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피고인 1 의 피고인 2,3 에 대한 청탁은 그 구체적 내용, 피고인 2,3 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준 점, 금품의 교부일시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청탁에 관한 피고인들의 배임수증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의 피고인 4 에 대한 청탁은 그 구체적 내용, 피고인 4에게 현금으로 6,700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 교부된 점, 피고인 4에게는 집행관 사무원으로서 높은 직무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청 탁에 관한 피고인들의 배임수증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에 관 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 배임수재•뇌물공여•배임증재
대법원 2011.8.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 형법 제 357 조 제 1 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 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 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 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 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 대학병원 등의 의사인 피고인들이, 의약품인 조영제를 사용해 준 대가 또 는 향후 조영제를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제약회사 등이 제공하는 조영제에 관한 '시판 후 조사'(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 명목의 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배임수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연구목적의 적정성 및 필 요성, 연구결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유무, 연구 수행과정과 방법 의 적정성 및 결과 충실성, 연구대가의 적정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연구용역계약은 의학적 관점에서 필요성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정당하게 체결되어 수행되었을 뿐, 제약회사 등의 조영제 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 또는 대가 지급 의도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

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학병원 의사인 피고인이, 의약품인 조영제나 의료재료를 지속적으로 납품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 또는 의약품 등을 사용해 준 대가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명절 선물이나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하여 배임수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조 영제 등의 계속사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고, 단순히 1 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선물과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제약회사 등은 피 고인과 유대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영제 등을 납품하기 위하여 이를 제공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프고인이 받은 선물, 골프접대비, 회식비 등은 부정한 청 탁의 대가로서 단순한 사교적 의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대법원 2010.9.30. 선고 2009 도5793 판결

-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 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 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 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피고인 갑이 한국자산관리공 사 직원인 피고인 을, 병에게 한 청탁은 그 구체적 내용 및 을, 병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준 점, 금품의 교부일 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배임수증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 갑이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인 피고인 정에게 한 청탁은 그 구체적 내용 및 정에게 현금으로 6,700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 교부된 점, 정에게는 높은 직 무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배임수증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배임수재죄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부정한 청탁"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 도 8743 판결

- 형법 제 357 조 제 1 항 소정의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 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 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

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므로,청탁 내용이 단 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 하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에 속하는 경우, 청탁 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아파트개발사업 시행업체 측으로부터 철거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할 권한과 함께 명도•이주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임무를 위임받은 피고인 이, 시행업체의 양해하에 철거업체로 선정되면 철거공사 하도급대금 중 일 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철거업체와 체결한 사안 에서, 타인의 부탁을 받아 계약과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특정인으로부터 계약체결의 상대방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받은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O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1983.12.27. 선고 83 도 2472 판결

-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으나 그 청탁의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하므로, 미리 환심을 사두어 후일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이를 누설하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유류부정처분 대가를 미리 나눠주었다해도 이는 어떠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것 이라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1985.10.22. 선고 85 도 465 판결

-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는 부정한 청탁 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계약 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 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9.28. 선고 82 도 1656 판결

- 청탁한 내용이 단순한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 다는 내용에 불가하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 고 따라서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증재 또는 배 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기소청탁 사례

| 언론보도 | K 판사 기소청탁 사건 |
| :---: | :---: |
| 1. 사실관계 |  |
| N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인 K 판사가 N 후보가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  |
| 것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청탁했다는 의혹 |  |
| 이 제기됐다. N 전의원은 지난 2004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자위대 창 |  |
| 설 50 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자 |  |
| 신을 비판한 한 네티즌을 고발했다. N 전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 K 판사는 |  |
| P 검사에게 지난 2005년 나 후보를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해 달라고 청탁했는 |  |
| 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  |

## 2. 검찰 판단 결과

기소청탁 논란을 낳았던 K 판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 담당 수사부는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해 K 판사가 당시 P 검사에게 직 접 전화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통화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청탁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 판단이유

앞서 검찰 조사에서 K 판사는 "P검사에게 전화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기소부 탁이 아니라 피해자인 처의 억울한 입장을 전달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 적용법조 | 법률효과 |
| :---: | :---: | :---: |
| 현행법 | 없음 | 무죄 |
| 「부정청탁 및 <br> 이해충돌방지」 <br> 법률안 적용시 | 부정청탁 <br> (법률안 제8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br> $2 ㅊ ㅓ ㄴ ㅁ ㅏ ㄴ ㅇ ㅝ ㄴ ~ ㅇ ㅣ ㅎ ㅏ ㅇ ㅢ ~ ㅂ ㅓ ㄹ ㄱ ㅡ ㅁ ~$ <br> (법률안 제35조) |

4. 분 석

법안 제 2 조 제 5 호. "부정청탁"이란 직무 고용관계, 사회적 영향력 또는 연고 관계 등을 이용하여 제4호의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의 위반, 지위 권한의 남용 또는 직무수행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벗어나게 하는 등 공 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강요•요구•위협•알선•개입•지시• 접촉•청탁 등의 부정한 의사전달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기소청탁의 경우에 도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법률안 제 8 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는 P검사가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논란이 되었는데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아래와 같은 부정청탁 신고 처리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청탁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하게 되며, 만일 부정청탁에 따라 기소를 행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한 공직 자와 마찬가지로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부정청탁 신고 처리•절차

|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 |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즉시 소속기관장 등에게 서면으로 신고 |
| :---: | :---: |
| $\Omega$ |  |
|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 | 소속기관장등은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의 경위, 취지, 내용, 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 |
| $\Omega$ |  |
| 수사기관에 통보 |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 결과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 $\checkmark$ |  |
| 부정청탁에 관한 기록 - 관리 | 소속기관장등은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내용과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관리 |

## (3) 노동쟁의 개입사례

| 2002 도3453 | 직권남용죄 : 한국조폐공사 쟁의행위 사건 |
| :--- | :---: |
|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
| 1. 사실관계 <br> 피고인(대검찰청 공안부장)이 1998. 9.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 <br> 검찰청 공안부장실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조폐공사 사장 공소외인에게 전화 <br> 로 "좋지 않은 정보 보고가 올라온다. 서울이 시끄럽다. 빨리 직장폐쇄를 풀 <br> 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
| 2. 판결요지 <br> - 형법 제 123 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br>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 |  |

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위 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40 조 제 2 항이 금지하는 ‘간여’란 단체교 섭 또는 쟁의행위의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 도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강요，유 도，조장，억압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간섭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볼 것이고，그러한 간섭행위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강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억제하는 것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며，다만 사용자나 근로 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상담，조언 등 단순 한 조력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후배인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위 공사의 쟁의행위 및 구조조정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한 것이 직권남용 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40 조 제2항에서 정한＇간여＇에는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판결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대공•선거•노사•학원 등의 공안사건에 관한 검찰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한국 조폐공사（이하＇조폐공사＇라고 한다）사장에게 조폐공사의 쟁의행위•경영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 므로，대검찰청 공안부장인 피고인이 조폐공사 사장인 공소외인에게 조폐공 사의 쟁의행위•경영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언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것이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1998．9．중순＂위법성 시비가 있는 직장폐쇄를 철회해라．임금 협상과 관련한 파업은 불법이 아니어서 제 압이 곤란하므로 공기업체 개혁에 차질이 생긴다．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 업은 불법이니 임금 삭감안을 가지고 노조와 협상하려 하지말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그러면 노조가 파업을 하겠지만 이는 불법 파업이므로 내가 즉시 공권력을 투입하여 제압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거나，1998．9．22．경 전화로 ＂임금 삭감안에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추가하면 노조가 당연히 이를 거부할 것이니 임금 협상을 결렬시킨 뒤 계획대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단지 1998．9．22．경 전화로＂좋 지 않은 정보 보고가 올라온다．서울이 시끄럽다．빨리 직장폐쇄를 풀고 구

조조정을 단행하라．＂고 말한 사실（이하＇피고인의 위 전화행위＇라고 한다）은 인정되지만，공소외인은 국회청문회에서，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및 법정에서 직장폐쇄의 철회와 조폐창의 조기통합은 조폐공사의 경영상 필 요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실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대전지방노 동청 등 관계 기관이 공소외인에게 직장폐쇄의 철회를 지도•권유하였던 점，공소외인이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조폐창 조기통합을 시행한 경위 등 판 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피고인의 위 전화행위와 공소외인이 직장 폐쇄를 철회하고，인력감축을 하지 않으려던 경영방침을 포기한 후 옥천조 폐창을 경산조폐창으로 조기에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 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간다．

| 본 사건 당시 <br> 법 적용시 | 적용법조 | 법률효과 |
| :---: | :---: | :---: |
|  | 제3각 갠남용죄（흥집 법 제123조） <br> （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br> 제40조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br>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 무죄 |
| 「부정청탁 및 <br> 이해충돌방지」 <br> 법률안 적용시 | 부정청탁（법률안 제8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br> （번률 안 제35조） |

## 4．분 석

법안 제2조 제5호．‘부정청탁’이란 직무 고용관계，사회적 영향력 또는 연고 관계 등을 이용하여 제4호의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의 위 반，지위 권한의 남용 또는 직무수행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벗어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강요•요구•위협•알선•개입• 지시•접촉•청탁 등의 부정한 의사전달 행위를 말한다．따라서 위 사안에 서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후배인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위 공사의 쟁의행위 및 구조조정에 관하여 개입한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 여 법률안 제 8 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상 법률안 제 8 조 위반시 법정형은 구「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40 조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보다는 낮게 설정되어 있다．

## 5．참 고

위 사건 피고인은 2심 사건（서울고등법원 2001노2159）계속 중에「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 40 조 제 2 항，제 89 조 제 1 호 중＇간여＇부분이 헌법에 위반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2초기82），서울고등 법원이 2002．6．14．그 제청신청을 기각하자，2002．6．27．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에 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04．12．16．2002헌바57 전원재판부）그러나 동 조항은 2006．12．30에 삭제되었다．

## （4）위법한 직무집행의 지시 사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직권의 남용＇의 의미

## 대법원 2012．1．27，선고，2010도11884，판결

－형법 제 123 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즉 형식적•외 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 는 경우를 의미하고，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 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 상당성 여부，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사람＇ 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고，직무집행 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 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 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시장（市長）인 피고인 甲이 자신의 인사관리업무를 보좌하는 행정과장 피고인乙과 공동하여，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가 작성되고 이에 따라 평정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 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에게 특정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순위 변경을 구체적 으로 지시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사안에서，지방 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평정권자나 확인권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의 인사관리업무를 보좌하는 자에게는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 에 따라 작성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특정 공무원에 대한 평정순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작성하게 할 권한이 없으므로，피고인들의 행위가 공 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평정권 자나 실무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적용법조 | 법률효과 |
| :---: | :---: | :---: |
| 현행법 적용시 |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 5년 이하의 징역，10년 <br> 이하의 자격정지， <br>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부정청탁 및 <br> 이해충돌방지」 <br> 법률안 적용시 | 부정청탁（법률안 제8조） |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br>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br> （법률안 제35조） |

## （5）언론보도상 청탁행위 유형

그밖에 사법처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언론보도를 통해서 파악 된 공직자에 대한 청탁행위의 유형을 보면，인사 관련 청탁이 가장 많았으며，수사청탁，감사요청서작성 청탁 등이 있었다．

| 부정청탁 관련 언론보도 사건 |  |  |
| :---: | :---: | :---: |
| 행위유형 | 현행법 | $\begin{aligned} & \text { 법ㄹㅠㅠ안 } \\ & \text { 적용시 } \end{aligned}$ |
| －K용인시장이 취임한 지 한달여 만인 2010년 8월， W전 국회의원이 K용인시장에게 특정 인물에 대 해 인사청탁 ${ }^{43)}$ |  |  |
| －병원동업과 관련해 수억대 투자금 갈등 및 불법 시술 등으로 고발된 전주 모 피부과 A 원장이 분 쟁관계에 있는 동업의들을 압박하기 위해 인척인 현직 경찰을 동원해 동료경찰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를 청탁44） |  |  |

43）「연합뉴스」，（2012．6．10）．
44）「아시아뉴스통신」，（2012．6．8）．

| 부정청탁 관련 언론보도 사건 |  |  |
| :---: | :---: | :---: |
| 행위유형 | 현행법 | 법률안 <br> 적용시 |
|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을 사고 있는 식중독예방 시스템 납품업체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감사과 정에서 인천시의회 K 부의장에게 민주당 관계자가 A 업체 제품을 납품받지 않은 학교들이 부적절한 계약을 한 것처럼 감사요청서를 부당하게 작성하 도록 청탁45） | 불분명 | 부정청탁 <br> （법률안 <br> 제8조） <br> 2년 |
| －지난 2010 년과 지난해 경찰 고위 인사를 앞두고 여야 의원 10 여 명이 J경찰청장에게 인사청탁46） |  |  |
| － E 청와대 경호처장이 Y 새누리당 의원를 만나 인 사청탁47） |  |  |
| －충남 지역의 한 경찰서장이 다른 경찰서 간부에게 사건 청탁48） |  | 2년 <br>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안 제 35 조） |
| －청원경찰•주정차 단속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전 형을 진행하던 중 구청장을 비롯，국장과 실무 담당자 등에게 수차례 채용 청탁 전화49） |  |  |
| － Y 에서는 청탁을 받고 결원이 있는 것처럼 시장에게 보고，청탁자의 대학동기를 보건진료소장으로 임명 －근무토록 인사 업무를 처리한 2 명의 공무원을 적 발，재단법인인 S 문화재단에서는 공고절차도 거치 지 않은 채 추천 명목으로 직원들을 특별채용．50） |  |  |
| －고위간부 인사 때 P서울시장에게 인사 청탁51） |  |  |

45）「인천신문」，（2010．6．4）．
46）${ }^{1} \mathrm{KBS}$ 뉴스」，（2012．4．21）．
47）「헤럴드경제」，（2012．4．1）．
48）「조선일보」，（2012．3．7）．
49）「경인일보」，（2012．1．18）．
50）「경기신문」，（2012．5．15）．
51）「아시아투데이」，（2011．12．29）．

| 부정청탁 관련 언론보도 사건 |  |  |
| :---: | :---: | :---: |
| 행위유형 | 현행법 | 법률안 <br> 적용시 |
|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아 물의를 빚은 여검사가 Y 변호사를 통해 검사장급 인사에게 자 신의 인사이동과 관련한 청탁52） |  |  |
| － H 의원이 행정고시 3 차 면접 합격을 청탁하는 내 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53） |  |  |
|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순경시험을 보는 아들을 위해 시험감독에게 청탁54） |  |  |
| －자살한 K 전남문화산업진흥원장이 재임기간에 인 사청탁으로 시달렸다는 내용의 메모가 그의＇미 니홈피＇에 공개55） |  |  |

## 제 2 절 금품수수

## （1）직무관련성이 부정된 사례 1

| 법원 <br> 판결 사건 | 뇌물과 직무관련성 ：정보과 경감 사건 |
| :---: | :---: |
|  | 대법원 1999．6．11．선고 99 도275 판결 |
| 1．사실관계 <br>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경감 甲은 乙로부터 그가 경영하는 K <br> 통상 주식회사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인 정에 의하여 외국인산업연 |  |

52）「동아일보」，（2011．11．29）．
53）${ }^{「} \mathrm{YTN}_{\perp}$ ，（2011．11．5）．
54）「세계일보」，（2011．11．2）．
55）「서울신문」，（2011．6．24）．

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는데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전 및 각종 향응을 받았다．

2．판결요지
경찰청 정보과 근무 경찰관의 직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외국인산 업연수생에 대한 국내 관리업체 선정업무는 직무관련성이 없다．

3．판결이유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 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 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1．29．선고 98 도 358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보과 형사인 甲이 국내외에 걸쳐 발생하 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일들 중 일정 중요도 이상의 정 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추상적 으로는 위 국내관리업체 선정도 甲의 정보수집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원래 위 국내관리업체 선정이 당시의 통상산업부（현 산업자원부）또는 그 산하 중소기업청의 소관으로서 甲이 소속된 경찰청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 이 없는 점，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甲의 출입처가 되어 본 적이 없는 점，비밀리에 행하여지는 정보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甲이 직무를 통하여 위 국내관리업체 선정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장의 국내관리업체 선정은 甲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단지 甲은 丙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乙을 丙에게 소개시 켜 주거나 위와 같은 청탁을 하였을 뿐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 적용법조 | 법률효과 |
| :---: | :---: | :---: |
| 현행법 적용시 | 「형법」제129조 수뢰죄 | 무죄 |
| 「부정청탁 및 <br> 이해충돌방지」 <br> 법률안 적용시 | 금품수수금지 <br> （법률안 제11조） | 3년 이하의 징역 <br> 또는 3천만원 이하의 <br> 벌금（법률안 제36조） |

4．분 석
형법상 수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품수수의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수뢰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본 사안의 경우 경찰청 정보과 근무 경찰관의 직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 관리업

체 선정업무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판례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법률안을 적용하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직위•직책상의 영향력을 통 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로써 금품등의 수수금지죄（제 11 조）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대상 법률안의 금품 등 수수금지죄에서 요구되는＇직무관련성＇이 형법보다 넓게 해석되어진다면 본 사안은 대상 법률안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다．56）

## （2）직무관련성이 부정된 사례 2

| 법원 <br> 판결 사건 | 뇌물과 직무관련성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  |  |
| :---: | :---: | :---: | :---: |
| 대법원 2011．5．26．선고 2009도2453 판결 |  |  |  |
| 1．사실관계 <br> 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甲이 乙 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 <br> 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 <br> 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 |  |  |  |

2．판결요지
구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인 甲이 乙 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 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안에서，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해운정책과 업무에는 대한민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관한 것만 포함되어 있을 뿐 외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또한 외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좌우할 수 있는 어떠한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라거나 또는 그가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6） 2012 년 2 월 21 일，공개토론회에서 형법의 뇌물죄로 규제되지 않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대가성 뿐 아니라 직무관련성도 불문할 필요가 있으며，형법의 직무관련성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낭기，부경복）

3．판결이유
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2007．2．5．대통령령 제19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 13 조 제 2 항 및 구 해양수산부 전결규정（2005．10． 19. 해양수산부훈령 제 371 호로 개정되어 2006．11．22．해양수산부훈령 제 422 호 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위 제422호로 개정된 것）제3조［별표］해양수산 부 전결권 지정 현황에 의하면，해운정책과의 업무는 대한민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관한 것일 뿐 외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또한 외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좌우할 수 있는 어떠한 영향력이 있다 고 할 수도 없어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 위라거나 또는 그가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적용법조 | 법률효과 |
| :---: | :---: | :---: |
| 현행법 적용시 | 「형법」제129조 수뢰죄 | 무죄 |
| 「부정청탁 및 | 금품수수금지 |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br> 인만원 이하의 벌금 <br> （돌방지」 <br> 법률안 적용시 |
| （밥률안 제36조） |  |  |

## 4．분 석

형법상 수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품수수의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수뢰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본 사안의 경우 해운정책과 업무에는 대한민 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관한 것만 포함되어 있을 뿐 외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외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은，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좌우할 수 있 는 어떠한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 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수뢰죄로 처벌하지 못하였다．그러나 법률안에 의하 면 금품 등의 수수금지죄（제 11 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앞의 사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동 법률안의＇직무관련성’이 형법상 요구되어지는 것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다면 본 사안은 위 법률 제정시 처벌될 수 있다．

## （3）대가관계가 없어 ‘부정한 청탁’이 부정된 사례 1

| 법원 <br> 판결 사건 | 제 3 자뇌물공여죄의 청탁에 대한 대가관계 ：국회의원 후원금 사건 |
| :---: | :--- |

## 대법원 2008．6．12．선고 2006 도 8568 판결

1．사실관계
주식회사 전홍의 대표이사 乙은 제 22 회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의 유 효기간을 연장시켜 옥외광고물 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2003．11．20．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렉싱턴 호텔에서 국회의원 甲과 만났다．그 자리에서乙은 甲에게＂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시에 월 10 억 정 도의 수입이 생기는데 그 중 $10 \%$ 정도는 내 지분이다，법안 통과를 부탁한 다＂라며 개정안의 통과를 청탁하고，이에 甲은 승낙하였다．그 후 문화관광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효기간을 2 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수정가결 되어 2003．12． 28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이후 2004년 2월 하 순경 乙은 甲에게 5 천만 원의 후원금이 전달하였다．
2004．3．경부터 甲은 테니스 협회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004년 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대회 개막 전날까 지도 후원금을 구하지 못하던 중，2004．4．26．ㅈ内에게 전화를 걸어 乙에게 경비조달을 부탁해보라고 말하였다．이를 승낙한 丙이 乙과 상의 끝에 후원 금 명목으로 위 협회에 5，000만 원을 공여하기로 하였다．같은 날 서울 서초 구 乙의 사무실 앞에서 乙은 丙을 통하여 甲의 비서관에게 5，000만원권 수 표 1 장을 건네주고，비서관은 이를 위 협회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여乙로 하여금 위 협회로 5,000 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 2．판결요지

제3자뇌물공여죄에서＇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 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이러 한 대가관계에 관한 양해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여야 하며，이와 같이 청탁과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대한 양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지 나중에 제 3 자와 금품 수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급하여 청탁이 부정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적어도 당사자들이 제 3 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 여 부를 청탁 및 직무집행 당시까지 전혀 예견조차 하지 못 하였음이 명백하고， 제 3 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이 다른 동기에 의하여 결정되었을 개연성도 있다면， 비록 당사자가 상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죄책을 물을 수 있 다 하더라도，그 이외의 부분까지 청탁 당시에 대가관계의 연결에 관한 인식이 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3．판결이유

乙의 甲에 대한 지원법 개정안에 관한 청탁이 있었던 것은 2003．11．20．경 이고，2003．12．28．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청탁에 의해 도

모하려는 바가 달성됨에 따라 뇌물수수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한국휠체 어테니스협회 회장으로 있던 甲이 협회 관계자들로부터 2004년도 코리아오 픈 테니스대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은 이미 위 청탁 의 목적이 달성되고 난 지 3개월 가까이 지난 2004년 3월경부터이며，그럼 에도 불구하고 甲과 위 협회관계자들이 대회 개막 전날인 2004．4．26．까지 도 마땅한 후원자를 구하지 못하여 세계에서 이미 선수단이 입국한 상태에 서 대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급박한 상황에서 乙과 오랜 기간 절친하게 지내 온 丙의 권유 및 주선으로 乙의 위 협회에 대한 5，000만 원의 기부가 이루어졌고，위 乙은 자선단체나 체육관련 단체에 매년 상당액의 기부행위 를 하여 온 점 등을 알 수 있는바，비록 위 청탁 당시에 乙과 甲 사이에 모 종의 대가에 관한 암묵적인 양해가 있었다 하더라도，개정안 발효 직후로서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이루어진 5천만 원의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청탁 당시 두 사람이 염두에 두었던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는 있겠으나，이 사 건과 같은 기부행위까지 위 법안 통과 청탁 당시부터 그 대가관계로서 염두 에 두고 청탁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乙과 재의 친분관 계나 乙의 평소 기부 성향，당시 위 협회가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위 청탁과 무관한 동기로 기부행위가 이루어졌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적용법조 | 법률효과 |
| :---: | :---: | :---: |
| 현행법 적용시 | 「형법」제130조 <br> 제3자뇌물공여죄 | 무죄 |
|  | 적용법조 | 법률효과 |
| 「부정청탁 및 <br> 이해충돌방지」 <br> 법률안 적용시 | 금품수수（법률안 제11조） | 3년 이하의 잔원 역 또는 <br> （바읠읠안 제36조） |

4．분 석
제 3 자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대한 양해가 존재 하지 않는다면 제 3 자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 다．따라서 청탁과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대한 양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 지 나중에 제3자와 금품 수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급하여 청탁이 부정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률안 제 11 조 금품등의 수수금지죄（제 11 조）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 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 직책에 따른 영향력을 통해 금품 향응 등을 수수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에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대 한 양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품을 수수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

## （4）대가관계가 없어 ‘부정한 청탁’이 부정된 사례

| 법원 <br> 판결 사건 | 제3자뇌물공여죄의 부정한청탁 ：남구청장 누각 사건 |
| :---: | :---: |

대법원 2011．4．14．선고 2010 도 12313 판결
1．사실관계
$\bigcirc \bigcirc$ 광역시 남구청장인 甲이 남구청 관내의 공사 인•허가와 관련하여 乙주 식회사로부터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5 억 원 상당의 누각을 제 3 자인 남구청에 기부채납하게 하거나 또는 그 공사시공권을 丙주식회사에 취득하 게 하였다．

2．판결요지
제 3 자뇌물제공죄의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 하여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 3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 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이는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 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한편 형법상 수뢰죄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 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제 3 자뇌물 제공죄의 경우＇부정한 청탁＇을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당사자 사 이에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대가관계에 관한 양해가 없었다면 단지 나 중에 제 3 자에 대한 금품제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직무가 소급하 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는 없다．

## 3．판결이유

한편 형법상 수뢰죄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 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나 특정 직무행

위와의 대가적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게 되는 것과는 달리，제3자뇌물제공죄의 경우＇부정한 청 탁＇을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 지 않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부정성 을 규정짓는 대가관계에 관한 양해가 없었다면 단지 나중에 제3자에 대한 금품제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직무가 소급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 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는 없다（ 위 2006 도 8568 판결， 2008 도 6950 판결 등 참조）．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더라도，乙 주식회사의 관 계자들이 甲의 요구를 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5 억 원 상당의 $\triangle \Delta \triangle$ 누각을 $\bigcirc \bigcirc$ 광역시 남구에 기부채납한 것이 협의에 따른 적법한 기부채납의 이행이 아니라 甲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제공된 것이라 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甲이 직무집행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 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적용법조 | 법률효과 |
| :---: | :---: | :---: |
| 현행법을 적용한 경우 | 「형법」 제130조 제3자 <br> 뇌물공여죄 | 무죄 |
| 「부정청탁 및 <br> 이해충돌방지」 <br> 법률안 적용시 | 금품수수금지（안 제11조） | 3년 이하의 징역 <br> 또는 3천만원 이하의 <br> 벌금（법률안 제36조） |

## 4．분 석

제 3 자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대한 양해가 존재 하지 않는다면 제 3 자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 다．따라서 청탁과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대한 양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 지 나중에 제 3 자와 금품 수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급하여 청탁이 부정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률안 제 11 조 금품등의 수수금지죄（제 11 조）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 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 직책에 따른 영향력을 통해 금품 향응 등을 수수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에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대 한 양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품을 수수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

## （5）직무상 영향력이 없어 알선이 부정된 사례 1

| $\begin{aligned} & \text { 법원 } \\ & \text { 판결 사건 } \end{aligned}$ | 알선수뢰죄의 지위이용 ：완주군청 건설과 농지계 공무원 |
| :---: | :---: |
| 대법원 1984．1．31．선고 83도 3015 판결 |  |
| 1．사실관계 |  |
| 甲은 완주군청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천골재채취허가등 사무를 취급하다가 |  |
| 1981．11．1경 같은 과 농지계로 전보된 7급 공무원인데 1981．12．하순 11：00경 乙 |  |
| 로부터 동인이 그 해 11．경 신청한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807 하천일대에 대하 |  |
| 여 하천골재채취허가예정지고시를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 |  |
| 고 공무원인 지위를 이용하여 전라북도지사의 직무에 속하는 위 예정지 고시 |  |
| 를 받도록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 200，000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항ㅆㅆㅏㅏㄴ․ |  |

2．판결요지
甲은 이 사건 금원수수 당시 군청 건설과 농지계에 근무하던 자로서 도지사 의 직무에 속하는 골재채취예정지 고시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의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도지사의 위 직무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 상 어떠한 영향을 미칠만한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볼 수도 없으니，甲을 위 도 지사의 직무사항에 관하여 알선수뢰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

3．판결이유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甲은 위 금원수수 당시 골재채취허가사무와는 관계 가 없는 완주군청 건설과 농지계에 근무하던 자로서 전라북도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골재채취허가 예정지 고시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의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전라북도지사의 위 직무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떠한 영향을 미칠만한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볼 자료도 없으니，결국 제 1 심이 전라북도지사의 위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을 알선수뢰죄의 주체로 인정하였음은 알선수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적법한 증 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 적용법조 | 법률효과 |
| :---: | :---: | :---: |
| 현행법 적용시 | 「형법」제 132조 <br> 알선수뢰죄 | 무죄 |
| 「부정청탁 및 <br> 이해충돌방지」 <br> 법률안 적용시 | 금품수수금지（안 제11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b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br> （법률안 제36조） |

## 4. 분 석

알선수뢰죄에서 다른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주체를 제한 한 것과 달리 법률안 제 11 조는 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 직책에 따른 영향력을 통해 사업자 등 또는 다른 공직자로부터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향응 접대, 편의제공 및 이권 개입 등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법률안 제 11 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본 사안의 甲도 금원수수 당시 군청 건설과 농 지계에 근무하던 자로서 공직자이므로 지위이용이나 알선여부와 관계없이 제 11 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판례는 군청 건설과 농지계에 근무하던 자는 도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골재 채취예정지 고시사무와 직•간접의 연관관계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 나 법률안 제 11 조의 직위•직책에 따른 영향력은 형법 알선수뢰죄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구성요건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대상 법률안을 적용할 경 우 처벌될 여지가 있다.

## (6) 직무상 영향력이 없어 알선이 부정된 사례 2



을에게 부탁하여 장군진급이 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계 5,000 만 원을 받았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뢰로 기소 된 사안에서，피고인이 위 금원을 수수할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발 관리실장이던 을의 진급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3．판결이유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 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적어도 다른 공무원 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 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4． 10. 21．선고 94 도 852 판결 등 참조）．
원심은，제 1 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피고인이 공소외 1 로부터 이 사건 금 원을 수수할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발관리실장이던 공소외 2 의 진 급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  | 적용법조 | 법률효과 |
| :---: | :---: | :---: |
| 현행법 적용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br> 관한븁률」 제3조 알선수뢰죄 | 무죄 |
| 「부정청탁 및 <br> 이해충돌방지」 <br> 법률안 적용시 | 금품수수금지（안 제11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b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br> （법률안 제36조） |

## 4．분 석

알선수뢰죄에서 다른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주체를 제한한 것과 달리 법률안 제 11 조는 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다．따라서 모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직책에 따른 영향력을 통해 사업자 등 또는 다른 공직자로부터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금품，향응 접대，편의제공 및 이권개입등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법률안 제

11 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본 사안도 甲은 금원수수 당시 군청 건설과 농지계에 근무하던 자로서 공직자이므로 지위이용이나 알선여부와 관계없이 제 11 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판례는 피고인인 군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발관리실장의 진급업 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고 판시하고 있다．그러나 법률안 제 11 조의 직위•직책에 따른 영향력은 형 법 알선수뢰죄의＇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구성요건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

## （7）알선의 대가관계가 없어 알선수재가 부정된 사례 1

|  | （ |
| :---: | :---: |
| 선고 2002도3600 판 |  |
| 1．사실관계 <br> 1996．6．경 학교법인 A학원의 설립자 유족인 乙이 内를 통하여 당시 대통령비 서실장인 또는 교육부장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B대학교의 임시이사체제의 철회＇등과 관련하여 甲에게 5,000 만 원을 교부하였다． |  |
| 2．판결요지 <br>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 하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3 조의 알선수재죄와 공무원이 취 급하는 사전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 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구 「변호사법， （2000．1．28．법률 제 6207 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 90 조 제 1 호 위반죄 에서，${ }^{57}$ ）위 금품 등은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알선행위자가 아닌 제 3 자가 그 대가인 금품 기 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제 3 자가 알선행위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전달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3 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의뢰를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구「변호사법」제 90 조 제 1 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  |

## 3．판결이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1996．6．경 학교법인 A학원의 설 립자 유족인 乙이 丙를 통하여 甲에게 교부하였다는 5,000 만 원은，乙이 임 시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던 위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구재단측에서 되찾기 위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청탁하여 교육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하되，그 전에 위 대통령비서실장이 乙의 어머니의 형사사건을 맡아 처리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데 대한 성공보수의 명목을 붙여 그 전액과 위 청탁의 취지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甲에게 교부된 것임 을 알 수 있고，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돈은 甲의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 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 실인 특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함과 아 울러 예비적 공소사실인 구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하여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적용법조 | 법률효과 |
| :---: | :---: | :---: |
| 현행법 적용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br> 한법률」제 3 조 알선수뢰죄 | 무죄 |
|  | 「변호사법」제111조 | 무죄 |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법률안 적용시 | 금품수수금지（안 제11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안 제 36 조） |

4．분 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3 조의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 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금품 등은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안 제 11 조의 금품수수등의 금지는 청탁 혹은 알선행위를 불문하 고 성립하며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성을 요하지 않는다．따라서 본 사안 의 경우 법률안 제 11 조의 금품수수금지로 처벌할 수 있다．문헌해석에 의한 다면 금품수수죄（법률안 제11조 제3항）는 예외적으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다면 공직자가 일체의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므로，알선 행위자가 아닌 제 3 의 공직자가 그 대가인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동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8) 알선의 대가관계가 없어 알선수재가 부정된 사례 2


2. 판결요지

-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의 대가로 제공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알선 수재죄의 성립 여부(소극)

57) 이 사건의 적용법인 구「변호사법」(1999.2.5 법률 제 5815 호로 개정), 제 90 조는 다음 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5 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 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 3 자에게 이를 공 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
2.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 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 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 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 대리 • 중재• 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3 조 소정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 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와 좋은 관계 를 유지함으로써 그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 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 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 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58)}$
－피고인에 대한 금품 제공의 경위，구체적인 청탁의 유무 및 피고인과 공 여자의 신분•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3．판결이유

원심은，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ㅈ은 1999．3．초순경 고등학교 선배인 甲 이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된 상태에서 甲의 선거참모인 丁 등의 요청 에 따라 선거자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차후에 甲이 가지고 있는 집권여당 내 에서의 위치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에서 乙과 함께甲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丙은 乙을 甲에게 소개할 의도로 5 천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乙에게 건네주었고，乙은 甲에게＂조금 준비했습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쇼핑백을 건네 준 사실，이후 甲，乙，丙，丁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甲은 乙과 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甲은 지역구를 옮겨 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이나 지역구 조직의 인수에 관한 어려움 등 주로 정치 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으며，乙은 주로 정부의 금융정책이나 종금사의 경영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뿐，乙이 甲에게 나라종합금융 경영상의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부탁을 하지는 아니한 사실，丙과 甲은 1999．3．하순경 다시 丁의 안내로 구로동에 있는 甲의 아파트를 방문하였다가， 1 시간 여를 기다린 끝에 선거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甲을 만나 시간 관계상 별다른 얘 기를 나누지 못한 채，잠시 선거에서의 승리를 격려하는 취지의 말과 함께 3 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주고 돌아간 사실을 인정한 다음，乙이 甲에게 나라종합금융 경영상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향후 나라종합금융 이 정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정부쪽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乙，丙，丁 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乙이 법정에서＇구체적인 현안 없이 다 음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과 당시 甲에게 선거자금 명목의 돈을 건네는 乙이 정부의 금융정책이나 종

금사의 경영 일반 등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에서 더 나아가，당시 정부쪽의 도움이 필요한 뚜렷한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나라종합금융의 장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경영상의 문제점 등에 관하여 甲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정부쪽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甲이 나서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丙，丁은 乙과 甲 사이 의 대화를 정확하게 청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믿기 어 려운 것으로 보아 배척하고，나아가 乙이 한 구체적인 청탁의 내용이 없는 위와 같은 부탁의 말은 당시와 같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있고，공무원이 아닌 甲에게 의 례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취지라고 보여지고，이에 대하여 甲도 선거자금을 지원해 주는 측에 대한 의례적인 답변으로＇도와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하다고 보아，위와 같은 이 사건 당시의 甲에 대한 금품 제공의 경 위，구체적인 청탁의 유무 및 甲과 丙의 신분•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乙，丙이 甲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한 것은 丙이 甲의 고교 후배로서 선 배인 甲의 선거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청탁 의 대가로서 제공하겠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甲으 로서도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라고 인식하면서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 이지 아니하며，丙，乙이 甲에게 선거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차 나라종합금 융을 운영함에 있어 직•간접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 고 위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의 대가로 제공되는 금품까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제 공되는 금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 적용법조 | 법률효과 |
| :---: | :---: | :---: |
| 현행법 적용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br> 관한법률」제3조 | 무죄 |
| 「부정청탁 및 <br> 이해충돌방지」 <br> 법률안 적용시 | 금품수수금지（안 제11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br>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br> （법률안 제36조） |

4．분 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3 조의 알선수뢰죄는 금품 등 수수의 명목 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 함으로써 그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도움을 받

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 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법률안 제 11 조의 금품수수등의 금지는 청탁 혹은 알선행위에 대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불문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금품을 교부하고, 금품 등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구성요건해당 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있다.

## (9) 향응 및 접대받음으로써 징계된 사례


58)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2004. 11. 25. 선고 $2004 ㄷ ㅗ 6647$ 판결 등 참조.
59)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지방 건설공사 계약제도 운용실태 (특정감사)」, (2012.4),

## 3．징계사유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사의 계약업체 등에게 설계 변경시 공사비를 부풀 려 주거나 각종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총 2 회에 걸쳐 계 600 만원을 받 은 사실이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 5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 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 고，「신안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 14 조의 규정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 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위 사람의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 5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 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  | 적용법조 | 법률효과 |
| :---: | :---: | :---: |
| 현행법 적용시 | 「지방공무원법」 제72조 | 징계 |
| 「부정청탁 및 <br> 이해충돌방지법률안」 <br> 적용시 | 금품수수금지（안 제11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br>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br> （법률안 제36조） |

4．분 석
본 사안은 현재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법 안에 의하면 금품수수죄（법률안 제 11조）로 처벌된다．

## （10）외부강의 미신고 사례

| 국민권익위원회 <br> 심의 $\cdot$ 의결 | 공무원의 외부강의 미신고 행위 |  |
| :--- | :---: | :---: |
| 국민권익위원회 2007．6．4의결，분과2007－57호 |  |  |
| 1．사실관계 <br> 피신고자들은 중앙부처 $○ ○$ 부 공무원들인 바，－연수원 등에 출강하여 강의 <br> 한 후 그 대가로 556,800 원， 504,300 원， 654,400 원 등의 강의료를 각각 지급 <br> 받고도 소속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1 회 <br> 50 만 원을 초과하는 강의료를 지급 받고도 위 외부강의를 소속 기관장에게 <br>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모두 인정함 |  |  |

감사원，p．32．

2．판결요지
소속기관장에게 통보－＜조사결과 처리중＞
3．판결이유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속기관장에게 행동강령 위반사실 통보 필요．

|  | 적용법조 | 법률효과 |
| :---: | :---: | :---: |
| 현행법 적용시 | 「공무원행동강령」제15조， <br> 제20조 | 징계 등 |
| 「부정청탁 및 <br> 이해충돌방지」 <br> 법률안 적용시 | 사례금 수수（법률안 <br> 제12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br> （법률안 제38조 제3항 <br> 제2호） |

## 4．분 석

외부강의 등을 매개로 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고액 강의료 등의 수수는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법률안 제 12 조는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상의 사례금수수 를 제한하고，위반행위에 대한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통한 제재를 마련하였 다．또한 법률안 제12조 제2항에서는 외부강의등의 요청내역을 대통령령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위반시 징계처분을 받는다． 따라서 본 사안은 법률안에 따르면 신고불이행（법률안 제12조 제1항）과 초과 사 례금 수수（법률안 제 12 조 제 2 항）로 인하여 징계 및 징계부과금처분（법률안 제 33 조 제 2 호）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법률안 제 38 조 제 3 항 제 2 호）이 가능하다．

## 제 3 절 이해충돌

## （1）공용재산의 사적이용사례

| 국민권익위 신고 <br> 행동강령 위반사례 | 예산 •공용재산 등의 사적사용 금지 |  |  |
| :--- | :---: | :---: | :---: | :---: |
| 사 <br> 례 | 행위유형 | 현행법 | 법률안 <br> 적용시 |
| 1 | 모 국립대학교 <br> 학위벙정실 을 직 줠들얼슨 항들요가 게 관리하는 |  |  |


|  | 예산 - 공용재산 등의 사적사용 금지 |  |  |
| :---: | :---: | :---: | :---: |
| 사 | 행위유형 | 현행법 | $\begin{aligned} & \text { 법률안 } \\ & \text { 적용시 } \end{aligned}$ |
|  | 여해 주면서, 수익금을 별도의 예산편입 조치도 없이 임의로 관리하여 수당 명목으로 총 2,489만 원을 나눠 갖거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 |  |  |
| 2 | 모 고등학교 교사 2 명은 학생 22 명과 함께 3 박 4 일간 중국의 상하이에 소재한 자매결연 학교를 방 문하면서, 단체여행 시 해주는 여행사 할인규정에 따라 인솔자의 항공료를 면제받았음에도 자신들의 항공료를 학교 예산에서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여 출장비를 지급받은 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 |  | 예산 - 공용 <br> 재산등 의 <br> 사적사용 |
| 3 | 00 시 교육청 소속 국 공립 교장 14 명은 업무추진 비를 사용하여 소속 직원이 아닌 교육청 직원, 타 학교장 교감 등 개인 경조사비 및 지인의 회갑연 축하비등으로 총 802 회 3천 6백여만원을 지출 | 공무원 <br> 행동 | (법률안 <br> 제20조, <br> 제21조) |
| 4 | 모 공직유관단체 A 팀장은 간부들과의 단합 모임 명목으로 골프장에서 휴일 골프회동을 하고, 골프 장 사용대금 91 만원을 법인 카드로 결제 <br> B 팀장은 甲룸싸롱 등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의 유 흥비로 120 만원과 177 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 <br> C 차장은 업무상 알게 된 상대사 간부진들과 공휴일 저 녁에 乙룸싸롱 유흥비로 220 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 | 강령 <br> 위반 | 1년 <br>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5 | 00 시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들은 업무특성상 출장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산하분소 등 인근지역에 출장한 것으로 허위 신청 결재 및 동행자수 부풀 리기 등의 방법으로 소속직원 전원이 출장비 명목 으로 매월 10여만원을 부당 수령 |  | 제37조) |
| 6 | 00 도교육청 A 국장은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했음에 도, 개인소유 차량으로 출장 간 것처럼 서류를 꾸며 32 회에 걸쳐 출장비 차액 38 만원을 부당하게 수령 |  |  |


|  | 예산 - 공용재산 등의 사적사용 금지 |  |  |
| :---: | :---: | :---: | :---: |
| 사 | 행위유형 | 현행법 | $\begin{aligned} & \text { 법률안 } \\ & \text { 적용시 } \end{aligned}$ |
| 7 | 모 대학교 행정실 직원들은 고급 음식점에서 회식 을 하고, 마치 회의 후 전문가등에게 식사를 제공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비용을 공금으로 집행 | 공무 <br> 원 <br> 행동 <br> 강령 <br> 위반 | 예산 •공용 <br> 재산등 의 <br> 사적사용 <br> 금지 <br> (법률안 <br> 제 20 조, <br> 제21조) <br> 1년 <br> 이하의 <br> 징역 또는 <br> 1천만원 <br> 이하의 <br> 벌금 <br> (법률안 <br> 제37조) |
| 8 | 모 중학교 A 교장은 관내 동주민센터장 등 지역유 지 10 여명과 함께 친목단체를 만들어 회원 경조사 에 50 만원, 퇴직 시 금 1 냥 등을 지급한다는 회칙을 정하고 월 회비 10 만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등 총 270 여만원을 지출 |  |  |
| 9 | 00 군교육청 A 교육장과 초등학교 B 교장은 같이 근무 한 적이 있는 교장 등 교원 30 여명에게 총 300 만원 의 전별금을 교육청 및 학교 업무추진비에서 지출 |  |  |
| 10 | 모 공단 예산팀 A 직원은 연가일수 산정시 공단 직원 근무 경력만을 산정해야 하는 공단보수규정 에도 불구하고 그간 기존 모든 공직 경력을 인정 해온 사실을 알고 이를 소속팀장 B 와 상의했으나, B 팀장은 기존대로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A 직원은 직원 연가일수를 과다 산정하여 3 백여만 원을 부당지급 |  |  |
| 11 | 모 지자체 A 소방본부장은 금57만원 상당의 예산 을 지인의 경조사 및 접대비로 사용 후, 카드 불 법 할인 후 현금 52 만원을 회식비용에 사용 |  |  |
| 12 | 00 교육청 A 사무관은 대학 및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직무와 관련해 연간 50 여회에 걸쳐 외부강의를 하 고 강의료 1,300 만원을 지급받고도, 소속기관으로 부터 별도의 출장여비를 지급받아 중복수령 |  |  |
| 13 | 모 기초자치단체 A 주무관은 하절기 방역작업 후 남은 작업용 휘발유를 방역요원에게 가져오게 한 후 자신의 차량에 주유함 |  |  |


|  | 예산 - 공용재산 등의 사적사용 금지 |  |  |
| :---: | :---: | :---: | :---: |
| 사 | 행위유형 | 현행법 | 법률안 <br> 적용시 |
| 14 | 모 기초자치단체 A 시장은 자신의 부인에게 개인 적 봉사활동이나 교회 방문등에 업무용 차량과 운 전기사를 지원하였고, 이후 시장 부인은 수시로 시청차량 운영담당자에게 차량 배차를 요청하고 동 차량으로 교회방문, 사회봉사 활동 및 개인용 무 등에 사용함. | 공무원 <br> 행동 <br> 강령 <br> 위반 | 예산 공용 <br> 재산등 의 <br> 사적사용 <br> 금지 <br> (법률안 <br> 제 20 조, <br> 제21조) |
| 15 | 모 공직유관단체 현장감독소장 A 차장은 자기차량 을 현장사무실에 주차 후, 공사감리용 업무차량을 출퇴근 등 개인용무로 사용하고 이에 따른 연료비 를 예산으로 처리함. |  |  |
| 16 | 모 기초자치단체 A 국장은 관내 직능단체 협의회 등 직무관련자들에게 자녀 결혼식을 1 차로 통지한 후, 2 착로 소속 직원들을 시켜 직무관련자 등 570 여명에게 기관 시스템으로 소속기관명과 직위가 기재된 SMS 를 발송함. |  |  |
| 17 | 모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 는 피감독기관 직원과 함께 미국으로 공무출장 중 현지에서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으로 구입 사용한 LCD TV와 DVD $\operatorname{Player}($ 미화 1,450$)$ 를 행사 종료 후 잣니의 처제와 미화 50 로 매매한다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함. |  |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8 | 모 고등학교 A 교장으로부터 학습용 교구로 산악 용 GPS를 구매토록 지시를 받은 부장교사 B 는 심 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허위 서류를 꾸며 60 만원 상당을 구매하였고, 이후 A 는 이를 자택으로 가져 가 등산 등 개인용도에 사용함. |  | (법률안 <br> 제37조) |
| 19 | 모 중앙부처 A 주무관은 소속기관의 관사를 관리 하면서, 건물노후 등을 이유로 용도 폐기된 관사 를 이용하여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일 부를 주변 공장 근로자 등에게 월임대료를 받고 임대운영함. |  |  |


| 국민권익위 신고 행동강령 위반사례 |  | 예산 - 공용재산 등의 사적사용 금지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사 } \\ & \text { 례 } \end{aligned}$ |  | 행위유형 | 현행법 | 법률안 <br> 적용시 |
| 20 | 모 기초자치단 동원해 기관 물을 경작하면 지급하고 업무 및 공용수목 | 과장 등은 <br> 지 일부에 부들에게 량을 사용 <br> 비료 구입 |  |  |

## (2) 예산전용사례

| 2002도5130 | 예산전용 : 강원도청 공무원 출장비전용 사건 |
| :---: | :---: |
| 대법원 2002. 11. 26. 2002 도5130 판결 |  |
| 1. 사실관계 <br> 강원도 도로사업소 소속 강원도청 공무원 과적계장 甲은 직원들과 강원 양구 및 화천에 과적근원지 실태조사 출장을 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을 간 것처럼 위 사업소 관리계에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동 관리계로부터 출장 비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중 이를 사무실 비품 구입비, 직원 회식비 등 사 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  |

## 2. 판결요지

[1]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라면,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 체가 위법한 목적이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 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 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 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 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 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 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야 하는 것이고，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출장비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이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피고인이 출장비를 지정용도 이외로 임의 소비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3．판결이유

피고인은 출장비로 구입하였다는 사무실 비품의 사진，출장비의 지출 용도와 관련된 직원들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반면，원심이 인용한 제 1 심의 채 용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출장비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 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단지 피고인이 출장비를 지정용도 이외로 임의 소비하 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 고，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 따라 출장비 예산에 관한 관련규정 등을 확인하 고，피고인이 주장하는 소비처의 사실 여부 등을 따지는 등의 과정을 거쳐，피 고인이 당해 금원을 본래 허용될 수 있는 지정외 필요경비에 유용한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고 부정한 영득의 의사로 또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 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서 그 횡령액수에 따른 죄책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점을 간과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거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 적용법조 | 법률효과 |
| :---: | :---: | :---: |
| 현행법 적용시 | 「형법」 제355조（횡령죄） | 무죄 |
| 「부정청탁 및 <br> 이해충돌방지」 <br> 법률안 적용시 | 예산 등의 부정사용 금지 <br> （법률안 제20조） | 1 년 이하의 징역 <br>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br> 벌금（법률안 제35조） |

## 4．분 석

형법의 횡령죄（제355조 제1항）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법률안의 예산 등의 부정사용 금지죄（법률안 제 20 조）의 경우 불법영 득의사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법령 및 예산에 정해진 바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처 벌된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출장비 전용으로 인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법률안 제 20 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제 6 장 비교법 분석

## 제 1 절 조선시대 법제

조선시대에도 관리들의 부패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었 는데，이를 둘러싸고 관료들의 부정을 막음으로써 국가의 기강을 세 우려는 통치자와 의례와 관행，현실적 한계를 들어 이에 반대하는 관 료들 간의 갈등 역시 존재하였다．이러한 갈등은 당시 법적용과 제재 의 엄격함의 정도와 적용대상에서의 범위에 대한 논쟁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입법을 둘러싼 논쟁의 과정은 지금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발생될 수 있는 입법상 논란에도 시사점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1．부정청탁금지

## （1）분경금지（奔競禁止）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후집（後集）」에서는 분경（分境）을＇분추 경리（奔趨競利）＇로 정의하고 있었다．그 의미는 바쁘게 다니며 이익을 다투는 것을 뜻하는데，구체적으로는 벼슬을 얻기 위하여 권세 있는 집을 분주하게 찾아다니며 인사청탁을 하는 것을 가리켰으며，조선시 대에는 제도적으로 이를 금하는 법을 가지고 있었다．${ }^{60)}$ 이는 앞의 사 례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오늘날의 청탁행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이 인사청탁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오늘날에 있 어서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2]
## （2）「경국대전（經國大典）」상의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

조선 초기에는 행정（行政）과 군정（軍丁）의 혼란을 수습하고 나아가 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분경（奔競）을 금지하였다． 1470년（成宗1）에 분경（奔競）의 금지 대상이 확정되었고，61）「경국대전 （經國大典）」에 법제화함으로써 분경（分境）행위를 엄하게 처벌하였으며，「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규정된 분경（分境）관련 조항은 이후「속대전 （續大典）」에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상 규정된 분경금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분경자（奔競者）는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관원（官員），당상관（堂上官）${ }^{62}$ ）인 제장（諸將）${ }^{633}$ ，이방승지（吏房承旨）와 병방승지（兵房承旨）${ }^{64)}$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관원（官員），판결사（判決事）${ }^{655}$ ）의 집에 동성（同姓） 8 촌，이성 （異姓）6촌，처친（妻親）6촌，혼인가（婚姻家），이웃사람이 아니면서 출입하는 자＞장（杖） $100 \cdot$ 류（流） 3,000 리（里）에 처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금제（禁制）조에서는 분경（奔競）을 한 자에 대해서 장（杖） $100 \cdot$ 류（流）3，000리（里）의 엄형에 처하도록 하고

61）「성종실록（成宗實錄）」2권，1년（1470）1월 16일．
62）조선시대 조의（朝議）를 행할 때 당상（當相）에 있는 교의（交椅）에 앉을 수 있는 관계 （官階）또는 그 관원（官員）을 가리키는 것으로 동반（東班）은 정3품（正3品）의 통정대부（通政大夫）이상，서반（西班）은 정3품（正3品）의 절충장군（折衝將軍）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63）여기서의 제장（諸將）이란 오위（五衛）의 당상관인 위장（衛將）을 말한다．위장（衛將）은「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경관직（京官職）에서는 종2품（從2品）으로서 타관（他官）이 겸직했으나「속대전（續大典）」같은 조（條）에서는 정3품（正3品）으로 낮추었다．
64）이방승지（吏房承旨）와 병방승지（兵房承旨）는 도승지（都承旨）와 좌부승지（左副承旨） 를 말한다．
65）판결사（判決事）는 장예원（掌隷院）의 장관（長官）으로서 정3품（正3品）당상관（堂上官）이며 랑료（郎僚）인 사의（司議）（정5품（正5品）），사평（司評）（정6품（正6品））과 함께 노 비송사（婢訟事）에 대한 판결（判決）을 맡았고 오결（誤決）의 경우에는 모두 처벌당하 였다．장예원은 태조 원년 7월에 설치된 형조도관（刑曹都官）이 개칭된 것으로서，도 관（都官）이 세조 11년이후 변정원（辨定院）으로 되었다가 다시 세조 13년 정월 장예 원（掌隷院）으로 개칭되었다．

있었다．장（杖） $100 \cdot$ 류（流） 3,000 리（里）는「대명률（大明律）」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형（五刑）중 사형（死刑）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임을 생각할 때， 당시의 분경행위의 해악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종（成宗）이 본래 분경（奔競）을 금했던 것은 요행을 바라는 무리들이 권문（權門）에 붙좇아 간청（干淸）이 있음을 금지하려고 한 것 이었는데，재상（宰相）의 집에 대한 접근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므로，비 록 친척이나 료우（僚友）일지라도 서로 왕래하지 못하고 경조（慶弗）의 영 송（迎送）하는 예절까지도 행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후에 리조（吏曹）• 병조（兵曹）의 당상관（堂上官）이나，리방（吏房）•병방（兵房）의 승지（承旨） 나，대성（臺省）• 도총부（都摠府）의 당상관（堂上官）이나，위장（衛將）과 판 결사（判決事）이외에는 분경금지（奔競禁止）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으로써 분경금지（奔競禁止）를 완화하였다．

## （3）「속대전（續大典）」의 분경금지（奔競禁止）의 실질화

분경금지（奔競禁止）의 대상이 확정되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법 제화되었지만，관인들이 표면에 나서지 않고 여전히 뒤에서 몰래 청 탁하고 행적을 감추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은 이처럼 유명무실해진 법제로 남아 있다가 이후「수교（受敎）」에서 그 범위를 축소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이러 한 완화된 내용이 「속대전（續大典）」에 법제화되었는데，이는 분경금지 （奔競禁止）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속대전（續大典）」에서는「경국대전（經國大典）」에 비해 이조（吏曹）와 병 조（兵曹）의 당상관과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양사（兩司）관원 （官員）으로 분경（奔競）이 금지되는 대상 관료를 축소하고，분경（奔競）이 금지되는 시기도 도목정（都目政）이 정해진 이후와 도정（都政）이 지난 후 서경（署經）이전에 제한하여 일정한 시기에만 분경（分境）을 금지하고 있 었다．이조（吏曹）와 병조（兵曹）는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의 권한을，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은 일정 품계 이하 의 관료의 임명에 대한 서경（署經）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므로，이 러한 조치는 인사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료와 인사권이 행사되는 민감한 시기에 한정하여 분경을 금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분경（奔競）이 금지되는 대상 관료의 집에 예외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친인척 등의 범위에 있어「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동성（同姓）8촌，이성（異姓）6촌，처친（妻親）6촌，혼인가（婚姻家），이웃사람으 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속대전（續大典）」에서는 동성（同姓）6촌과 이 성（異姓）4촌 및 혼가（婚家）로 축소하여 규정함으로써 분경 그 자체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다만，「속대전（續大典）」에서는 분경（分境）의 처벌 형량에 대해서는 수정을 가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엄격한 형벌로 다스렸다．

## （4）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의 시사점

조선시대 분경（分境）을 엄하게 금한 것은 관료들이 서로 사당（私黨） 을 만들어 인사권이 문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조선의 통 치는 조직적인 관료체계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분경은 그 근간을 잠식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었다．그러한 입법 취지는 분경에 대 한 처벌이 사형 다음의 중한 형벌이라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면에서는 계속하여 논란이 되었는데，백료（百僚）•서사（庶士）를 가리지 않고 사알（私謁）하는 것을 금하고 공회처（公會處）에서 만나 진고（陳告）도록 한 정종（定宗）의 「하교（下敎）」는 이상 적인 것이었지만，일상적인 방문과 청탁을 위한 방문을 모두 가리지 않고 금지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이후의 분경（奔競）과 관련한 논의는 분경금지（奔競禁止）가 실질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경（奔競）이 금지되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 정해 가는 과정이었다．

조선시대의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은 인사청탁 자체만으로 처벌을 가한다는 점에서 관료의 장오（贓汚）나 독직（瀆職）에 관한 다른 범죄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었다．조선시대 뇌물 관련 범죄（왕법장（枉法贓），불 왕법장（不枉法贓））의 경우 실제 재물의 수수가 있어야 관리를 처벌하 고，관사출입인죄（官司出入人罪）와 같은 재판 관련 범죄의 경우 판결 에 있어 실제 형량의 차이가 있어야 관리를 처벌하였는데，분경금지 법（奔競禁止法）은 인사청탁에 따른 재물의 수수나 이후의 부정한 처리 의 여부에 관계없이 인사청탁 하나만으로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위 험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인사청탁이 있었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 문에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은 인사청탁의 구체적인 입증 없이도 집 안에 출입하는 자체만으로 처벌을 가함으로써 사실상 인사청탁을 의 제 내지 추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이러할 경우 인사청탁 없는 단순한 의례나 경조（慶分）를 위한 방문도 함께 처벌될 수 있는 문제점 이 있었으므로，일정 범위의 친족에게는 분경（奔競）이 금지되는 대상 관료의 집에 예외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경우를 허용함으로써 처벌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은 분경（分境）이 금지되 는 대상 관료의 범위를 한정하였다．즉，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당 상관과 양사（兩司）의 관원 등에 제한함으로써 인사권을 직접적으로 행 사하는 관원과의 사적인 방문을 금하도록 하였고，특히，「속대전（續大典）」 에서는 분경（奔競）이 금지되는 시기를 도목（都目）과 서경（署經）과 같이 인사권이 행사되는 시기에 한정함으로써 인사청탁의 입증 없이 집안의 방문 자체를 처벌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함과 동시에 분경（奔競）의 금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2．금품수수금지

## （1）조선시대 관련 법

「당률소의（唐律疏議）」나「대명률（大明律）」과 같은 조선시대에 적용된 형법전을 살펴보면 관리의 뇌물 수수는 물론 직무와 관련 없는 재물의 수수도 일정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문을 두고 있었으며，이는 법률안의 제 11 조 금품수수금지 관련 규정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2）「당률소의（唐律疏議）」

뇌물죄에 대한 처벌이 전통 형법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은「당률소의（唐律疏議）」66）부터였다．「당률소의（唐律疏議）」는 정당한 권원 없이 수수된 재물을 장（臓）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하고 있었다．여기에 는 관리의 장오（臓汚）나 독직（瀆職）과 관련된 범죄도 포함되는데，이러 한 죄를 왕법（枉法）과 불왕법（不枉法），수소감림（受所監臨）으로 크게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었고，강도（强盜），절도（䑳盜），좌장（坐臓）과 함께 육장（六臓）으로 규정하고 있었다．＇왕법（枉法）＇은 관리가 재물을 받고 법을 왜곡한 경우이고，67）＇불왕법（不枉法）＇은 재물은 받았지만，법을 왜곡하지는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68）＇수소감림（受所監臨）＇은 관리 가 자신의 관할지역에서 공적（公的）인 일로 인하지 않고 재물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69）

66）「당률소의（唐律疏議）」라고 일컬어지는「당률（唐律）」은 전대의 율（律）을 집대성한 것으로 명율（明律）과 청율（淸律）의 근간을 이루었다．
67）「당률소의（唐律疏議）」 第138條 직제（職制）【감주수재왕법（監主受財枉法）】［소 （疏）1］수유사인재이위곡법처단자（受有事人財而爲曲法處斷者）．
68）「당률소의（唐律疏議）」 第138條 직제（職制）『감주수재왕법（監主受財枉法）】［소 （疏）2］수수유사인재（雖受有事人財）판단부위곡법（判斷不爲曲法）．
69）수소감림의 경우，재물의 수수 이외에 물건의 임대•매매，노동 및 향응의 제공 등의 이익제공행위를 관리의 요구 유무，강제 유무로 나누어서 형벌에 차등을 두었고，

각각의 경우에 있어 형량의 차이를 두고 있었는데，왕법（枉法），불왕 법（不枉法），수소감림（受所監臨）의 순으로 형량이 무거웠다．구체적인 형량은 수수된 재물의 액수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왕법（枉法）의 경우 는 장（杖） 100 에서 교형（絞刑）까지，불왕법（不枉法）의 경우는 장（杖） 90 에서 가역류（加役流）까지，70）수소감림（受所監臨）의 경우는 태（答） 40 에 서 류（流） 2,000 리까지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11)}$
［표 43］「당률소의（唐律疏議）」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재물 수수의 처벌규정

|  | 구성요건 |  | 조 문 | 법률효과 |
| :---: | :---: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유형 |  |  |
| 수소감림 재물（受所監臨財物） | 감림관 | 관할지역에서 재물을 받은 경우 | 제 140 조 <br> 율문1 | 答40～流2천 |
| 걸취감림 <br> 재물（乞取 <br> 監臨財物） |  | 관할지역에서 재물을 요구하여 받은 경우 | 제 140 조 <br> 律文2 | $\begin{gathered} \text { 加一等: } \\ \text { 答50~流 } 2 \text { 천 } 5 \text { 백 } \end{gathered}$ |
| 강취감림 재물（强取監臨財物） |  | 관할지역에서 재물을 강제로 받은 경우 | 제 140 조 <br> 律文2 | 準枉法：杖100～絞刑 |
| 대소감림 재물（貸所監臨財物） | 감림관 | 관할지역에서 재물을 빌린 후 100 일내에 반환한 경우 | 제142조 <br> 律文 1 | $\begin{aligned} & \text { 坐䁍論: } \\ & \text { 管20~徒3년 } \end{aligned}$ |

관리 본인 뿐 아니라，가족이나 하인 등을 통해서 재물을 수수한 경우도 처벌하였 고，관할지역을 떠난 이후에 재물을 수수한 경우도 처벌하였다．「당률소의（唐律琉
官）부인공사이수감림내재물자（不因公事而受監臨內財物者）．
70）「당률소의（唐律疏識）」第138條 직제（職制）『감주수재왕법（監主受財杜法）］［율문 （律文）2］불왕법자（不枉法者）일척장구십（一尺杖九十）이필가일등（二疋加一等）삼십 필가역류（三十㱜加役流）。
71）「당률소의（唐律疏議）」 第138條 직제（職制）『감주수재왕법（監主受財枉法）】［율문 （律文）1］제감림주사수재이왕법자（諸監臨主司受財而枉法者）일척장일백（一尺杖一百） 일필가일등（一㱜加一等）십오필교（十五疋絞）。

|  | 구성요건 |  | 조 문 | 법률효과 |
| :---: | :---: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유형 |  |  |
|  |  | 관할지역에서 재물을 빌린 후 100 일내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 | 제142조 <br> 律文1 | 以受所監臨財物： 答40~流2천 |
|  |  | 관할지역에서 재물을 <br> 강제로 빌린 후 <br> 100 일내에 반환한 경우 | 제 142 조 <br> 律文1 | $\begin{gathered} \text { 加二等: } \\ \text { 答 } 40 \text { 流 } 2 \text { 천 } 5 \text { 백 } \end{gathered}$ |
|  |  | 관할지역에서 재물을 강제로 빌린 후 100 일내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 | 제 142 조 <br> 律文1 | $\begin{gathered} \text { 加二等: } \\ \text { 杖60~流3천 } \end{gathered}$ |
|  |  | 관할지역에서 매매하여 이익을 남긴 경우 | 제 142 조 <br> 律文2 | 以乞取監臨財物：答50～流2천5 백 |
|  |  | 관할지역에서 강제로 매매하여 이익을 남긴 경우 | 제 142 조 <br> 律文2 | 準枉法：杖100～絞刑 |
| 역사소감림 （役使所監臨） | 감림관 | 관할지역에서 관할지역민을 사역하거나 가축•수레 등을 빌려 쓴 경우 | 제 143 조 <br> 律文1 | 以受所監臨財物： 答40~流2천 |
| 감림수공궤 |  | 관할지역에서 향응을 접대받은 경우 | 제144조 | 坐臓論：答 20 ～徒 3 년 |
|  |  | 관할지역에서 향응을 강제로 접대받은 경우 | 제144조 | 强取監臨財物： <br> 杖100～絞刑 |
| 솔렴감림 재물（率斂監臨財物） | 감림관 | 관할지역에서（부하를） 거느리고（재물을）거두어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 | 제145조 | 答40～流2천 |

「당률소의（唐律疏議）」의 경우 크게 관할지역에서 재물을 단순히 수 수한＇수소감림재물（受所監臨財物）＇과 그를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인 ＇걸취감임재물（乞取監臨財物）＇，강제로 수수한 경우인＇강취감림재물 （强取監臨財物）＇로 구분하였다．그리고 재물의 수수 이외에 물건의 임

대•매매，노동의 사용이나 향응의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행위태양을 관리의 요구 유무，강제 유무로 나누어서 각각 단순 수수，걸취（乞取）， 강취（强取）등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었다．

## （3）「대명률（大明律）」

「대명률（大明律）」 ${ }^{72)}$ 또한 「당률소의（唐律疏議）」와 마찬가지로 6장（六贜）을 두고 있었는데，왕법（枉法），불왕법（不枉法），감수도（監守盜），상 인도（常人盜），절도（竊盜），좌장（坐贓）이 이에 해당하였으므로，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당률소의（唐律疏議）」와는 다소 차이가 존재했다．

이 중 관리의 장오（贓汚）나 독직（瀆職）에 관한 범죄로는 왕법（枉法）， 불왕법（不枉法），감수도（監守盜），좌장（坐贓）이 있었으며，73）「당률소의 （唐律疏議）」에서는 없던 감수도（監守盜），상인도（常人盜）가 포함되었다． 감수도（監守盜）와 상인도（常人盜）는 지금의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다만，지금의 업무상 횡령죄가 공•사무를 구별 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공금유용 등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대명 률（大明律）」의 경우，상인도（常人盜）와 감수도（監守盜）를 구별하고 감 수도（監守盜）를 신분범으로 구성하여 그 주체는 관리였으며 이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관리가 자신의 관할지역 관청창고에서 재물을 취하는 것을 특히 막으려 하였다．또한，「당률소의（唐律疏議）」에서는 일반 재 산범이었던 좌장（坐贓）의 경우도 주체를 관리（官吏人等）로 하여 독직 （瀆職）에 관한 죄로 보고 있었다．

72）「대명률（大明律）」은「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실제 조선에서 형 사사건에 일반적으로 적용된 형법전이었다．이미 태조의 즉위교서에서 「대명률（大明律）」의 적용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경국대전（經國大典）」이후 「속대전（續大典）」 에서는「경국대전（經國大典）」및「속대전（續大典）」의 형벌조문과 「대명률（大明律）」 의 적용순서에 대한 규정이 정해진 바 있었다．
73）「대명률（大明律）」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은 「당률소의（唐律疏議）」하에서는 재 산범죄로 다스리던 좌장（坐臓）역시 관리의 장오（臓汚）나 독직（瀆職）에 관한 범죄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었다는 점이다．
［표 44］「대명률（大明律）」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재물 수수의 처벌규정

|  | 구성요건 |  | 조 문 | 법률효과 |
| :---: | :---: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유형 |  |  |
| 재관구색차 <br> 대인재물 <br> （在官求索借貸人財物） | 감림관 | 관할지역에서 재물을 요구하거나 빌린 경우 | 제371조 <br> 律文1 | 準不枉法： <br> 杖60～流3천 |
|  |  | 관할지역에서 재물을 강제로 요구하거나 빌린 경우 | 제371조 <br> 律文1 | 準枉法：杖70～絞刑 |
|  |  | 관할지역에서 매매하여 이익을 남긴 경우 | 제371조 <br> 律文2 | 準不枉法： <br> 杖60～流3천 |
|  |  | 관할지역에서 강제로 매매하여 이익을 남긴 경우 | 제371조 <br> 律文2 | 準枉法： <br> 杖7人絞刑 |
|  |  | 관할지역에서 매매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제371조 <br> 律文3 | 坐䁍論： <br> 答20～徒3년 |
|  |  | 관할지역에서 의복•장식물 등을 빌리고 1달내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 | 제371조 <br> 律文3 | 坐臓論：答20～徒3년 |
|  |  | 관할지역에서 가축•수레 등을 빌려 쓴 경우 | 제371조 <br> 律文4 | 坐臓論： 答20~徒3년 |
|  |  | 관할지역민이 보내온 토산물과 예물을 받은 경우 | 제 371 조 <br> 律文5 | 答40 |

（4）시사점
「당률소의（唐律疏議）」 또는「대명률（大明律）」에 따르면，지금의 형법 과 같이 금품수수에 있어 직무상의 대가관계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 없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률제정의 배경이 되고 있 는 형법상의 흠결은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당률소의（唐律疏議）」나「대명률（大明律）」은 장（贓）이라는 개념 하에 정당한 권원없는 부당한 이득에 대하여 가벌의 필요가 있는 재산 죄과 뇌물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정당하지 않은 금품수수를 처 벌할 근거를 두고 폭넓게 두고 있었으나，관직에 있는 자의 죄와 일반 인의 죄를 구성요건과 형벌정도에 의해 차이를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형법상 공무원에 관한 범죄체계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같은 「당률소의」와 「대명률」의 망라적인 구성요건은 현재 문제 가 되고 있는 관행적인 공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한 금품 수수나 향응 접대는 등까지도 모두 포섭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며，이를 볼 때 당시의 처벌행위유형이 오히려 현재보다 더욱 다양하고 포괄적이었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왕법（枉法）과 불왕법（不枉法）의 처벌에 차이를 둔 것은，부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위법성의 정도에 따른 차등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제 2 절 국제협약

국제사회에서는 1990년대 후반 들어 공직자에 의한 부패행위를 자 유로운 국제경제행위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위험요 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중대 범죄로 인정하고，이를 국제협약의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74)}$

부패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는 주로 OECD 의 공정경쟁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는 것과 UN 과 각 지역국제기구 등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내

[^3]공직부패에 대한 대응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75）
이들 국제법적 논의 가운데 부정청탁만을 특히 따로 논하는 참조할 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으므로，본 절에서는 부정청탁과 결부하여 금 품수수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기로 하되，공무원의 행위규범과 관 련하여 이해충돌방지와 관계된 부분에 한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 1．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1）${ }^{「} \mathrm{UN}$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 ${ }^{76)}$

## 1）협약의 개요

${ }^{「} \mathrm{UN}$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은 원래 초국가적인 조직범죄의 억제목 적으로 체결되었으나 공무원 부패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이 협약은 2000．11．15에 UN총회 결의로 채택되고，2003．9．29에 발효하였으며， 2012.6 기준 167 개국이 가입했으나，한국은 2000.12 .13 협약 서명이후 법 개정，입법 등에 대한 부담으로 그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77)}$

## 2）주요 내용

「UN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은＇부패행위＇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 는데，공무행사에 있어 일정한 영향력을 가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 정의는 다음 표와 같다．

[^4][표 45] 「유엔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

|  | 구성요건 |  | 법률효과 |
| :---: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유형 |  |
| 부패행위 | 공무원78) | 공무의 행사에 있어서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 해서, 공무원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이 나 법인(entity)을 위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공무원에 게 약속, 제안 혹은 제공79) <br> 공무의 행사에 있어서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 해서, 공무원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이 나 법인(entity)을 위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공무원이 부당한 이득을 요청하거나 수령81) | 외국의 공 무원 또는 국 제 기 구 직원이 위 범죄를 행 했을 때 그 들도 처벌 토록 하고 있으며, 공 범도 처벌80) |
| 국가의 <br> 부패방지 <br> 의무82) | 당사국 | 공무원의 청렴성을 향상시키고 부패행위를 방지, 파 악, 처벌하기 위해서 입법적, 행정적 기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 |  |
|  |  |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 파악, 처벌함에 있어서, 충분한 독립성 확보와 같이 관련 당국의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 |  |

78) 협약은 부패행위 관련해서 "공무원"을 "당사국의 국내법에서 정의되고 그리고 형법에서 적용되는 것과 같이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혹은 사람을 의미" 한다고 명시하였다. (동 협약 제8조 4항.)
79) The promise, offering or giving to a public official, directly or indirectly, of an undue advantage, for the official himself or herself or another person or entity, in order that the official act or refrain from acting in the exercise of his or her official duties
80) 동 협약 제8조 2항 및 3항.
81) The solicitation or acceptance by a public official, directly or indirectly, of an undue advantage, for the official himself or herself or another person or entity, in order that the official act or refrain from acting in the exercise of his or her official duties.
82) 동 협약 제9조.

이 협약은 그 밖에 법인（legal persons）이 부패행위 범죄에 가담한 경우 법인으로 하여금 형사，민사 혹은 행정적인 책임을 지도록 당사국이 필 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3)}$ 또한 협약에서 정한 부패행위 를 범한 자가 자국 내에 있을 경우 범죄행위지 등 타국으로 범죄인인 도를 하지 않을 경우 부패범죄자가 소재한 국가는 범죄 수사，체포， 기소 등 자국 내에서 관할권을 행사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84）

## （2）「 UN 반부패협약」 ${ }^{85)}$

## 1）협약의 개요

「UN 반부패협약」은 2003년 10월 31일 총회 결의를 통해 채택되어 2005년 12월 14일 발효하였다．2012년 6월 현재 가입 당사국이 160 개 국에 이르며，한국은 2008년에 비준하였다．86）

이 협약은 전문과 제 1 장 일반 규정，제 2 장 예방조치，제 3 장 범죄구성 과 법집행，제4장 국제협력，제5장 자산 회복，제6장 기술원조와 정보교 환，제 7 장 이행구조，제 8 장 최종 규정，총 71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6］「 UN 반부패협약」의 체계 및 주요내용

| 전 문 |  | 제37조 | 법집행기관과의 협력 |
| :---: | :---: | :---: | :---: |
| 제1장 일반 규정 |  | 제38조 | 국가 당국 간 협력 |
| 제1조 | 목적 | 제39조 | 국가 당국과 <br> 사적 부분 간 협력 |
| 제2조 | 용어 | 제40조 | 은행 비밀 |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1조 | 범죄 기록 |

83）동 협약 제 10 조．
84）동 협약 제 15 조 4 항．
85）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86）유엔 조약정보 참조．
（http：／／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no＝XVIII－14\＆chapter＝ 18\＆lang＝en）2012．6．6 방문．

| 제4조 | 주권의 보호 | 제42조 | 관할권 |
| :---: | :---: | :---: | :---: |
| 제2장 예방조치 |  | 제4장 국제협력 |  |
| 제5조 | 예방적 반부패 정책과 실행 | 제43조 | 국제협력 |
| 제6조 | 예방적 반부패 기구 | 제44조 | 범죄인 인도 |
| 제7조 | 공적 부문 | 제45조 | 죄수 이송 |
| 제8조 | 공무원의 행동규범 | 제46조 | 상호 법적 원조 |
| 제9조 | 공적조달과 공적자금 관리 | 제47조 | 형사절차의 이전 |
| 제10조 | 공적 보고 | 제48조 | 법집행 협력 |
| 제11조 | 재판 및 기소 관련 조치 | 제49조 | 공동 수사 |
| 제12조 | 사적 부문 | 제50조 | 특별 수사 기술 |
| 제13조 | 사회 참여 | 제 5 장 자산 회복 |  |
| 제14조 | 자금세탁 예방조치 | 제51조 | 일반 규정 |
| 제3장 범죄구성과 법집행 |  | 제52조 | 범죄진행 이전의 <br> 예방과 파악 |
| 제15조 | 공무원의 뇌물 | 제53조 | 직접적 자산 회복 조치 |
| 제16조 | 외국 공무원 및 국제기구 직원의 뇌물 | 제54조 | 몰수 관련 국제협력을 통한 자산회복 구조 |
| 제17조 | 공무원의 재산 횡령, 유용 혹은 전용 | 제55조 | 몰수 목적의 국제협력 |
| 제18조 | 거래 | 제56조 | 특별 협력 |
| 제19조 | 권한 남용 | 제57조 | 자산의 반환과 처분 |
| 제20조 | 불법 재산증식 | 제58조 | 재정정보부서 |
| 제21조 | 사적 부문의 뇌물 | 제58조 | 양자, 다자 협정 |
| 제22조 | 사적 부문의 재산 횡령 | 제6장 기술 원조와 정보교환 |  |
| 제23조 | 범죄 과정의 세탁 | 제60조 | 훈련과 기술 원조 |
| 제24조 | 은닉 | 제61조 | 부패 정보의 수집, 교환, 분석 |
| 제 25 조 | 사법 방해 | 제62조 | 기타 조치: 경제발전과 기술원조를 통한 협약 이행 |
| 제26조 | 법인의 책임 | 제7장 이행 구조 |  |
| 제27조 | 범죄행위 참여 | 제63조 | 협약 당사국 회의 |
| 제28조 | 범죄구성요건으로서 고의 | 제64조 | 사무국 |
| 제29조 | 시효 | 제 8 장 최종 규정 |  |
| 제30조 | 기소, 재판, 처벌 | 제65조 | 협약 이행 |


| 제31조 | 동결，압류，몰수 | 제66조 | 분쟁 해결 |
| :---: | :---: | :---: | :---: |
| 제32조 | 증인，전문가 및 <br> 피해자 보호 | 제67조 | 서명，비준，수락， <br> 승인 및 가입 |
| 제33조 | 고발자 보호 | 제68조 | 발효 |
| 제34조 | 부패행위 결과 | 제69조 | 개정 |
| 제35조 | 피해 보상 | 제70조 | 폐기 |
| 제36조 | 전문기관 | 제71조 | 기탁，언어 |

## 2）주요 내용

${ }^{\ulcorner } \mathrm{UN}$ 반부패협약」은 제2장에서 부패예방을 위한 주요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각 국가들이 예방적인 반부패정책을 실시하는데 효과 적인 조치들을 취하도록 노력할 것과 이에 관한 법률들을 정기적으로 평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7}$ ）또한 각국이 이와 같은 정책들을 이행하고 감독•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88）

그리고 비선출직 공무원들의 임명에서 퇴직까지를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특히 부패에 취약한 업무담당자에 대한 훈련 및 직무전환에 대한 특별고 려，공무의 적정수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 다．89）한편，선출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자금지원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90）또한 각 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적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1)}$
${ }^{「} \mathrm{UN}$ 반부패협약」은 제3장에서 부패행위의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각 국은 공무원이 자신 또는 타인이 부당이득을 얻기

87）본 협약 제 5 조．
88）본 협약 제6조．
89）본 협약 제 7 조，제 9 조．
90）Id．
91）본 협약 제 8 조．이에 관하여는 다음의 이해충돌에 관한 장에서 논하기로 함．

위해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거나 권한•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92)}$ 그리고 이 협약 제 15 조에서＇뇌물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그 구체적 내용은「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 제 8 조와 동일하다．즉，공무원의 공무행사나 불행사를 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이나 타인에 대한 부당이득의 제공을 약속，제안，제공하는 행위와，공 무원의 요청 및 수령행위를 뇌물죄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공무원이 자 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적，사적 자금을 자신이나 타인을 위하여 횡령，유 용•전용행위에 대하여 범죄로 하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93）

이 협약은 범죄를 감추기 위해 재산을 이전하거나 위장처분 하는 등의 행위와 재산은닉 행위，증언 방해행위 등을 처벌하는 입법조치 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94）그러나 청탁행위에 따른 공직자의 신고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사항과 구체적인 처벌수준에 대한 언급은 없다．
［표 47］「UN 반부패협약」의 뇌물죄의 내용


92）본 협약 제19조．
93）본 협약 제17조．
94）본 협약 제24조 및 제25조．
95）Each State Party shall adopt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 （3）「 OECD 뇌물방지협정」

세계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 는 1997년 11월，자유로운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국제무역상의 뇌물수수 및 부패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정」96）을 체결하였다．
각 당사국들이 뇌물수수행위를 형사범죄화하는 입법을 두도록 하고 있는 협약 제1조는 「UN 반부패협약」제 16 조와 마찬가지로 미국 「해 외부패방지법」97）의 체계에 기반하여 성립되었다．98）즉，협약 제 1 조는 국제상거래상 사업이나 부적절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공직자의 직 무수행과 관련하여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그 리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당한 금전적 또는 다른 이득을 제 시，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범죄화 하도록 하고 있다．99）그러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목적의 소액의 금전지불은 위 조항에서의 사업 이나 부적절한 이득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100)}$ 또한 각 당사국들은 외국 공직자의 수뢰행위에 대한 교사，방조 그리고 전달 또는 허가를 포함하는 참여행위를 범죄화하여야 하며，내국 공직
to establish as criminal offences，when committed intentionally：
（a）The promise，offering or giving，to a public official，directly or indirectly，of an undue advantage，for the official himself or herself or another person or entity，in order that the official act or refrain from acting in the exercise of his or her official duties；
（b）The solicitation or acceptance by a public official，directly or indirectly，of an undue advantage，for the official himself or herself or another person or entity，in order that the official act or refrain from acting in the exercise of his or her official duties．
96）「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1997．11．21 체결，1999．12．2．15 발효）．2012년 4월 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39 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97）${ }^{「}$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98）Mark Pieth，Mark Pieth，Harmonising Anti－Corruption Compliance：The OECD Good Practice Guidance 2010，DIKE（2011），p．11．
99）Articel 1， 1.
100）Pub．L．No．100－148， 102 Stat． 1107 （FCPA 1988，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자에 대한 행위와 외국공직자에 대한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하며，101）증 뢰의 주체에 법인도 포함하고 있다．${ }^{102)}$

그밖에 OECD 의 「뇌물방지협정」은 전체가 제 17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뇌물죄의 결과 취득한 이익의 몰수 및 추징103）그리고 투명한 회계기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104）주로 당사국들의 이행에 대한 모 니터링과 협력을 통해 이행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 2．이해충돌방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UN 반부패협약」은，공무원의 이해충돌행 위를 방지하고 공적 지위를 이용한 사적 재산증식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도록 하고 있는데，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주로 기술한다．

## （1）공무원 행동규범

「UN 반부패협약」은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부패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를 국가가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특히 제 8 조는 공무원 행 동규범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표 48］「 UN 반부패협약」의 공무원 행동규범의 구체적 내용

| 행위유형 | 내 용 |
| :---: | :---: |
| 제8조 <br> 공무원 <br> 행동규범 | （1）국가는 부패와 싸우기 위해 공무원들 사이에 특히 청렴성 <br> （integrity）과 정직 및 책임을 향상시켜야 한다． |

101）Articel 1， 2.
102）Articel 2.
103）Articel 3.
104）Articel 3.

| 행위유형 | 내 용 |
| :---: | :---: |
|  | (2) 국가는 특히 공무의 정확하고 명예롭고 적절한 수행을 위한 행동 규범 혹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 (3) 이 조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는 지역, 지역간 및 다자간 기구들이 채택한 이니셔티브들을 유의해야 한다.105) |
|  | (4) 국가는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해 적절한 당국에 보고하는 것 을 촉진하는 조치와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  | (5) 국가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특히 대외활동, 고용, 투자, 자산 및 상당한 선물 혹은 혜택 과 관련해서 적절한 당국에 해당 공무원이 보고(declaration) 하도록 하는 조치와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
|  | (6) 국가는 본 조항에 따라 확립된 규범이나 기준을 위반한 공 무원에 대해 징계나 기타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한다. |

## (2) 예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협약 제 9 조와 제 17 조는 법률안의 예산, 공용재산 등의 사적사용 금 지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표 49] 「 UN 반부패협약」의 공적조달과 공적 자금 관리, 횡령죄의 내용

| 행위유형 | 내 용 | 관련 법안 <br> 조문 |
| :---: | :---: | :---: |
| 공적조달과 <br> 공적 <br> 자금관리 <br> (협약 <br> 제9조) | 공적 조달과 공적 자금관리에 대해 상세히 규 <br> 정하고 있는데,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br> 것으로 결정과정의 투명성, 경쟁 그리고 객관적 <br> 기준을 기초로 적절한 조달 시스템을 확립하기 | 공용재산 <br> 당의 |
| 사적사용 |  |  |
| 금지 |  |  |

105) 예컨대,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contained in the annex to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1/59 of 12 December 1996.

| 행위유형 | 내 용 | 관련 법안 <br> 조문 |
| :---: | :---: | :---: |
|  |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이러한 시 스템은 특히 다음을 다루어야 한다． <br> （a）입찰자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적 조달과 계약에 관한 정보의 공 개 배포 <br> （b）선정과 판정기준，입찰 규칙，공표를 포함 한 참가조건의 사전 확립 <br> （c）공적 조달 결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전 결정된 기준의 이용 <br> （d）본 항에서 정한 규칙이나 절차가 이행되 지 않는 경우，법적 구제를 확보하기 위 한 효과적인 내부검토 시스템 <br> （e）특정한 공적조달에서 이해관계 선언，검 열 절차，교육 요건과 같이 조달에 대한 개인 책임에 관한 사안을 규율 | （안 제 20 조， 제21조） |
| 횡령죄 <br> （협약 <br> 제17조） |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유로 그에게 맡긴 재 산，공적 혹은 사적 자금이나 증권 등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횡령，유용 혹은 전용한 경우 |  |

## （3）불법재산증식

${ }^{「} \mathrm{UN}$ 부패협약」에서는 불법 재산증식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표 50］「UN 반부패협약」의 불법재산증식의 내용

| 협 약 | 조 문 | 내 용 |
| :---: | :---: | :---: |
|  |  | 공무원이 자신의 합법적인 수입과 관련해서는 <br>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당한 자산 증식을 <br> 한 경우，즉＂불법적 재산증식＂（illicit enrichment） <br> 을 한 경우 |
| 협약 |  |  |

## 제 3 절 독 일

독일은 연방차원에서 부패에 관한 일반 법률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고，주로 연방형법 규정의 개정에 의해 이에 대응하고 있되，각 주 차원에서의 부패방지를 위한 법률，행정규칙，지침 등은 존재한다．106）

다만，부패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한 연방차원에서의 입법적 시도로서 는 1997년의「부패방지법」이 있는데，이는 국제적인 논의에 따라 공정경 쟁을 해하는 부정뇌물수수 등을 형법에 새로이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밖에 2002년 신뢰할 수 없는 사업체를 공공계약발주에서 배제하 는 내용을 도입하도록 경쟁제한법을 개정하는 「부패기록부의 설치를 위한 법률안」의 제정이 시도되었으나 실패되었고，그 후 다시 독자적 인「부패등록법안」이 상정되었으나 마찬가지로 실패하였다．

이하에서는，독일법상 부정청탁 행위 자체만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 으므로，부정청탁과 관련하여서는 로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금품 수수와 관련하여서는 형법상의 수뢰죄와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관행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금품수수의 경우를 살펴본 후，이해충돌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부정청탁 금지

유럽공동체에 속한 국가들 중에서 독일은 일찍이 로비에 관한 규정 을 두고 있었다．그러나 독일에서의 로비에 관한 논의는 주로 의회에 대한 이익집단의 활동의 측면에서 논의되었으며，107）미국 등에서와 같

[^5]이 로비스트와 로비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규제를 실시하지는 않 고 있었다．오히려 독일의 경우 로비 등록부를 통한 국가관리가 결사 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비판되기도 하였다．

## 2．금품수수 금지

## （1）독일「형법」에 의한 금품수수의 금지

독일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으로는「형법」을 들 수 있는데，독일 형법도 유럽연합법과 마찬가지로 수동 적 뇌물，능동적 뇌물 개념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독일 형법은 이익수수죄（형법 제331조），108）수뢰죄（형법 제332조，수동 적 뇌물죄），${ }^{109)}$ 이익제공죄（형법 제 333 조），${ }^{110)}$ 증뢰죄（형법 제334조，적 극적 뇌물죄（111）에 대한 구성요건을 두고 있고，특별히，이익이 큰 규 모인 경우，이익을 계속적으로 수수한 경우，계속적 범죄행위가 단체 의 구성원으로서 이루어진 경우，중한 부정처사 수뢰죄와 부정처사 증뢰죄（형법 제335조）를 규정하여 형벌을 가중하고 있다．112）
［표 51］독일「형법」상 공무원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률효과

|  | 구성요건 |  | 법률효과 |
| :---: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유형 |  |
| 이익수수죄 <br> （제331조） | 공무원 등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br> 제3자를 위하여 이익을 <br> 요구•약속•수령한 경우 | 3년 이하의 <br> 자유형 또는 <br> 벌금형 |

익을 주장하는 단체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108）Strafgesetzbuch（StGB），§331 Vorteilsannahme．
109）Id．，§332 Bestechlichkeit．
110）Id．，§333 Vorteilsgewährung．
111）Id．，§334 Bestechung．
112）이러한 경우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  | 구성요건 | 법률효과 |
| :---: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유형 |  |
|  | 법관 또는 중재법관 | 이미 행한 재판 또는 장래 행할 재판에 대한 대가로서 자신 또는 제 3자를 위한 이익을 요구•약속－수수 |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
| 수뢰죄 <br> （제332조） | 공무원 등 |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대가로 이익을 요구•약속•수수 | 6월 이상 <br> 5년 이하의 자유형 |
|  | 법관 또는 중재 법관 | 법관의 의무 위반 등을 대가로 이익을 요구•약속•수수 | 1년 이상 <br> 10 년 이하의 <br> 자유형 |
| 이익제공 <br> （제333조） | 제한 없음 | 공무원 등에게 이익을 <br> 제안•약속•공여 | 3년 이하의 <br> 자유형 또는 <br> 벌금형 |
| 증뢰죄 <br> （제334조） | 제한 없음 | 공무원 등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등을 <br> 대가로 이익을 제안•약속•공여 | 2 년 이하의 <br> 자유형 또는 <br> 벌금형 |

독일「형법」상 수뢰죄（제332조）와 증뢰죄（제334조）는 부정한 직무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이익수수 및 제공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이익수 수죄（제332조）및 이익제공죄（제333조）는 대가관계와 상관없이 직무수행과 관련성만 있으면 단순한＇이익의 수수＇까지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또한 수뢰죄의 경우 공무원의 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하고 있 으나 이익수수죄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2）허용되는 금품수수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1）공무원에 대한 사례제공의 문제

독일「형법」은 특정한 결과를 목적으로 한 목표지향적 협의 없이도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을 얻기 위하여 뇌물을 주고받은 경

우에는 처벌할 수 있으므로, 향후의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향응이 나 선물 등 의 제공도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형법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일종의 관행적 금품수수에 대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공무원이 선물 등의 사례를 받은 경우, 허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선물가 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실상 금품 등을 제공받음으로 써 급부를 제공받은 공무원의 직무행사가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가 더 중 요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개별사안에서의 상황과 관련자의 개인적인 이익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에 대한 허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로서, 초대, 선물, 호의적인 인정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2] 초대, 선물, 호의적인 인정의 경우 - 금품수수 허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유 형 | 판단기준 | 구체적인 사항 |
| :---: | :---: | :---: |
| 초 대 | 공무원의 지위 | 조직에서 공무원의 지위가 높을수록 초대가 적정함 |
|  | 공무원의 직무와 급부와의 관계 | 상대방과 직무에서 연관되는 경우가 많을수록 문제있는 초대임 |
|  | 초대에서의 행위유형 | 초대가 투명하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진 경 우일수록 문제 있음 |
|  | 초대의 종류 | 고유한 직무수행이 주된 목적이고(예를 들어 산업시찰, 직무상 강연, 생산물에 대한 프레젠 테이션) 접대는 부수적이라는 점이 분명할수 록 합당한 초대113) |

113) 직무상의 고유성보다 접대에 중점을 둔 경우의 예로는 연주회를 수반한 저녁식 사, 연예프로그램, 나이트클럽과 같은 건전하지 않은 행사 등이 있을 수 있다.

| 유 형 | 판단기준 | 구체적인 사항 |
| :---: | :---: | :---: |
| 초 대 | 초대의 가치와 회수 | 초대의 상한액수에 대한 판례의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 }^{115)}$ <br> ※ 판례상의 기준 <br> －독일연방대법원은 약 90 회에 걸쳐 각 두 잔 이상의 맥주를 대접받은 경찰관에 대 하여 뇌물죄를 인정함 114 ） <br> －바이에른주 검찰은 소위＇슈니첼이론＇을 제시하는데，레스토랑에서 슈니첼을 먹는 정도는 허용되지만 그 이상의 가격의 식 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
| 선 물 | 「연방공무원법 116 ）」 <br> 제71조 제1항， <br> （보수，선물 및 그밖의 <br> 이익수수의 금지） | （1）연방공무원은 직무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 3 자를 위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보수，선물 또는 그밖의 이익을 요구•약속•수수 금지 <br> －예외：상급관청 또는 차상급관청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 <br> （2）형사절차에서 몰수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제1항의 규 정을 위반한 자는 요구받을 경우 의무위반행 위를 통해 획득한 대상을 기관장에게 귀속시 켜야 함 <br> －귀속청구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부당이득에 관한 독일민법전의 규정이 준용． <br> ※ 일반적으로는 5 유로 이하의 선물은 허용되 는 것으로 간주 |

114）BGH，NStZ 1998， 184.
115）법원은 액수 이외에 참석자의 구성，반대상황의 존재 여부 및 정도（예를 들어 답례로 서의 초대）를 고려하며，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접대의 액수가 적어도 처벌한다．
116）「Bundesbeamtengesetz」，（2009．5．2 제정），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bbg 2009／gesamt．pdf，§ 71 （Verbot der Annahme von Belohnungen，Geschenken und sonstigen Vorteilen）．

| 유 형 | 판단기준 | 구체적인 사항 |
| :--- | :---: | :---: |
|  | 호의적으로 <br> 인정을 베푼 경우 | 공무원이 법률상의 청구권을 가진 경우에만 허용 |
| 호 의 <br> 적 인 <br> 인 정 | 기부 또는 스폰서링 | 조직에 대한 기부 등도 공무원 개인의 지위의 <br> 개선 등 간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 <br> 에 제한적으로 허용117） |
|  | 모두 관할청의 사전의 서면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  |
| （독일 「형법」제333조 제3항）． |  |  |

특히，위와 같이 법률상 허용되는 금품수수인지 여부의 해석에 도움 을 주는 지침으로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표 53］허용되는 금품수수 여부의 판단원칙

| 분리원칙 | －거래와 기부는 구별되어야 허용되지 않는 형태로 의사결정 <br> 에 영향을 미치는 기부는 허용되지 않음 |
| :---: | :---: |
| 투명성원칙 <br> （승낙원칙）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기부는 공개되어야 |
| 문서화원 <br> 칙 | －공무원 또는 그 기관에 대한 모든 무상의 기부와 유상의 <br> 급부는 서면화되어야 |
| 상당성원칙 | －공무원 또는 그 기관과 기업 사이의 급부와 상대급부의 관 <br> 계는 상당해야 |

## 2）선출직 공무원의 이익수수 ${ }^{118)}$

1953년 개정형법은 의회의원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 으나，1994년 개정형법은 이를 다시 부활하였다．

117）관하여 독일연방내무부의 「일반행정지침（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은 스폰서링 에 관하여，공공의 임무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스폰서링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Caspar／Neybauer，LKV 2011， 207.
118） $\mathrm{StGB}, \S 108 \mathrm{e}$ Abgeordnetenbestechung，독일 「형법」 제108조 e．

이러한 독일 「형법」은 선출직 공무원을 임명직 공무원의 수뢰행위 와 구별하여 표결을 위한 의원매수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원적인 체계는 「UN 반부패협약」제 15 조에 비추어 타당하지
 더불어 선거인매수행위도 벌하고 있다．
［표 54］선거인매수죄와 의원매수죄의 내용

|  | 구성요건 |  | 법률효과 |
| :---: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유형 |  |
| 의원의 매수 （「형법」 제 108 e 조） |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  | 제한없음 | 주，지방자치단체，지방 자치단체연합의 국민대표 의 선거나 투표를 위하여 지지표를 매수 또는 매도 | 6월 이상의 자유형에 부가시，공공 선거를 통한 권리취득자격 및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피선거권 또는 선거권을 박탈 |
| 선거인 <br> 매수 <br> （「형법」 <br> 제 108 b 조） | 제한없음 | 선거하지 아니하도록 또는 제한된 의미로 선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금 품 또는 기타의 이익을 제 공，약속 또는 수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  |  | 선거하지 아니하거나 제한 된 의미로 선거하기로 하 고 금품 또는 기타의 이익 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 |  |

[^6][표 55] 선출직 공무원의 이익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 구성요건 |  | 적용제외 |
| :---: | :---: | :---: |
| 행위주체 | 유 형 |  |
| 연방 <br> 의회 의원 | 의회에서의 표결을 하면 서 물질적인 이익을 매도 또는 매수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시도한 경우 | (1) 이익의 수수가 의회의 표결 이전 <br> (2) 사후적인 '감사의 표시'였거나 부 작위에 대한 대가 <br> (3)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br> (4) 제 3 자에 대한 경우 <br> (5) 물질적인 이익이 아닌 경우(학계 의 일반적인 설명) |

## (3) 일반인에 대한 선물 (사례) ${ }^{120}$

기업에서의 선물은 거래처 확보 및 관계유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선물을 받은 자의 업무행위상의 판단 력과 독립성, 즉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이면 독일「형법」 상 영업상 거래에 있어서의 부정수재 및 부정증죄(제299조)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다. ${ }^{121)}$

| 일반인에 대한 선물 사례 |
| :--- |
| 1. 사실관계 |
| Kado는 Cleanslate 회사의 인력관리책임자로서 맡은 일 중의 하나는 파견근로회 |
| 사와의 계약체결이다. 이 회사와 ㄱㅖㅑㅑㄱ관계에 있는 Laimch 회사는 Kado에게 마 |
| 드리드에서 열리는 챔피언스리그 4강전을 관람하는 VIP 좌석 및 관전의 기회에 |
| 5성호텔 '데카당트'에서 호화로운 주말을 보내는 삭권을 제공하였다. Kado는 |
| 사장에게 알리지 않고 이 선물을 받았다. 이 사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 2. 사례쟁점 |
| 기업에서의 선물은 거래관계의 확보 및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유지를 위한 |
|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합법적이다. 다만 그 선물이 선물을 받은 자에게 어 |

120) Hass, Geschenke an Arbeitnehmer: Was ist erlaubt, was ist verboten? BC 2010, 492 이하.
121) 우리나라 형법상 '배임죄'와 유사하다.

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행위를 강제하는(또는 그런 의미라고 받은 자가 느끼는)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반대급부를 기대하면서 선물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며, 선물이 선물을 받은 자의 업무상의 판단능력 및 전문적 독립성을 침해하기에 객관 적으로 적합하다면 허용되는 한계를 초과한 것이다.
3. 판단기준
(1) 선물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No-Goes')

현금이나 금전의 대여, 유가증권, 수표 등은 그 자체로 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 이다. 반윤리적이거나 외설적이거나 불법적인 물건 및 급부, 그리고 선물을 준 자의 이익을 위한 업무상 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물도 이에 해당한다.
(2) 준법감시에 관한 규정(Compliance)의 존재 여부

업무상 받은 선물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고 하더라고 과연 무엇이 허용 되며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 불분명하다면 그에 대한 내부지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에 관한 규정은 예를 들어 어떠한 선물은 상급자에 대한 보고 없이 받아도 되며, 어떠한 선물은 보고 후에만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선물은 받아서는 안 되는지 규율한다.
(3) 선물이 사회적으로 상당한지 여부

그러나 준법감시에 관한 내부지침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선물 이 '통상적인지', 또는 '사회적으로 상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는 결국 개별 사안에서 선물을 받은 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여부 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가령 선물을 받음으로써 선물을 받은 자가 이익충돌의 상황에 직면하거나 정당화되기 어려운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게 된다면 상당하다고 볼 수 없 다. 외부적으로 볼 때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선물을 증정한 것이라고 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그러하다.
이를 통해서 회사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일반적 으로 그러한 위험이 존재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선물의 가치의 사소함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기는 어려우며 볼펜이나 꽃 등의 사소한 선물이 아니라 선물의 가액이 30 유로를 넘는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122)}$

## 4. 제 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며 독일형법 제299조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22) Hass, BC 2010, 494.

## 3．이해충돌방지

## （1）부패등록부（Korruptionsregister）

독일은＇부패등록부（Korruptionsregister）＇제도를 두어 부패하거나 부패 가 의심스러운 사업체를 공공계약에서 배제시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있다．통일적인 부패등록에 관한 일반 법률은 입법되어 있지 않지만 각 주의 법률，행정규칙，지침에서 부패등록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다．

1）「베를린주 부패방지법 123）」
「베를린주 부패방지법（부패가 의심스러운 기업체에 관한 등록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중앙정보제공처를 설치하여 부패등록부 를 운영하고 있다．부패등록부는 공공계약의 담당공무원（öffentlichen Auftraggeber）이 입찰자，지원자，잠재적 수임자의 신뢰성을 의무적으로 심사할 때에 이를 지원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제 2 조）

거래에 있어 부패에 해당하는 법률위반이나 그 밖의 법률위반의 증 거가 있다면 이를 부패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며，질서위반행위의 소 추기관과 형사소추기관은 등록에 해당하는 법률위반행위를 정보제공 처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제3조，제4조）

공공계약 담당자는 15,000 유로 이상의 공공계약의 발주를 결정하기 이전에 입찰자，지원자，잠재적 수임자에 대한 부패등록부의 등록내용 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정보제공처에 조회할 의무가 있다．（제6조）

정보제공처는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서 부패등록부의 등록사항에 관 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며 부패등록부의 기록내용을 일 정기간 경과한 후에는 삭제되어야 한다．（제7조，제 8 조）

[^7]
## 2）「노스트라인 붸스트팔렌주 부패방지법 ${ }^{124) 」}$

「노스트라인 붸스트팔렌주 부패방지법（부패방지 개선 및 공공계약 발주등록부의 설치 및 이행을 위한 법률）」은 재정부가 정보제공처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이를＇공공계약발주등록부（Vergaberesister）＇라고 한 다．발주등록부에는 발주의 배제에 관한 정보와 형법이나 그 외의 부 패에 해당하는 법 위반이 있음에도 배제가 되지 아니하는 근거에 관 한 정보도 기록된다．（제 3 조，제 4 조）

발주기관은 세금을 공제한 25,000 유로 이상의 공급 및 용역 발주의 경우 또는 50,000 유로 이상 공사발주의 경우 낙찰 받을 입찰자 또는 지원자에 관한 정보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공공계약발주 전에 정 보제공처에서 조회하여야 한다．（제8조）

부패에 해당하는 법률에 위반된 경우，기관의 장，자치단체나 자치 단체연합의 장，그 밖의 주의 감독을 받고 있는 공법상 단체 등의 책 임자는 주범죄수사청에 위반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제12조）

## 3）행정규칙에 의한 부패등록부 ${ }^{125)}$

연방정부는＇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으 며，각 주에서도 행정규칙이나 지침을 통하여 부패등록부를 통해 이 해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표 56］독일 각 주별 부패등록 행정규칙 및 지침

| 주 | 부패등록 행정규칙 및 지침 |
| :---: | :---: |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 공공계약발주의 참여 배제를 위한 신고 및 정보제공처126） |

124）Gesetz zur Verbesserung der Korruptionsbekämpfung und zur Errichtung und Führung eines Vergaberegisters in Nordrhein Westfalen，KorruptionsbG．
125）Empfehlungen zur Korruptionsprävention in der Bundesverwaltung．
126）Melde－und Informationsstelle für Vergabesperren．

| 주 | 부패등록 행정규칙 및 지침 |
| :---: | :--- |
| 바이에른주 | 공공계약발주의 배제를 위한 정보 제공처127） |
| 브레멘주 | 공공기관에 있어서 부패예방과 대처를 위한 행정규칙 |
| 헤센주 | 공동의 지시회람128） |
| 니더작센주 | 신뢰할 수 없는 지원자의 공공계약발주에서의 배제에 <br> 관한 지시회람129） |
| 라이란트팔츠주 | 공공기관의 부패척결 130$)$ |
| 쉴레스비히홀스타인주 | 공공기관에 있어서 부패예방 및 부패척결 지침 |

## （2）순환보직제

「노스트라인 붸스트팔렌주 부패방지법（부패방지 개선 및 공공계약 발주등록부의 설치 및 이행을 위한 법률）」은 순환보직제를 통하여 이 행충돌을 방지하고 있다．이 법은 25,000 이상의 거주민이 있는 자치단 체의 경우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의 직원은 부패의 위험 이 있는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제21조）131）

## （3）형법상 이해충돌방지

독일 「형법」은 공모에 있어서 경쟁을 제한하는 협상금지（형법 제 298조），영업적 거래에 있어서 부정수재 및 부정증재（형법 제299조）를 통하여 이해충돌을 방지 하고 있다．

127）Informationsstelle für Vergabeausschlüsse．
128）Runderlass
129）Richtlinie zur Korruptionsprvention und Korruptionsbekämpfung in der Landesverwaltung，Antikorruptionsrichtlinie．
130）Bekämpfung der Korruption i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131） 2003 년의 경우 혐의를 받은 공공행정기관 근무자의 $64 \%$ 이상이 5 년 이상 동일한 영역에서 근무했다는 점에서 순환근무는 부패방지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표 57] 독일 「형법」상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구성요건 및 법률효과

|  | 구성요건 |  | 법률효과 |
| :---: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유형 |  |
| 공모에 <br> 있어서 <br> 경쟁을 <br> 제한하는 <br> 협상금지 <br> (제298조) | 청약자 | 물품이나 영업적 급부를 공모함에 있어 위법한 협상에 기초하여 청약 제시 |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
| 영업적 <br> 거래에 <br> 있어서 <br> 부정수재 <br> 및 부정 <br> 증재 <br> (제299조) | 제한없음 <br> 영업적 <br> 경영의 <br> 종업원 등 | 영업적 거래에서 경쟁에서 허용되 지 아니한 방법으로 우대할 것이라 는 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재산상 이익 제안, 약속, 공여 <br> 영업적 거래에서 경쟁에서 허용되 지 아니한 방법으로 우대할 것이라 는 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재산상 이익을 요구, 약속, 수수 |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
| 업무상 <br> 비밀누설, <br> 특별비밀 | (1) 다음 특별한 의 하여 임무 지위에서 로 알게 인하여 중 | 호의 1 (공무원, 공적 업무를 위해서 를 부담하는 자, 임의대리권에 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해당하는 에게 위탁되었거나 기타의 방법으 비밀을 권한 없이 누설하고, 그로 한 공익을 위태롭게 한 자 | 5년 이하의 <br> 자유형 또는 <br> 벌금형(과실 <br> 의 경우, 1 년 <br> 이하의 <br> 자유형 또는 <br> 벌금형) |
| 유지의무 <br> 위반 (제353조b) | (2) 다음 <br> 무가 부과 인에게 전 <br> 하여 중요 <br> 1. 연방이 <br> 결 정에 <br> 부과된 | 호의 1 에 의해서 그 비밀유지의 의 된 물건 또는 정보를 권한 없이 타 달하거나 공연히 공표하고, 그로 인 공익을 위태롭게 한 자 <br> 주의 입법기관 또는 그 위원회의 거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우 |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


|  | 구성요건 |  | 법률효과 |
| :---: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유형 |  |
|  | 2．기타 다른 공적 기관으로부터 비밀유지의무 <br> 의 위반에 대하여 형벌부과가 암시됨으로써 <br> 명확하게 비밀유지의 의무가 부과된 경우 |  |  |

［표 58］「부정경쟁방지법」상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내용

|  | 구성요건 | 법률효과 |
| :---: | :---: | :---: |
|  | 행위주체 행위 유형 |  |
|  | （1）기업의 종업원，근로자 또는 견습공으로서 근로 관계에 의해 위탁받거나 접근 가능한 영업비밀을 고용기간 동안에 경업목적，자신의 이익，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사업체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권한 없이 누군가에게 전달한 자 |  |
| 영업비밀 의 누설 （「부정경쟁 방지법」 제 17 조） | （2）영업의 목적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제 3 자 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사업체의 보유자에게 손해 를 가할 목적으로 <br> 1．영업상 또는 경업상의 비밀을 <br> a．기술적 수단의 사용 또는 <br> b．기밀의 복제 또는 <br> c．기밀이 복제된 물건의 탈취에 의해 권한없이 취득 또는 확보하거나 <br> 제 1 항에 정해진 통지 또는 제 1 호에 의한 자기 또는 타인의 행위에 의해 취득한 영업상 또는 경영상의 비밀，혹은 기타의 권한없이 입수하거 나 확보한 영업상 또는 경영상의 비밀을 권한 없이 이용하거나 또는 어떤 자에게 통지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그밖에 독일 「형법」은 선거인매수（「형법」 제108b조）와 의원의 매수 （「형법」제108e조）

## 제 4 절 프랑스

프랑스에서도 부패방지관련 국제협약과 유럽연합협약들의 영향으로 이를 프랑스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취해졌다．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하여는 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구성요건행위가 세분화 및 강화되었다．
최근에는，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국내적 여론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1 년 12 월，「공직활동 투명성과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기본법」과 「공직활동 투명성과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법」이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이하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와 관련하여서는 「형법」과 「형사 소송법」을，이해충돌방지에 관하여는 2011년 말에 상정된 위 법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 1．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 （1）입법연혁

2000년 7월 30일，프랑스는 1997년 채택된 「유럽공동체 공무원 또는 회원국의 국무원에 대한 부패척결에 관한 협약，132）의 영향으로 「부패 억제에 관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2000년 7월 30 일 법 제 2000－595호 ${ }^{133 \text { ）」를 통하여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국제적인 부패행위에 }}$ 대응하기 위한 조항을 두었다．${ }^{134)}$

[^8]그러나 위 개정내용이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의 목적 실현에 미흡 하다는 점이 지적됨에 따라，2007년，「부패행위억제에 관한 2007년 11월 12 일 법 제2007－1598호135）」의 제정을 통해，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재개 정이 이루어졌으며，이를 통해 부패행위의 유형이 4 개에서 8 개로 확대되 고，형사소송법상 부패수사와 기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

## （2）프랑스 형법

프랑스는 형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36)}$ 구체적으로，국내 공직자（형법 제 432－11조，제433－1조，） 사법 공직자（형법 제434－9－1조，제434조－44조，제434－46조，제434－47조） 및 해외공직자와 국제기구 공무원（형법 제435－2조，435－4조，435－14～15 조）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프랑스 형법은 공직자의＇부정한 영향력 행사（Traffic d＇influence）＇137） 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특정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이익을 야기하는 차별，고용，시장점유 또는 기타 유리한 결정을 공공기관 또 는 행정부처로부터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모든 형태의 이익의 대가를 조건으로 공직자가 공권력에 기초한 영향력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정 의하고 있다．（형법 제432－11조，제433－1조 및 제 433－3조）

위의 정의상＂모든 형태의 이익의 대가를 조건으로＂한 공적 영향 력의 남용이라는 점을 볼 때，단순한 금품수수를 넘어 일체의 유•무

[^9]형의 이득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판례나 법이론도 이를 넓게 해석하여 부정청탁을 이행하는 공직자의 영향력 행사에 의한 이 익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장래 청탁 행위의 실행을 약속하거나 동의 한 것만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프랑스「형법」도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특정인이 막강한 공 권력의 영향력을 가진 공직자에게 권한 남용을 요구하는 경우를 능동 적 부패，${ }^{138)}$ 공직자가 주관적인 의사에 준거해 청탁을 이행하는 경우 를 수동적 부패139）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표 59］프랑스「형법」상 부패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

|  | 구성요건 |  | 법률효과 | 추가적 <br> 징벌 |
| :---: | :---: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유형 |  |  |
| 행정부처 <br> 공무원 | 제한없음 | 금전제공，약속，기부， 선물 또는 모든 형태의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제안하는 행위 | 10년 징역， 150，000유로 의 벌금 | 민법 및 가족법이 금지하는 공민권 금지， |
|  | 행정부처 <br> 공무원 | 요청 또는 수락하는 행위 |  |  |
| $\begin{aligned} & \text { 사법 } \\ & \text { 공무원 } \end{aligned}$ | 제한없음 | 보수의 제공，선물 또는 약속을 제안 | 5년 징역， 75，000유로 의 벌금 | 판결공표， |
|  | 사법 <br> 공무원 | 보수의 제공，선물 또는 약속을 청원하거나 승인 하는 행위 |  | 에서 경제적 사회적 |
| 외국 <br> 공직자 및 <br> 국제기구 | 제한없음 | 금전제공，약속，기부，선 물 또는 기타 이익을 제안 | 5년 징역， 75，000유로 의 벌금 | 활동금지 등 |

138）Code pénal，Articles 433－1 à 433－2，（De la corruption active et du trafic d＇influence commis par les particuliers）．
139）Code pénal，Article 432－11，（De la corruption passive et du trafic d＇influence commis par des personnes exerçant une fonction publique）．

|  | 구성요건 |  | 법률효과 | 추가적 <br> 징벌 |
| :---: | :---: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유형 |  |  |
| 공무원 | 외국공직자 <br> 및 국제기구 공무원 | 금전제공，약속，기부， 선물 또는 기타 이익 청 하거나 수락 | 5년 징역， 75，000유로 의 벌금 |  |
| 외국 사법 공무원 | 제한없음 | 보수의 제공，선물 또는 약속을 제안 | 5년 징역， 75，000유로 의 벌금 |  |
|  | 외국 사법 공무원 | 보수의 제공，선물 또는 약속을 청원하거나 승인 하는 행위 |  |  |

프랑스「형법」의 경우，독일과 비교해 볼 때，능동•수동적 뇌물의 개 념하에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독일과는 다르게 행정부처 공부원이 사법공무원보다 더 중한 형벌을 받고 있으며，선출직 공무원과 임용직 공무원을 구별하지 않고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수뢰와 이익 수수를 별도의 행위유형으로 나누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3）프랑스「형사소송법」

프랑스「형사소송법」은 부정청탁 행위가 포함된 부패행위에 대한 수 사방식에 대한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는데，부패범죄 수사에서 허용되 는 방식으로서 감시，통신 수단으로 사용된 통화 감청，녹음 및 녹화， 보전 조치 그리고 피고인의 권리에 관련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표 60］프랑스「형사소송법」상 부패범죄의 수사방식

| 수사 유형 | 특 징 |
| :---: | :---: |
| 감 시 | 검사의 이의가 없는 한 사법 경찰의 감시 가능 |
| 잠 입 | 부패 행위 혐의자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단 |


| 수사 유형 | 특 징 |
| :---: | :---: |
| 감 청 |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 범죄에 대하여 전화 통화 감청 |
| 음성 녹음 및 <br> 영상녹화 | 예심판사가 수색 영장을 통해 허용 |
| 보전조치 | 유죄 선고를 받은 부패 행위자의 벌금 납부, 부패 행위에 <br> 사용된 재물 똔 잔금의 압수 집행 및 부패 행위 피해자 <br> 에 대한 보상에 대한 보장 |
| 피고인 권리 <br> 관련된 조치부패 혐의자에 대한 감시, 잠입, 감청의 적용시 6개월 전 <br> 에 구속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개인은 상기 수사 방식 <br> 을 통해 획득된 증거에 대한 검토를 검찰에 신청 가능 |  |

## 2. 이해충돌방지

프랑스에서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최근의 법•정책적 노력상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2011년 12월에 의회에 상정된「공직활동의 투명성과 이 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안 제3866호」140)가 있으며, 그 외의 관련 입법으 로는 형법상의 관련 규정과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법규들이 있다.

## (1) 이해충돌에 관한 정의

프랑스 정책 및 법제에 있어 다양한 이해충돌에 관한 정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1] 프랑스 정책 및 법제에 있어 이해충돌의 정의의 구체적인 내용

| 근 거 | 구체적인 내용 |
| :---: | :---: |
| 2000년 5월 | 공직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직 활동 수행에 영향을 끼 <br> 11일 유럽 |
| 칠 수 있거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개인 |  |

140) Loi organique $n^{\circ} 3838$ et Loi $n^{\circ} 3866$ sur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et prévention des conflits d'intéréts.

| 근 거 | 구체적인 내용 |
| :---: | :---: |
| 평의회 공직자 행동 강령에 관한 장관 위원회 보고서 | 이익을 얻는 상황 발생을 의미한다. 공직자의 개인 이익 은 공직자의 공직 또는 정치 활동에 근거한 관계를 갖는 공직자 본인, 가족, 부모, 친구, 친인척, 개인 또는 기관을 위한 모든 형태의 이익을 포함한다. 또한 공직자가 준수 해야 하는 모든 형태의 금융 또는 민간 의무도 포함 |
| 2004년 부패 방지 중앙 서비스 보고서 |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 고용된 개인이 상기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무 수행과 책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영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개인 자격으로 이익 을 소유하는 상황에서 발생 |
|  |  엄밀한 의미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br> 잠재적 <br> 앙태이며, 공직자의 이익과 공직 활동 간에  <br> 직접적인 연관이 존재하지 앓142) 긍직 다. 하지민, 진, 집 또는 전직과 같은 상황 변화 <br>  <br> 에 따른 이해 충돌 발생 가능성이 존재 |
| $\begin{gathered} \text { 부패 방지 } \\ \text { 중앙 } \\ \text { 서비스 } 141 \text { ) } \end{gathered}$ |  이해 충돌 관련 사실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br> 명백한 상태이며, 특정 이해 충돌에 대한 의심이 증명 <br> 이해 되지 않았지만, 장래 이해 충돌이 가능한 상황 <br> 충돌 ${ }^{143)}$ 으로, 해당 개인의 성실성에 대한 모든 의심은 <br>  상기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제거될 수 있음 |
|  | 실질적 공직자의 개인 이익이 해당 공직자의 공직   <br> 이해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사실이 확인된 상황   <br> 충돌144) 을 의미   |
| 공직활동에서의 <br> 이해 충돌 방지 <br> 를 위한 숙고 <br> 위원회145) | 개인의 공직 임무와 개인의 사적 이익 간의 충돌 상황146) |

141) SCPC: Service central de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142) conflit potentiel.
143) conflit apparent.
144) conflit réel.
145) Commission de réflexion pour la prévention des conflits d'intérêts dans la vie publique.

## （2）프랑스「형법」

프랑스「형법」 제432－12조는 이해충돌이 야기할 수 있는 불법적인 이익 취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표 62］프랑스「형법」상 이해충돌 규정의 구성요건과 법률효과

| 프랑스 <br> 「형법」 제432－12조 | 구성요건 |  | 법률효과 |
| :---: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유형 |  |
|  | 공공 기관의 권한 을 부여 받거나 공공 서비스 임무 또는 선거를 통해 공직 위임을 받은 개인 |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 에 대한 감시，관리，청산 또 는 지불 보장 임무를 내용으 로 하는 공직 활동 중에 어떠 한 형태의 이익이라도 취득， 접수 또는 유지하는 경우 | 5년 징역과 75，000 유로 의 벌금 |

## （3）재산등록관련 법제

프랑스는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특히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 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다음과 같은 다수의 법령에서 이러 한 내용을 두고 있다．
［표 63］프랑스의 재산등록관련 법제 입법 경과

| 법률안 | 구체적 내용 |
| :---: | :--- |
| 「공직자 재정투명성에 관한 | 정부각료，유럽연합의원，공공기관장에 대 |
| 1988년 3월 11일 제88－227호 | 한 재산등록의무 |
| 법률」147） | 공직자재정투명성위원회 설치148） |

146）Situation d＇interférence entre 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et l＇intérêt privé d＇une personne．
147）Loi $\mathrm{n}^{\circ}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148）Commission pour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법률안 | 구체적 내용 |
| :---: | :--- |
| 「재산등록의무에 관한 1996년 <br> 9월 1일 제96－762호 <br> 데크레」149） |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방법 <br> 위원회 구성과 권한 규정 |
| 「1996년 9월 1일자 훈령」150） | 당선자나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의무 |
|  | 재산등록의 의무범위를 자체적인 세법 기 <br> 준이 있는（EPIC 여러 지방자치단체간의 협 |
| 「정부각료 및 공직자들의 |  |
| 재산등록에 관한 1995년 2월 |  |
| 8일 제95－65호 법률」151） | 력 행정조직）심의 기관의 위원들까지 확 <br> 작고，이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피선거 <br> 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을 규정 |
| 「2004년 2월 27일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자치권 지위를 규정 <br> 하는데，이 규정을 대통령，폴리네시아 정 <br> 부각료，폴리네시아 의회 의원들에게까지 <br> 확대 적용 |
| 제2004－192호 조직법률」 |  |

위와 같은 입법적 노력들은 다음의「공직 활동 투명성과 이해 충돌 방지에 관한 법안」의 발의를 위한 토대가 되었다．
（4）프랑스의「공직 활동 투명성과 이해 충돌 방지에 관한 법안 제3866호」 152 ）

## 1）제정경과

최근 프랑스에서는 공직사회의 청렴성，투명성을 증진하고 공직자가 직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활동 투명성과

149）Décret d＇application $n^{\circ} 96-762$ du 1er septembre 1996 concernant l＇obligation de déclaration de son patrimoine
150）Circulaire du ler septembre 1996，relative aux déclarations de situation patrimoniale de certains élus ou des titulaires de certaines fonctions
151）Loi $n^{\circ} 95-6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a déclaration du patrimoine des membres du Gouvernement et des titulaires de certaines fonctions．
152）Loi organique $n^{\circ} 3838$ et Loi $n^{\circ} 3866$ sur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et prévention des conflits d＇intéréts．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기본법 제3838호」와 「공직활동 투명성과 이해 충돌 방지에 관한 법 제3866호」153）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 졌다．154）그리하여 2011년 12월 7일 「공직활동 투명성과 이해충돌 방 지에 관한 기본법과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결과는 각 각 찬성 124 표 반대 198 표와，찬성 124 표，반대 197 표로 부결되었다．

## 2）구성과 내용

「공직 활동 투명성과 이해 충돌 방지에 관한 법 제3866호」의 초안 은 총 7 장 19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155) 156)}$ 이 법안의 각 장은，정치자 금，소득，재산 취득의 투명성，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공직윤리 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1）법안의 체계
［표 64］「공직 활동 투명성과 이해 충돌 방지에 관한 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 해당조항 | 조문의 내용 |
| :---: | :---: |
| 제 I 장 | 정치생활（자금）의 투명성 |
| 제 1 조 | 공직자 재정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제88－227호 법률 <br> 제 I 항，형법전，제I항에서 5가지 변경조항 |
| 제I장 |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상황의 투명성 |
| 제2조 | 재산등록의 진정성을 훼손한 경우 적용할 처벌을 강화 |
| 제 3 조 | 공직자 재정투명성위원회에 이양되는 재산등록을 공개제안 |

153）Id．
154）이 법은 68,000 명의 프랑스국민의 지지서명을 받고， 2011 년 10 월 18 일 프랑스 환경당 당수인 프랑수와 드 뤼기（De RUGY）의원은 이브 꼬쉐（COCHET），노엘 마메르（MAMERE），아니 뿌르시노프（POURSINOFF）의원에 의해 그 초안이 헌법， 입법 및 공화국 일반 행정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155）대상 법률안의 상세내용 원문은 보고서 뒤에 별첨함．
156）「공직 활동 투명성과 이해 충돌 방지에 관한 기본법 $n^{\circ} 3838\left(\right.$ Loi organique $\left.n^{\circ} 3838\right)$ 」 은 재산형성과 소득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기존의 관련법 조항 개정을 주 내용으로 3장 7조로 구성된다．여기서는 법률안 제3866호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 해당조항 | 조문의 내용 |
| :---: | :---: |
| 제II장 | 임기나 공직수행 중 얻은 소득의 투명성 |
| 제4조 | 정부각료들이 자신의 수령한 총 급여를 매년 신고의무 |
| 제5조 | 신고의무를 지역 당선자에게도 확대 |
| 제IV장 | 공적자금 분배의 투명성 |
| 제6조 | 보조금을 받은 계획안 명단 등 공개 |
| 제V장 | 이해충돌방지 |
| 제1조 | 이해충돌의 정의 |
| 제8조 | 정부각료들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조항 |
| 제9조 | 정부각료 등의 자금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관리구조 |
| 제 10 조 | 내각관료등 취임시 이해관계를 신고 강제 |
| 제11조 | 지방당선자들과 관련된 이해충돌방지의 주요 원칙 제시 |
| 제12조 | 용어 대체 규정 |
| 제VI장 | 공직자윤리국 |
| 제13조 | 공직자윤리국의 구성 |
| 제14조 |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는 것을 감시 |
| 제15조 | 정치자금투명성위원회가 행했던 임무 수행 |
| 제16조 |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 |
| 제VII장 | 최종조항과 임시조항 |
| 제17조 | 정치자금투명성위원회 기준을 공직자윤리국 기준으로 대체 |
| 제18조 | 두 독립행정청 사이의 서류인계와 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 |
| 제19조 | 본 법안을 보증 |

(2) 이해충돌의무의 정의

법률안 제7조는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이해충돌방지의무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들과 정부각료들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 직하고, 청렴결백하며, 공정하게 행할 것과,157) 이러한 공직자들은 자 신의 직무에 내재된 의무와 그 성질상 그의 직무수행에 전반적으로

[^10]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것이 당연하다 간주되는 사적인 이해관계 사이의 충돌상황을 방지하거나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158)

여기서 '사적인 이해관계'는 그 자신, 그의 가족, 친족이나 사업관계 또 는 직업상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유지했거나, 재정적 채무 또는 민사소송에 의해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 }^{159)}$
그러나 일반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결정에서 문제되는 이익들, 광범 위한 범주의 사람과 연관되는 이익들, 그리고 공역무임무 수행에 기 여하는 자의 보수 또는 사회적인 혜택과 같은 것은 이해충돌을 야기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 }^{160)}$
(3) 위반시 제재

동 법률안에 따르면 이해충돌 규정에 위반될 때 형사처벌 되는 경 우가 있다. 또한 대통령 장관실 직원과 협력자들은 이해관계를 신고 하도록 되어있고, 위반시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른다.
[표 65] 「공직 활동 투명성과 이해 충돌 방지에 관한 법」제 10 조 제 7 항의 내용

| 제10조 <br> 제7항 | 구성요건 |  | 법률효과 |
| :---: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 유형 |  | | 이해관계 신고를 고의로 누락 |
| :--- |
| 하거나 명백하게 거짓 신고 |
| 를 하는 경우 | | 30000유로의 벌금형, |
| :--- |
| 형법전 제131-26조의 |
| 제1호와 제2호에 언 |
| 급된 선거권이 금지 |

158) Id.
159) Id.
160) Id.
161) [제10조] (1) 공화국대통령의 장관실 직원과 그 협력자들은 취임시에, 본 법률안 제 8 조의 제 2 항에 의해 규정된 방식에 따라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한다
(2) 이해관계 신고는 이하와 같이 한다:
(3) 대통령 협력자들은 정부사무국장에게 신고한다;

지방의회의원, 도의회 의원, 시의원, 일정한 내부협력 공공영조물 대표 자들이 이해관계신고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가 따른다.
[표 66]「공직 활동 투명성과 이해 충돌 방지에 관한 법」제 11 조의 내용

|  | 행위 유형 | 법률효과 |
| :---: | :--- | :---: |
| 제11조 | 지방의회 회의 중에 자신의 정직성, 청렴 <br> 결백,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 의 <br> 제가 되었을 때, 지방당선자들의 회의참가 |  |
|  | 심의회 의원이 잠재적 이해충돌이 있는 <br> 경우, 사퇴하지 않은 경우 | 30000유로의 벌금형, 전 제131-26조의 <br> 제1호와 제2호에 언급 <br>  <br> 지방의회의장, 도의회의장, 주민 십만 명 <br> 이상 도시의 시장, 연합한 꼬뮌의 총 준거권이 금지 <br> 민이 십만 명을 넘는 EPCI의 의장들의 <br>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5) 이해충돌 사례

프랑스의 현 사르코지 정권하에서의 최근 이해충돌과 관련된 사건 으로는 국가 기금과 은행의 합병추진에 있어서 이해충돌문제가 제기 된 빼롤사건과 대통령측근의 취업청탁 및 선거자금 수수의혹에 관한 뵈르뜨-베땅꾸르 사건이 있다.

## 1) 뻬롤(Pérol) 사건

## 뻬롤(Pérol) 사건

1. 사실관계

사르꼬지 정권 기간 중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및 부정 청탁 추문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2009년 금융 위기에 직면한 사르꼬지 대통령의 엘리제 궁은 사르
(4) 비서실 직원들은 국무총리에게 신고한다;
(5) 그 외 다른 비서실 직원들은 소속장관에게 신고한다.

꼬지 대통령의 측근인 프랑수와 뻬롤(Pérol)에게 예금기금(Caisses d'Epargne) 과 인민은행(Banque Populaire) 간의 합병 임무를 추진하도록 위임했다. 새롭 게 탄생한 금융그룹 (BPCE)은 국가로부터 자본의 $20 \%$ 에 해당하는 40-50억 유로를 지원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9년 2월 초부터 합병에 관련한 그 룹 경영진의 이해충돌에 대한 의심이 대두되었으며, 상기 경영진의 윤리 의 식 부재와 합병 결정의 불법성에 대한 비난이 증가했다. 사르꼬지 대통령은 그룹 합병에 대해 공직활동 윤리위원회에 대한 자문요청을 발표했지만 실 질적인 요청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결국, 증가하는 국민의 비난에 직면한 뻬롤에 대한 하원 청문회 후, 2009년 9월 1일 시민 단체와 은행 노조는 '불 법 이익 취득, 혐의로 뻬롤을 제소했다.
2. 판단결과

검찰은 상기 제소에 대해 엘리제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위임을 받 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불법이익 취득을 야기하는 공직활동인 상기 금융 기관의 합병 또는 감독 권한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 3. 이후 사법 재수사 명령

2009년 2월 24 일과 26 일 양일간에 걸쳐 예금 기금과 인민 은행은 양 은행 간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뻬롤을 합병 금융 그룹의 대표 이사로 선임했다. 뻬롤은 2월 26 일 대통령 비서 실장 직을 사임한 후 상기 그룹의 대표 이사 로 취임했다. 3 월 6 일 뻬롤은 나띠시스 (Natixis) 그룹의 감사위원장 직에 취 임했으며, 2009년 양 그룹으로부터 보너스를 제외한 550,000 유로에 달하는 급여를 수령했다. 하지만 2012년 6월 27일 파기원은 은행 노조의 제소에 근 거해 뻬롤의 불법 이득 취득에 대한 사법 수사 재기를 명령함으로써 그동 안 가라앉았던 뻬롤 사건의 심리를 재개하기에 이른다.

## 2) 뵈르뜨-베땅꾸르(Werth-Bettencourt)

```
뵈르뜨-베땅꾸르 (Werth-Bettencourt) 사건
```

1. 사실관계

사르꼬지 정부의 전 예산 장관이었던 에릭 뵈르뜨는 2007년 불법 청탁을 통해 배우자인 플로랑스 뵈르뜨를 로레알 화장품 회사 회장인 릴리안 베땅꾸르의 자 산 관리 회사인 끌리멘느에의 취업청탁과 함께, 사르꼬지 대통령의 대선 자금 에 대한 이해충돌행위 혐의를 받았다.

또한 여당인 UMP 재정 담당직과 예산 장관직 겸직과 릴리안 베땅꾸르로부 터 사르꼬지 대통령의 대선 선거 자금 후원금으로 법정 후원금을 초과하는 150,000 유로의 현금을 수령한 혐의가 제기되면서 2009년 7월에 UMP 재정 담당직과 예산 장관직을 사퇴했다.
2. 판단결과

2010년 8월 31일 렉스프레스(L'Expresse)지는 재무 경찰이 뵈르뜨에 대한 압수 수색 결과 사르꼬지 대통령의 대선 자금 후원에 관한 뵈르뜨의 자필 편지 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 상기 편지에서 뵈르뜨는 당시 내무 장관이었던 사르꼬지의 대선 자금 후원자인 베땅꾸르의 자산 관리인 겸 UMP 후원자인 빠뜨리스 드 메스트르 (de Maistre) 에 대한 레지옹 도뇌르 훈장 추서를 요 청함으로써 상기 후원금 수령을 입증하게 되었다
2012년 2월 8일 뵈르뜨는 공직 활동의 이해 충돌에 근거한 수동적 부정 청탁 과 불법 정당 후원금 은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제 5 절 미 국

## 1. 부정청탁금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취지는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통해 공무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민주주의국가에서 공 적 의사결정에 있어 관련 당사자들의 적절한 상황설명 및 의견개진 등 건전한 의사의 통로는 보장되어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부정청탁행위만을 별도로 규제하는 경우는 없어 보이 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구성원들이 입법 또는 행정에 영향력 을 미칠 목적으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권리로서 보장하 되, 이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로비제도를 양성화하여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위법한 로비행위로 제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로비행위에 관한 제도 및 법규를 두고 있지는 않 으나, 부정청탁의 경계를 형성하는 허용되는 청탁의 내용에 대한 시

사점을 줄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미국의 로비관련 규제법에 대하 여 주로 논하기로 한다. ${ }^{162)}$

또한 미국에서 공적 의사결정에 있어 다수 이해당사자의 공평한 접 근을 보장하는 방식은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서의 일방적 의사교환(ex parte communication) 금지제를 통하여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도 간략하게 언급할 것이다.

## (1) 로비 관련 법

## 1) 로비의 형태 ${ }^{163)}$

미국에서의 로비의 유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직접적 로비와, 간접적 로비로 나눌 수 있다.(Manhood).
[표 67] 로비의 행위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

|  | 행위 유형 | 구체적인 내용 |
| :---: | :---: | :---: |
| 직접적 <br> 로비 | 의원이나 그 직원에게 집단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표출하 는 것이다. 직접 로비의 가장 일반적 수단은 청문회에서의 증언, 연구결과, 입법안의 제 출을 위하여 의원에게 전화 혹은 서면제출 그리고, 선거 캠페인에서 기부금을 내는 것 | 사회적 로비(social lobbying) 포함. 사회적 로비는 향후 의회나 행정 부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대비하 여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 <br> ex) 많은 사회적 로비는 조지타운 의 파티에서 가벼운 이야기를 하 거나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떨어진 곳에 야간 포커게임에서 일어나며, |

162) 본 절의 관련 미국의 로비법에 관하여는, 주로, 김세진, "미국의 부정청탁 및 이 해충돌방지 관련법(II)", 「주요 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4차 워크숍 자료집」 발제문, 한국법제연구원, (2012.7.4), pp.55-78.을 참조 및 인용하며, 이하의 구체적인 인용표시는 생략하기로 함.
163) H.R. Manhood, H,R.Mahood, Interst Groups in American National Politics, (2000) in William N., Jr. Eskridge et al., Legislation: Statutes and the Creation of Public Policy, 3rd Ed.,(2001), 318-353

|  | 행위 유형 | 구체적인 내용 |
| :---: | :---: | :---: |
|  |  | 다른 사회적 로비의 하나는 의원 들에게 선물，여행，혹은 연설에 대한 보수를 주는 것임 |
| 간접적 <br> 로비 | 외부의 힘，주로 유권자를 <br> 움직여 이익집단과 그들의 <br> 로비스트가 의회에게 영향 <br> 력을 미치는 우회적인 방 <br> 법，점차 이익집단들은 간 <br> 접적 수단 <br> ex）다른 조직과 함께 잠행 <br> 캠페인（stealth campaign：몰 <br> 래하는 정치운동으로 보임）， <br> 개혁을 위한 시민의 모임 <br> 같은 동맹，싱크탱크로서 <br> 독립적 조직을 통한 연구 <br> 혹은 대중여론 조사에 대한 <br> 후원이 있음 | 간접적 로비의 가장 중요한 종류는 보통사람들 로비（grassroots lobbying） 혹은 일반인의 태도나 행동에 영 향을 미침으로써 워싱턴 엘리트층 （inside－the－beltway）에게 영향을 미 치기 위한 일체의 행위로 이익집 단은 그들의 회원을 동원하여 유 권자를 자극，그들의 견해가 우호 적으로 나오도록 미디어 대표와 대화하고，유권자에 의하여 편지， 전화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도록 대중관계 캠페인을 하고，그리고 의원들의 투표기록 혹은 관련 투 표의 스코어보드를 발표함 |

## 2）미국에서 로비법의 개혁논의

미국에서 로비에 대한 규정이 본격화된 것은 1946년 「연방로비규제 법」이었는데，${ }^{164)}$ 이 법은 주로 입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부금의 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그러나 이 법의 적용에 있어 등록대상 의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에서 명확성의 원칙 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성의 문제가 제기된 이 후，165）1995년「로비

164）The Federal Lobbying Disclosure Act（1946）．
165）United States v．Harriss， 347 U．S． 612 （1954）．이 사건에서는 등록 없이 이루어진 의회의원들에 제공된 만찬이 문제되었으며，법무부는 금전제공자에 대하여 연방로 비규제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며，이 사건에 「연방로비법」을 적용함에 있어 동 법 률의 위헌성이 다투어졌다．

공개법」에 의해 로비활동과 대상，등록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 되었으며，로비대상자가 의회뿐 아니라 행정부에도 확대되었다．
［표 68］1995년 「연방로비공개법」의 주요 내용

|  | 구체적 내용 |
| :---: | :--- |


| 로비스트의 <br> 등록 | 로비접촉을 처음 시작하거나 로비접촉을 하기 위하여 고용되 <br> 거나 의뢰받은 후 둘 중 빠른 것으로， 45 일 이내에 로비스트 <br> 는 상원사무총장과 하원 사무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 :---: | :--- |
| 로비활동 <br> 내용 보고 | 분기 보고서－분기말 이후 20 일 이내에 각 등록자는 상／하원 <br> 사무총장에게 분기내 로비활동을 보고의무가 있음．등록자의 <br> 격로 별도의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함 |
| 로비활동의 <br> 공개와 집행 | 상하원 사무총장은 전자적 형태로 제출된 경우 인터넷을 통 <br> 사와 대중적사를 포ㅁㅏㅏ감하여 자능하도록된 항고，오ㄱㅘㅘ 보고서에 대한 복 <br> 된 모든 등록과 보고를 유지하여야 함．그리고 인터넷을 통 <br> 하여 대중들이 이용가능하게 하여야 함 |
| 위반시 제재 |  |

그 후에도 1998년，2007년에 걸쳐 로비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표 69］미국에서의 로비관련 법의 연혁

|  | 구체적 내용 |
| :---: | :--- |
| 1946년 「연방로비규제법」 | 「의회재조직법」166）의 일부분에 최초로 의회를 <br> （Federal Regulations of <br> Lobbying Act） |
|  | 및 특정 로비 활동 공개를 요구하는 시스템이 <br> 수립 |

166）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 of 1946

|  | 구체적 내용 |
| :---: | :---: |
| 1995년「로비공개법」 <br> （Lobbying Disclosure Act） | 최초로 특정 행정부 직원（covered executive branch officials）을 로비 대상자에 포함시키면서 로비스 트가 이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일 경우 위 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 |
| 1998년「로비공개법」 수정 <br> （Lobbying Disclosure Act） | 「로비공개법」의 조항이 명시하고 있는 행정부 직원의 정의 변경을 비롯한 기술적인 수정 |
| 2007년「로비공개법」수정 <br> （Lobbying Disclosure Act） | 「정직한 리더쉽 및 정부공개법 167 ）」에 의해 일 부 수정된 부분은 로비 활동의 정의 및 범위 정립，등록된 로비스트 및 로비 회사의 보고 빈도수 변경，로비활동 공개사항 추가，반년마 다 제출하는 캠페인 자금 보고서 형성，연합 또는 협회 결성시 보고해야 할 공개사항 추가 |
| 2009년 1월에서 7월 사이 <br> 발표된 memorandum <br> 및 지침서 | 연방로비스트는 「긴급경제안정화법168）」과 미「경기회복 및 재투자법169）」의 기금을 관리하 는 행정기관 및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 활동 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안을 받도록 하 고 있다． |

위 연방로비공개법의 실행 이후，로비스트와 로비조직은 연간 20 억 달러가 넘는 산업으로 크게 성장함에 따라，로비활동의 공정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담은「정직한 리더쉽 및 정부공개법」170） 이 2007년 제정되었고，이로 인해「로비공개법」도 다소 개정되었다．「정 직한 리더쉽 및 정부공개법」에 따르면 로비스트가 의원에게 여비 및 선물제공이 금지되고，로비활동에 대한 투명성이 한층 강화 되었다．

167）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
168）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EESA
169）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170）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
[표 70]「정직한 리더쉽 및 정부공개법 ${ }^{1711)}$ 」의 주요 내용

|  | 구체적 내용 |
| :---: | :---: |
| 로비스트에 의한 선물•여행 제공 금지 | - 로비스트에 의한 의원 여행경비 지급 금지, 의원의 여행시 윤리위원회 서면 승인, 여행 후 30 일 이내 출 장결과에 대한 윤리위원회 서면승인 및 인터넷 공개 <br> - 의원들은 로비스트 및 로비스트 고용기업으로부터 선물수수 불가 <br> - 의원들은 스포츠 및 오락행사 입장료 전액 지불 |
| 의원의 퇴직 후 활동 및 가족의 로비활동 제한 | - 의원 퇴직 후 로비스트로서의 활동금지기간 연장 (1년 $\rightarrow$ 2년) <br> - 상원의원급 의회직원 퇴직후 로비스트로서의 활동금 지기간 설정(1년) <br> - 의원의 민간분야 취업관련 교섭시 일반에 공개 <br> - 현직의원 비유자 및 직계가족의 상원 대상 로비활동 금지 |
| 로비활동공개 강화 | - 선물 관련 분기별 보고(1회당 20 불 또는 연간합계 100 불) <br> - 해외로비스트 관련사항 전자화 및 DB 구축 |
| 로비공개법 실효성 강화 | - 로비공개법 위반시 벌금 증액( 5 만불 $\rightarrow 10$ 만불 $)$ <br> - 로비공개법 위반 로비스트 및 로비스트 회사 연2회 공개 <br> - 회계감사원이 로비활동 등록 및 보고사항 연1회 감 사 후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권고 등이 포함 된 보고서를 4.1일까지 의회에 제출 <br> - 의회 윤리위원회는 위원들의 윤리위반 관련 연례보 고서 발간 |

## 3) 최근의 정책 동향

최근 오바마 정부에 이르러, 로비관련 규제는 보다 강화되는 경향이 있 으며, 로비에 의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171) Id.

2009년 1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부 직원을 상대로 「행정부 공무원의 윤리강령」172）이라는 행정명령173）을 발표하면서 2009년 1월 20 일 이후에 행정부에 임명된 직원들에게 윤리서약을 맹세하도록 하였 다．이 강령이 발표되고 일주일 후 Timothy Geithner 재무부 장관은「긴 급경제안정화법」174）에 의해 기금을 받기 위한 로비활동에 제약을 가하 는 지침서를 발표하였는데，이는 EESA 기금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하 여 로비스트와 행정부 공무원 간의 접촉을 금하는 규정을 담고 있었다．
※ 이 지침서는 로비스트와 행정부 직원간의 접촉을 두 가지로 나눔：
（1）모임에서 실행 계획（logistical）관련 구두 접촉
（2）공식적으로 EESA 기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비승인을 받을 때까지 이루 어지는 구두 접촉
※ 로비스트는 EESA 기금 분배 담당을 맡고 있는 행정부 직원에게 모임에서 실행계획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이에 대한 제한은 없음．하지만 행 정부 직원과 로비스트간의 EESA 정책•기금지원서•계류 중인 신청서 관련 커뮤니케이션은 모두 문서화되어야 함．

2009년 2월 미「경기회복 및 재투자법」175）이 통과되자 오바마 정권 은 경기부양기금（stimulus funds）의 분배와 관련해 로비스트의 행정부 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메모렌덤을 발표한 바 있 는데（3월 20일），이는 경기부양기금 분배를 담당하는 행정부서 및 그 직원과 로비스트와의 접촉을 제한하고 이들의 커뮤니케이션의 투명성 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76)}$

[^11]※ 이 메모렌덤은 총 4 가지 정책을 담고 있음:
(1) 연방 정부 보조금 배분시 성과에 따라 결정(merit-based decision)하고,
(2) 무모한 프로젝트에 자금 제공하는 것을 자제하며,
(3) 로비스트와 행정부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은 투명할 것을 요구하고,
(4) 이 정책들을 추진하는 각 부서 및 기관에게 백악관 예산국의 지원을 제공함

2009년 4월 Peter Orszag(백악관 예산국장)은 ‘표준지침(sample interim guidance)'를 통해 경기부양정책 담당부서 및 기구들이 경기부양기금 할당과 관련해 로비스트와의 접촉유형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 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행위지침을 제시하였다.
[표 71] Orszag의 지침서상의 행정부와 로비스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에 따른 제한

| 접촉 유형 | 제한 정도 |
| :---: | :---: |
| 제한 없는 구두 |  |
| 커뮤니케이션 |  |
| (unrestricted oral |  |
| communications) |  | 경기부양책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에 대한 질문(기금 방법, 마감일, 관련 문의처 등)은 제한하지 않음.

2009년 7월 24일 Orszag 백악관 예산국장은 4월에 발표한 지침서의 수정판을 발표하면서, 경기부양기금 로비 제한을 받는 대상자 범위를 넓혀 등록된 로비스트뿐만 아니라 심사 중인 경기부양기금 신청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모든 사람까지 다 포함하였으며，신청서가 제출 된 시점과 보조금을 받는 시점 사이 이루어진 구두 커뮤니케이션과 문서로 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어 공개방식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오바마 정권은 로비 활동에 더 큰 제약을 가하기 위해 2009 년 9월 23 일 로비스트가 연방자문위원177）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 을 발표하였다．${ }^{178)}$

## （2）일방적 접촉의 금지

공적 의사결정에 있어 다수 이해당사자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방 식은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서의 일방적 의사교환 금지제（ex parte rule）에 서도 나타나고 있다．${ }^{179)}$

원래 일방적 접촉금지는 당사자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사법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원칙으로 판사가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소송 당사자 일방과 의사교환을 하거나，소송당사자가 일부 또 는 전부 없는 상태에서 제 3 자와 의사교환을 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이 다．이는 미국의 변호사협회 및 각 주의 판사윤리규정에 규율되어 있 는데，180）이에 위반한 판사는 징계를 받을 수 있고，판사 스스로 소송 회피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상소심에서의 판결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181)}$

177）members of federal advisory committees
178）이에 대해 미 로비스트 연맹（American League of Lobbyists）의 반발이 있었으나 오바마 정권은 이 정책으로 로비스트의 능력을 짓밟으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 대표들이 정부 조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http：／／www．whitehouse．gov／assets／documents／Signed＿Lobbyist＿Response＿Letter＿（10－21－09）．pdf
179）정봉진，「미국법조윤리상 판사의 일방적 의사교환의 금지」，『동아법학』제42호，（2008）， $\mathrm{pp} .2-32$ 참조．
180） 1924 Model Code Canon 17， 1972 Model Code Canon 3（A）（4）， 1990 Model Code Canon 3（B）（4）．
181） 1990 Model Code Canon 3（E）（1）， 2007 Model Code Rule 2．11（A）； 1990 Model Code Canon 3（D）（1）， 2007 Model Code Rule 2．15（A）

이러한 사법절차사의 일방적 접촉금지의 원칙은 행정재결절차에도 적용되고 있다．${ }^{182 \text { ）미국행정절차법（APA）는＇일방적 접촉＇이란＇모든 당 }}$ 사자에게 상당한 사전고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공적 기록에 의하지 않은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사전달’이라고 정의하고，183）행정법심판 관을 포함한 청문주재관은 사전고지에 의해 당사자에게 참여기회를 부 여한 후가 아닌 한 당해 사건의 사실에 관하여 어떠한 사람 또는 당사 자의 의견을 들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다．${ }^{184)}$ 이러한 금지원칙은 규칙제정절차 외의 모든 기록에 근거한 절차로 확대되었는데，＇당사 자＇${ }^{185)}$ 외의＇행정기관 외부의 이해관계인＇186）에게도 적용되며，행정법 심판관뿐 아니라 행정기관 자체 및 ‘재결절차의 판단에 관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공직자＇187）에도 적용되며 사실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 밖의 이해관계인에 의한 모든 접촉에 적용된다．${ }^{188)}$

## 2．금품수수금지

미국에서의 공무원의 금품수수금지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의 뇌 물죄에 상응하는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뇌물죄 및 불법사례 수수행 위（Illegal Gratuity）에 관하여 주로 기술하기로 한다．그 밖에 이해충돌 과도 관련되지만 특정 사안 관련 직무에 있어 일정한 보상이 수반되 는 경우를 벌하는＇허가받지 않은 보상＇에 대하여도 다루기로 한다．

[^12]
## （1）뇌물죄의 연혁

미국에서의 뇌물죄는 세관공무원의 허위통관 묵인행위와 사법부 재 판관들의 법원에서의 유리한 결정을 대가로 한 경제적 이득취득의 제 제에서 시작하였으며，이에 대한 발전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853년：뇌물죄의 처벌 대상을 연방공무원으로 확대189）
－1863년：물품통관 관여자 모두를 대가와 관계없이 단순 경제적 이득제공행위（illegal gratuity）자체를 처벌190）
－1961년：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련된 법률을 하나의 통합된 형사 처벌 법률인「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191）으로 정비

## （2）뇌물죄와 불법사례수수행위

미국의 뇌물죄는 뇌물제공자와 수여자 모두 처벌하며 뇌물과 공무 사이에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를 요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 한 반면，불법 사례수수행위는 공무의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수수를 처벌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대가관계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뇌물죄와 다르나，공무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 는 행위를 전부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 정 공무와의 연관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후술하는 Sun Diamond 기준에 의할 경우 과거 이루어진 공 무에 대한 사례의 경우에는 연관성만 입증되면 불법사례수수에 의해

[^13]처벌이 가능하지만 미래의 공무와 관련될 경우에는 실제로 뇌물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뇌물죄나 불법사 례수수행위는 공무원의 범위 및 제공되는 이익(Thing of Value)에 있 어서는 차이가 없으나, 뇌물죄의 경우 부패의 고의를 요하나 불법사 례수수행위는 공무상의 관련성만을 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양자의 법률효과에 있어서는 뇌물죄의 경우 15 년 이하의 징역 으로 불법사례수수죄에 비하여 엄격하게 벌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 와 독일에 비하여도 상당히 엄한 처벌정도라고 하겠다.
[표 72] 뇌물죄와 불법사례수수행위의 구성요건 및 처벌의 비교

| $\begin{aligned} & \text { 죄 } \\ & \text { 명 } \end{aligned}$ | 주 체 | 객 체 | 고 의 | 행위유형 및 조건 | 처 벌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뇌 } \\ & \text { 물 } \end{aligned}$ 죄 | 공무원, <br> 공무원으로 <br> 선출 또는 <br> 지명된 자, <br> 기타 <br> 정부기관의 <br> 고용인, 공무를 | 유• 무형, | 부패고의 <br> (공무집행에 영향을 미치 거나 영향을 받으려는 의사 | - 이익의 제공, <br> 수수또는약속 <br> - 공무와의 대 가관계 필요 | 15 년 이하의 징 역 또 는 25만 달러 이 하 의 벌 금 또는 수수액 의 3 배 중 더 큰 액수 |
| $\begin{aligned} & \text { 불 } \\ & \text { 법 } \\ & \text { 사 } \\ & \text { 례 } \\ & \text { 수 } \\ & \text { 수 } \end{aligned}$ | 사기업 대표 등 실질 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자 및 이익제공자 또는 제공 약속자 | 경제적 <br> 이익 및 <br> 가치 | 부패의 고의 <br> 불요 | - 이익의 제공, 수수또는약속 <br> - 직접적인 대 가관계 불요 (공무와 연관 성만입증 요) | 2 년 이하 의 징 역 또 는 25 만 달러 이 하의 벌금 (병과 가능) |

(3) 뇌물죄 ${ }^{192)}$

1) 주체: 공무원 또는 증인(Public Official \& Witness)

뇌물죄의 주체는 의원, 미합중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 공무원으로 선출되었거나 지명된 자 또는 지명될 것으로 공 식적으로 발표된 자, 재판, 상원, 하원, 기타 정부기관, 위원회 등 증 언과 증거를 청취할 것이 법으로 보장된 청문회 또는 기타 절차에서 증언할 증인을 포함한다.

뇌물죄에서의 '공무'는 해당 공무원의 공적인 업무에 속하여 업무로 처리되거나 사건으로 계류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문제, 원인, 소송, 절차 또는 논란에 대한 결정, 행동을 포함한다. ${ }^{193)}$

정당한 권한 존재여부에 관하여, 미국 법원은 공무원의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해왔으며, 실제 공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 라 뇌물공여자가 직무의 범위를 잘못 알았거나 수뢰자가 자신의 직무 를 과장한 경우에도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다.194) 공무원의 범위는 법 규정으로 한정되지 않고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으므로 다음의 경우 와 같이 당해 사건에서 행해지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공무원으로 해 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의 빌딩서비스관리자195)
- 정부의 주택보조금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비영리기업 대표196)

192) 201 of Title 18 of the U.S. Code.
193) 18 U.S.C. 201(a)(3).
194) Unites States v. Gjieli, 717 F.2d 968, 973-74(6th Cir. 1983).
195) Michael R. Romano, 앞의 논문, 350.
196) Dixon v. United States, 465 U.S. 482(1984).

## 2) 객체: 가치 있는 것의 제공, 제공의사, 또는 약속

(1) 유형•무형의 이익

뇌물죄에서의 '뇌물'은 모든 가치있는 것(Thing of value)을 의미하며 사람이 주관적으로 이익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모든 유형적 가치있는 물건 또는 이익을 포함하며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 유무를 불문한 다.197)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에 의해 매우 폭넓게 해석되어 왔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도 뇌물에 해당한다.

- 여행경비, 성교행위, 주식, 보험증권, 대출편의 등 유형적인 것
- 장래의 고용약속
(2) 전달시기

이익의 전달 시기는 직무수행 전•후를 불문하나, ${ }^{198)}$ 고의 등 뇌물 행위의 발생은 공무집행 이전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무집행 전 - 후를 불문하는 불법사례수수행위와 구별된다.

## 3) 고 의

뇌물죄의 성립요건으로는 부패의 고의(corrupt intent), 즉, 이익제공 자가 공무집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익을 제공받는 자가 영향을 받으 려는 의사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특정 공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주거 나 받으려는 구체적 고의를 말한다.199) 그러므로 막연히 돈을 주면 나 중에 호의적인 업무처리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만 가지고 제공하는 경우 에는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4]4) 처 벌

1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 만 달러 또는 뇌물액의 3 배 중 더 큰 액 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200)

## (4) 불법 사례수수행위 ${ }^{201)}$

## 1) 구성요건

8 U.S.C, 201(c)는 현재, 과거, 미래의 공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를 위 하거나 공무 때문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사례를 제공하 거나 제공받는 행위, 제공의사 또는 약속한 경우 이를 불법사례수수 행위(Illegal Gratuity)로서 벌하고 있다.

불법사례수수행위는 뇌물죄에서와 같이 특정 공무의 대가를 위한 부패의 고의를 요하지 않으며, 해당 공무를 위해 또는 공무 때문에 사례가 제공되거나 제공의사 또는 제공의 약속을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였다고 하더 라도 그 행해진 공무와 관련하여 사례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면 본 죄에 해당하여 처벌된다.

본 죄가 뇌물죄와 같이 뇌물수수와 공무집행간의 대가관계를 요하 지 않고서도 처벌하는 이유는 공직자의 호의를 사서 차후 공무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뇌물죄가 현재 또는 장래의 공무를 위해 그 대가로 이익을 제 공하는 것과 달리 불법 사례수수행위는 과거의 공무에 대해 사례를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한다.202) 불법사례가 공무원의 결정 또는 공무집

[^15]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이미 행해진 공무에 대한 보상 또는 사례조로 제공된 행위가 있으면 족하다.
2) 고 의

201(c)(1)에 따라 불법 사례의 수수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사는 공무를 위해 또는 공무 때문에 사례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 면 되며, 별도로 부패의 고의와 대가성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불법사례수수죄는 로비스트들이 공무원에게 장래의 공무집 행의 편의를 위해 여행경비, 식사제공 등 사소한 사례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대가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무원에게 사례를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 며, 과거의 행위에 대한 사례의 경우 그 행해진 공무와 사례행위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논란이 되는 것은 향후 행해질 공무와 관련하여 어디까지 불법사례수수행위를 인정할 것인가 의 문제이다. 미국 대법원은 Sun-Diamond사건에서, 제공된 사례 또는 이익이 특정 공무와 일정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단순히 공 무의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또는 장래에 불특정 공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것일 때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203)

| Sun Diamond 판례 |
| :---: |
| United States v. Sun-Diamond Growers of Cal., 526 U.S. 398, 406(1999). |
| 본 판례는 농림부장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에스피(Mike Espy)에게 농축산물 <br> 제공회사인 피고회사가 특정 이해 사안이 불거지기도 전에 선물과 여행경비 l |

official, former public official, or person selected to be a public official, for or because of any official act performed or to be performed by such public official, former public official, or person selected to be a public official; or...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oth.
203) United States v. Sun-Diamond Growers of Cal., 526 U.S. 398, 406(1999).

등 합계 5900 달러 상당의 사례를 한 사안에서 사례의 동기가 된 두 가지 사 안이 있었지만 연방검사는 그 사안 때문에 사례가 제공된 것을 입증하는 대 신에, 마이크 에스피의 장관직 때문에 향후 피고인들의 업무에 호의를 제공 받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대법원은 단순히 향후의 호 의를 바라고 직위 때문에 제공된 사례금은 불법사례수수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동 판결은 단지 공무원의 직위에 있다고 해서 받은 작은 사례를 모두 본죄에 의해 처벌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04) 그러나 Sun-Diamond 판결이 장래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제공하는 이익 또는 사례가 불법 사례수수행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 다. Sun-Diamond 판결 이후 여러 연방항소심에서는 이미 행해진 또는 미래의 행해질 구체적 공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사례행위만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 고 판시한 반면, 워싱턴 D.C. 연방 항소심에서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 여 특정 행위를 하거나 회피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입증된다면 본 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 }^{205)}$ 결국 앞으로 행해질 직무가 어느 정도 구체 화되어야 본 죄에 해당하는 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206)

## 3) 처 벌

불법사례수수행위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 만 달러 이 하의 벌금 또는 징역 및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5) 허용되는 금품 등 수수

공무원 윤리규정(5C.F.R.2635.202)은 금지된 제공처(prohibited Source)나 공무상 지위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선물을 요구 또는 수수할 수 없 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하의 식사, 선물과 행사 상 제공받는 식사, 여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207) 또한 행정부 공무원이 공무관련 행사의
204) Sun Diamond, 526 U.S. at 410.
205) United States v. Schaffer, 183 F. 3d 833, 842(D.C. Cir. 1999).
206) Charles B. Klein, What Exactly is an Unlawful Gratuity after United States v. Sun -Diamond Growers?, 68 Geo. Wash. L. Rev. 116, 132(1999).
207) 5 C.F.R. 2635(204(a)-(i)까지의 예외 중 대표적인 것만 설명하였다.

참석을 위해 비연방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여비 또한 허용되고 있다.
[표 73] 허용되는 식사, 선물 등의 제공, 수수행위

| 해당조문 | 허용되는 행위 |
| :---: | :---: |
| 5. C.F.R. <br> 2635.204(a) | 20달러 이하의 선물(1년 합계 50 달러 미만), 주식, 증권, |
| 예금 증서 등은 제외 |  |
| 5. C.F.R. <br> 2635.204(g) | 정치행위에 참여하는 행위로 인해 받는 식사, 교통, |
| 숙박 및 사례금 |  |

[표 74] 행정부 공무원의 허용되는 여행경비 수수

| 해당조문 | 규 정 |
| :---: | :---: |
|  | 정부기관의 공무와 관련된 회의, 기타 컨퍼런스 등에 참석하 <br> 31 U.S.C. <br> 는 공무원을 위해 정부기관이 여행경비를 비정부기관으로부터 <br> 받는 것을 허용(그러나 공무원 개인이 직접 경비를 수수하거 <br> 나 여행경비를 배상받는 행위를 금지) |
| 5 U.S.C, | 외국정부로부터 해외 여행경비 수수 |
| 7342 |  |$\quad$| 5. U.S.C. |
| :---: |
| 4111 |

## 3. 이해충돌방지

## (1) 공직윤리규정

## 1) 재산공개

미국「정부윤리법」상의 재산공개규정은 공직수행상의 이해충돌을 방 지하고, 재산형성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사람이 정부고위관료로 진출하

는 것을 막도록 규정하고 있다.208) 적용대상은 입법, 사법, 행정부 고 위공무원 모두209) 해당되며, 공개 내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더욱 구 체적이고 광범위하며,210)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 신고자 본인,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의 1000 달러가 넘는 재산
- 200 달러가 넘는 연방봉급외의 소득
- 가족, 친지이외의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받은 선물이 335달러가 넘거나 현금과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지불한 여행경비 등


## 2) 제 척

미국「정부윤리법」은 공무원이 된 후 1 년 이내에 자신의 전 고용인 이었던 사람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11)}$

## 3) 사적 이해관계 있는 직무수행

오바마 대통령령은 공무원이 되는 자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을 규정 하고 있는데, 내정된 행정부 공무원은 2 년간 자신들의 전 고용인, 고 객들과 직접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관계된 특정 거래 또는 계약을 하 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여야 하며,212) 고위 행정부공무원들로 하여금 퇴임 2년간 이전 고용관계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과 대통령 재임시절 동안은 로비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 ${ }^{213)}$ 그러 나 이 규정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퇴임한 정부공무원에게는 강 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208)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Pub. L. No. 95-521, 92 Stat. 1824, amended by Ethics Reform Act of 1989, Pub. L. No. 101-194, 103 Stat. 1716.
209) 대통령후보 및 지명자, 의원내정자, GS-15레벨 이상의 고위공무원, 백악관 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210) 예컨대, 5 C.F.R. 2634-2635(2010)참조.
211) 5 C.F.R. 2635, 502(a)(2010). 이를 "공정성 원칙(Impartiality Rule)"이라고 규정되 어 있다. 물론, 이 규정은 기간이 1 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전 고용인이 당사자가 아
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212) Exec. Order No. 13,490, 74 Fed. Reg. 4673 (Jan. 21, 2009).
213) Exec. Order No. 13,490, 74 Fed. Reg. 4673 (Jan. 21, 2009)("회전문 인사 금지규정")

## (2) 형사처벌행위 ${ }^{214}$

## 1) 허가받지 않은 보상

허가받지 않은 보상(Unauthorized Compensation, U.S.C.§203)을 금하는 규정은 공무원이 공적 직위를 이용하여 미국정부가 당사자가 되거나 직 접적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사안(Special Matter)과 관련하여 타인을 위한 대리행위를 함으로써 보상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 리 업무를 하거나 장래에 하도록 함으로써 보상하는 자를 처벌한다.
‘특정사안'은 결정, 계약(Contract), 주장(Claim), 논의(Controversy), 기 소(Charge), 체포(arrest) 등 일반적으로 정부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사안 이면 되나 반드시 구체적이고 특정될 필요는 없다.215)

공무원이 대리 업무와 관련하여 보상을 요구, 희망, 수수, 동의를 하 거나 공무원이 알면서 수수, 약속하거나 제공될 것을 요한다. 보상의 대상은 현금뿐만 아니라 비행기 티켓, 여행경비 등 일체의 가치 있는 것(Thing of Value)이면 족하다. 뇌물죄와 같이 부패고의를 요하지 않 고 허가 받지 않은 보상을 수수함으로써 범죄가 성립한다.216)

고유의미의 대리행위 뿐만 아니라 대리인, 변호사 등이 하는 법률 자문 등 어떤 형태로든 타인을 대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217)}$ 그러나
214) 이에 관하여는, 「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1962)」, 18 USC Chapter11, Bribery, Graft, And Conflicts of Interest, §§201-227 참조.
215) 상원의원이 자신이 일정 지분을 가진 타이타늄 광산회사를 위해 투자자를 만나 면서 정부계약을 따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계약이 특정된 것이 아니지만 본 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United States v Williams 705 F.2d 603,609(2d. Cir.(1983).
216) 퇴역한 전직 공군장교가 민간 기업에 취업하여 기업대표와 함께 계약과 관련하 여 공군관계자를 만나는 경우 의사결정에서 대표를 구속하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회의에도 단순 참석만 한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활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United States v. Evans, 572 F. 2d 455, 481(5th Cir. 1978); United States v. Alexandra, 675 F. 2d 34, 43(2d Cir. 1982).
217) Ethics Reform Act, $\S 402$

자신의 부모, 자식, 배우자 등 가족과 자신이 후견인 등 관리자의 지위 에 있는 경우에는 보상 유무를 떠나 대리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218)

## 2) 회전문규정

회전문 규정(Revolving Statute)은 법에 규정된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 타인을 대리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었고 미국정부가 상당한 이해 관계가 있는 특정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으로 자신이 근무하였 던 직장 또는 직원을 만나는 행위를 하는 대리인, 변호인 기타 대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금한다. 타인을 대리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독립적인 대리권한 또는 실질적으로 본인을 구속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 }^{219) 220)}$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1989년 「윤리개혁법」221)에서 입법부 소속 공 무원으로 확대되었다. 회전문규정은 전직 공무원이 공적인 책임을 지 고 관여하였던 '특정 사안'에 대해 퇴직 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 특정 사안은 "수사, 신청, 재판, 결정에 대한 요청, 법 또는 규칙제정, 계약, 논란, 주장, 기소, 체포, 기타 사법절차 등"의 행위를 말한다.222)223)

## 3)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미국 연방법 Section 208은 행정부 공무원이나 피고용자, 국책은행 직원 등이 자신 또는 자신의 배우자, 파트너,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
218) 18 U.S.C. 203(d).
219) United States v. Schlatenbrand, 930 F. 2d 1554, 1561(11th Cir. 1991).
220) United States v. Schaltenbrand, 930 F.2d 1554(11th Cir. 1991).
221) the Ethics Reform Act of 1989
222) 정부의 입찰 담당 공무원이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정부의 입찰에 참여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직접 담당하였던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라면 특정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CACI, Inc-Federal v. United States, 719 2d 1567(Fed. Cir. 1983).
223) 물품구매공무원이 퇴임 후 자신이 공무원으로 있을 당시 협상이 진행 중이던 계약에 타인을 대리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였던 행위에 해당한다. Robert E. Derecktor of Rhode Island, Inc. v. United States, 762 F. Supp. 1019(D.R.I.1991).

관이나 단체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특정 사안에 이를 알고도 개인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224)

특정사안의 범위, 예외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정부윤리규정인 연 방규칙(5 C.F.R. §2640. 101 이하)에 규정하고 있다.

연방공무원 또는 직원이 본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또는 본인 이 이사, 관리자 등으로 있는 기업, 기타 특정인과의 거래, 협상 등을 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모두 포함한다. 동 규정은 본 질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만 미치지만 연방법(18 U.S.C.§2)에 따라 교사, 방조 등 공범의 경우에는 민간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225)

그러나 해당 직원이 공무의 염결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인사권자로부터 이해갈등행위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 았거나, 정부윤리국 국장(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Government Ethics)이 예외로 규정한 특정 이해관계 행위, 정부 자문회의 소속의 특정 공무 원 등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226)

특정사안은 구체적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평의(deliberation), 결 정(decision), 행동(action)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무원의 순수 절 차적인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227)228)

경제적 이해관계가 실제 있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는 특정 사안의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해득실이 있을 실제적인 가능성 이 있음을 요하고 막연한 추측만 있었던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229) 그리고

[^16]이에 관여한 공무원의 행위는 협상(negotiation) 또는 주선(arrangement)의 경우 비교적 넓게 해석되고 있다.230)

## 4) 공무 외 소득 금지규정

미국 연방법 Section 209는 연방행정부, 콜롬비아지구 공무원 등이 공무로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받는 보수일체를 금지한다. 뇌물죄 와는 달리 고의를 요하지 않으며 그 목적을 불문하고 공무서비스로 인 해 일체의 보수를 금지하는 것이다.231) 따라서 제공되는 보수는 그 대 상이 오로지 공무원인 경우에 한정되며 공무원 임명이 예정된 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232)}$ 본 죄는 또한 공무 외 보수를 모두 금지하는 것 은 아니며 제공된 공무서비스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 5) 처 벌

허가 받지 않은 보상행위(U.S.C. §203), 퇴직 후 활동 금지사항 위반 (U.S.C. §207),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U.S.C. §208), 공무 외 소득 금지규정 위반(U.S.C. §209)의 처벌은 악의적(Willful) 행 위인 경우 5 년 이하, 보통의 경우에는 1 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관할 지방법원에 미화 5 만 달러 이내에서 또는 수 수, 약속된 보상금중 높은 액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233)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234)

[^17][표 75] U.S.C. §203, §207, §208, §209조상의 금지되는 이해충돌행위와 처벌

| 죄 명 | 주 체 | 행위유형 | 처 벌 |
| :---: | :---: | :---: | :---: |
| 허가받지 않은 보상 (제203조) | 모든 연방공무원 <br> 및 제공자 | 정부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특정인을 대리 또는 자 문행위를 하고 받는 보상행위 | 1년 이하의 <br> 징역 또는 <br> 5 만 달러 <br> 이하의 벌금 <br> (병과 가능) <br> (악의적인 <br> 경우 5년 <br> 이하의 징역) |
| 회전문 규정 (제207조) | 모든 연방 공무원 | - 영구적 금지사항 <br> 퇴직 전 관여했던 직접적인 사안에 대하여 퇴직 후 영향 을 끼칠 의도로 정부 공무원 을 접촉, 대화하는 행위 <br> - 한시적 금지사항 <br> 퇴직 전 1 년 이내에 자신의 직무범위에 속했던 사안에 관 하여 2년 이내 관여 금지 |  |
|  | 연방고위행정부 공무원 | 타인을 대리하여 1년 이내에 근무했던 국, 청 직원과 대화, 이메일 등 모든 접촉행위 |  |
|  | 최고위연방 행정부 공무원 | 2년간 모든 행정부 고위공무원 을 대상으로 로비활동 금지 |  |
|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208조) | 연방공무원, <br> 피고용인, <br> 국책은행 직원 <br> * 민간인(공범) | 본인, 가족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 가 있는 사안에 대한 개입 금지 |  |
| 공무 외 <br> 소득금지 <br> (제209조) | 연방공무원 및 보수제공자 | 공무서비스로 인해 받는 일체의 보수 |  |

위의 이익충돌방지규정 중 선물，식사，오락 등을 포함한 가치 있는 것의 제공자 및 수수한 자 모두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은 제 201 조의 뇌물죄，제 203 조의 허가받지 않은 보상규정，제 209 조의 공무 외 소득 금지규정이다．제 207 조의 회전문 규정과 제 208 조의 경제적 이해관계 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제 208 조의 경우 행위에 가담하는 민간인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제 6 절 캐나다

캐나다에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주요 법으로는 형법 및 「이해충돌법」235）과 「로비법」236）을 들 수 있다．우리나라 법률안의 내용구성에 따라 나누어 본다면，주로 부정청탁금지에 관하여는「로 비법」으로，금품수수금지에 관하여는 형법으로，이해충돌방지에 관하 여는「이해충돌법」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37)}$

## 1．부정청탁금지

## （1）캐나다「로비법」

캐나다에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청원의 권리의 차원에서＂정부에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의 문제＂238）라고 보 고，「로비법」을 통해 이에 대한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반면 투명 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하고 있다．

235）R．S．C．2006，c．9，s．2．
236）R．S．C．，1985，c． 44 （4th Supp．）．
237）본 절의 관련 캐나다 법제에 관하여는，주로，윤혜선，＂캐나다의 부정청탁 및 이 해충돌방지 관련법＂，「주요 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4차 워 크숍 자료집」 발제문，한국법제연구원，（2012．7．4），pp．9－37．을 참조 및 인용하며，이 하의 구체적인 인용표시는 생략하기로 함．
238）「로비법」전문．

## 1）로비의 정의

‘로비’란 일반적으로＂특정한 주장을 찬성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입법자 또는 기타 공직자와 접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캐나다「로비법」상 정의에 따르면，＂보수를 받고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대리하는 자가 입법제안의 개발，의회에 법안•결의안의 제출，개정，가결 또는 부결，시행령의 재•개정，공공정책 및 계획의 수립 및 개발，보조 금 등 재정적 이익의 부여 및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공직자와 접촉하거 나 다른 사람과 공직자의 면담을 주선하는 행위＂239）라고 하고 있다．

## 2）「로비법」의 연혁

캐나다는 1989년 처음으로「로비스트 등록법」을 제정한 후，2003년， 2006년 개정이 있었으며，2006년 개정으로 「로비법」으로 법명이 변경 되었으며，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6］캐나다의 로비관련 입법연혁

| $\begin{aligned} & \text { 개정 } \\ & \text { 년도 } \end{aligned}$ | 제•개정 법 | 주요 내용 |
| :---: | :---: | :---: |
| $\begin{aligned} & 1989 . \\ & 9.30 . \end{aligned}$ | 「로비스트 <br> 등록법」 <br> 제정 | －로비스트의 활동의 투명성 확보 및 정부에 대 한 접근 보장 <br> －공공 등록부를 설치，보수를 받는 로비스트의 등록과 일정한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 함 <br> －로비스트나 로비 방식에 대한 규제는 시도하지 않음 |
| 2003 | 개정 | －등록요건 개정，조사 및 집행 권한 강화 등 |
| 2006 | 「연방책임법，에 의한 전면 개정 | －「로비법」으로 법명 변경 <br> －등록시스템을 통한 수동적인 감시에서 적극적 인 로비스트의 활동 규제체계로의 전환 |

[^18]| 개정 <br> 년도 | 제 •개정 법 | 주요 내용 |
| :--- | :--- | :--- |
|  |  | - 조직 개편: 독립성 강화, 조사 • 보고 권한 강화 <br> - 로비등록사무국(Office of the Registrar of Lobbyists) <br> 에서 로비사무국(Office of Commissioner of Lob- <br> bying)으로 변경 |
| - 성공수당(contingent fee)의 수령과 지급 금지 |  |  |
| - 특정 공직자: 퇴직 후 5년간 로비활동 금지 |  |  |
| - 로비스트의 공개요건 강화 |  |  |
| - 과태료 증가 |  |  |
| - 약식기소를 위한 시효 확대 |  |  |

## 3) 조 직

캐나다에서 로비관련업무를 다루는 국가조직으로서 로비위원회 및 동 사무국이 있다. ${ }^{240)}$ 조직구성과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으 며, 로비스트 등록부를 관리하고 행동강령준수를 위한 심사•조사권 한을 가진다.
[표 77] 캐나다의 로비위원회(Commissioner of Lobbying)의 조직과 임무

|  | Commissioner of Lobbying |
| :---: | :--- |
| 목 표 | 연방공자에 대한 로비활동의 투명성 보장 |
| 조직구성 | - Deputy Commissioner <br> - 등록 및 고객 서비스국 <br> - 조사국 |
|  | - 로비스트등록부 관리 <br> - 로비법의 요건에 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 <br> 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br> - 로비법과 로비스트행동강령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심 <br> 사와 조사 실시 |

[^19]
## 4）로비 법령

로비에 관하여는 현재，2006년 전면개정된「로비법」이 적용되며，이 에 따르는 시행령으로서，「지명된 공직자 규칙241）」과「로비스트 등록 규칙242）」이 있다．

2006년「로비법」의 적용대상인 로비스트의 유형과 주요 의무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8］캐나다의 2006년「로비법」의 내용

|  | 로비법 |
| :---: | :--- |
| 적용범위 | 제3자를 대신하여 공직자와 접촉하는 보수 받는 로비스트에만 <br> 적용됨 |
| 로비스트 |  |
| 의 종류 | －컨설턴트 로비스트 ：개인 로비스트 <br> －기업 인하우스 로비스트 ：영리를 목적으로 상업활동을 하는 <br> －단체 인하우스 로비스트 ：비영리 단체의 임원 |
| 의 무 | －등록의무 <br> －로비스트 수당관련제한 <br> －퇴직 ‘특정 공직자＇로비활동 금지： 5 년간 <br> －로비스트 행동강령 준수의무 |

적용대상인 로비스트가 위 법에 의한 의무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 우 수반되는 제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표 79］2006년「로비법」의 위반제재의 구체적 내용

| 위반제제 |  | 구성요건 | 법률효과 |
| :---: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유형 |  |
|  | 로비스트 | 미등록，등록시 허위 오인 사실 또 는 문서포함 | －약식기소에 의 해 |
|  | 전 현직 <br> 특정 공직자 | Commissioner가 확인을 요청한 답변 에 허위 오인 사실 또는 문서 포함 | 벌금 <br> －정식기소에 의 해 $-200,000 \$ \text { 이하 }$ <br> 벌금 <br> －2년 이하 징역 （병과） |
|  | 모든 <br> 사람 | －로비법 및 동법 시행령 위반 행 위 <br> －다만，등록 의무 및 강령 준수 의무 예외 | －약식기소에 의 해 $-50,000 \$$ 이하 벌금 |
|  | 모든 <br> 사람 | 로비법 위반행위 <br> （공익적 필요성，범죄의 중대성， 2 번 이상 위반 등 고려） | 최대 2년간 로비 <br> 활동 금지 공표 |

## 5）로비스트 행동강령

「로비법」은 로비법의 대상인 공직자의 청렴성，로비스트의 전문성을 유지하고，로비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로비활동 관련자들 에게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로비의 의뢰인에게도 로비법 과 동 행동강령상의 의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243）

243）로비법 제 3 조．
[표 80]「로비법」의 로비스트 행동강령의 구체적 내용

| 로비스트 행동강령 |  |  |
| :---: | :---: | :---: |
| 원 칙 |  | 청렴과 정직, 개방성, 전문성 |
| 투명성 | 제1조 | - 로비대상 공직자에게 의뢰인 및 로비 목적 공개 |
|  | 제2조 | - 공직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
|  | 제3조 | - 의뢰인에게 로비법과 로비스트 행동 강령상의 의무 공개 |
| 비밀 <br> 유지 | 제4조 | - 법적요구나 의뢰인의 동의 없이 비밀정보공개 금지 |
|  | 제5조 | - 의뢰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로비활동 중에 획득한 비밀이나 내부자 정보의 사용 금지 |
| 이해 <br> 충돌 <br> 방지 | 제6조 | -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충돌하거나 경쟁적인 이해의 대리 금지 |
|  | 제7조 | - 로비행위 개시 전에, 이행충돌관계를 설명하였으며 각 의뢰인에게 동의를 받았음을 알려야 함 |
|  | 제 8 조 | -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활동 을 제안하거나 함으로써 공직자에게 이해충돌의 상황 이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

## 2. 금품수수금지

캐나다에서의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금하는 법제는 별도의 법에 의 하기보다는 주로 형법상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공직자 의 일정한 직무상 행위에 대한 대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뇌물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81] 캐나다 「형법」상의 금품수수금지 관련 규정의 구성요건과 법률효과

| 구성요건 |  | 법률효과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유형 |  |
| 일반사인 | 공직자나 공직자의 편의를 위하여 타인에게 그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미 이루어진 또는 앞으로 이루어질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대가로, 직 • 간접적으로, 비밀리에(corruptly) 금전, 가치 있는 약인, 공직, 자리, 취업을 증여 또는 증여를 약속함 | 기소에 의해 - 14년 <br> 이하 징역 |
| 일반사인 | 직 • 간접적으로 <br> 공직자나 공직자의 가족 또는 공직자의 편의를 위하여 타인에게 <br> - 정부와의 사업 <br> - 정부에 대한 채권, 특혜에 대하여 공직자가 협 력, 지원, 영향력 행사, 작위 부작위(실제하거 나 할 수 있는지 여부 불문)에 대한 대가로 대출, 보상, 이익, 편의 등의 증여, 약속, 또는 증여 또는 증여 약속 동의 | 기소에 의해 <br> -5년 이하 징역 |
| 사법부 공직자, 연방의회 의원, 주의회 의원 | 이미 행한 또는 앞으로 행할 작위 또는 부작위 에 대한 대가로, <br> 직간접적으로, <br> 비밀리에(corruptly) <br> 금전, 가치 있는 약인, 공직, 자리, 취업 | 기소에 의해 <br> - 14년 <br> 이하 징역 |
| 공직자 | 직 - 간접적으로, <br> - 정부와의 사업 <br> - 정부에 대한 채권, 특혜, 협력, 지원, 영향력 행사, 작위•부작위(실제하거나 할 수 있는지 여부 불문)에 대한 대가로 대출, 보상, 이익, 편의 등 요구, 수수, 제안, 수수 동의 | 기소에 의해 <br> -5년 징역 |

## 3．이해충돌방지

캐나다에서의 이해충돌과 관련 된 법으로는 「이해충돌법」이 있으며， 별도로 하원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하원 구성원의 이해충돌 강령」244） 이 있다．
（1）조 직

캐나다에서 공무원의 이해충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조직은 이해충돌과 윤리위원회245）와 동 사무국246）이 있다．이 위원회는 1）「이해 충돌법」 및 「하원 구성원의 이해충돌 강령」을 집행하고，2）연방총리 에게 이해충돌 및 윤리문제에 관한 비밀자문을 제공한다．
（2）「이해충돌법（Conflict of Interest Act）」
캐나다 「이해충돌법」은 2006년 「연방책임법」 제2조에 의하여 연방 총리가 제정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및 퇴직 후 취업강령을 「이해충돌 법（Conflict of Interest Act）」으로 성문화하였다．「이해충돌법」은 의무규 정（법 제 5 조～제 18 조）과 준수조치（법 제 21 조～제 16 조）로 나누어 규정되 고 있으며，의무규정과는 달리 준수조치는 위반시 제재가 따른다．

## 1）＇이해충돌＇의 정의

동 법상의＇이해충돌＇에 관한 정의를 보면，＂공직자가 그의 사익 또 는 그의 친척이나 친구의 사익을 조장하거나 또는 타인의 사익을 부 당하게 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 권한，의무 또는 기능 을 행사하는 경우＂를 뜻한다．${ }^{247)}$

244）Conflict of Interest Code for Members of the House of Commons．
245）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er
246）Office of the 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er
247）「이해충돌법」 제4조．

## 2) 의무규정

[표 82] 「이해충돌법」의 이해충돌방지 의무 규정

|  | 행위유형 | 관련 법안 |
| :---: | :--- | :---: |
| 조문 |  |  |


|  | 행위유형 | 관련 법안 <br> 조문 |
| :---: | :---: | :---: |
| 보고대상 <br> 공직자의 <br> 금지행위 | 기업이나 조직의 이사, 임원이 되거나 그 직을 유지하는 행위, 유급 자문활동을 하는 행위 등 (제15조) | 외부활동의 |
|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 | 공직자는 위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그의 지 위를 다른 사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 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 (안 제16조) |
| 계약 등 체결 금지 |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진 공직자는 그의 공적 권 한, 의무 및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의 배우 자, 사실혼배우자, 자녀, 형제 또는 부모와 계약 을 체결하거나 고용관계를 맺어서는 아니 된다. | 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안 제18조) |
| 투표금지 | 연방정부의 장관, 차관 또는 정무차관은, 상원 이나 하원 의원의 자격으로, 그를 이해충돌의 상황에 있게 하는 사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거 나 투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제2항) |  |
| 겸직계획 및 제의 회피의무 |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겸직 계획 및 제의 회피의무 (제 10 조) |  |
| 선물 및 <br> 기타 이익 <br> 수수금지 | 공적 권한, 의무 내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 해 공직자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합리적으로 보 일 수 있는 선물이나 기타 이익을, 신탁 등으로 부터, 수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제1항) |  |
| 출장금지 | 장 차관, 정무차관, 가족, 장관자문관, 장관보 좌관은 비상업용 전세기 또는 개인 비행기를 이용한 출장을, 공직자로서 요구되거나 또는 예외적인 상황이나 위원장의 사전 승인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목적으로도 수락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  |
| 기 타 | -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기금모금활동 금지 <br> (제16조) <br> - 통제대상자산의 처분 의무 (제17조) |  |


|  | 행위유형 | 관련 법안 <br> 조문 |
| :---: | :---: | :---: |
|  | - 이해충돌법상 공직자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 <br> 한 목적을 가진 행위 금지 (제18조) <br> - 이해충돌법의 준수의무 (제19조) <br> $=$ 공직자의 임명 또는 고용조건 |  |

## 3) 준수조치

[표 83] 「이해충돌법」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준수조치

|  | 행위유형 | 법률효과 |
| :---: | :---: | :---: |
| 기피의무 <br> (제21조) | 공직자는 그가 이해충돌의 상황에 있을 수 있는 사안에 관한 논의, 결정, 토론 내지 투 표를 기피하여야 한다. |  |
| 보고대상공직 자의 재산의 비밀 공개 (제22조) | 모든 자산에 대한 상세와 그 자산의 추정 가치 등을 재산비밀공개보고서에 기재 | (1) $500 \$$ 이하 의 과 태 료 보과 |
| 선물신고 <br> (제23조) | 12 개월 동안 하나의 출처에서 $200 \$$ 이상의 선물을 수령한 때, 그 가치가 $200 \$$ 를 초과 하는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 (2) 위반 고지 <br> 송부 |
| 겸직 제안/ <br> 수락신고 <br> (제24조) | 제안을 받은 날/수락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서면으로 | (3) 과태료 부과시 공표 |
| 보고대상 공직자의 공개선언의무 <br> (제25조) | 기피, 통제대상도 아니며 면제대상도 아닌 자산, $10,000 \$$ 이상의 채무, 외부활동, 출장 |  |


|  | 행위유형 | 법률효과 |
| :---: | :--- | :--- |
| 보고대상 <br> 공직자의 <br> 요약보고서 <br> 제출의무 <br> （제26조） | 통제대상자산248）및 the Commissioner가 청분 <br> 긍한 저분 방식 등을 기재한 요약 보고서 제출 |  |
| 보고대상 <br> 공직자의 통제 <br> 대상 자산의 <br> 처분의무 <br> （제27조） | －공정거래를 통한 매각 |  |

## 제7절 영 국

영국에서는 관료들의 엽관적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20 세기 초에 서부터 이에 대한 입법을 행하여 왔고，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이해 충돌의 사안에 관하여 주로 적용되는 법으로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등을 범죄화하는 「수뢰에 관한 법」249）과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정하는「공무 수행윤리기준」250）이 있다．
그밖에 1994년 설립된 공직생활기준에 관한 상임위원회251）에서 제• 개정하는 하원의원，장관 및 공무원의 행위기준，공무수행관리기준 등 이 있다．252）

248）＇통제대상자산＇이란 자산의 가치가 정부의 결정이나 정책에 의하여 직 간접적으 로 영향을 받는 자산을 말한다．
249）UK Bribery Act．
250）Civil Service Code．
251）standing committee on standards in public life．
252）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Ministerial Code，Civil Service Code， Civil Service Management Code．

## 1．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영국의 경우，단순 부정청탁만을 벌하는 법은 없으며，「수뢰에 관한 법（2010）」253）와 「공무수행윤리기준（2010）」254）이 대가관계 없는 금품 수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 （1）「수뢰에 관한 법」

## 1）금전 기타 이익 수수의 금지255）

영국의 「수뢰에 관한 법」s． 1 case 2는 일반인이 금전•기타 이익의 수 령이 관련 기능이나 직무（a relevant function or activity）의 부적절한 수행 （improper performance）에 해당함을 인지하면서 타인에게 그러한 이익을 제 공•약속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256）또한 s． 2 case 4는 관련 기 능이나 직무의 종사자가 금전•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령할 것을 수 락，또는 수령한 경우，그 수령•수락•요구 자체가 수령자의 관련 기능 이나 업무의 부정한 수행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과하고 있다．${ }^{257)}$
［표 84］「수뢰에 관한 법」의 금품수수금지 관련 규정

| 구성요건 |  | 법률효과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유형 |  |
| 제한 |  |  |
| 없음258） |  |  | | －어느 사람（수령자）이 금 |
| :---: |
| 전적 또는 다른 이익을 |$\quad$ 약식절차（summary conviction）： | 최장 12 개월까지의 징역 또는 |
| :---: |

253）UK Bribery Act．Bribery Act는 공직뿐만 아니라 사기업에도 적용되며 UK 영토 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의 공무원 또는 기업체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매 우 확장적 적용범위를 가지고 있다．즉，UK국민 또는 기업인 한 영국영토 내외를 불문하고 직무관련 금품제공 또는 금품수수 그 자체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는 경 우는 모두 Bribery Act의 적용대상이 된다．
254）Civil Service Code．
255）UK Bribery Act，s． 1 case 2 ，s． 2 case 4.
256）UK Bribery Act，s． 1 case 2.
257）UK Bribery Act，s． 2 case 4.
258）UK Bribery Act，s． 1 case 2.

| 구성요건 |  | 법률효과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유형 |  |
| 제한 없음 | - 요구하거나 수령할 것을 약속하거나 수령하고, <br> - 그 수령, 동의, 또는 요 구 그 자체가 수령자에 의한 관련 업무 또는 기 능의 부정한 수행에 해 당하여 금지 (s.1(2) \&(3)) | 그 조항의 최대액수를 넘지 않는 범위내의 벌금 또는 병 과형 <br> - 정식기소(indictment): 10 년 이 하의 징역 또는 벌금 또는 병과형(s. 11 (1)) |

## 2) 부정한 직무수행의 금지

영국의 「수뢰에 관한 법」은 '관련된 기능 또는 직무(a relevant function or activity)의 부정한 수행(Improper Performance)'은 관련된 기대에 어 긋나게 행하거나 직무 수행에서의 부작위가 '관련된 기대(relevant expectation)'에 대한 정의규정도 두고 있다.(s.4(2))259)

한편, 영국에서의 합리적 사람의 기대 수준에 따른 판단도 부정한 직무수행의 판단기준으로 제시(s.5(1) $)^{260)}$ 되며 외국의 관료에 대한 금 품 기타 이익의 지급시 부정한 직무 수행에 대해서도 명문의 규정이 나 명시적 판결이 없는 경우라면 지역 관습이 아닌 합리적 사람의 기 대 기준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s.5(2)261)).
259) Bribery Act, s. 4 (2) in subsection (1), 'relevant expectation'
(a) in relation to a function or activity when meets condition A or B , means the expectation mentioned in the condition concerned, and (b) in relation to a function or activity when meets condition C , means any expectation as to the manner in which, the reasons for which, the function or activity will be performed that arises from the position of trust mentioned in that condition.
260) Bribery Act, s. 5 Expectation Test
(1) For the purposes of s. $3 \& 4$, the test of what is expected is a test of what a reasonable person in the U.K. would expect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 of the type of function or activity concerned.
261) Bribery Act, s. 5 Expectation Test
（2）「공무수행 윤리기준」262）

모든 공직자에 적용되는「공무수행 윤리기준」 제7조는 공직 수행시 합 리적 판단 또는 성실성에 타협을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모를 선물 등 접대 등의 타인으로부터의 금전적 또는 기타 이익의 수수를 금지한다．${ }^{263)}$

「공무수행 윤리기준」 제 18 조에서는 다른 사람의 위반행위를 본 때에는 이를 상급자 또는 소속관서 담당관에고 보고해야 하며 범죄행위의 증거 를 확보한 때에는 경찰 또는 관련 규제기관에 고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위「공무수행 윤리기준」에는 형벌규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 며，위반 시에는 감봉，정직 등 징계부과 또는 해고가 가능할 수 있다．

## 2．이해충돌방지

## （1）「사기에 관한 법」상의 직위남용 ${ }^{264)}$

한편，영국은 「사기에 관한 법」265）에서 타인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 하기로 되어 있는 지위를＇부정직하게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타 인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사기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266）

이 규정은「수뢰에 관한 법」과 마찬가지로 주체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적 영역뿐 아니라 공적 영역의 업무종사자에게도 적용될
（2）In deciding what such a person would expect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 of a function or activity where the performance is not subject to the law of any part of the U．K，any local custom or practice is to be disregarded unless it is permitted or required by the written law applicable to the country or territory concerned．
262）Civil Service Code，available at http：／／www．civilservice．gov．uk／about／values
263）Civil Service Code 2010，sec．7．＂You must not accept gifts or hospitality or receive other benefits from anyone which might reasonably be seen to compromise your personal judgement or integrity（2nd para．）＂
264）Fraud Act 2006，s．4，abuse of position．
265）Fraud Act 2006.
266）Fraud Act 2006，s． 1 （1）（2），（3），s．4（1）（c）．

수 있으므로，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동 법상의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표 85］「사기에 관한 법」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  | 구성요건 | 법률효과 |
| :---: | :---: | :---: |
|  |  | －약식유죄평결（summary conviction）： |
| 최대 12개월 이하，그 규정의 최다액 |  |  |
| 사 기 |  |  |
| （fraud） |  |  | | 타인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 |  |
| :--- | :--- |
| 하기로 되어 있는 지위267） |  |
| 를 부정직하게 남용하여 사 |  |
| 익을 획득하고 타인에게 해 |  |
| 를 가하는 행위（s．4（1）（c）） | 선택형 또는 병과형 |

（2）「공직수행 윤리기준」268）

또한，징계수단에 의한 행위제재로는 「공직수행 윤리기준」과 「공무 수행 관리기준」이 있는데，이들 기준들은 직무수행상 지득한 정보의 사적 이용을 금하고 있다．269）
［표 86］「공직 수행 윤리기준」의 주요 내용

|  | 구성요건 | 법률효과 |
| :---: | :---: | :---: |
| 제7조 | 공직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여 사적인 <br> 이익을 도모하는 것과 같은 지위 남용을 금지．270） | 행정법적 징계 <br> 의 부과 가능 |

267）위 규정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사적 이익 추구 범 죄화 규정으로 사기업 등 사적 영역에 종사하는 자를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이나，Bribery Act 역시 공직뿐만 아니라 회사 등 사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공직상의 이해충돌에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268）Civil Service Code．
269）Civil Service Code，sec． 7 ．
270）Civil Service Code，sec． 7 You must not misuse your official position，for example

|  | 구성요건 | 법률효과 |
| :---: | :---: | :---: |
| 제9조 | 자신 또는 타인의 개인적 이익 추구라는 부적절한 <br> 영향력에 의해 영향 받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한다．${ }^{271)}$ |  |

## 제 8 절 호 주

## 1．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 （1）관련 법 개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공무원 부패에 대응하는 법제 는 크게 보면，공직자의 윤리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의 대응과 일정한 행위유형을 금하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나눠 볼 수 있다．${ }^{272)}$ 전자의 방 식으로는，「공무수행법 1999」273），「호주 연방 공무수행 가치기준과 연 방 공무수행 행동강령」274）이 있으며，이 법의 이행은 호주 공무수행 청275）산하의 능력보호청장276）의 책임 하에 있으며，이는 주로 이해충 돌방지와 관련된다．후자의 방식으로는，수뢰죄，공금 횡령 등의 공무 원 범죄를 규율하고 있는「1914년 형법」277）과 「1955년 형법전」278）과
by using information acquired in the course of your official duties to further your private interests or those of others（1st para．）
271）sec． 9 You must not be influenced by improper pressures from others or the prospect of personal gain（2nd para．）
272）본 절의 관련 호주 법제에 관하여는，주로，김혜련，＂호주의 부정부패관련 법과 정책＂，「주요 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2차 워크숍 자료집」 발 제문，한국법제연구원，（2012．6．18），pp．7－23을 참조 및 인용하며，이하의 구체적인 인 용표시는 생략하기로 함．
273）Public Services Act 1999.
274）The Australian Public Service Values and the Australian Public Service Code of Conduct．
275）The 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
276）Merit Protection Commissioner．
277）Crimes Act 1914.
278）The Criminal Code Act 1995.

부적절한 공금 유용 관련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는「재정관리•책임 법」279）과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범죄 이득금의 추적，동결，압수에 관한「범죄 이득금법」280）이 있으며，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와 관련된다．

1999년에는 관련법들 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형법전의 전면적 인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281）공무원 범죄에 대하여 보다 확대•강화 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 （2）1999년 형법개정안의 관련 주요 내용

## 1）부당한 요구 ${ }^{282)}$

개정안의 Part 7．5에서는＇영연방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요구＇283）및 ＇영연방 공직자에 의한 부당한 요구＇284）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285） ＇영연방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요구＇는 행위자가 공직자를 협박하여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성립하는데，이 때 행위자의 요구 또는 협박 은 그 공직자의 영연방공무원으로서의 권한 및 어떠한 형태든 그 공 직자자가 영연방 공직상 보유하는 권한에 미치는 영향에 직•간접적 으로 관련되어야 하며，행위자는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초래하거나 공직자가 영연방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 로 행위하였어야 한다．${ }^{286)}$
＇영연방 공직자에 의한 부당한 요구＇는 영연방 공직자가 타인을 협 박하여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성립하는데，이 때 공직자의 요구 또

[^21]는 협박은 공직자의 영연방공무원으로서의 권한 및 어떠한 형태든 공 직자자가 영연방 공직상 보유하는 권한에 미치는 영향에 직•간접적 으로 관련되어야 하며，그 공직자는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초래하거 나 다른 공직자가 영연방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 칠 의도로 행위 하였어야 한다．${ }^{287)}$

여기서＇부당한 요구＇가 성립되기 위한 협박의 범위는 일반적인 협 박의 범위보다 넓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288）

이러한 범죄는 「모범형법전289）」상의＇협박（blackmail）＇죄와 동일하다． 그러나＇협박（blackmail）＇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인에 대한 부당 한 요구의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법안에서 사용되지는 않았으 며，＇부당한 요구（Unwarranted demands）＇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도입되 었다．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12 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290）

## 2）뇌물 증여－수수 ${ }^{291)}$

동 개정안은 외국 공직자에 대한 수뢰가 성립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 다．292）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제공자가 부정하게（dishonestly） 이득을 제공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여기서＇부정하게＇에 해당하는가가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는데，상당히 포괄적이고 유 연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

287）section 139.2 ．
288）김혜련，＂호주의 부정부패관련 법과 정책＂，「주요 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토론 내용，한국법제연구원，（2012．6．18）．
289）The Model Criminal Code．
290）Part 7.5 of Chapter 7，Unwarranted demands，
http：／／www．austlii．edu．au／au／legis／cth／bill＿em／ccafbarob1999515／memo1．html．
291）Bribery and related offences．
292）Criminal Code Amendment Act 1999，Subsection 141．1（1）－（3）．개정안 141．1（1）조는 연방정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뇌물수수에 관한 것이며，개정안 $141.1(2)$ 조는 연 방정부 공직자들에 의한 뇌물수수에 관한 것이다．

또한 제 141．1（2）조는 이익제공자가 공직자가 공무상 직무를 행사함에 있어 그 공직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여기 서 공직자（public officer）는 영연방，국가，영토 내의 공무원을 의미한다．${ }^{293)}$ 수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는데，이는 행위 자체 가 부정할 뿐 아니라，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하기 때문에 절도나 사기와 동일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 3）부정이득 ${ }^{294}$

「모범형법전」295）은 이전의 공직과 사기업 부문에서＇뇌물＇관련법의 차이점을 없앴으며，중범죄에 대하여는 수뢰죄로 다루고，그보다 경미 한 경우 부당이득취득죄로 다루고 있다．

동 개정안은 부정이득과 공직의 남용이 성립하기 위하여 더 완화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즉，검사는 뇌물을 제공한 자가 공직자가 그 의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제공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 지 않으며，단지 제공이 공직자에 영향을 미칠 의도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부정이득행위가 있는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이 따른다．

## 2．이해충돌방지

호주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별도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각종 공무 관련법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규제하고 있다．특히 「연방 공무수행법」296）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해당 공무원들에게 이를 준수해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공직자들은 공 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취하고 실제 적 혹은 명백한 이해충돌을 알려야 하는＇이해충돌 선언의무＇가 있다．

293）commonwealth，state，territory．
294）Corrupting Benefits．
295）The Model Criminal Code．
296）Public Service Act 1998.

## (1) 호주 연방법

1) 「연방 공무수행법」
[표 87] 연방 공무수행법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주요 내용297)

| 관련 법안 조문 | 행위유형 | 내 용 |
| :---: | :---: | :---: |
| 사적이해관계의 직무수행금지 (안 제 15 조, 제25조) | 개인적 관계 |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나 연계에 의해 공정 성을 잃을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 공적 인 결정이나 직무 수행을 피하여야 한다. |
|  | 사적 이해 충돌 | 공직자의 개인적 혹은 이외의 이해 관계 는 스포츠, 사교 모임 혹은 문화적 활동 관련 개인관계를 포함 되며, 가족 성적 관 계이외의 다른 관계들도 포함된다. |
|  | 직 계 <br> 가족의 <br> 이해관계 | 연방 공직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직계 가 족들의 이해가 공직자의 업무 자문 역할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듯이 보이는 경우, 그 들이 알고 있는 직계가족의 개별적, 개인적 이해 관계 또는 관계자들에 대하여 이해충 돌에 관한 선언을 할 것을 동의하여야 한다. |
| 외부활동의 제한 <br> (안 16조) <br> 사업자등과의 <br> 거래제한 <br> (안 제 17 조) | 재정적 <br> 이해충돌 | 공직과 잠재적 이해충돌이 있는 이사직, 주 식보유, 부동산소유, 신탁 등을 포함한다. |
| 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안 제18조) | 공무원 <br> 채용 <br> 과정 | 공무원 취업 지원자들을 채용하는 선발팀 이 지원자/경쟁자들과 이해 충돌 사항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면, 이를 선발팀장에 게 알리고, 이해충돌을 선언하여야 한다. |
| 미공개 정보 <br> 이용 금지 <br> (안 제22조) | 정보 <br> 지위 <br> 유용 | 호주 정부 공직자는 정보나 직책을 그들 의 개인적 이득, 또는 다른 이들에게 이 익을 주기 위하여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

297) Public Service Act 1998.

2）「재정관리•책임법」
［표 88］「재정관리•책임법」상 이해충돌방지 관련 내용298）

| 행위유형 | 내 용 | 관련 법안 조문 |
| :---: | :---: | :---: |
| 공금 | 공금과 국영 자산／재산이 적절하고 온당하게 쓰여 <br> 지는 것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내에서 통제 <br> （상 | 사낙상앙용재산 듬지의 <br>  <br> （반작절한 공금 융용 관련 처벌 사항등 관련） |
| 제20조，제21조） |  |  |

## （2）「빅토리아 주정부법」

빅토리아 주는 주 정부 내 모든 공공 기관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포괄적인 이해 충돌 정책 체계를 수립하였다．「공공 행정법 2004」299）와「빅토리아 주 공무원 행동강령」 및「빅토리아 주 특별 기구소속 공무 원 행동강령」300）에 의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표 89］빅토리아 주정부의 「공공 행정법 2004」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내용

| 관련 법안 조문 | 행위유형 | 내 용 |
| :---: | :---: | :---: |
| 사적이해관계의 <br> 직무수행금지 <br> （안 제15조，제25조） | 개인적 <br> 관계 | 공직자의 가족이나 다른 개인적 관계에 있 <br> 는 이가 어떠한 공무 수행에 이해관계를 <br> 가졌거나 또는 가진 듯 보이는 관계가 있 <br> 을 때 이해충돌에 관하여 선언하여야 한다． |
| 미공개 정보 <br> 이용 금지 <br> （안 제22조） | 정보 지위 <br> 유용 | 공직 이외의 직장 구직시 그들의 공적 지위 <br> 및 직무 수행으로부터 습득한 특수 정보301） <br> 를 부적절하게 유용해서는 안된다． |

298）the 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Act 1997.
299）Public Administration Act 2004.
300）The Code of Conduct for Victorian Public Sector Employees and the Code of Conduct for Victorian Public Sector Employees of Special Bodies．
301）privileged information．

## 제 9 절 일 본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포괄적 법률로서 「국가공무 원윤리법」과 이에 기초하여 제정된 「국가공무원윤리규정」이 있으며， 그밖에 개별 법령에서 적용 영역에서의 직무상의 공정성확보를 위하 여 관련자들의 청탁 및 이익수수 등을 금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형사처벌될 공무원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주로「형법」에 의하고 있다．

## 1．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 （1）일본「형법」상의 뇌물 관련 규정

일본 형법은 제 25 장 독직에 관한 죄，제 197 조 이하에서 수뢰죄，제 3 자뇌물공여죄，수뢰후부정처사죄 등을 규정하여 공직을 남용하는 금 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302)}$
［표 90］일본 법률상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관련 내용303）

| 죄 명 | 구성요건 |  |  |
| :---: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유형 |  |
| 수 뢰 <br> （제197조 제1항） | 공무원 | 직무에 관하여 뇌물 수수，요구，약속 | 5년 이하 <br> 징역 |
| 수탁수뢰 <br> （제197조 제1항） | 공무원 | 직무에 관하여 뇌물 수수，요구，약속 + <br> 창윽 받은 때 | 7년 이하 <br> 징역 |
| 사전수뢰 <br> （제197조 제2항） | 공무원이 <br> 될 자 |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수，요구，약속후 공무원이 된 경우 | 5년 이하 <br> 징역 |

302）본 절의 관련 일본 법제에 관하여는，주로，김현숙，＂일본법의 부정청탁 및 이해 충돌방지 관련법＂，「주요 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3차 워크 숍 자료집」 발제문，한국법제연구원，（2012．6．26），pp．39－85．을 참조 및 인용하며，이 하의 구체적인 인용표시는 생략하기로 함．
303）일본 「형법」，（1912．4．24，법률 제 45 호로 제정，2011．6．24，법률 제 74 호로 최종개정）．

| 죄 명 | 구성요건 |  | 법률효과 |
| :---: | :---: | :---: | :---: |
|  | 행위주체 | 행위유형 |  |
| 제 3 자 뇌물공여 （제197조의 2） | 공무원 |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 공여，공여요구，약속 | 5년 이하 징역 |
| $\begin{gathered} \text { 가중수뢰 } \\ \text { (제197조의3 } \end{gathered}$ <br> 제1항） | 공무원 |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 지 아니한 때 | 1년 이상 유기징역 |
| $\begin{gathered} \text { 가중수뢰 } \\ \text { (제197조의3 } \\ \text { 제2항) } \end{gathered}$ | 공무원 |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 위를 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뇌물을 수 수，요구，약속，제 3 자에 공여，요구，약속 |  |
| $\begin{gathered} \text { 사후수뢰 } \\ \text { (제197조의 } 3 \\ \text { 제3항) } \end{gathered}$ | 공무원이 <br> 었던 자 | 재직 중에 청탁을 받아 직무상 부정한 행 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뇌물 수수，요구，약속 | 5년 이하 징역 |
| 알선수뢰 （제197조의 4） |  | 청탁을 받고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상 부 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알선하거나 그 보수로 뇌물 수수，요구，약속 | 5년 이하 징역 |
| $\begin{gathered} \text { 증뢰 } \\ \text { (제198조) } \end{gathered}$ | 제한없음 | 뇌물을 공여，신청，약속 | 3년 이하 징역 또는 250만엔 이하의 벌금 |

## （2）일본「국가공무원윤리규정」상 금품수수 금지 관련 규정

일본 「국가공무원윤리규정」304）제 3 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등의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일 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서 허용하고 있다．

304）일본 「국가공무원윤리규정」（200．3．28，정령 101호，2009．8．14，정령 제 217 호로 최 종개정）．일본 「국가공무원윤리규정」은 「국가공무원윤리법」（1999，법률 129호）제5 조 제 1 항，제 6 조 제 1 항，제 45 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됨．
［표 91］「국가공무원윤리규정」의 금품수수금지와 관련 내용305）

|  | 구체적인 행위 유형 | 처 벌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금품 } \\ & \text { 등의 } \\ & \text { 수수 } \\ & \text { 행위 } \end{aligned}$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물품 또는 부동산의 증 여（전별，축의，부의 또는 화환을 보내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포함함）를 받는 행위 | 징계절차， <br> 형법에 따라 <br> 처벌 <br> 가능 |
|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의 대출（업으로 금전을 대 부하는 경우 무이자 또는 현저하게 낮은 이율에 한함）을 받는 행위 |  |
|  | －이해관계자로부터 또는 이해관계자의 부담으로 무상으로 물품이나 부동산 대출을 받는 행위 |  |
|  | －이해관계자로부터 또는 이해관계자의 부담으로 무상으로 물품이나 부동산 대출을 받는 행위 |  |
|  | －이해관계자로부터 미공개주식을 양도받는 행위 |  |
|  |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접대를 받는 행위 |  |
|  | －이해관계자와 함께 경기나 골프를 치는 행위 |  |
|  | －이해관계자와 함께 여행（공무상 여행을 제외）하 는 행위 |  |
|  |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제 3 자에 대하여 앞에 기재 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
|  | 공무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물품이나 부동산을 구입 하는 경우，물품이나 부동산의 대출을 받는 경우 또 는 그 가액이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대가와 시가의 차액상당액의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

305）일본「국가공무원윤리규정」，제 3 조 제 1 항．
［표 92］「국가공무원윤리규정」상 허용되는 금품수수 등306）

|  | 행위유형 | 처 벌 |
| :---: | :---: | :---: |
| 허용되는 <br> 금품 <br> 등 수수 | －이해관계자로부터 선전용물품 또는 기념품을 널리 일반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증여받는 행위 | 처벌， <br> 징계 <br> 면함 |
|  | －다수의 사람이 출석하는 입식파티에서 이해관계자 로부터 음식물•기념품을 증여받는 행위 |  |
|  | －직무로 이해관계자를 방문할 때 해당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  |
|  | －직무로 이해관계자를 방문할 때 당해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행위（일상적 업무범위 내의 상당한 정도） |  |
|  | －직무로 출석한 회의 기타 회합에서 이해관계자로부 터 다과 및 간소한 음식물을 제공받는 행위 |  |

그 밖의 각 선거，재판，형사절차 등의 공무와 회사 업무，파산•중 재 업무，건축，의료，스포츠 경주 등 공정성이 요구되는 각 영역의 업무에 있어서의 직무상의 공정성을 해하는 금품수수행위 등을 각 개 별법에서 금하고 있다．（이에 관하여는，부록 참조）

## 2．이해충돌방지

일본 「국가공무원윤리법」은 공무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의뢰받은 것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고 강연，토론，강습이나 연수지도，교육，저 술 감수，편집，라디오 및 TV방송 출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 항에 관하여 윤리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22]
# 제 7 장 법률안에 대한 종합분석 

## 제 1 절 법안의 각 조문별 분석

## 1. 정의규정

## (1) 부정청탁

|  | 제 2 조 제 5 호 |
| :---: | :---: |
| 법률안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br> 5. "부정청탁"이란 직무•고용관계, 사회적 영향력 또는 연고관계 등을 이용하여 제4호의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 의 위반, 지위•권한의 남용 또는 직무수행의 기준•절차•방법 등을 벗어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강요•요구•위협•알선•개입•지시•접촉•청탁 등의 부정한 의사전달 행위를 말한다. |
|  | 판례 및 사례 |
|  | 형법상의 ‘부정한’ 의미의 해석 <br> -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 직무에 위배되는 일 체의 행위 <br> (판례)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수뢰죄) <br> (판례) 도박범행을 묵인하고 단속하지 않는 행위(수뢰후 부정처사) <br> -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 위법한 것,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 그 직무 혹은 청탁 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경위와 시 기 등의 제반사정, 직무집행의 공정이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함 (제 3 자 뇌물공여죄) <br> (판례) 도시설계변경 및 건축사업 허가 등에 있어서의 편의청탁 (판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동통신회사가 속한 그룹의 구 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당해 이동통신회사의 기업결합심사에 대 하여 선처를 부탁받으면서 특정 사찰에의 시주를 요청하여 시 주금을 제공케 함 |

- 형법상 구성요건에 부정청탁이 요구되는 경우, 반드시 위법한 내용의 청탁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나(판례), 청탁과 더불어 직무관련성 있는 금품 등의 수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상 법 률안과 차이
○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청탁'의 내용
- 인사 및 채용 청탁
- 기소 및 수사청탁
- 감사요청서 등 문서작성 청탁
- 사건 상 편의 청탁
- 위의 경우는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경우이나, 법률안의 적용시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함


## 외국 입법례

- 프랑스 형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Traffic d'influence)' 를 특정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이익을 야기하는 차별, 고용, 시 장 점유 또는 기타 유리한 결정을 공공 기관 또는 행정부처로 부터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모든 형태의 이익의 대가를 조건으로 공직자가 공권력에 기초한 영향력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한 다. (형법 제432-11조, 제433-1조 및 제 433-3조) '부정한 영향력 행사(Traffic d'influence)'는 능동적인 경우와 수동적인 경우로 나누어 수뢰행위와 유사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전통적 수뢰죄에 비하여 직무상 권한남용을 포괄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 호주의 ‘부당한 요구(Unwarranted demands)': ‘영연방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요구'는 행위자가 공직자를 협박하여 부당한 요구 를 한 경우 성립하고(호주 형법 개정안 7조 5항), ‘영연방 공직 자에 의한 부당한 요구'는 영연방 공직자가 타인을 협박하여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성립하는데(호주 형법 개정안 7조 5항), 이 때 요구 또한 협박은 그 공직자의 영연방공무원으로서의 권 한 및 어떠한 형태든 그 공직자자가 영연방 공직상 보유하는 권한에 미치는 영향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1)행 위자나 (2)공직자는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초래하거나 (1)공직자 나 (2)다른 공직자가 영연방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행위하였어야 한다.


## (2) 이해충돌

|  | 제 2 조 제 8 호 |
| :---: | :---: |
| 법률안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br> 8.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공직자 자신의 사적 이익 또는 연고관계(이하 "사적 이해관계"라 한다)가 개입 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 는 상황 또는 저해된다고 보일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
| 개선안 | 8.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공직자 자신의 사적 이익 또는 연고관계(이하 "사적 이해관계"라 한다)가 개입 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 는 상황을 말한다. |
|  | 토론 및 자문의견 |
| 고려사항 | - 이해충돌행위를 금하는데 있어서의 보호법익을 공무원의 청렴 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이라고 볼 때,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를 침해범으로 보고,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위험범으로 본다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험범에 대 한 처벌을 두는 것으로 족할 것이며, 그 외에 '저해된다고 보일 수 있는 사항'까지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시됨 (이상현) |

## (3) 가 족

|  | 제2조 제 10 호 |
| :---: | :--- |
| 법률안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br> 10. |
|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의 가족을 말한다. |  |


| 고려사항 | 관련 규정 |
| :---: | :---: |
|  | - 법안 제 2 조 제 10 호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민법 제 779 조로 규정 하고 있다. 동 법안에서 가족이 문제되는 경우는, 가족채용 제 한(제 18 조)과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 있는 직무수행을 금지 하는 규정(제 15 조)이 있다. <br> - 민법 제799조 <br> 민법 <br> 제 779 조(가족의 범위) (1)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br>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br>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br> (2) 제 1 항 제 2 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외국 등 입법례 |
|  | - 미국의 '허가받지 않은 보상(unauthorized compensation)'의 경우, 연방공무원이 미국정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서 타인을 대 리하는 것을 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부모, 자식, 배우 자 등 가족에 대한 대리행위는 보상유무와 관계없이 허용됨 |
|  | 토론 및 자문의견 |
|  | - 민법이 설정한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가 족 채용 제한 규정(법안 제 18 조 제 1 항)이 적용될 때 직업선택 의 자유에 반할 우려가 있다.(이천현) |

##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제7조 |
| :---: | :---: |
|  | 부정청탁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제한 및 공직활동에서의 <br>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하여 일안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br>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br> 다른 법률에 더 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


| 고려사항 | 관련 규정 |
| :---: | :---: |
|  | 다른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제7조의 단서) <br> - 법률안 제 11 조에 의하여 직무수행상 대가관계가 있는 금품수수 가 있는 경우는 동 법률안 적용이 제외됨으로써 형법상 뇌물규 정이 우선 적용됨 |
|  |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 여 사업자등이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금품등(그 직무수행과 대가 관계가 있는 금품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 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부정청탁의 금지

(1) 신 고

|  | 제 10 조 |
| :---: | :---: |
| 법률안 | (1) 공직자는 특정직무에 관한 사업자등 또는 제 3 자로부터 부정청 탁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등에게 서면 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br> (2) 소속기관장등은 제 1 항에 따른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 에는 그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그 신 고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br> (3) 소속기관장등은 제 2 항에 따른 확인결과 신고내용이 수사의 필요 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br> (4) 소속기관장등은 공직자가 제9조를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특 정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와 부정청탁자 를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 개선안 | (1) 공직자는 특정직무에 관한 사업자등 또는 제 3 자로부터 청탁을 받 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등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  | (2) 소속기관장등은 제 1 항에 따른 청탁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그 신고내 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br> (3) 소속기관장등은 제 2 항에 따른 확인결과 신고내용이 수사의 필요 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br> (4) 소속기관장등은 공직자가 제9조를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특 정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와 부정청탁자 를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 :---: | :---: |
| 고려사항 | 토론 및 자문의견 |
|  | - (1)항과 (2)항에 관하여 <br> - 부정청탁을 받은 때에 신고의무와 관련된 법안 제 10 조 제 1 항의 실효성이 없을 수 있음. 법안 제 10 조 제 1 항에서는 부정청탁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신고의무가 있다고 하였는데, 사실상 부정청탁인지 아닌지 이를 받은 사람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가 많을 것이므로, 청탁 받은 사람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반박한다면 신고의무는 실효성이 없어질 것임 <br> - 따라서 청탁을 받은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인지 아닌지 판단하 지 않고 청탁 받은 때에 바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실효 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제 10 조 제 2 항에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신고한 후에 소속기관의 장이 부정청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이천현) <br> - (3)항과 (4)항에 관하여 <br> - 그간 우리나라의 공직비리 사건에 대응하는 형태를 보면, 소속 기 관의 장 또는 감사 업무 수행자 등이 그 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관에 고발을 하지 않은 채 기관 내부의 경징계로 사건을 마무리 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이 많았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각급 지자체에서는 직무관련 범죄의 신고•고발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실정 <br> - 현 실태에 비추어 보면, 금번 법안의 고발의무 규정도 부정• 부패 사건에 강경 대응한다는 선언적 규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 어 효율적인 통제 수단이 될지 의문 (이혜미) <br> - 내부고발이 부패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은 반복적으로 지 적되고 있지만 집단주의문화가 보다 강한 우리나라에서 내부고 |


| 발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인간관계상 어려움으로 인해 내부고발 |
| :--- | :--- |
| 을 활성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임 (김대인) |

## (2) 처 벌

|  | 제35조 |
| :---: | :---: |
| 법률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 23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1. 제 8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br> 2. 제9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 행한 공직자 |
| 고려사항 | 관련 규정 |
|  | - 형법상 구성요건에 '부정한 청탁'이 규정된 경우는 제삼자뇌물공 여죄(130조)와 배임수재죄(제357조 제1항)이며 위반시 모두 5 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함 <br> - 그밖에 형법상 단순 청탁이 구성요건이 되는 죄로는, 사전수뢰죄(제 129조 제2항)와 사후수뢰죄(제131조 제3항)가 있으며, ‘부정한 행위' 를 구성요건으로 요구하는 죄로는 수뢰 후 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가 있으며, 단순한 청탁이 요구되는 사전수뢰죄에 대하여는 위반시 3 년 이하의 징역에, 부정한 행위가 따르는 수뢰 후 부정처사죄의 경 우에는 1 년 이상의 징역에, 청탁과 더불어 부정한 행위가 따르는 사 후수뢰의 경우에는 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br> 형법 제 131 조(수뢰후부정처사) <br> (1)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br> - 위 형법상 죄에 있어 수뢰액이 3 천만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 벌법이 적용되며, 수뢰액이 3 천 만원이상 5 천 만원 미만의 경우, 5 년 이 상의 유기징역, 5 천 만원이상 1 억원 미만의 경우, 7 년 이상의 유기징 역, 1 억원 이상,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br> - 다만, 대상 법률안의 경우 금품수수 등이 수반된 경우는 부정청탁 이 아닌 금품등의 수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지므로, 동 조항이 |


|  | 적용되는 경우는 금품수수가 없는 경우에 한하므로, 위의 경우보다 법정형을 가볍게 한 것은 일응 정당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본 처 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대한 청탁행위를 금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벌하 는 직권남용죄에 비하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보다는 위법성 의 정도가 더 낮은 청탁 등의 행위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음.307) |
| :---: | :---: |
|  | 외국 입법례 |
|  | - 외국 입법들의 경우,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에 준하지 않는 한 금품 수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청탁만을 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br> - 특히 입법행위자들에 대한 청탁 및 탄원은 민주주의체계상 의 사표현행위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특히,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정부, 이를 로비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고 이에 반하는 음성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방향 으로 규제하고 있음 |
|  | 토론 및 자문의견 |
|  | - 형법상 수뢰후부정처사죄(형법 제131조 제1항)와 법정형을 비교 해 볼 때, 금품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법정형이 1 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에 비해 부정청탁금지죄의 경우(법안 제 35 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 도록 규정한 것은 형벌의 불균형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이천현) |

## 4. 금품등의 수수 금지

## (1) 금지되는 금품등의 수수

|  | 제11조 제 1 항 본문 |
| :---: | :---: |
| 법률안 | (1)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직책 등에서 <br>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사업자등이나 다른 공직자로 |

[^23]|  | 부터 금품등(그 직무수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품등의 경우를 제 <br> 외한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 :---: | :---: |
|  | 관련 규정 |


|  | 을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 부정이득행위가 있는 경우 5 년 이 <br> 하의 징역이 따른다.(Division 142) <br> - 조선시대, 명나라, 당나라에 적용되던 법에 의하여도, ‘수소감 <br> 림'에 의해 공무와 관련되지 않은 관할지역내에서의 재물수수 <br> 행위를 벌하고 있었으나(태 40 에서 류 2,000 리), 공적 직무와 <br> 관련하여 재물을 수수한 경우인 '왕법' 및 '불왕법'에 비하여 <br> 처벌수준은 경하였다. |
| :--- | :--- |

(2) 처 벌

|  | 제 36 조 |
| :---: | :---: |
| 법률안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 38 조제 4 항제 2 호에 해 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의 5 배에 해당 하는 가액이 3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품등의 5 배에 상 당하는 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1. 제 11 조제 1 항(제 23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br> 2. 제 11 조제 2 항(제 23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사실 을 알았음에도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소 속기관장등에게 신고•인도하지 아니한 공직자 <br> 3. 제 11 조제 3 항을 위반하여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br>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  | 관련 규정 |
| 고려사항 | - 관련 법규정 적용에 있어 유의할만한 점은 부정청탁이 수반되 는 경우와, 직무상의 대가성있는 금품등이 수수된 경우임. 금품 수수에 있어 부정청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관한 제 2 장의 규정들에 앞서,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제 3 장의 |


|  | 규정이 적용되어지나（법률안 제8조），금품등의 수수가 직무상의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 동 법률안에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있 음（법률안 제 11 조 제 1 항） <br> －따라서，순수하게 동 법률안 상 금품수수등 금지규정이 적용되 는 경우는，부정청탁의 유무와 관계없이 직무상의 대가성이 없 는 금품수수가 있는 경우인데，부정청탁이 있는 경우의 금품수 수와 부정청탁 또는 청탁자체가 없는 단순 금품수수의 경우， 모두 법률효과가 동일하게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 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법성의 차이가 반 영되고 있지 않음．（표93 참조） <br> －참고로，형법은 단순청탁만 구성요건으로 정하는 경우와 부정 청탁을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 법정형상의 차이를 두고 있음． （표 93 참조） |
| :---: | :---: |
|  | ᄀ |
|  | －배수벌금형제도는 책임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너무 과중한 형벌로써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일반범죄와 동일하게 확정벌금형으로 전 환하여 형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법관 으로 하여금 개별 사건에 따라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양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제시．308） |
|  | 토론 및 자문의견 |
|  | －금지되는 금품 수수의 범위에 관해서는 공직윤리기준 등을 통 해 일정한 액수로 범위를 설정하든지 법률상 합리적 기대의 범 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금품 수수는 금지하는 등의 기준 제시가 필요（이상현） <br> －법안 제 36 조 단서는＇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의 5 배에 해당 하는 가액＇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배수형벌은 이익환수기 능과 제재에 있어 효과적이기 때문에 현재 많은 특별법에서 시 행되고 있음．그러나 독일에서는 폐지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조세범처벌과 관련된 배수형벌에 대하여 위 헌판결을 한바 있음． |

308）이천현，「벌금형의 규정방식에 관한 고찰』，『형사정책연구』 제 18 권 제 3 호，형사정 책연구원，（2007，가을호），p．486．

|  | 따라서 대상 법률안에서 왜 기준이 5 배가 되었는지 근거가 있 어야 할텐데, 아무런 근거없이 금품 수수액의 5 배를 기준으로 한 것에 의문이 있으므로, 다른 법률 규정을 검토하여 적정한 기준을 찾아야 함. 대체적으로 이익환수의 경우에는 3 배로 입 법한 경우가 많음. <br> - 법안 제 36 조 단서에서 '가액이 3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금품등의 5 배에 상당하는 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 는데 이러한 입법방식은 유례가 없으며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복잡하지 않게 다른 입법을 참고하여 규정을 이 해하기 쉽게 간단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이천현) |
| :---: | :---: |

## 5. 사적 이해관계의 직무수행 금지

|  | 제 15 조 제 1 항 |
| :---: | :---: |
| 법률안 | (1)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직 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이 사업자등이나 대리•자문•고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에서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특정직무 수행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1. 공직자 자신이 그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경우 <br> 2. 특정직무의 상대방이 공직자 자신의 친족인 경우 <br> 3. 공직자의 가족이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사업자등에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br> 4. 공직자의 가족이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사업자등을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단 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br> 5.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 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등이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경우 <br> 6.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 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려 | －위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법안 제 37 조 제 3 항 1 호） 외국 입법례 <br> 미국＇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br> －행정부 공무원 등이 자신 또는 배우자，파트너，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특정 사안에 이를 알고도 개인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함（section 208） <br> －미국「정부윤리법」 <br> －공무원이 된 후 1 년 이내에 자신의 전 고용인이었던 사람이 당 사자가 되는 사안에서 제척됨（제502（a）조） <br>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 제 13490 호 <br> 행정공무원은 2 년간 자신의 전 고용인 및 고객들과 직접，상당한 관계에 있는 거래나 계약을 하지 않고，재임기간 중 로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하나，이는 형사처벌 규정은 아니다． <br> －캐나다의 「이해충돌법（Conflict of Interest Act）」 <br> －공직자는 그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신이 이해충돌의 상황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reasonably should know）경우에는 공적 권한，의무 내지 기능의 수행과 관련 있는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의결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조 제 1항） <br> －공직자는 공적권한，의무 내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로비스 트의 신원에 근거하여 로비스트의 의뢰인에게 개인이나 조직에 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제7조） <br> －영국의「공직 수행 윤리기준（Civil Service Code 2010）」 자신 또는 타인의 개인적 이익 추구라는 부적절한 영향력에 의 해 영향 받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한다． <br> －호주의「연방 공무 수행 법（Public Service Act 1998）」 <br> －공직자의 개인적 혹은 이외의 이해 관계는 스포츠，사교 모임 혹은 문화적 활동 관련 개인관계가 포함 되며，가족•성적 관계 이외의 다른 관계들도 포함된다． |
| :---: | :---: |
|  |  |
|  |  |
|  |  |

－연방 공직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직계 가족들의 이해가 공직자 의 업무 자문 역할에 영향을 미치거나，미칠 듯이 보이는 경우， 그들이 알고 있는 직계가족의 개별적，개인적 이해관계 또는 관 계자들에 대하여 이해충돌에 관한 선언을 할 것을 동의하여야 한다．
－호주의「공공 행정법 2004’（Public Administration Act 2004）」 공직자의 가족이나 다른 개인적 관계에 있는 이가 어떠한 공무 수행에 이해관계를 가졌거나 또는 가진 듯 보이는 관계가 있을 때 이해충돌에 관하여 선언하여야 한다．

## 6．외부활동의 제한

|  | 제 16 조 제 1 항 |
| :---: | :---: |
| 법률안 | （1）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br> 1．공직자의 직무권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 또는 영리행위 를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행위 <br> 2．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으로부터 지휘•감독－지원 등을 받는 사업자등에게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 는 행위 <br> 3．공직자가 외국의 정부•기관을 대리하는 경우 <br> 4．그 밖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외부활동 |
|  | 외국 입법례 |
| 고려사항 | －미국 연방법의 ‘허가받지 않은 보상＇ <br> －공무원이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부가 당사자가 되거나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사안에서 타인을 위한 대리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U．S．C．제203조） <br> －캐나다의 「이해충돌법（Conflict of Interest Act）」 |


|  | －기업이나 조직의 이사，임원이 되거나 그 직을 유지하는 행위， <br> 유급 자문활동을 하는 행위 등（제15조） <br> - <br> 공직자는 위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그의 지위를 다른 사람의 <br>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 <br> 호주의 「연방 공무 수행 법（Public Service Act 1998）」 <br> 공직과 잠재적 이해충돌이 있는 이사직，주식보유，부동산소유， <br> 신탁 등을 포함한다． |
| :--- | :--- |

7．사업자등과의 거래 제한

|  | 제17조 |
| :---: | :---: |
| 법률안 |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은 직접 또는 제 15 조제 1 항제5호에 규정된 사업자등을 통하여 해당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사업자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br> 1．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 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등이나 그 밖의 금융기 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br> 2．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br> 3．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
| 고려사항 | 외국 입법례 |
|  | －캐나다의 「이해충돌법（Conflict of Interest Act）」 연방정부의 장차관 또는 정무차관은 연금계약을 제외하고，고의로 자신이 혜택을 받는 공공 단체와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제 13 조 제 1 항） <br> 장차관 또는 정무차관은 공공단체와의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계 약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 파트너쉽이나 사기업에 이해를 가져서 는 아니 된다． |

## 8. 예산, 공용재산 등의 사적사용 금지

|  | 제 20 조 |
| :---: | :---: |
| 법률안 | 공직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제 3 자로 하 여금 이를 얻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 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br> 1. 공공기관의 예산(기금•부담금•수익금 등을 포함한다)을 집 행•사용•관리함에 있어서 법령 및 예산에 정해진 바를 위반 하는 행위 <br> 2.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보관•관리•처분 등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br> 3.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등 그 이 행 또는 공사•물품•용역의 품질•수량 등의 관리•감독에 있 어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br> 4. 공공기관의 보조금•출연금•장려금•지원금 등의 지급•관 리•감독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
|  | 외국 입법례 |
| 고려사항 | - 호주의 「재정관리•책임법(the 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 ntability Act 1997)」 <br> 공금과 국영 자산/재산이 적절하고 온당하게 쓰여 지는 것을 확 립하기 위하여 정부내에서 통제 (부적절한 공금 융용 관련 처벌 사항등 관련) |

## 9.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  | 제22조 |
| :---: | :---: |
| 법률안 | (1)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불특정 다수인의 <br>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것을 |


|  | 말한다．이하 같다）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이 그와 같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br> （2）공직자는 사업자등이나 다른 공직자에게 미리 알려질 경우 해당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타인에게 유형•무형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할 수 있는 단속•조사•입찰•소송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 를 그 사업자등이나 다른 공직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 :---: | :---: |
| 고려사항 | 외국 입법례 |
|  | －캐나다의 「이해충돌법（Conflict of Interest Act）」 공직자는 공직자라는 지위에서 획득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당 해 공직자의 사익，또는 당해 공직자의 친척이나 친구의 사익을 조장하거나 조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의 사익을 부당하 게 추구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 <br> －영국의「공직 수행 윤리기준（Civil Service Code 2010）」 공직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 하는 것과 같은 지위 남용을 금지． <br> －호주의「연방 공무 수행 법（Public Service Act 1998）」 호주 정부 공직자는 정보나 직책을 그들의 개인적 이득，또는 다른 이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br> －호주의 「공공 행정법 2004 （Public Administration Act 2004）」 공직 이외의 직장 구직시 그들의 공적 지위 및 직무 수행으로부 터 습득한 특수 정보309）를 부적절하게 유용해서는 안 된다． |

10．징 계

|  | 제33조 |
| :---: | :---: |
| 법률안 | 징계권자는 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br> 는 이를 사유로 징계 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해야 |

309）privileged information

|  | 하고, 그 징계 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br>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징계부가금에 관하여 <br> 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를 준용한다. <br> 1. 이 법에 따른 형벌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br> 한 경우 <br>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br>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의 외부활동 사실을 1개월 이 <br>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4.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부활동에 관한 소속기관장등의 소명 <br> 요청에 불응한 경우 |  |
| - 직업공무원에게는 징계처분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나, 그 이외 <br> 의 자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제재가 될 수 있을 것인 <br> 지 의문 (이근우) <br> -현재 대부분의 법안에서 징계는 각 기관에 징계를 요청하면 기 <br> 관 내부에서 제재가 이루어지므로 징계에 실효성이 없는 경우 <br> 가 많으나, 대상 법률안의 경우도 독립적인 징계위원회를 구성 <br> 하거나 자세한 징계절차가 규정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br> 수 있음 (이천현) |  |

11. 비밀누설의 죄

|  | 제34조 |
| :---: | :---: |
| 법률안 | 제31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br>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고려사항 | 토론 및 자문의견 <br> - 법안 제34조의 비밀누설의 죄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 <br> 설죄와 같은 구성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형법과 달리 3년 이하의 <br>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

형법이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 년 이하의 자격정지 로 규정한 것과 달리 가중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 형법 제 127 조(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에는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신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범위가 제한되었다 하 더라도 우리나라 법에서 신고업무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하여 형벌을 규정한 것은 없음. 단,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처 벌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신고업무담당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고 둘째는 신고업무담장자의 비밀누설에 대한 제재임. 예) 학교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특별법상 신고의무 와 비밀누설에 대한 제제 참조.(이천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6 조(비밀 엄수의 의무)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0 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 16 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1)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 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제 20 조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26.> 제 22 조(벌칙) (1) 제 21 조제 1 항을 위반한 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2. 벌 칙

## (1) 정보이용

|  | 제37조 제1항 제1호 |
| :---: | :---: |
| 법률안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1. 제 22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제 23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위반하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공직자 |
| 고려사항 | 토론 및 자문의견 |
|  | -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제127조)와 중복 적용될 가능성이 있 으며, 균형이 맞지 않으며 형법상의 규정(2년 이하의 징역•금고) 보다 형을 가중을 위해서는 명백한 필요성이 있어야 함(이근우) <br>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억원 이하의 벌금)와 비교하여 법정형의 불균형이 있음 (이천현)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벌칙) <br>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 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1. 제 174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 에게 이용하게 한 자 <br> 2. 제 174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 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br> (2) 제 1 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 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 1 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 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 억원 이상 50 억원 미만인 경우에 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 (2) 인적사항의 공개

|  | 제 37 조 제 1 항 제 2 호 |
| :---: | :---: |
| 법률안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2. 제 28 조제 5 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 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  | 토론 및 자문의견 |
| 고려사항 | - 통상적으로 행정법에서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 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경우(법안 제28조 제 5 항)'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법정형을 규정 한다. (이천현) |

## (3) 가족의 채용 및 조달계약체결

|  | 제37조 제2항 제 $1 \cdot 2$ 호 |
| :---: | :--- |
| 법률안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 <br>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1．제 18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를 위반하여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 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한 공직자 <br> 2．제 19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제 23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를 위반한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가족 등이 소속기관 또 는 산하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공직자 |
| :---: | :---: |
| 고려사항 | 외국 입법례 |
|  | －캐나다의「이해충돌법（Conflict of Interest Act）」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진 공직자는 그의 공적 권한，의무 및 기능 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의 배우자，사실혼배우자，자녀，형제 또 는 부모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관계를 맺어서는 아니된다． 캐나다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없음 <br> －호주의「연방 공무 수행 법（Public Service Act 1998）」 공무원 취업 지원자들을 채용하는 선발팀이 지원자／경쟁자들과 이 해 충돌 사항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면，이를 선발팀장에게 알리고， 이해충돌을 선언하여야 한다．호주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 없음 |
|  | 토론 및 자문의견 |
|  | －가족채용금지 위반에 대하여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채 용취소를 하는 등 형벌이 아닌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 적．현재 법률안의 내용은 비범죄화된 영역을 범죄화하고 있는 규정이 많은데 입법초기단계부터 강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보다 시행 후에 단계적으로 형벌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이천현） <br>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과 관련된 사업체와 공직자 소속기관 이 수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특혜 논 란을 초래하고 공정한 조달행정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br>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자 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이 자신 또는 가족이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나 처벌규정이 부재하여 처벌이 곤란하며，기타 공공기관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계약부문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계약체결 제한규정이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310}$ ）（김대인） |

## (4) 사적 이익과 공적 손실

|  | 제 37 조 제 3 항 제 2 호 |
| :---: | :---: |
| 법률안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2. 제 20 조(제 23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 해를 가한 공직자 |
| 고려사항 | 토론 및 자문의견 |
|  | - 법안 제 37 조 제 3 항 제 2 호는 제 20 조를 위반한 경우(예산 등을 부 정 사용한 경우)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공직자를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상 배임죄와 유사한 구성요건을 지니고 있음에도 형법에서 5 년 이하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한 것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경함 (이천현) |
|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br>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 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3. 과태료 부과

|  | 제38조 제4항 제1호 |
| :---: | :--- |
| 법률안 |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 백만원 이하의 과태 <br> 처한다. |

310) 박계옥, "부정청탁 및 이행충돌 방지법 제정방안",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법 제정을 위한 제2차 공개토론회 자료집」, (2012.2.21), p. 55 참조.

|  | 1. 제 10 조제 1 항(제 23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그 사실을 축소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공직자 |
| :---: | :---: |
| 고려사항 | 토론 및 자문의견 |
|  |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징계 및 과태료를 부 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일한 행위 유형에 대해 「공직자윤리 법」에서는 이를 징계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어 유사 법률간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혜미) |
|  | 공직자윤리법 제 22 조(징계 등) <br>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 할 수 있다. <br> 16. 제 18 조의 4 제 2 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 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br> 제 18 조의 4 제 2 항(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br>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14. 양벌규정

| 제39조 |  |
| :---: | :--- |
|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 <br> 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제33호, 제 <br> 38 조제3항제1호, 제38조제4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br> 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ㄸㄸ는 <br>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br>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 <br> 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개선안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34 조 내지 제 38 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 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다만，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 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근 거 | 토론 및 자문의견 |
|  | －양벌 규정에서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문을 나열 하였는데，제 36 조제 1 항제 33 호，제 38 조제 3 항제 1 호，제 38 조제 4 항 제2호의 위반행위 외에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있 으므로，（예：제 37 조제 3 항제 4 호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가 법인인 경우）조문을 나열하는 것보다 는 일반적으로 규정하여 양벌규정이 문제될 때 포괄적으로 문 제를 해결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이천현） |

## 제 2 절 쟁점별 분석

## 1．입법목적

## （1）부패방지에서의＇부패행위＇의 개념

＇부패행위＇의 개념을 최광의에서 최협의까지 네 단계로 나눈다면， 부패의 주체를 공직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권한남용의 경우까 지 포괄하는 최광의의 부패에서부터 윤리적인 행위，직무위반행위，범 죄행위의 포함여부에 따라，광의，협의，최협의의 개념으로 나뉜다．311）

311）송삼현，「공직부패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비교형사법연구』，제 11 권 제2호，（2009），pp．560－561．
[그림 2] 다양한 부패의 개념과 부패행위의 범위


대상 법률안이 규제하는 대상행위는 위법행위뿐 아니라 직무의무위 반행위,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행위까지 폭넓게 포괄하고 있으나, 사 적 영역에서의 권한남용행위는 논외로 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법률안의 입법목적과 의의

대상 법률안은 제 1 조의 목적에서 "공직사회에서 부정청탁을 금지하 고 금품 등의 수수를 제한하며,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해충돌을 방지 함으로써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청렴성 을 증진"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그림 3］대상 법률안의 입법목적


따라서 이 법은 상당히 강한 윤리적 행위규범을 전제로 하고 이에 입각하여 강제성있는 법적 행위규칙을 제시하고 있다．공직자 또한 사적 업무담당자임과 동시에 사적 개인이라는 점에서，가치의 갈등상 황은 상존하기 마련이며，이러한 갈등 상황을 좀 더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끌어 가려는 유인은 공직자 개인뿐 아니라，일반 사인들에 게까지 널리 퍼져있다．
＂공직자가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인＇공（公）＇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벗어나 전체 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능력을 의미한다．반면＇사（私）는＇자신＇과＇가족＇을 우선시함을 감안하면，．．．（중략）．．．공직자의 윤리는 자신보다＇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공직자가 갖고 있어야 할 기본적 덕성이다．공직자가 국민 이 아닌 자신만을 대리한다면，공직의 의미는 상실되며 따라서 공직이라는 신 성한 이름을 붙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312}$ ）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 동기를 제어하고 공적 가치추구를 존중하는 바탕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강한 윤리의식이 공직자 뿐 아니 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내면화되어 있어야 한다．이러한 윤리적 가 치가 뿌리내리지 못한 사회적 토양 위에서는 그러한 가치에 따른 법적 강제는 자칫 불편함을 넘어 수범자들의 저항을 초래할 수도 있다．

[^24]＂이 법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명백한 부패행위를 넘어＇법＇을 통해 뿌리깊은 사회구조 및 그에 의해 형성된 개인의 사고와 행태에 혁신을 가져오 려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종류의 혁신이 실현될 최선의 방법은 이 법에 의 한 충격효과를 통해 모든 공직자와 시민이 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윤리적 기준을 내면화하는 것이다．윤리적 기준은 법과 달리 수범자가 가슴으로 그 내용적 정당성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실효성이 없다．＂313）

그러나 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은 항상 현실과 갈등관계 속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이러한 사회심리적인 수용과 저항은 그러한 법적 환경과 조우하면서 점차 그 가치를 내면화할 기회를 찾 게 될 것이므로 이 법 존재 자체가 주는 의미도 간과할 수는 없다．
＂이 법은 뿌리 깊은 사회구조 및 그에 의해 형성된 개인의 사고와 행태에 혁 신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모든 공직자와 시민이 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하 지 않아야 한다는 윤리적 기준이 내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314）

## 2．다른 법과의 관계

현행법상「형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공무원행동강령」 등 대상 법률안이 규율하는 대상과 유사한 행위를 다루는 다수의 법령 이 존재하고 있다．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제4장 제 10 절 참조）， 일정한 한계로 인하여 법 적용상의 흠결과 법 목적 달성의 실효성이 약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 법률안은 첫째，행위의 규율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존 현행법상 사각지대로 존재하던 영역을 구성요건으로 포섭하고，둘째， 징계 등 행정조직 내부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으로는 현실적 행위억지 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을 신고절차 등을 강화하는 방식에 의해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압력을 완충하는 통로를 마련하려 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313 ）이희정，「중앙일보」，（2012．6．30）．
314）임병호，「경기일보」，（2012．7．9）．

그리고 다른 법과 적용영역이 경합하는 경우를 염두 하에 두고，대 상 법률안과 다른 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 대상 법률안을 우선적 으로 적용하지만 다른 법에서 더 중한 벌을 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제7조）

그러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본다면，다수의 외국형법의 경우 직무 상 대가관계 없이 금품 수수만으로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특정한 내용의 청탁이 있는 경우는 가중처벌 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금품 수수가 없는 청탁의 경우에 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로비제도를 제도화하고 일정 기준에 부합 하지 않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고，315）프랑스의 경우는 권한을 남용 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뇌물죄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 며，그 밖의 청탁행위만을 신고하고 위반시 제재토록 하는 일반 절차 를 두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법 과 비교해 볼 때 나타나는 입법적 흠결을 위 법률안에 의해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체계적으로 볼 때 형법상 구성요건의 보완으로 해결할 것인지，이와 같은 종합적 부패방지 관련법에 의할 것인지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 법률안은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청탁의 유무 또는 청탁의 부정함여부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뇌물죄와 이익수수죄 등 간의 형벌 의 차등을 두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볼 때 행위의 위법성과 형벌간 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315）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규율하는 로비행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특가법 제 3 조와 변호사법 제 111 조 1 항의 알선，청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정당한 직무 행위의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의 탈락 또는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수 있고，대상 법률안에 의하면 허용되는 제 3 자의 청탁행위의 유형에 포함되게 된다．법률안 제 8 조 제 2 항 단서．이광수，「변호사법 제 111 조 제 1 항의 청탁•알선의 범위」，『저스티스』， no．105，한국법학원，（2008），p． 220 참조．
[표 93] 청탁행위•금품수수행위의 유무 별 적용법률 및 법률효과

|  | 청탁 없음 | 금품등 수수 |  |
| :---: | :---: | :---: | :---: |
| 적용법률 |  | 법률안 제3장 |  |
| 법률효과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 만원 이하의 벌금 |  |
|  | 단순청탁 | 금품등 수수 | 직무상 대가관계 |
| 적용법률 | 불처벌 |  |  |
| 법률효과 | 불처벌 |  |  |
| 적용법률 |  | 법률안 제 3 장 |  |
| 법률효과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 만원 이하의 벌금 |  |
| 적용법률 |  |  | 형법상 사전수뢰죄 <br> (제 129 조 제 2 항) |
| 법률효과 |  |  | 3 년 이하의 징역, 7 년 이하의 자격정지 |
|  | 부정청탁 | 금품등 수수 | 직무상 대가관계 |
| 적용법률 | 법률안 제2장 |  |  |
| 법률효과 | 공직자: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 만원 이하의 벌금 |  |  |
| 적용법률 |  | 법률안 제 3 장 |  |
| 법률효과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 만원 이하의 벌금 |  |
| 적용법률 |  |  | 형법상 제삼자뇌물공여죄 <br> (제 130 조) • 배임수재죄 (제 357 조 제 1 항) |
| 법률효과 |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만원 이하의 벌금(배임수재),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

## 3．구성요건의 명확성

통상，일정 행위유형을 범죄로 하고 그에 따른 법률 효과로서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적 구성요건의 명확성이 엄격히 요구된다．즉 구성요건을 기술하고 있는 법률 규정은 수범자들이 예측가능한 정도로 명확해야 하며，이에 대하여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직무상 대가관계를 요하고 있는 형법상의 구성요건은 다양한 행위유형을 포섭하기에는 적용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사법 실무상 상당히 포괄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석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즉，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의 해석에 있어 서도 최대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한편，「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제11조의 금품수수 등의 금지 는＇직무와 관련하여＇또는＇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 향력을 통하여，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 지만，직무수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품 등은 제외하고 있다．만일 이 법률안이 적용되어진다면 이 법상의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도 위 와 같은 형법상의 해석례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나，형법상의 구성 요건적용의 해석 또한 이 법과의 관계에서 경합 및 비경합되느냐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형법상의＇직무관련성＇과＇대가성＇에 대한 해석 실무 및 이론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16)}$

## （1）직무관련성

## 1）직무의 범위

판례는 뇌물죄에 있어서＇직무＇를＂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 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로서，317）＂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

316）김홍준，「뇌물의 의미」『저스티스』110，한국법학원，（2009．4），pp．121－179 다수 참조．
317）대법원 1982．11．23．선고， 82 도 1549 ，대법원 1983．7．26．선고， 82 도 1208 판결，

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 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라고 밝히고 있다.318) 즉, 이 에 따르면, (1) 법령상 관장 하는 직무 (2) 그 직무와 밀접한관계가 있 는 직무행위 (3) 관례상이나 사실상 처리하는 직무행위 및 (4) 결재권 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모두 직무개념에 포 함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의 범위는 직무위 배죄나 직권남용죄에서의 직무보다 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319)
[표 94] 뇌물죄에 있어 해석상 직무의 범위 ${ }^{320)}$

| 직무의 범위 |  |
| :---: | :---: |
| (1)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 - 직접 법령에 정해진 경우는 물론, 지령•훈령•내규•행정 처분 등에 의한 경우를 포함 ${ }^{321)}$ <br> 일반적 직무권한 이론: 직무는 법령상 그 공무원의 일반 적•추상적인 직무권한에 속한 것이면 충분하고, 현실 적 •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무일 필요는 없음 |
| (2) 관례상이나 사실상 처리하는 직무행위 | - 예를 들어, 경매사건에 있어서 경매담당주사보가 경락 허부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322) <br> - 교정시설 등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 등의 침투 거부 등 작전 임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교도관을 보조 하여 교도소내외에서의 재소자에 대한 간접 계호업무를 |

1985.2.8.선고. 84도2625,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도1463판결.
318) 대법원 1998.2.27.선고, 96 도 582 판결, 대법원 1999.11.9.선고, 99 도2530판결, 대법 원 2000.1.28.선고, 99 도.4022판결, 대법원 2000.6.15.선고 98 도 36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1.5.선고, 2000도4714판결, 대법원 2001.1.19.선고 99도5753판결, 대법원 2008.11.30.선고, 2007도2997판결.
319) 이동흡, "뇌물죄에 있어서의 뇌물과 직무관련성", 『형사법에 관한 제문제(하)』, 판례자료 제50집, 법원행정처(1990), p.61, 김홍준(2009.4), p.125에서 재인용.
$320)$ 김홍준(2009.4), pp.126-133 참조.
321) 대법원1959.9.4.선고 4291형상294.

322 ) 대법원1985.2.28. 선고 84 도 2625 판결.

| 직무의 범위 |  |
| :---: | :---: |
|  | 담당하는 경비교도가 서신연락이나 담배 반입 등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 }^{323}$ |
| （3）결재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 －법령 또는 직무상의 규정이나 내부 사무분담에 의하 여 그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의문스러운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사실상 결정권자 를 보좌하거나 해당 직무행위에 관여하여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직무는 자신의 직무에 속함324） |
| （4）직무와 <br> 밀접한 관계있는 직무행위 | －＇직무와 밀접한 관계있는 직무행위＇란 엄밀하게는 자 신의 법령상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직무권한에 기한 세력을 기초로 공무의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행위 또는 공무원 등의 지위에서 행하는 공무적（公務的）성격의 행위로서 본래의 직무에 사실상 영향력 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말함325） |

## 2）직무의 내용

직무행위는 국고작용，행정사법작용，행정상의 사실행위，행정지도라 도 무관하다．${ }^{326}$ 또한 직무행위의 정당성이나 위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뇌물죄의 성부와 관계가 없다．따라서 직무행위가 공무원의 재량행위 로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재량권행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면 뇌물죄가 성립한다．직무행 위는 작위인가 부작위인가를 불문한다．그리고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323）대법원 1987.11 .24 ．선고 87 도 1463 판결．
324）대법원 1961．4．15．선고， 4290 형상201 판결，대법원 1983．3．22．선고， 83 도 113 판결， 대법원 1985．5．14．선고， 83 도 2050 판결．
325）김신규＂賂物罪에 관한 연구＂，『刑事政策』제 10 호 한국형사정책학회（1998）， p．297，김홍준（2009．4），p．130에서 재인용．
326）김홍준（2009．4），pp．133－135．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뇌물은 직무행위에 관한 것이면 족하고 일정한 직무행위를 하도록 의뢰받았 는가 여부, 즉 청탁의 유무도 뇌물죄의 성부와 관계가 없다. ${ }^{327)}$

## 3)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원의 해석

법원의 판례는 직무행위와 뇌물 사이에 관련성에 대한 해석에 있어,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의 직무 중 금원의 수수와 관 련성을 가지는 개개의 직무행위를 특정하여 판시할 필요는 없다 할지 라도 공무원이 금원 수수의 직접적 계기가 된 직무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그 직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 }^{328)}$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인정 및 부정하고 있는 법 원의 판결 사례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95]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원의 인정 및 부정 사례

|  | 관 계 | 판 례 |
| :---: | :---: | :---: |
|  |  | - 대통령이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br> 을 수수한 경우329) <br>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시중은행장으로부터 동 은 <br> 직무 <br> 관련성 <br> 인정 |
|  | 국가공무 추진 중이던 업무 전반에 관해 선처해달라는 |  |
| 취지의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경우330) |  |  |

327) 이동흡, "뇌물죄에 있어서의 뇌물과 직무관련성", 『형사법에 관한 제문제(하)』, 판례자료 제50집, 법원행정처(1990)p.66, 대법원 1984.8.14.선고 84 도 1139 판결, 대법 원 1984.9.25.선고 84도1568판결, 김홍준(2009.4), p.135에서 재인용.
328) 대법원 1971.3.9.선고 69도693판결, 대법원 1982.9.28.선고 80 도 2309 판결.
329) 대법원1997.4.17.선고, 96도3377판결.
330) 대법원1994.9.9.선고, 94도619판결.

|  | 관 계 | 판 례 |
| :---: | :---: | :---: |
| 직무 <br> 관련성 <br> 부정 | 지방공무 원관계 | - 시의회 의원이 시에서 발주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공 사, 축산분뇨처리시설 공사에 있어서 특정회사에 유 리한 특허공법이 채택되도록 도와 달리는 취지의 부 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332) |
|  | 국가 <br> 공무원 <br> 관계 | - 문교부 편수국 교육연구관이 업자로부터 검정교과서 의 수정. 개편을 의뢰받고 비용을 받은 경우333) 공판참여 주사가 양형을 감경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334) <br> - 경찰청 정보과 근무 경찰관이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 관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경우335) <br> - 보안부대소속 치안본부 연락관이 전투경찰대원 등에 대한 위문의 주선행위나 증권거래에 참고가 될까 하 여 잡지에 게재된 내용을 알려주거나 경찰공무원의 승진을 부탁하고 금원을 받은 경우336) |
|  | 지방 공무원 관계 | - 광역시의회 의원이 전문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더 많 은 관급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 달 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경우337) <br> - 구청 토목계장의 지시 아래 도면 등의 작성 보조사무 를 담당하는 자가 서울시 예산과에 청탁하여 보상금 예산을 구청에 영달을 빨리 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경우338) <br> - 도 관재국 출장소장이 상사의 지시•명령에 따라 귀속 재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청사 화재 로 인한 수리복구비로 50 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339) |

331) 대법원2004.4.16.선고, 2004 도 69 판결.
332) 대법원2006.6.23. 선고, 2005 도1352판결.
333) 대법원1979.5.22.선고, 78도296판결.
334) 대법원1980.10.14.선고, 80 도 1373 판결.
335) 대법원1999.6.11.선고, 99도275판결.
336) 대법원1983.10.11.선고, 83 도 425 판결.
337) 대법원2003.9.26.선고, 2002 도5487판결.
338) 대법원1982.3.23. 선고, 81도931판결.

|  | 관 계 | 판 례 |
| :---: | :---: | :---: |
| 직무 | 지방 | • 시의 측량기술원이 다년간의 경험을 기초로 추측한 |
| 관련성 | 공무원 |  |
| 입찰예정가격(시장이 결정한 입찰예정가격이 아님)을 | 관계 | 알려주고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경우340) |

## (2) 대가관계

## 1) 뇌물의 직무상 대가관계

형법 제 129 조 제 1 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당히 포괄적인 형태로 구성요건 을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해석상 직무행위와 뇌물과의 대가관계에 있 어, 필요하다는 견해와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그러나 판례 는 '뇌물의 직무상 대가성'을 요구하고 있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 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적 관계를 고 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 }^{341)}$ 다만, 순수히 사적 관계로서의 금전거래상 급부인 경 우에는 직무행위가 부정되어 대가관계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 2) 대가관계의 판단기준

학설의 견해에 따르면 대가관계는 산술적 의미에서의 급부, 반대급 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행위를 거래,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다 는 의미이다. ${ }^{342)}$ 판례도 공무원이 받은 금원 등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
339) 대법원1955.6.21.선고, 4288형상22판결.
340) 대법원1983.3.22.선고, 82 도 1922 판결.
341) 대법원2000.1.28.선고, 99 도 4022 판결, 대법원 1997.4.17.선고, 96 도 3378 판결, 대법 원 1997.12.26.선고97도2609판결.

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직 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 재하는지의 여부，이익의 다과，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고 있고，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 의 신뢰라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을 전제로，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 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 게 되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343)}$

## 3）직무상 대가관계에 관한 법원의 해석

직무상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인가의 여부와 관련하여 판단하기 어 려운 문제가 사교적 의례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이에 대하여는 구성 요건 해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와 위법성 조각으로 파악하는 견해 등이 있으나，일반적으로 직무의 내용，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증여자와 수증자의 개인적 관계，증여된 이익의 성질•가액，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344）이 에 관한 법원의 판단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96］사교적 의례에 관한 뇌물죄 인정 또는 부정 사례

| 구 분 | 구체적 판례 |
| :---: | :---: |
|  | • 모친 회갑 축의금으로 2만 원을 받은 경우345） |
| 사교적 | • 결혼 축의금으로 5만 원 또는 10 만 원을 받은 경우346） |
| 의례의 | • 공직에서 물러나 운수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한 공여자의 초 |
| 청으로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5명이 골프를 치면서 공여자 |  |

[^25]| 구 분 | 구체적 판례 |
| :---: | :---: |
|  | 로부터 5 만원을 교부받아 5 명의 골프장 입장료를 계산한 경우 ${ }^{347)}$ |
| 뇌물죄 인정 | - 본봉보다 많은 금원을 두 차례 받은 경우348) <br> - 경찰서장이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관련 형 사사건이 계류 중이거나 여러 가지 민원 등으로 어려움 을 격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외환위기로 인한 자금난 속 에서 1 억 5,000 만 원에 이르는 거금을 무이자 혹은 은행 금리 상당의 이자 약정 하에 차용하여 그 이자 상당의 이익 혹은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 }^{349)}$ <br> - 검찰청 수사과 서기의 처에게 폭행사건을 관대히 처리해 달라고 430 원 상당의 과자와 쇠고기를 공여한 경우350) <br> - 노동청 해외 근로국장으로서 해외취업자 국외송출허가 등 업무를 취급하던 자가 접대부 등의 국외송출을 부탁받고 시가 7만 원 상당의 주식(酒食)을 접대받은 경우351) <br> - 군수가 인사발령을 앞두고 인사 청탁과 함께 설날 세뱃 돈의 형식을 빌려 50 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 ${ }^{352)}$ <br> - 공무원이 교부받은 금액이 자신의 직무수행을 통하여 상 대방이 얻은 이익에 비하여 소액이라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 ${ }^{353)}$ |

보다 구체적으로 직무상의 관련성이 문제될 수 있는 행위들 가운데, 사교적 의례행위에 속하는 촌지, 격려금, 성금, 전별금, 경조부조금, 선물, 향응행위와, 그밖에 정치자금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원의 판단

[^26]사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7] 사교적 의례행위 유형별 뇌물죄 성립여부354)

| 사 례 | 구체적 내용 |
| :---: | :---: |
| $\begin{array}{ll} \text { 촌 } & \text { 지 } \\ \text { 떡 } & \text { 값 } \end{array}$ | - 감사표시인 촌지나 명절을 전후하여 수수되는 이른바 ‘떡값' 등은 포괄적으로 보아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직무수행에 대 한 대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교적 의례에 속한다 고 볼 수 없음 |
| 격려금 | - 행정청의 내부에서 주로 상급자로부터 하급자에게 수여되는 격 려금은 원칙적으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음 <br> - 행정청의 외부로부터의 격려금은 대부분 뇌물성을 띰(예: 기업 체의 대표가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의 노고를 위로하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경우) |
| 성 금 | -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 로서의 성격을 가짐355) <br> - 다만, 자발적인 성금형식의 금품으로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 계가 부정되는 경우에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음 |
| 전별금 | - 퇴직자에 대한 전별금은 그가 재직 중에 행한 직무와의 대가관 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뇌물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br> - 전보의 경우에는 일단 전보하더라도 언젠가 다시 같은 부서에 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보하는 상급자가 자신의 후임자에게 특정인에 대한 평가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상 급자에 대한 전별금은 그 가액이 관례로 승인되는 한도를 초과 한 경우에는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음356) |
| 경 조 <br> 부조금 | - 결혼축의금과 같은 경조부조금 명목의 금품수수가 개인적인 친 분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뇌물 성이 부정됨 357 ) |

354) 이중백, "뇌물죄에 있어서의 뇌물", 『비교법학』2집,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2), p.401이하, 김홍준(2009.4), pp.159-164 참조.
355) 대법원1999.12.28.선고, 99 도 4110 판결.

356 ) 대법원2001.11.30.선고, 99 도 4488 판결.

| 사 례 | 구체적 내용 |
| :---: | :---: |
| 경 조 <br> 부조금 | - 경조부조금이라도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뇌물성이 인정358) |
| 선 물 | - 당사자의 개인적 관계, 직무상의 연관관계, 수수된 선물의 종류 와 가격, 수수경위와 시기 등이 뇌물성 판단의 중요자료 ${ }^{359)}$ <br> - 은사에 대한 명절선물이나 주례에 대한 감사선물: 직무관련성 이나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뇌물이 될 수 없음 <br> - 부하직원의 상급자에 추석선물이나, ${ }^{360}$ ) 학부형의 담임선생에 대한 선물361): 비록 청탁의 대상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 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대가관계를 긍정할 수 있으므로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음 |
| 향 응 | - 당사자의 개인적 관계, 직무상의 연관관계, 향응을 받게 된 동기 및 경위, 향응이 제공된 장소, 시기, 기간, 횟수, 가액, 향응을 받 기 이전이나 이후에 별도의 금품수수 유무가 뇌물성의 판단근거 <br> -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로 향응이 제공되었다면, 비록 그 가치가 작다 하더라도 불법한 뇌물의 수수가 됨362) |
| $\begin{aligned} & \text { 정 치 } \\ & \text { 자 금 } \end{aligned}$ | - 정치자금•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 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의 실체를 가지거나 ${ }^{363}$ ) 정치인인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함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364) 뇌물적 성격 유지 <br> - 금품이 정치자금의 명목으로 수수되었고 또한 정치자금법에 정 한 절차를 밟았다 할지라도,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 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면 뇌물성 인정365) |

위와 같은 법원의 사례들에 나타난 직무관련성과 이 법률안 제11조
357) 대법원1982.9.14.선고, 81도2774판결.
358) 대법원1983.7.12. 선고, 83 누 262 판결.
359) 대법원2006.3.9.선고, 2005도9548판결.
360) 대법원1989.6.20.선고, 89도648판결.
361) 대구고등법원2000.2.11.선고, 99 노 658 판결.
362) 대법원2007.6.29.선고, 2007도3105판결, 대 법원2008.11.27.선고, 2006도8779판결.

363 ) 대법원1997.4.17.선고, 96 도 3377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1997.4.17.선고, 96 도 3378 판결, 대법원2002.5.14.선고, 2001도796판결, 대법원1997.12.26.선고, 97도2609판결, 대법원, 2007.8.23.선고, 2007도4956판결.

과 제 36 조의 금품 등의 수수죄 상의 직무관련성을 동일하게 볼 수 있 을지는 예측하기 이르나, 만일 이 법률안의 '직무관련성'이 형법상 요 구되어지는 것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다면 현행법 하에서 직무관련성 이 부정된 다수의 사례들의 경우 이 법률안에 의하면 금품 등의 수수 금지죄(제 11 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 4. 헌법상 논점

## (1) 형벌의 과중과 헌법적 문제

헌법상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헌법 제 37 조 제 2 항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와 관련하여 파생된 원칙으로 국가의 권력은 무제한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 되,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는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유지되는 이익과 이것을 규제함으로써 확보되는 이익을 비교하여 양자 간에 균형이 유 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부과도 국가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이므로 당해 범죄행위자의 책임과 비례한 정도로 부과되어야 한다.

| 군형법 제 53 조 제 1 항 위헌제청 |
| :---: |
| 헌재 2007.11.29, 2006헌가13, 판례집 제19권 2집, $535,535-535$ |
|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
|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
|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 |
| 죄예방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 |
| 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 |

364) 대법원1997.4.17.선고, 96도3377전원합의체판결.

365 ) 대법원2008.6.12.선고, 2006 도 8568 판결, 대법원2009.1.15.선고, 2008 도5398판결.

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죄질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거나,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 37 조 제 2 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 의 원칙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정책의 당부의 문제이지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니라" 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헌재 1992. 4. 28. 90 헌바 24 , 판례집 $4,225,229$; 헌재 1995. 4. 20. 91 헌바 11 , 판례집 $7-1,478,487$; 헌재 1995. 10. 26. 92 헌바 45 , 판 례집 7-2, 397,404 ; 헌재 1999. 5. 27. 96헌바 16 , 판례집 $11-1,529,538-539$; 헌재 1999. 5. 27. 98 헌바 26 , 판례집 11-1, 622-629 등 참조).

부정청탁에 금지 규정(제8조 제2항)에 위반하여 부정청탁만을 한 공 직자의 경우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면서(제 35 조 1호), 이해충돌방지를 위하여 특정직무의 상대방이 공 직자 자신 또는 그의 친족인 경우 그 직무수행의 금지 규정(제 15 조 제1항)에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또는 예산 등을 고의•중과 실로 부정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공직자(제20조)에 대하여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된 것이(제 37 조 제3항 1,2 호)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 }^{366)}$

설사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다고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8조 적용 대상인 부정한 청탁 자체는 부적절한 직무수행이라는 결과불법 을 야기하기 전단계의 행위라는 측면에서 실제 부적절한 공무수행을 야기한 위 제 20 조 상의 예산 등의 부정사용에 의한 범죄보다 2 배의 법정형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다.367)

[^27]
## （2）배수벌금형의 문제

법률안 제 36 조 제 1 항은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의 5 배에 해당하는 가액이 3 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 품 등의 5 배에 상당하는 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벌금부과방식을 배수벌금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배수벌 금형은 형식적으로는 형벌의 일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 초한 이익박탈적 행정처분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유사한 제도로써 환경범죄나 경제범죄 영역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벌금형 규정방식이다．${ }^{368)}$
배수벌금형은 일반 형사범에 대한 처벌（확정벌금형）처럼 행위의 죄 악성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특히 경제범죄 영역에서－불 법하게 취득한 이익의 완전한 박탈이나 국고에 미친 금정산의 손실에 대한 보전에 처벌의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써＇부당이익에 기 초한 가중벌금제도＇라고도 한다．
［표 98］벌금액의 범위에 따른 벌금형 법정방식

| 구 분 | 기 준 | 규정 형식 |
| :---: | :--- | :--- |
| 벌금형 | （1）상한만을 기준으로 규정하는 형태 | $\times \times$ 만원 이하의 벌금 |
|  | （2）상한과 하한을 동시에 규정하는 형태 | $\times \times$ 만원 이상 $\times \times$ 만원 이하의 벌금 |
|  | （3）배수벌금으로 규정하는 형태 | O○ 액의 $\times$ 배에 상당하는 이하 <br> 의 벌금 <br> 0 액의 $\times$ 배 이상 $\times$ 배 이하에 <br> 상당하는 벌금 |

[^28]그러나 배수벌금형제도는 책임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므로 폐 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조세범죄 영역에서만 배수벌금형을 인정하여 오던 독일과 일본도 각각 1939년과 1947년에 삭제하였다.

- 책임주의의 위배: 배수벌금형은 범죄 사정의 여하는 전혀 고려됨 이 없이 단지 이득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할 수 있는 형이 미리 정해지므로 범행의 동기나 범정에 따른 정상참작의 여지를 배제하 는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할 수 없는 형벌로써 책임주의에 반한다.
-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배수벌금액은 통상 다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과중한 형벌부과는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남과 동시에 법 집행자로 하여금 법 적용을 기피케 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떨어 뜨리게 하고 결국은 형벌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 ${ }^{369)}$


## 5. 처벌규정의 적절성

## (1) 벌칙규정의 체계

행정법규상 벌칙규정은 당해 법률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말한다. 벌칙규정의 규정방식은 1)
369)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1,000 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 요구 또 는 약속한 경우 그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할 것을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제 5 조 제 4 항 중 제 1 호 및 제 2 호 부분에 대하여, 종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잉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 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05.06.30. 선고, 2004헌바4, 2005헌바44(병합) 결정). 그러나 2006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어긋나고, 형벌체계상 균형 성을 상실하여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 므로 이와는 달리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 한 헌재 2005.06.30. 선고, 2004헌바4, 2005헌바44(병합)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라고 결정하여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6.4.27.선고, 2006헌가5 결정).

범죄구성요건과 법정형을 동일 조문에서 규정하는 방식과，2）의무규 정을 두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이 있는데，행정법규의 벌칙규정방식은 후자에 따른다．후자의 경우，주 로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벌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표 99］벌칙 규정 순서 ${ }^{370)}$

## ‘벌칙’ 규정순서

（1）법률이 장절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의 마지막 부분에 벌칙 장371）
（2）법률이 장절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체규정과 보칙규정이 전부 배열된 다음에 벌칙규정이 배치372）
（3）벌칙규정 상호간：
법정형이 무거운 것부터 순차적으로 배열
（4）같은 벌칙조항에서 둘이상의 실체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
조문이 빠른 것부터 배열
（5）＂형벌＂，＂양벌규정＂，＂과태료＂순으로 규정

법률안은 제6장＂징계 및 벌칙＂에 관한 장에서，징계（제33조），형벌 （제 34 조，제 35 조，제 36 조，제 37 조），과태료（제 38 조），양벌규정（제 39 조）을 규정하고 있는데，위와 같은 일반적 순서에 비추어 볼 때，법정형의 경중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과태료보다 양벌규정이 먼저 나와 있으 므로 체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370）이천현，「행정법규상 벌칙규정의 법정형」，『형사정책연구』제 20 권 제 4 호，형사정책 연구원，（2009，겨울호），p． 128.
371）［예시］ $5 \cdot 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칙 $\rightarrow$ 제 2 장 교육지원 $\rightarrow$ 제 3 장 취업지원 $\rightarrow$ 제 4 장 의료지원 $\rightarrow$ 제 5 장 대부
$\rightarrow$ 제6장 기타 지원 $\rightarrow$ 제7장 보칙 $\rightarrow$ 제 8 장 벌칙 $\rightarrow$ 부칙
372）［예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 조（목적）$\rightarrow$ 제 2 조（정의）$\rightarrow$ 제 3 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rightarrow$ 제 4 조－제 25 조 （생략）$\rightarrow$ 제 36 조（벌칙）$\rightarrow$ 제 27 조（양벌규정）$\rightarrow$ 제 28 조（과태료）$\rightarrow$ 부칙

## (2) 법적 행위제재 방식

법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수단으로는 형사처벌, 행정벌, 징계 등의 수단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직무상 청렴성이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는 형사처벌을 가하고, 그에 미치지는 않으나 행정상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는 행정벌로, 후자의 경우 조직 외에 파 급효과가 미치지 않는 경우는 징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벌부과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규정, 즉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행정의무 또는 행정상 협력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행정이익" 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는 형벌이 아닌 다른 행정상의 제재, 예를 들 어 과태료 등과 같은 제재를 통해 규율한다. 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유형이 있다.
[표 100]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 }^{373)}$

|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
| :--- |
| - 신고의무 위반(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허가 또는 등록사항변경/ 사 |
| 업등의 양도 양수 승계) |
| - 장부(서류)의 작성 비치 보존의무 위반 |
| - 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등의 교부 또는 반납 불이행 |
| - 허가증 요금표 등 표지물의 게시의무 위반 |
| - 보고, 자료 물건제출, 출석답변 등의 거부 ㄸㄴ는 거짓 이행 |
| - 검사 조사 또는 출입검사 등의 거부 방해 또는 기피 |
| -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
| - 공공기관, 그 밖의 특수 법인 등의 등기 또는 공고의 불이행, 규정 명령 지시 위반 |
| - 겸업, 겸영 또는 겸직 금지의무 위반 |
| - 조사 측량 등을 위한 토지 등의 출입 사용의 거부 방해 |
| - 본의무 이행 후 그 부수의무의 불이행(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미등록업 |
| 무 수행 등) |

373) 국회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2008), pp.1121-1122.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사용료 수수료 등의 요금면탈과 승인된 요금 외의 요금 수수
－기타 경미하거나 수시로 과해지는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 또는 명령의 위반
※ 위 유형에 속하지만
－단순한 행정질서위반이라도 이와 관련성이 깊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질서위반이 결과적으로 위생 및 안전확보를 크게 저해시키는 사항
－정부역점시책에 관련되는 사항
－기타 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형벌로 처벌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형사벌（행정형벌）로 처벌한다．

과태료의 법정금 액수에 대한 법규정들의 예를 보면，행정법규상 직 무집행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총 297개의 법정금액의 유형은 ＇1억원 이하＇부터＇ 100 만원 이하＇까지 총 9 개 유형이 있다．이 중＇500 만원 이하＇가 $23 \%$ 로 가장 많고，＇ 300 만원 이하＇가 $22 \%$ 로 그 다음이다．
［그림 4］과태료 규정 현황374）


374）이천현，「행정법규상 벌칙규정의 법정형」，『형사정책연구』제 20 권 제4호，형사정책 연구원，（2009，겨울호），p． 145 ．

법률안에서 과태료를 두고 있는 규정은 3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 천만원 이하, 500 만원 이하를 두고 있는데, 각각의 경우를 동일 벌금 형을 부과한 행위와 비교해 보면, 형벌과 과태료 부과에 있어 차별을 두고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보인다.
[표 101] 법률안에서의 벌금형과 과태료 규정

| 구 분 | 벌금형 | 과태료 |
| :---: | :---: | :---: |
| 3천만원 이하 | -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34조) <br> -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제36조) <br> -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 후원한 자 (제 36 조) <br>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제공한 공직자 (제 37 조 제 1 항 제 1 호) <br> -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 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 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 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제 37 조 제1항 제 2 호) |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출석 또는 진 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제 38조 제1항) |
| 2천만원 이하 | -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제 35 조 제 1 호) <br>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 한 공직자 (제 35 조 제 2 호) <br> - 가족을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 관에 채용하도록 한 공직자 (제 37 조 제 2 항 제 1 호) <br> -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과의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공 직자 (제37조 제2항 제2호) <br>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 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를 한자 (제37조 제2항 제3호) | -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제 3 자 (제 38 조 제2항 제1호) <br> 금지된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제 38 조 제 2 항 제 2 호) <br>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체결한 공직자 (제38조 제2항 제3호) 사업자 등에게 사적으로 노무 제공을 받은 공직자 (제 38 조 제 2 항 제 4 호) <br> 임용되기 전 2 년 이내의 이해 관계자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 자 (제 38 조 제 2 항 제 5 호) |


| 구 분 | 벌금형 |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br> 한자에게 확정된 보호조치결 <br> 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 <br> 37 조 제2항 제4호) |
| :---: | :--- | :--- |

## (3) 병과벌금형

행정법규 벌칙규정의 법정형은 대부분 자유형과 재산형의 선택형으 로 되어 있다. (예: "○년 이하의 징역 또는 $\bigcirc$ 원 이하의 벌금") 벌금 형은 단기자유형의 적절한 대체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적합한 부과형태 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입법례가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으 나, 벌금형은 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뿐 아니라, 형벌가중적 기능, 범 죄수익 몰수를 위하여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표 102] 행정법규의 벌칙규정방식

| 구 분 | 규정형식 |  |
| :--- | :--- | :--- |
| 벌금형 | (1) 자유형 또는 벌금형 |  |
|  | (2) 벌금형 | 임의적 병과형 |
|  | (3) 자유형 및 벌금형 병과 | 필요적 병과형 |

최근 자유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입법방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벌금형의 정도가 자유형과 벌금형 간에 균형에 맞지 않게 규정된 경우 책임주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벌금형과 자유형은 그 이념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놓 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벌금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그 불법 의 양과 책임에 상응하는 금액이 법정되어야할 것이고, 벌금 액수는 자유형과의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이 맞추어져야 하고, 유사한 특성 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액의 통일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위반행위유형에 있어 부과되는 형벌규정을 살펴보면 (직무집 행 방해행위의 예) 징역형과 이에 상응하는 벌금형의 범위에 관하여 대략 다음 표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표 103］징역형과 이에 상응하는 벌금형375）

| 징 역 | 벌 금 |
| :---: | :---: |
| 1년 이하 | 500 만원 $\sim 1$ 천만원 이하 |
| 2년 이하 | 1천만원 $\sim 2$ 천만원 이하 |
| 3년 이하 | 2천만원 $\sim 3$ 천만원 이하 |
| 5년 이하 | 3천만원 $\sim 5$ 천만원 이하 |

※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가감（특히，재산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가중）
그러나 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 표준화기준에 의하면， 1 년 이하의 징 역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 2 년 이하의 징역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년 이하의 징역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5 년 이하의 징역에 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되，범죄의 종류와 죄질에 따라 가감 토록 하고 있다．${ }^{376)}$

법률안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있는데， 위의 일반기준에 비추어볼 때 징역형과 이에 준하는 벌금형간에 균형 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04］「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에서의 징역형과 병과벌금형

| 징 역 | 벌 금 |
| :---: | :---: |
| 1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 2년 이하 | 2천만원 이하 |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375）이천현，（2009，겨울호），p． 143.
376）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2008．5．13．국회사무처예규 제23호）．

## (4) 다른 관련법의 처벌수준과의 비교

종합적으로 대상 법률안이 적용시 가할 수 있는 처벌수준을 앞서 살펴본 다른 관련법과 비교해 볼 때, 자유형 3 년이 가장 중한 죄로서, 다른 법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형량정도가 다소 낮게 설정되어 있 다. 따라서 법률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합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다른 법보다 중한 벌을 가하고 있는 경우만 대상 법률 안이 적용될 수 있고, 대상 법률안의 형량이 타 법에 비하여 다소 낮 게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이 법은 주로 다른 법과 구성요건이 중복 되지 않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질 것이다.
[표 105]「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과 다른 관련 법의 처벌수준

| 법정형 |  |  | 해당 법률 및 조문 |
| :---: | :---: | :---: | :---: |


| 법정형 |  |  | 해당 법률 및 조문 |
| :---: | :---: | :---: | :---: |
| 자유형 | 벌금형 | 자격정지 |  |
|  | 1천만원 이하 | 10년 이하 | 「형법」제 123 조 직권남용죄 |
|  |  | 없 음 | 「형법，357조 제 1 항 배임수재죄 |
|  |  |  | 「특가법」 제3조 알선수재죄 |
|  |  |  | 「변호사법」제111조 알선수뢰죄 |
|  | 50～250만원 | 없 음 | 「국민투표법，제 100 조 다수인 매수청탁 |
|  | 없 음 | 10년 이하 | 「형법，제 129 조 제 1 항 수뢰죄 |
|  |  |  | 「형법，제 130 조 제삼자뇌물공여죄 |
|  |  |  | 「형법，제 131조 제3항 사후수뢰죄 |
| 3년 이하 또는 | 3천만원 이하 | 없 음 |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34조） |
|  |  |  |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제36조） |
|  |  |  | 「부정청탁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br> 및 이해충돌 <br> 제공 후원한 자（제  <br> 36 조）  |
|  |  |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 <br> 거나 제공한 공직자 <br> （제37조 제1항 제1호） |
|  |  |  |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제 37 조 제1항 제 2 호 |
|  | 150만원 이하 | 없 음 | 「국민투표법」 제99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
|  | 없 음 | 7년 이하 | 「형법」 제 129 조 제 1 항 사전수뢰죄 |
|  |  |  | 「형법」제132조 알선수뢰죄 |


| 법정형 |  |  | 해당 법률 및 조문 |  |
| :---: | :---: | :---: | :---: | :---: |
| 자유형 | 벌금형 | 자격정지 |  |  |
| 2년 이하 또는 | 2천만원 이하 | 없 음 | 「부정청탁 <br> 및 <br> 이해충돌 <br> 방지법」 |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한 공직자（제 35조 제1호） |
|  |  |  |  | 부정청탁에 따라 직 무를 수행한 공직자 （제35조 제2호） |
|  |  |  |  | 가족을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채용하도 록 한 공직자（제 37 조 제 2 항 제 1 호） |
|  |  |  |  |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 관과의 조달계약을 체 결하도록 한 공직자 （제37조 제2항 제2호） |
|  |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 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자（제37 조 제2항 제 3 호） |
|  |  |  |  | 신고자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자에게 확정 된 보호조치결정을 이 행하지 아니한 자（제 37조 제2항 제4호） |
|  | 500 만원 이하 | 10년 이하 | 「형법」 제 357 조 제 2 항 배임증재죄 |  |
|  |  | 없 음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  |
|  | 없 음 | 5년 이하 | 「형법」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 |  |
| 1년 이하 또는 | 1천만원 이하 | 없 음 | 「공직자윤리법，제 18 조의 4 퇴직공직 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  |


| 법정형 |  |  | 해당 법률 및 조문 |  |
| :---: | :---: | :---: | :---: | :---: |
| 자유형 | 벌금형 | 자격정지 |  |  |
|  |  |  | 「공직자윤리법，제 19 조의 5 재직자 등 의 취업청탁 등의 제한 |  |
|  |  |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br> （제 37 조 제 3 항 제 1 호） |
|  |  |  |  | 예산 등의 부정사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을 얻거나 공공기관에 대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공직자（제37조 제3항 제2호） |
|  |  |  |  | 공용재산을 사적인 용도 로 사용 수익하거나 타 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한 공직자（제37조 제3 항 제3호） |
|  |  |  |  | 부정청탁 신고등을 방해 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 도록 강요한 자（제 37 조 제 3 항 제 4 호） |
|  |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 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제 37 조 제 3 항 제5호） |

## 부 록

## ［부 록 1】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 }^{377)}$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이 법은 공직사회에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금품등의 수 수를 제한하며，직무수행과 관련된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 한다．

가．국회，각급 법원，헌법재판소，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및 그 소속 기관

나．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공직자윤리법」 제 3 조의 2 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 라 설치된 각급 국•공립학교

2．＂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국가공무원법」 및「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29]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
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제 1 호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3．＂직무＂란 공직자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업무를 말한다．
가．「행정규제기본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항 또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업무
나．수사•심리•심사•심판•결정•중재•재결•조정•판결 또 는 이에 준하는 업무
다．공사，물품 및 용역 등의 구매를 위한 계약•검사•검수•대 금지급－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
라．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의 배정•지급 등에 관한 업무
마．조세 및 각종 금전적 부과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등에 관 한 업무

바．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지원•징집•소집•동원 등에 관한 업무
사．예산－인사 • 조직관리 • 감사 • 상훈 • 평가 등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업무

아．그 밖에 공직자가 법령상 또는 관례상•사실상 수행하거나
자신의 직무 및 직책에 따라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업무

4．＂특정직무＂란 제3호의 직무 중에 공직자가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할 것이 명백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를 말한다．
5．＂부정청탁＂이란 직무•고용관계，사회적 영향력 또는 연고관계 등을 이용하여 제4호의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의 위반，지위•권한의 남용 또는 직무수행의 기준•절차•방법 등 을 벗어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강

요•요구•위협•알선•개입•지시•접촉•청탁 등의 부정한 의 사전달 행위를 말한다．
6．＂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 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명목을 불문한 일 체의 금전적 이익
나．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국내외의 출장－행사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숙박비－식비 • 행사비•관람료 등의 경비
라．제 9 호에 따른 사업자등에게 취업을 요구•알선하거나 사업자 등의 이권 등에 개입함으로써 취득한 이익
마．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형•무형의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사적 이익＂이란 공직자 및 공직자와 개인적인 연고관계（혈연•지 연•학연•직연，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치적•종교적•사회적 유 대관계 등을 의미한다）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8．＂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공직자 자신의 사적 이익 또는 연고관계（이하＂사적 이해관계＂라 한다）가 개입되 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또는 저해된다고 보일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9．＂사업자등＂이란 법인，단체 및 개인，그 밖에 법인•단체의 대표 자，법인•단체•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종업원을 말한다．공 직자가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
10．＂가족＂이란「민법」 제 779 조의 가족을 말한다．
11．＂친족＂이란「민법」 제767조의 친족 중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12．＂소속기관장등＂이란 공직자의 임명권자，임명제청권자 또는 공 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관리•처리하

기 위하여 소속기관장등이 소속기관의 공직자 중에서 지명•지정 하는 공직자를 포함한다).

제3조(국민의 책무) (1) 모든 국민은 연고관계를 이용하여 부정청탁 을 하거나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하고 투명 한 직무수행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2)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 는 절차•방법•기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 4 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는 국민과의 정보교류가 공평하고 편 리하며 원활하게 촉진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 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2)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가 공공부문에서 근 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공공기관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 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4)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공공기관은 신규•재직 - 퇴직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직무수행에 직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업자등에게도 이 법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 으로 알리고 협력을 구해야 한다.
(6)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 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 조(공직자의 의무) (1) 공직자는 사적 이익이나 연고관계 등에 영 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한다.
(2)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 거나 저해할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회피하 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특정한 사업자등을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직자는 부패행위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소속 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 해 노력해야 한다.

제 6 조(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는 부정청탁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제한 및 공직활 동에서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정청탁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제한 및 공직활동 에서의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 한 지침의 작성 및 보급
3. 교육 및 홍보 계획의 수립 - 시행
4.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 안내•상담•접수•조사처리 등
5.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및 보호조치 등
6. 이 법의 운영에 관련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7. 그 밖에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7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정청탁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 지•제한 및 공직활동에서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

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다른 법률에 더 중하게 규정되어 있 는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 제 2 장 부정청탁의 수수 금지 등

제8조（부정청탁의 금지）（1）특정직무에 관한 이해당사자（그 직무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사업자등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금품등이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공공기관에 특정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 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2．특정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 는 행위

3．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특정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 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4．「청원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 라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및 불합리한 행 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

5．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견조회•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의견 등을 제출하는 행위

6．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또는 사업자등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직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절차•방법•기회를 이용하는 행위
（2）특정직무에 관하여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 3 자（재직 중인 공직자 를 포함한다）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금품등이 수반되는 경우를 제 외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변호사법」，「공인회계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직무에 관하여 이해당사자를 대리하는 행위

2．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 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3．「행정절차법」，「국회법」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청문 회•공청회•공개토론회 등에서 그 절차•방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하거나 의견•증거 등을 제출하는 행위
4．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연설•기고•발표 등을 하는 행위
5．정책의 입안•수행－평가 등을 위해 공공기관과 사업자등이 공 식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하여 자문•고문•진 정•탄원•협의 등을 하는 행위
6．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를 위배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식적•공개적인 절차•방법 등을 이용 하여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신하는 행위

제 9 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공직자는 제 8 조제 1 항 또는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을 하는 자（이하＂부정청탁자＂라 한다） 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그 직무를 수행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부정청탁의 신고•처리) (1) 공직자는 특정직무에 관한 사업자 등 또는 제 3 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등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소속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른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 에는 그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그 신 고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3) 소속기관장등은 제 2 항에 따른 확인결과 신고내용이 수사의 필요 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4) 소속기관장등은 공직자가 제9조를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특 정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와 부정청탁자를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5) 소속기관장등은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내 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이 정보공개 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6) 소속기관장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 확인•수사기관에 대한 통보 등의 과정에서 해당 특정직무의 수행 에 지장이 없도록 제 24 조제 4 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제 1 항부터 제 6 항까지의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3 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 는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사업 자등이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금품등(그 직무수행과 대가관계가 있 는 금품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

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통상적인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 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경우
2.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
3. 공직자의 친족이 부조의 목적으로 경조 관련 금품 또는 그 밖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다만, 그 친족이 공직자의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인 범위 안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거 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게 되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인 경우
6. 공공기관의 직원상조회 등을 통해 제공되거나 질병•재난 등으 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를 돕기 위하여 통상적인 범위 안 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인 경우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공직자의 가족은 제 1 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 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자등 또는 다른 공직자는 제 1 항에 따라 공직자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금품등을 직간접으로 기부-후원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 로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례금 수수 제한) (1)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요청 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그 밖의 회의 등에서 수 행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공직자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내역 등을 소속기관장등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기부금 등의 수수 및 사용 제한) (1)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 기관의 직무상 지휘•감독•규제•지원 등을 받는 사업자등이나 다 른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속 공직자가 직 간접으로 수혜를 받는 기부금 또는 후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공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수 및 사용 내역을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 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 14 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1) 공직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제 11 조에 따라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지체 없 이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공직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장등에 게 청구할 수 있다.
(2) 공직자는 제 1 항에 따라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그 금품등을 인도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소속기관장등은 제 2 항에 따라 공직자가 인도한 금품등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소속기관장등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 따라 처리된 금품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5) 소속기관장등은 공직자가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금지된 금품 등을 신고•인도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그 제공자를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6) 소속기관장등은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제 11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 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그 공 직자와 제공자를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7) 소속기관장등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 인도•수사기관 통보 등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 24 조제 4 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8) 제 12 조 또는 제 13 조를 위반하여 받은 사례금 또는 기부금•후원 금의 경우에도 이 조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 제 4 장 공직할동에서의 이해충돌 방지

제 15 조(사적 이해관계의 직무수행 금지) (1)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이 사업자등이나 대리•자문•고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에서 수행하는 업무 또 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특정직무 수행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직자 자신이 그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경우
2. 특정직무의 상대방이 공직자 자신의 친족인 경우
3. 공직자의 가족이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사업자등에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4. 공직자의 가족이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사업자등을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5.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등이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경우
6.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 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는 공공기관에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하 였던 사업자등 또는 대리•고문•자문•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 던 고객 등과 관계된 특정직무를 임용 이후 2 년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보•경제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교육감 및 시장 군수 - 구청장
3. 제 2 조제 1 호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의 장 및 임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

제 16 조(외부활동의 제한) (1)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외부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직자의 직무권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 또는 영리행위 를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행위
2.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으로부터 지휘•감독•지원 등을 받는 사업 자등에게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공직자가 외국의 정부•기관을 대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외부활동
（2）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 공직자의 외부활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7 조（사업자등과의 거래 제한）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그 가 족은 직접 또는 제 15 조제 1 항제 5 호에 규정된 사업자등을 통하여 해 당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사업자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 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등이나 그 밖의 금융기 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2．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제 18 조（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1）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 또 는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공공기관의 인사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인사담당자는 자신의 가족이 그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산하 기관을 지휘•감독•규제•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이하 ＂산하기관 담당자＂라 한다）는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에 채용되 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3）제 1 항 또는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 절차에 의하여 경력직 공직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9 조（소속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1）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 또 는 산하기관의 물품•용역 • 공사 등 조달을 위한 계약（이하＂조달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서 상대방이 되어 그 조달계약을 체결해서 는 아니 되고，자신의 가족이 그러하도록 해서도 아니 된다．
(2) 공공기관의 조달계약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계약업무 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소속기관의 조달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되어 그 조달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산하기관 담 당자는 산하기관의 조달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되어 그 조달계약 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고, 자신의 가족이 그러하도록 해서도 아니 된다.
(3) 고위공직자는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 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조달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되어 그 조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공개경쟁 절차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예산 등의 부정사용 금지) 공직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을 얻거나(제3자로 하여금 이를 얻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 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공기관의 예산(기금 - 부담금•수익금 등을 포함한다)을 집행•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법령 및 예산에 정해진 바를 위반하는 행위
2.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보관•관리•처분 등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3.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등 그 이행 또는 공사•물품•용역의 품질 - 수량 등의 관리•감독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의 보조금•출연금•장려금•지원금 등의 지급•관리• 감독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21조（공용재산•직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1）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 • 토지•시설 등의 공용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공직자는 다른 공직자，공공기관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등으로부터 사적인 노무제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 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 등을 이용 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1）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 공개 정보（불특정 다수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를 이용하거나 그 밖 의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이 그와 같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공직자는 사업자등이나 다른 공직자에게 미리 알려질 경우 해당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타인에게 유형 • 무형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할 수 있는 단속•조사•입찰•소송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 를 그 사업자등이나 다른 공직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공무수행 사인의 행위제한 등）（1）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제8조 부터 제 11 조까지，제 14 조，제 15 조，제 17 조，제 19 조부터 제 22 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
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정부조직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이나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파견 나온 자
4. 공무상 고문•자문•상담 등을 제공하거나 심의 • 평가 등을 하 는 개인 또는 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소속기관장등은 제 1 항을 위반한 자를 알게 된 때에는 위원 해 촉, 위임 • 위탁관계의 철회, 파견 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공공기관은 제 2 항에 따라 위원 해촉•파견 취소 등의 조치를 받 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 24 조(제척•기피•회피) (1) 공직자가 제 15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해 당되는 때에는 그 직무에서 제척된다.
(2)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등은 그 공직자가 제 1 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 장등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3) 공직자는 자신이 제 1 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때에는 소속기관장 등에게 회피를 신청해야 하며,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소속기관장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전단에 따른 기피•회피신 청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참여 일시중지•직무 재배정•전보,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제 3 항의 후단에 따른 회피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단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등은 조치결과를 각각의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소 속기관장등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단순하고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소속기관장등은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다른 법령이 정보공개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치 내역을 소속기관의 인터닛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관리) (1) 소속기관장등은 제 15 조제 2 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임용되기 전 2 년 이내의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게 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1. 임용되기 전에 재직(사외이사 등 포함)하였던 사업자등 및 그 사업자등에서 수행했던 업무 내역
2. 임용되기 전에 사업자등에게 고문•자문•상담 등을 했던 내역
3. 임용되기 전에 관리 - 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소속기관장등은 직무 재배정•전직 등 인사이동을 이유로 제1항 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해관계가 변경되는 때에는 30 일 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3) 소속기관장등은 다른 법령이 정보공개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 위 안에서 고위공직자의 사익추구와 부정청탁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와 협의를 거쳐 그에 관한 제 1 항의 이해관계를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외부활동 신고 등) (1) 공직자가 재직 중에 다른 직위에 취임 하는 등의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1 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등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2) 소속기관장등은 공직자가 재직 중 외부활동을 하는 것이 공정하 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부활동을 중지 - 종료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 소속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기 전에 해당 공직

자로부터 소명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명요청을 받은 공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 5 장 보 칙

제27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1)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고 있 는 금지 또는 준수사항에 관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2. 제 1 호의 감독기관
3.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
(2) 공직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제 10 조제 1 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 고 또는 제 14 조제 1 항•제 2 항에 따른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인도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 1 항제 2 호 또는 제 3 호의 기관에 신고 등을 할 수 있다.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신고자는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하거나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 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 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제 4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신고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1）누구든지 제 10 조제 1 항에 따른 부 정청탁의 신고，제 14 조제 1 항•제 2 항에 따른 금지된 금품등의 신 고•인도 또는 제 27 조제 4 항에 따른 신고（신고에 대한 조사•감사• 수사•소송 및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 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이하＂신고등＂이라 한다）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신고등을 한 자를 포함한다．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2）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3）위원회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명백한 신고자등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하여 보호조사•보호조치결 정 및 화해권고 등에 관하여는「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부터 제 25 조까지를 준용한다．
（4）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보 호조치결정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통한 보호조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5）누구든지 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자등이라는 사 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6）위원회는 신고자등의 신분비밀 보장，신변보호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에 관하여는「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 13 조 까지，제 14 조제 3 항－제 4 항－제 5 항을 준용한다．
（7）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범한 후에 자진하여 신고 등을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며，신고자등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8）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또는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는 제7항의 규 정을 준용한다．
(9)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 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 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 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신청•조사•결정•환수 등에 관하 여는「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6 조, 제 28 조 또는 제 29 조를 준용한다.

제29조(직무처리의 중지•취소 등) (1)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가 특 정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 제 8 조, 제 9 조, 제 11 조, 제 15 조부터 제 20 조까지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특정직무의 수 행을 중지•정지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가 특정직무를 이미 수행한 경우에 제8 조, 제 9 조, 제 11 조, 제 15 조부터 제 20 조까지의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특정직무에 대하여 취소 - 해제 - 해지 등의 필 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그 특정직무의 수행이 명백하게 위법 하지 아니하거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 30 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1)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가 제 20 조 또 는 제 21 조를 위반하여 얻은 재물•재산상 이익을 환수하고, 공공기 관에 끼친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제 3 자가 얻은 재물•재산상 이익 또는 공공기관에 끼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서도 그러하다.
(2) 공공기관의 장은 제 29 조의 조치에 따라 해당 특정직무의 효력이 상 실되거나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특정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제 31 조(비밀의 준수) 제 10 조, 제 14 조, 제 24 조부터 제 26 조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직자는 그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제 10 조제 5 항，제 24 조제 5 항 또는 제 25 조제 3 항 에 따라 공개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2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1）이 법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위 원회 등에 신고서，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제 1 항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6 장 징계 및 벌칙

제33조（징계 등）징계권자는 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징계 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을 요구해야 하고，그 징계 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결과 에 따라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징계부가 금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 제 78 조의 2 를 준용한다．

1．이 법에 따른 형벌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제 12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제 26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의 외부활동 사실을 1 개월 이내 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제 26 조제 3 항을 위반하여 외부활동에 관한 소속기관장등의 소명 요청에 불응한 경우

제34조（비밀누설의 죄）제31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부정청탁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3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8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위법 -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 한 공직자

제 36 조(금품등 수수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 38 조제 4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의 5 배에 해당하는 가액이 3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품등의 5 배에 상당하는 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11 조제 1 항(제 23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2. 제 11 조제 2 항(제 23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소속기 관장등에게 신고•인도하지 아니한 공직자
3. 제 11 조제 3 항을 위반하여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7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22 조제 1 항 또는 제2항(제 23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공직자

2．제 28 조제 5 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 18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를 위반하여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 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한 공직자
2．제 19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제 23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를 위반한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가족 등이 소속기관 또 는 산하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공직자
3．제 28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공익신고자 보호법」제 2 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4．제 28 조제 4 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 15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제 23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2．제 20 조（제 23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를 가한 공직자
3．제 21 조제 1 항（제 23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공용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타인에게 사 용－수익하게 한 공직자
4．제 28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 도록 강요한 자
5．제 28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공익신고자 보호법」제 2 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를 한 자

제 38 조(과태료 부과) (1) 제 2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공 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출석 또는 진술서의 제 출을 거부한 자는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 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한다.

1. 제 8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제 3 자(공직자 를 제외한다)
2. 제 16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3. 제 17 조(제 23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업자등과 거래를 한 공직자
4. 제 21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사적으로 노무제공을 받은 공직자
5. 제 25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임용되기 전 2 년 이내의 사적 이해관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한다.
6. 제 8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 한을 남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부정청탁을 한 사업자등
7. 제 12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공직자
8. 제 21 조제 3 항(제 23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 등을 공표•게시하게 한 공직자
9. 제 25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이해관계의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아니 한 고위공직자
10. 제 26 조제 2 항에 따른 외부활동의 중지•종료에 관한 소속기관장 등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직자
（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 백만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한다．

1．제 10 조제 1 항（제 23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그 사실을 축소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공직자
2．제 11 조제 1 항•제 2 항（제 23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 자 또는 그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 한 자（그 금품등의 가액이 100 만원을 초과한 자는 제외한다）．다 만，제 36 조 또는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 지 아니하고，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3．제 14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제 23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금품등의 제공자에게 반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 니한 공직자
（5）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부과한다．

제 39 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36 조제 1 항 제 3 호，제 38 조제 2 항제 1 호，제 38 조제 3 항제 1 호，제 38 조제 4 항제 2 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다만，법인 또는 개인 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 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록 1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록 2］

## 「프랑스의 공직자의 투명성과 이해충돌방지법（안）」， （2011．10．19．）${ }^{378)}$

## 제 1 장 정치생할（자금）의 투명성

## 제 1 조

（1）정치자금의 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제88－227호 법률은 이하와 같이 수정된다．
（2）제 1 호．제 9 조 제 7 항 다음에，이하와 같은 단락이 추가한다．
（3）해외 데파트망，생－피에르－미끌롱，생 바르뗄레미，생 마땅，마요 뜨，뉴칼레도니아，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왈리스 푸투나 제도가 아닌 그 외 선거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하나 또는 다수의 해외 데파 트망 혹은 생－피에르－미끌롱－，생 바르뗄레미，생 마땅，마요뜨，뉴칼 레도니아，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혹은 왈리스 푸투나 제도에서 가장 최근의 프랑스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배출하지 않은 정당이나 정치집단과 연결될 수 없다．
（4）제 2 호．제11－4호의 제 1 항의＂동일한 정당＂이라는 단어는＂또는 여러 정당＂으로 대체된다．
（5）제 3 호．제 $11-4$ 호의 제 1 항 다음에，이하와 같은 단락을 추가한다．
（6）＂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과 하나 또는 여러 정당의 당원자격으로 낸 부담금의 누적금액은 당선자에게 들어간 부담금을 제외하고，

[^30]7,500 유로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당선자에게 들어간 부담금은 그들의 공직수행 명목으로 수령한 수당의 $20 \%$ 를 초과할 수 없다."
(7) 제 4 호. 제 $11-4$ 조의 제 3 항은 이하와 같은 단락으로 보충된다: "자 금조달단체와 재무대리인은 연간 3000 유로 이상의 가치를 갖는 하 나 또는 다수의 기부를 승인한 자들의 명단을 정치자금과 선거운동 계좌국가위원회에 매년 제출해야 한다."
(8) 제 5 호. 제 $11-5$ 조는 이하의 문장에 의해 보충된다. "본 조항에 의 해 규정된 방식에 따라 형법전 제131-26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언급 된 선거권의 금지를 권고한다."
(9) 제2항. 형법전 제131-26조에서, "범죄"라는 단어 다음에, 제7항의 끝은 "또는 범법행위"로 규정된다.

## 제 2 장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상황의 투명성

## 제 2 조

공직자 재정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제88-227호 법률의 제 5-1조의 제1항에서, "처벌되는"이라는 단어 다음에 " 2 년의 징역형" 이 삽입된다.

## 제 3 조

(1) 공직자 재정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제88-227호 법률은 이하와 같이 수정된다.
(2) 제 1 호. 제 3 조 제 2 항 제 6 호 다음에, 이하의 단락이 삽입된다.
(3) "앞의 두 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 1 조와 제 2 조의 처음 두 항에 언급된 자들의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국 인터넷사이트에 공개된다. 공직자윤 리국에 이름을 올려 재산등록을 한 자 이외의 이름은 익명으로 한다."
(4) 제 2 호. 제 4 조 제 1 항은 이하와 같이 작성된다.
(5) "본 법률 제 2 조의 마지막 항에 언급된 신고하상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형법전 제226-1 조에 의거하여 처벌된다."

## 제 3 장 임기나 공직수행 중 얻은 소득의 투명성

## 제 4 조

(1) 정부각료들은 매년, 1 월 31 일 이전에, 국무총리에게, 전년도에 발 생한 수입에 대하여 그 성격이 어떤 것이든 간에, 국무총리에게 신 고를 행한다. 정부사무국은 정부각료가 행한 신고목록을 작성하고 이는 인터넷 정부 사이트에 공개된다.
(2) 또한 국무총리에게 신고를 행하지 않은 정부각료를 공개한다.

## 제 5 조

(1) 지방자치단체법전은 이하와 같이 변경된다.
(2) 제 1 호, 제L.2123-24-1조 다음에 제L.2123-24-2조가 삽입된다.
(3) "제L.2123-24-2조 - 제L.2123-20조의 1항에 규정된 자는, 1월 31일 이전에, 그 종류가 어떻든 간에, 그의 직무수행의 자격으로 얻은 수 당을 꼬뮌의 시장에게 신고한다. 꼬뮌은 이들이 신고한 내역을 작성 하여 일반에 공개한다. 또한 이러한 시고를 하지 않은 의원들의 명 단을 공개한다.
(4) "본 절에 규정된 수당은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연속하여 3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5) 제2호. 제L.3123-19-2조 다음에, 제L.3123-19-3조가 삽입된다.
(6) "제L.3123-19-3조 - 지방의회의원들은 매년, 1 월 31 일 이전에, 지방 의회의장에게, 그 직무수행의 자격으로 얻은 수입은 그 성격이 어떻 든 간에 신고한다. 지방의회는 이들이 신고한 내역을 작성하여 일반 에 공개한다. 또한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들의 명단도 공개 한다.
(7)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연속하여 3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당 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8) 제3호. 제L.4135-19-2조 다음에 제L.4135-19-3조가 삽입된다.
(9) 제L.4135-19-3조 - 지방의회의원들은 매년 1 월 31 일 이전에 지방 의회의장에게 어떠한 성격으로든 자신이 공무수행 명목으로 수령한 수입을 신고한다. 지방의회는 이들이 신고한 내역을 작성하여 일반 에 공개한다. 또한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들의 명단도 공개 한다.
(10)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연속하여 3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당 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 4 장 공적자금 분배의 투명성

## 제 6 조

(1) 국회운영에 관한 1958년 11월 17일 제58-1100호 명령의 제13조 다음에, 이하의 조항이 삽입된다.
(2) "제13-1조-국회의원과 상원의원은 매년 늦어도 6월 30일 이전에 전년도에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 목록을 제출한다. 이 목록에는 각 보조금 별로, 수취인, 받은 금액, 자금 지원을 받은 계획안을 명시하 여 포함한다. 각 의회는 그에게 전달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인터 넷 사이트에 공개한다."

## 제 5 장 이해중돌방지

## 제 7 조

(1) 선출직 공직자들과 정부각료들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직하고, 청렴결백하며, 공정하게 행한다.
(2) 이들은 자신의 직무에 내재된 의무와 그 성질상 그의 직무수행 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것이 당연하다 간주되는

사적인 이해관계 사이의 충돌상황을 방지하거나 즉시 멈추도록 한다.
(3) 앞의 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공역무를 수행에 기여하는 자의 사 적인 이해관계는 그 자신, 그의 가족, 친족이나 사업관계 또는 직업 상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유지했거나, 재정적 채무 또는 민사소송에 의해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4) 일반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결정에서 문제되는 이익들, 광범위한 범주의 사람과 연관되는 이익들, 그리고 공역무임무를 수행에 기여 하는 자의 보수 또는 사회적인 혜택과 같은 것은 이해충돌을 야기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 제 8 조

(1) 정직성, 청렴결백,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상 황일 경우, 정부각료들은 그 권한 대행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이러한 권한대행의 조건은 국사원의 데크레에 의해 정한다.
(2) 공직 취임 시에 이해관계를 신고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다. 신 고는 매년 이루어진다. 신고의 방식, 내용과 조건 및 이해관계신고 를 보관하는 조건은 국사원 데크레에 의해 정한다.
(3) 이해관계신고는 국사원 데크레에 의해 정한 조건하에 국무총리 에게 행하고 일반에 공개된다.

## 제 9 조

(1) 정부각료와 비서실장, 보좌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그의 공직임 기 동안, 그들의 몫을 통제할 권리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관리된다.
(2) 본 조항의 적용 조건은 국사원의 데크레에 의해 정한다.

## 제 10 조

(1) 공화국대통령의 장관실 직원과 그 협력자들은 취임시에, 본 법률안 제 8 조의 제 2 항에 의해 규정된 방식에 따라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한다.
(2) 이해관계 신고는 이하와 같이 한다.
(3) 대통령 협력자들은 정부사무국장에게 신고한다.
(4) 비서실 직원들은 국무총리에게 신고한다.
(5) 그 외 다른 비서실 직원들은 소속장관에게 신고한다.
(6) 이 신고는 신고인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와 공직자윤리국 이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열람가능하다.
(7) 본 조항에 언급된 자가 이해관계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명 백하게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30000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형 법전 제131-26조의 제1호와 제 2 호에 언급된 선거권이 금지된다.

## 제11조

(1) 지방자치단체법전의 첫 번째 부분은 이하와 같이 변경된다.
(2) 제 1 호. 법전 제 1 편의 제목은 "지방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보충한다.
(3) 제 2 호. 법전 제 1 편은 이하와 같이 작성된 2 편으로 보완된다.
(4) 제 2 편.
(5) 이해충돌방지.
(6) 제 1 장.
(7) 제L.1121-1조-지방의회의 회의 중에 그들의 정직성, 청렴결백, 공 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 주제에 올랐을 때, 지방당선자들은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8) 정직성, 청렴결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여겨질 때, 지방 행정부 의원들의 직무는 지방 행정부의장의 명령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대행된다.
(9) 지방행정청이 행한 행위들은 본 조항의 기초하여 행정재판소에 의해 취소될 수 없다.
(10) 제L.1121-2조-공직 취임시, 이해관계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11) 제 1 호. 지방의회의 장, 도 의회의 장, 인구 10 만명 이상의 꼬

뮌의 시장과 총 인구 10 만명 이상인 꼬뮌의 내부협력공공영조물 (EPIC)의 의장.
(12) 제 2 호. 위임을 받은 지방의회의원 및 도의회 의원, 시 의원 그리 고 제 1 호에 언급된 내부협력공공영조물의 대표자.
(13) 제 3 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실과 제 1 호에 언급된 공공영조물의 책임자.
(14) 제 1 호에 언급된 자는 공직자윤리국에 신고한다. 명시적인 요청 시에 신고자에만 전달된다.
(15) 그 외의 신고는 지방행정부의 장이나 관련된 공공영조물의 장에 게 전달된다. 명시적인 요청 시에, 신고자에게 그리고 공직자 윤리 국의 요청 시에 공직자 윤리국에게만 전달된다.
(16) 신고는 매년 이루어진다. 신고의 방식, 내용, 신고 조건 및 이해 관계신고는 국사원 데크레에 의해 정한다.
(17) "본 조항에 언급된 자가 이해관계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명백 하게 거짓된 신고를 행한 사실이 있을시, 30000 유로의 벌금형에 처하며, 형법전 제131-26조의 제1호와 제2호에 언급된 신거권이 금지된다."

## 제12조

현 법전 제432-12조 첫 번째 항의, "어떤"이라는 단어는, "공정성, 독립성 또는 중립성을 위협하는 특성을 지닌"으로 대체된다.

## 제 6 장 공직자윤리국

## 제 13 조

(1) 공직자윤리국이라 명명된 법률 위원: 독립행정청은 이하와 같이 구성된다.
(2) 제 1 호. 세 명의 법률위원.
(3) - 국사원의 부의장, 국장.
(4) - 대법원의 제 1 의장.
(5) - 회계감사원의 제 1 의장.
(6) 제 2 호. 다음과 같이 지정된 6 명의 정식의원과 6 명의 대리인.
(7) - 국사원의 총회에서 선출된 현역 또는 명예직의 4명의 재판부 의장 또는 자문관으로서 그 중의 두 명은 대리인 자격이다.
(8) -법정서열없이 전체 재판관들이 선출한 현역 또는 명예직의 4 명 의 대법원 부장 또는 자문관으로, 이 중 두 명은 대리인 신분이다.
(9) 평의부에서 선출된 현역 또는 명예직의 4 명의 회계감사원 의원 또는 각부 부장. 이 중 두 명은 대리인 신분이다.
(10) 공직자윤리국 의원은 데크레에 의해 임명된다.
(11) 공직자윤리국 사무국장은 법률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 이 명령에 의해 임명된다.
(12) 공직자윤리국은 국사원의 부의장이 현역 또는 명예직의 국사원 의원 중 행정법원과 행정항소법원의 자문관 중에서 추천한 보고관, 항소심 법원 제 1 의장이 현역 또는 명예직에 있는 항소심 법원 및 1 심재판소의 재판관 중에서 추천한 보고관, 회계감사원 제 1 의장이 현 역 또는 명예직의 회계감사원 및 회계재판소 의원 중에서 추천한 보고관의 보좌를 받는다. 또한 직무수행에 필요시 공무원을 차출할 수 있다.
(13) 국사원 데크레는 기관의 조직과 운영, 그에 적용할 절차를 정한다.

## 제 14 조

(1) 공직자윤리국은 그의 관할영역에서 본 법안을 적용할 임무를 가 지고 있다.
(2) 이와 같은 자격으로, 공직자윤리국은 이하의 직무를 담당한다.
(3) 제 1 호. 본 법안의 제 8 조와 제 10 조에서 언급된 자와 지방자치법전 제L.1121-2조에 언급된 자들에게 이해관계신고 또는 그들이 관련될 수 있는 이해출돌방지신고에서 마주하는 직업윤리문제에 관하여 의 견을 발한다. 이 의견과 보고된 기록문서는 비밀을 엄수한다.
(4) 제 2 호. 국무총리나 30 명의 국회의원이 정부각료에게 본 법안 제 8 조의 준수를 요구할 때 의견을 발한다. 이 의견은 관련된 정부부처 각료와 공직자윤리국에 전달된다.
(5) 제 3 호. 지방자치법전 제L.1121-2조의 제 1 호에 언급된 지방의회의 원이 동법에서 비롯되는 의무들의 준수를 본 법안의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언급된 자에게의 요구시 의견을 발한다. 이 의견은 공직자윤 리국과 의견서의 대상자에게 전달된다.
(6) 제4호. 국무총리나 제L.1121-1조의 제 1 호에 언급된 자가 비서실 직원과 관련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를 행하며 만날 수 있는 직업 윤리문제에 관해 의견을 표명한다. 이 의견은 보고된 기록문서와 같 이 비밀을 엄수한다.
(7) 제 5 호. 국무총리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본 법안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당국이 결정한 이해 관계있는 공공기관이나 필요한 경우 행 정조직안에서 직업윤리문제를 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 자체내부협력조직에 권고할 수 있고, 정부각료는 사무국장에게 권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
(8) 제 2 호, 제 3 호, 제 4 호를 근거로 하는 권한 행사에 권리옹호관이나 국장이 제소할 수 있다.

## 제15조

(1) 공직자 재정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제88-227호 법률의 제 3 조는 이하와 같이 편집된다.
(2) "제 3 조-공직자 재정투명성과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법률 제 호 제 13 조에 언급된 공직자윤리국은 국회의원과 본 법안 제 1 조와 제 2 조에 언급된 자의 재산등록을 접수할 의무가 있다.
(3) "공직자윤리국은 본 법안 제 1 조와 제 2 조에서 언급된 자가 해명 을 요구받은 이후에도 본 조항이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를 관계행정청에 알린다.
(4) "이들은 임기나 직무수행동안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재산 의 실질적인 모든 변경내용을 공직자윤리국에 알려야 한다.
(5) "공직자윤리국은 동일조항에 언급된 자들에게 세법전 제 170 조에 서 제 174 A 조에 의한 재산신고를, 필요한 경우 세법전 885 W 조의 적 용에 의한 재산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두 달의 신고기간 안에 신고가 없는 경우, 동일한 신고에 대해 세무행정복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6) "공직자윤리국은 수집된 신고와, 필요한 경우 재산의 변화에 관 한 신고에 의해 작성된 의견서의 비밀을 보장한다.
(7) "제출된 신고서와 작성된 의견서는 신고자의 명시적인 요청 또 는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열람이 사실규명을 위해 유용하거나 계 쟁분쟁해결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요청에 의해서만 열람될 수 있다. (8) "공직자윤리국은 국회의원과 본 법안 제 1 조와 제 2 조에 언급된 자들의 제출할 수 있었던 신고와 의견을 토대로 하여 재산상황변화 를 평가한다.
(9) "공직자윤리국은 당사자가 의견에 관한 대책을 취한 후에, 신고 되지 않은 재산변화를 밝혀내는 경우, 공직자윤리국은 이 서류를 검 찰에 넘긴다."

## 제16조

공직자윤리국은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국회 에 전달하며 이를 공개한다. 이 보고서는 재산상황과 이해관계시고 에 관해 어떤 이름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 제 7 장 최종 조항

## 제17조

(1) 공직자재정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법률 제88-227호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 「프랑스의 공직자의 투명성과 이해충돌방지법(안)」

(2) 제 I 항.- 제 1 조 제 1 항 "위원회"는 "행정청"으로 대체한다.
(3) 제 팡.- 제 2 호의 3 회 등장하는 단어 "위원회"를 "윤리국"으로 대체한다.
(4) 제III항.- 제4조 마지막 항, "정치자금투명성위원회"는 "공직자윤 리국"으로 대체한다.
(5) 제IV항.- 제5-1조의 제 I 항, "정치자금투명성위원회"는 "공직자윤 리국"으로 대체한다.

## 제 18 조

기존 정치자금투명성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절차는 공직자윤리국 설 치후에는 공직자윤리국에 계속된다.

## 제 19 조

공직자윤리국이 본 법안을 적용하는데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은 세법 전 제 575 조와 575 A 조에 언급된 조세에 부가세를 창설하여 해당금액 까지 상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본 법안을 적용하는데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은 세법 전 575 조와 575 A 조에 언급된 조세에 부가세를 창설하여 해당금액까 지 상쇄된다.
[부 록 3]

## 일본 관련법 정리 ${ }^{399}$

## 1) 공무원에 관한 법

| 관련법률 | 행위자 | 행위유형 | 효 과 |
| :---: | :---: | :---: | :---: |
| 형 법 | 공무원 | 직무에 관하여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5년 이하 징역 |
|  |  | 청탁을 받은 때 | 7년 이하 징역 |
|  |  | 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 탁을 받고 뇌물 수수, 요구, 약속후 공무 원이 된 경우 | 5년 이하 징역 |
|  |  |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 물 공여, 공여요구, 약속 | 5년 이하 징역 |
|  |  |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 지 아니한 때 | 1년 이상 유기징역 |
|  |  |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 를 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 제 3 자에 공여, 요구, 약속 |  |
|  |  | 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아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 위를 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5년 이하 징역 |

379) 이 표는, 김현숙, "일본법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법", 「주요 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3차 워크숍 자료집」 발제문, 한국법제연구 원, (2012.6.26), pp.39-85의 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 관련법률 | 행위자 | 행위유형 | 효 과 |
| :--- | :---: | :--- | :---: |
|  |  | 청탁을 받고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상 부 <br> 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br> 하지 아니하도록 알선하거나 그 보수로 <br>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5년 이하 |
| 징역 |  |  |  |

## 2) 선거관련 공무원에 관한 법

| 관련법률 | 행위자 | 행위유형 | 효 과 |
| :---: | :---: | :---: | :---: |
| 공직선거법 | 중 의 원의 원 의 후보자가 될 자 선정, 중의 원 명부 등재자 선정, 참 의 원 명 부 등재자 선정 에 권한이 있 는 자 | 권한의 행사에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 수수, 요구, 약속 | 3년 이하 징역 |
|  |  | 이익공여, 공여약속 | 3년 이하 <br> 징역, <br> 100만엔 <br> 이하 벌금 |
|  | 공 통 |  | 수수한 이익 몰수, 추징 |
| 공직에 <br> 있는 자 <br> 등의 <br> 알선행위로 <br> 인한 이익 <br> 등의 <br> 처벌에 <br> 관한 법률 | 중의원, 참 의 원 의 원, 지 방공공단 체의 의회의 의원 또는 그 장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체결한 매매, 임차, 투자 기타 계약 또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에 관하여 청탁받고 알선, 보수로 재산상 이익 수수 <br>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자본금의 2 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체결한 매 매, 임차, 투자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청 탁받고 알선, 보수로 재산상 이익 수수 | 3년 이하 징역 |
|  | 중의원의원 <br> 또는 <br> 참의원 <br> 의원의 비서 | 위의 행ㅇᅱᅱ | 2년 이하 징역 |


| 관련법률 | 행위자 | 행위유형 | 효 과 |
| :---: | :---: | :---: | :---: |
|  |  | 재산상 이익 공여 | 1년 이하 <br> 징역 또는 <br> 250 만엔 <br> 이하 벌금 |
|  |  |  | 범인이 <br> 수수한 <br> 재산상 이익 <br> 몰수, 추징 |
|  |  |  |  |

## 3) 재판 및 형사절차관련자에 관한 법

| 관련법률 | 행위자 | 행위유형 | 효 과 |
| :---: | :---: | :---: | :---: |
| 국제형사 재판소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법률 | 국제형사재 <br> 판소의 <br> 재판관, <br> 검찰관 <br> 기타 직원 |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5년 이하 징역 |
|  |  | 청탁받음 | 7년 이하 징역 |
|  |  | 청탁받고 제 3 자에 뇌물공여, 요구, 약속 | 5년 이하 징역 |
|  |  | 청탁받고 다른 직원에게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알선후 보수로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5년 이하 징역 |
|  | 국 제 형 사재 판소의 재판 관 등이 될 자 | 청탁받고 뇌물 수수, 요구, 약속후 직원 이 됨 | 5년 이하 징역 |
|  | 공 통 |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 지 않음 | 1년 이상 유기징역 |


| 관련법률 | 행위자 | 행위유형 | 효 과 |
| :---: | :---: | :---: | :---: |
|  |  |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 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뇌물 수수, 요구, 약속, 제 3 자 공여, 요구, 약속 | 1년 이상 <br> 유기징역 |
|  | 국 제형 사재 <br> 판소의 재 <br> 판관 등이 <br> 었던 자 | 재직중 청탁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5년 이하의 징역 |
|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 에 관한 법률 | 모든 사람 | 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에 대하여 직무 에 관한 청탁 등 | 2년 이하 징역, 20 만엔 이하 벌금 |
|  |  | 선임예정재판원에 대하여 청탁 등 | 2년 이하 징역, 20만엔 이하 벌금 |
| 검찰 심사회법 | 누구든지 | 검찰심사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 는 경우 | 2년 이하 징역, 20 만엔 이하 벌금 |
| 배심법 | 누구든지 | 배심의 평의에 회부할 사건에서 배심원 에 대하여 청탁을 하기 위하여 평의가 끝나기 전에 개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때 | 1년 이하 징역, 2천엔 이하 벌금 |

## 4) 회사에 관한 법

| 관련법률 | 행위자 | 행위유형 | 효 과 |
| :---: | :---: | :---: | :---: |
| 일반사단 <br> 법인 및 |  | 부정한 청탁받고 재산상 이익 수수, 요구, 약속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엔 이하 벌금 |
| 일반재단 법 인 에 관한 법률 | 등 | 이익 공여, 공여약속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엔 이하의 벌금 |


| 관련법률 | 행위자 | 행위유형 | 효 과 |
| :---: | :---: | :---: | :---: |
|  |  | 이익 몰수, 추징 |  |
| 회사법 | 회계감사인 등 | 부정한 청탁받고 재산상 이익 수수, 요구, 약속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엔 이하 벌금 |
|  |  | 이익 공여, 공여약속 | 3년 이하의 <br> 징역 또는 <br> 300만엔 <br> 이하의 벌금 |
|  | 모든 사람 | 주주 등 권리행사 등에 관한 부정청탁 후 재산상 이익 수수, 요구, 약속 | 5년 이하 징역, 500 만엔 이하 벌금 |
|  |  | 이익공여, 공여약속 | 5년 이하 징역, 500 만엔 이하 벌금 |
| 보험업법 | 상호회사 회계감사인, <br> 일시회계 <br> 감사인, <br> 보험회사의 <br> 보험조사인 <br> 등 |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 산상 이익 수수, 요구, 약속 | 5년 이하 징역, 500 만엔 이하 벌금 |
|  |  | 에게 이익 공여, 요구, 약속 | 3년 이하 징역, 300 만엔 이하 벌금 |
|  | 사원 등 | 상호회사의 사원총회, 총대회, 사채권 자집회 등에서 발언, 의결권행사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 익 수수, 요구, 약속 | 5년 이하 징역, 500 만엔 이하 벌금 |
|  |  | 에게 이익 공여, 요구, 약속 |  |
| 자산의 <br> 유동화에 <br> 관한 법률 | 특정목적 <br> 회사의 회계감사인, 일시회계 감사인 등 |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 산상 이익 수수, 요구, 약속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엔 이하 벌금 |
|  |  |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요구, 약속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 익 수수, 요구, 약속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 만엔 이하 벌금 |


| 관련법률 | 행위자 | 행위유형 | 효 과 |
| :---: | :---: | :---: | :---: |
|  | 특정목적회 사의 사원총 회, 특정사 채권자집회, 채권자집회 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 행사, 사원, 채권자 등의 권 리 행 사, 특 정사채권 자의 권리행 사 등 | 이익 공여, 요구, 약속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엔 이하 벌금 |
| 일본전신 <br> 전화주식 <br> 회사 등에 <br> 관한 법률 | 회사, 지역 회사의 이사, 회 계 참 여, 감사, 직원 | 직무에 관하여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3년 이하 징역 |
|  |  |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 7년 이하 징역 |
|  |  | 이 될 자가 취임 후 담당할 직무에 관 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후 이사 등이 된 경우 | 2년 이하 징역 |
|  |  | 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 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 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2년 이하 징역 |
| 금융 <br> 기관의 <br> 합병 및 <br> 전환에 <br> 관한 법률 | 설립 위 원이 신설병합으 로 은행을 설 립 하 는 경우 |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 산상 이익 수수, 요구, 약속 | 5년 이하 징역, 500 만엔 이하 벌금 |
|  |  | 이익 공여, 공여요구, 약속 | 3년 이하 징역, 300 만엔 이하 벌금 |
|  | 주주 등 | 특정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주주총회 에서 하는 발언 또는 의결권행사, 결의 부 존재 또는 무효 승인, 취소의 소 제기 | 5년 이하 징역, 500 만엔 이하 벌금 |


| 관련법률 | 행위자 | 행위유형 | 효 과 |
| :---: | :---: | :---: | :---: |
|  |  |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 산상 이익 수수, 요구, 약속 |  |
|  |  | 이익공여, 공여요구, 약속 |  |
| 금융 <br> 기관의 <br> 합병 및 <br> 전환에 <br> 관한 법률 | 설립 위 원이 신설병합으로 은행을 설립 하는 경우 |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 산상 이익 수수, 요구, 약속 | 5년 이하 징역, 500 만엔 이하 벌금 |
|  |  | 이익 공여, 공여요구, 약속 | 3년 이하 징역, 300 만엔 이하 벌금 |
|  | 주주 등 | 특정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주주총회 에서 하는 발언 또는 의결권행사,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승인, 취소의 소 제 기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 수수, 요구, 약속 | 5년 이하 징역, 500만엔 이하 벌금 |
|  |  | 이익공여, 공여요구, 약속 |  |

## 5) 파산, 중재 등에 관한 법

| 관련법률 | 행위자 | 행위유형 | 효 과 |
| :---: | :---: | :--- | :---: |
|  |  | 직무에 관하여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3년 이하 <br> 징역, <br> 300만엔 <br> 이하 벌금 <br> (병과가능) |
|  | 파산법 | 파산관재인, <br> 보전관리인 <br> 또는 각각 <br> 대리 | 부정한 청탁 |


| 관련법률 | 행위자 | 행위유형 | 효 과 |
| :---: | :---: | :---: | :---: |
|  | 법인인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보전 관 리 인 의 직무를 행 하는 임원 또는 직원 |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3년 이하 징역, 300 만엔 이하 벌금 (병과가능) |
|  |  | 직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보전관 리인에게 뇌물 수수, 공여요구, 공여약속 | 3년 이하 징역, 300만엔 이하 벌금 (병과가능) |
|  | 파산채권자, <br> 대 리 위 원 <br> 대리인, 임원 직원 | 의결권 행사, 투표를 통한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5년 이하 징역, 500만엔 이하 벌금 (병과가능) |
| 중재법 | 중재인 | 직무관련 뇌물수수, 요구, 약속 | 5년 이하 징역 |
|  |  | 청탁받은 때 | 7년 이하 징역 |
|  |  | 직무관련 청탁, 제 3 자에게 뇌물공여, 공 여요구, 약속 | 5년 이하 <br> 징역 |
|  | $\begin{aligned} & \text { 중재인이 } \\ & \text { 될 자 } \end{aligned}$ |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받고 뇌물 수 수, 요구, 약속한 후 중재인이 됨 | 5년 이하 징역 |
|  | 공 통 |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 지 아니한 때 | 1년 이상 <br> 유기징역 |
|  |  |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 위를 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뇌물 수수, 요구, 약속, 제 3 자에게 공여, 공여요구, 약속 | 1년 이상 유기징역 |
|  | 중재인이었 던 자 | 재직 중 청탁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5년 이하 징역 |


| 관련법률 | 행위자 | 행위유형 | 효 과 |
| :---: | :---: | :---: | :---: |
| 회사 <br> 갱생법 | 관재인 등 | 직무에 관한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3년 이하 징역, 300만엔 이하 벌금 (병과가능) |
|  |  | 부정한 청탁을 받은 때 | 5년 이하 징역, 500만엔 이하 벌금 (병과가능) |
|  | 관재인 <br> 등이 <br> 법인인 때 | 임원, 직원이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3년 이하 징역, 300만엔 이하 벌금 (병과가능) |
|  |  | 부정한 청탁을 받은 때 | 5년 이하 징역, 500만엔 이하 벌금 (병과가능) |
|  | 갱생채권자 등 | 관계인집회의 기일에서의 의결권행사, 서면 등 투표를 통한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5년 이하 징역, 500 만엔 이하 벌금 (병과가능) |
|  | 공통 |  | 뇌물 몰수, 가액추징 |
| 사채, <br> 주식 <br> 등의 <br> 대체에 <br> 관한 법률 | 모든 사람 | 가입자집회에서 발언, 의결권 행사와 관 련하여 부정한 청탁받고 재산상의 이익 을 수수, 요구, 약속 <br> 이익 공여, 약속 | 5년 이하 징역, 500 만엔 이하 벌금 |


| 관련법률 | 행위자 | 행위유형 | 효 과 |
| :---: | :---: | :--- | :---: |
|  | 공 통 |  | 이익몰수, <br> 가액추징 |
|  |  | 직무에 관하여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3년 이하 <br> 징역, <br> 300 만엔 <br> 이하 벌믐 |


| 관련법률 | 행위자 |  | 행위유형 |
| :---: | :---: | :--- | :---: |
|  |  |  | 효 과 <br> 범인 또는 <br> 법인인 <br> 감독위원 <br> 등이 수수한 <br> 뇌물 몰수, <br> 추징 |
|  | 공 통 |  |  |

## 6) 경제에 관한 법

| 관련법률 | 행위자 | 행위유형 | 효 과 |
| :---: | :---: | :---: | :---: |
| 투자신탁 <br> 및 투자 <br> 법인에 <br> 관한 법률 | 투자법인의 <br> 대표투자법인 <br> 채권자, <br> 결의집행자 <br> 등 |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 상 이익 수수, 요구, 약속 | 5년 이하 징역, 500 만엔 이하 벌금 |
|  |  | 이익 공여, 요구, 약속 | 3년 이하 징역, 300 만엔 이하 벌금 |
|  | 채권자, 주주 등 | 투자주총회, 창립총회 등에서의 발언, 의 결권행사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 수수, 요구, 약속 | 5년 이하 징역, 500 만엔 이하 벌금 |
|  |  | 이익공여, 요구, 약속 |  |
| 경제관계 <br> 벌칙의 <br> 정비에 <br> 관한 법률 | 임원 기타 <br> 직원 | 이 될 자가 그 담당한 직무에 관하여 청 탁을 받아 뇌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임 원, 기타 직원으로 행위한 때 | 2년 이하 징역 |
|  |  | 이었던 자가 재직 중 청탁을 받고 직무 상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뇌물 수수, 요 구, 약속 |  |

7) 재건축, 주택, 도시재개발등에 관한 법

| 관련법률 | 행위자 | 행위유형 | 효 과 |
| :---: | :---: | :---: | :---: |
| 아파트 | 조합의 |  |  |
| 재건축의 | 임원 등 |  |  |
| (총대, 직원, |  |  |  |
| 관한 덩에 | 잭익문에 관히행자, |  | 3 년 이하 |
| 심사위운) |  | 징숙, 요구, 약속 |  |
| 300 만엔 |  |  |  |
| 이하 벌금 |  |  |  |


| 관련법률 | 행위자 | 행위유형 | 효 과 |
| :---: | :---: | :---: | :---: |
|  |  |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 지 아니한 때 | 7년 이하 <br> 징역 |
|  |  | 청탁받고 제 3 자 뇌물공여, 공여약속 | 3년 이하 <br> 징역, <br> 300만엔 <br> 이하 벌금 |
|  | 조합의 <br> 임원 등이었던 자 | 재직 중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 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3년 이하 <br> 징역 |
|  | 공통 |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 3 자가 수수한 뇌물 | $\begin{gathered} \text { 몰수, } \\ \text { 가액추징 } \end{gathered}$ |
| 주택의 품질확보 <br> 의 촉진 <br> 등에 <br> 관한 <br> 법률 | 등록주택 <br> 성능평가 <br> 기관, <br> 등록주택 <br> 형식성능인정 <br> 등 기관, <br> 등록시험 <br> 기관 또는 <br> 그 직원 | 직무에 관하여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3년 이하 <br> 징역 |
|  |  |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 지 아니한 때 | 7년 이하 징역 |
|  |  | 재직 중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 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에 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 | 3년 이하 <br> 징역 |
|  |  |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그 공여를 약속 하게 한 때 | 3년 이하 징역 |
|  | 공 통 |  | 범인 또는 <br> 정을 아는 <br> 제 3 자가 <br> 수수한 뇌물 <br> 몰수, 추징 |
| $\begin{gathered} \text { 도시 } \\ \text { 재개발법 } \end{gathered}$ | 개인시행자, <br> 조합의 임원, 총대, 직 원, 재개발 |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 | 3년 이하 <br> 징역 |


| 관련법률 | 행위자 | 행위유형 | 효 과 |
| :---: | :---: | :---: | :---: |
|  | 회사의 <br> 임 원, 직원, 감사위원 |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 지 아니한 때 | 7년 이하 징역 |
|  |  | 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 위를 하지 아니하고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 | 3년 이하 징역 |
|  |  |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공여, 약속 | 3년 이하 징역 |
|  | 공 통 |  | 범인 또는 <br> 정을 아는 <br> 제 3 자가 <br> 수수한 뇌물 <br> 몰수, 추징 |
| 도시 <br> 계획법 | 인가를 <br> 받은 <br> 도시계획사 <br> 업을 <br> 시행하는 자, <br> 특별시행자 <br> 인 법인의 <br> 임원 또는 <br> 직 원 |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직무에 관하 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 | 3년 이하 징역 |
|  |  |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 지 아니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
|  |  | 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 청탁을 받고 당 해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직무상 부정한 ㅎ애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고 뇌 물 수수, 요구, 약속 | 3년 이하 징역 |
|  |  |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 공여, 공여약속 |  |
|  | 공 통 |  | 범인 또는 <br> 정을 아는 <br> 제 3 자가 <br> 수수한 뇌물 <br> 몰수, 추징 |
| 토지구획 <br> 정리법 | 개인시행자, 조합의 임원, 총대, |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 | 3년 이하 징역 |


| 관련법률 | 행위자 | 행위유형 | 효 과 |
| :---: | :---: | :---: | :---: |
|  | 직 원, 구획정리 회사의 임원, 직원 |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 지 않은 때 | 7년 이하 징역 |
|  |  | 이었던 자가 재직 중 청탁을 받아 직무 상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3년 이하 징역 |
|  |  |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제 3 자에게 뇌물공여, 약속 | 3년 이하 <br> 징역 |
|  | 공 통 |  | 범인 또는 <br> 정을 아는 <br> 제 3 자가 <br> 수수한 뇌물 <br> 몰수, 추징 |
| 건설업법 | 등록경영 <br> 상황분석 <br> 기관, 직원 | 경영상황분석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3년 이하 징역 |
|  |  |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 지 아니한 때 | 7년 이하 징역 |
|  |  | 에 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 위를 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3년 이하 <br> 징역 |
|  |  |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제 3 자에게 뇌물 공여, 공여약속 | 3년 이하 징역 |
|  | 공 통 |  | 범인 또는 <br> 정을 아는 <br> 제 3 자가 <br> 수수한 뇌물 <br> 몰수, 추징 |
| 토지개량 법 | 토지개량 구역의 임원이나 총대, | 직무에 관하여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begin{gathered} \text { 3년 이하 } \\ \text { 징역 } \end{gathered}$ |


| 관련법률 | 행위자 | 행위유형 | 효 과 |
| :---: | :---: | :--- | :---: |
|  |  |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 <br> 지 아니난 때 | 7년 이하 <br> 징역 |
|  | 토지개량 <br> 구역연합의 <br> 인원이난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아 <br> 즥문상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 <br> 위를 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뇌물 수수, <br> 요구, 약속 | 3년 이하 <br> 징역 |  |

## 8) 의료, 약사법

| 관련법률 | 행위자 | 행위유형 | 효 과 |
| :---: | :---: | :---: | :---: |
| 약사법 | 기준적합성 <br> 인증 <br> 업무에 <br> 종사하는 <br> 등록인증 <br> 기관의 <br> 임원, 직원 | 직무에 관하여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5년 이하 징역 |
|  |  |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 지 못하게 하는 경우 | 7년 이하 징역 |
|  |  | 이 될 자가 취임후 담당할 직무에 관하 여 청탁을 받고 뇌물 수수, 요구, 약속하 고 임원, 직원이 된 경우 | 5년 이하 징역 |
|  |  | 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 위를 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5년 이하 징역 |
|  | 공 통 |  | 범인이 <br> 수수한 뇌물 몰수, 추징 |
| 의료법 | 사회의료 <br> 법인의 임원, 대표, 사회의료 <br> 법인 <br> 채권자 <br> 또는 <br> 결의집행자 |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 상 이익 수수, 요구, 약속 | 5년 이하 징역, 500만엔 이하 벌금 |
|  |  | 에게 이익 공여, 공여약속 | 3년 이하 징역, 300만엔 이하 벌금 |
|  | 채권자 등 | 사회의료법인 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 수수, 요구, 약속 에게 이익 공여, 약속 | 5년 이하 징역, 500만엔 이하 벌금 |

## 9) 스포츠에 관한 법

| 관련법률 | 행위자 | 행위유형 | 효 과 |
| :---: | :---: | :---: | :---: |
| $\begin{gathered} \text { 스포츠 } \\ \text { 진흥 } \\ \text { 투표의 } \\ \text { 실시 등에 } \\ \text { 관한 법률 } \end{gathered}$ | 기구의 <br> 임원, 직원 또는 <br> 시험관계인 | 이 될자가 그 담당할 업무와 관계된 직무 또는 그와 관련한 지정시험에 관하여 청탁 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 기구 의 임원, 직원 또는 시험관계인이 된 때 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그 업무와 관계된 직무 또는 그와 관련 한 지정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 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관 하여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2년 이하 징역 |
| 모터보트 경주법 | 경주의 선수 | 가 될 자가 그 경주에 관하여 청탁을 받 고 뇌물 수수, 요구, 약속하고 경주의 선 수가 된 경우 <br> 였던 자가 그 선수기간 중 청탁을 받고 그 경주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2년 이하 징역 |
| $\begin{gathered} \text { 소형 } \\ \text { 자동차 } \\ \text { 경주법 } \end{gathered}$ | 소형자동차 경주의 선수 | 가 될 자가 그 행할 경주에 관하여 청탁 을 받고 뇌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소형 자동차경주의 선수가 된 때 <br> 였던 자가 그 선수였던 기간 중에 청탁 을 받고 그 경주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 에 관하여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2년 이하 징역 |
| 자동차 <br> 경기법 | 경륜선수 | 가 될 자가 그 경주에 관하여 청탁을 받 고 뇌물 수수, 요구, 약속하고 경륜선수 가 된 때 <br> 이었던 자가 선수였던 기간 중 청탁을 받고 그 경주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2년 이하 징역 |

10) 기 타

| 관련법률 | 행위자 | 행위유형 | 효 과 |
| :---: | :---: | :---: | :---: |
| 노동안전 위생법 | 제조시 등 검사, 성능검사, 개별검정 또는 <br> 형식검정이 업무에서 종사하는 등록제조시 등 검사기관, 등록성능검사 기관, 등록개별검정 기관, 등록형식검정 기관의 임원, 직원 | 직무에 관하여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5년 이하 징역 |
|  |  |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때 | 7년 이하 징역 |
|  |  | 이 될 자가 취임후 담당할 직무에 관 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 수수, 요구, 약 속하고 임원 또는 직원이 된 때 | 5년 이하 징역 |
|  |  | 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 고 업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 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5년 이하 징역 |
|  | 공 통 |  | 범인이 수수한 뇌물 몰수, 추징 |
| 방송법 | 협회의 임원 | 직무에 관하여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3년 이하 징역 |
|  |  | 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 수수, 요구, 약속하 고 협회의 임원이 된 때 |  |
|  |  | 이었던 자가 재직 중 청탁을 받고 직 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 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


| 관련법률 | 행위자 | 행위유형 | 효 과 |
| :---: | :---: | :---: | :---: |
|  |  | 세번째에 해당하고 뇌물 공여, 약속 | 3년 이하 <br> 징역, <br> 250 만엔 <br> 이하 벌금 |
|  |  | 공 통 |  |
|  |  |  |  |
|  |  |  |  |

## 참 고 문 헌

## ［워크숍 자료］

강지은，＂프랑스의 공직자의 투명성과 이해충돌방지법（안）＂，「주요 외 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5차 워크숍 자료집」 토론문，한국법제연구원，（2012．7．25），pp．23－25．

김경락，＂미국의 뇌물，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연구＂，「주요 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1차 워크숍 자 료집」 토론문，한국법제연구원，（2012．6．18），pp．130－132

김대인，＂유럽연합차원에서의 부패관련 범죄규율＂에 대한 지정토론문＂，「주요 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1차 워크숍 자료집」토론문，한국법제연구원，（2012．6．11），pp．125－128

김대홍，＂전통 동아시아법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법＂，「주요 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3차 워크숍 자 료집」 발제문，한국법제연구원，（2012．6．26），pp．11－36

김세진，＂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법（ㅍ）＂，「주요 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4차 워크숍 자료집」 발제문，한국법제연구원，（2012．7．4），pp．55－78．

김용훈，＂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부패 관련 범죄규율＂，「주요 외국의 부 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1차 워크숍 자료집」 발 제문，한국법제연구원，（2012．6．11），pp．27－66

김현숙，＂일본법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법＂，「주요 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3차 워크숍 자료집」 발제문，한국법제연구원，（2012．6．26），pp．39－85．

김혜련，＂호주의 부정부패관련 법과 정책＂，「주요 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2차 워크숍 자료집」 발제문，한국법 제연구원，（2012．6．18），pp．7－23

류부곤，＂일본법에서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법률에 대한 토 론문＂，「주요 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3차 워크숍 자료집」 토론문，한국법제연구원，（2012．6．26），pp．87－90．

박영길，＂국제협약상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 내용＂，「주요 외 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1차 워크숍 자료집」 발제문，한국법제연구원，（2012．6．11），pp．9－24

윤태범，＂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주요 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4차 워크숍 자료집」 토론문，한국법제연구원，（2012．7．4），pp．51－52．

윤혜선，＂캐나다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법＂，「주요 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4차 워크숍 자료집」 발제문，한국법제연구원，（2012．7．4），pp．9－37．

이근우，＂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 토론문＂，「주요 외국의 부정 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1차 워크숍 자료집」 토론문， 한국법제연구원，（2012．6．11），pp．114－123

이근우，＂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법 토론문＂，「주요 외국의 부 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4차 워크숍 자료집」 토 론문，한국법제연구원，（2012．7．4），pp．83－85．

이상현，＂영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법＂，「주요 외국의 부 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4차 워크숍 자료집」 발 제문，한국법제연구원，（2012．7．4），pp．41－49．

이성기，＂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주요 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1차 워크숍 자료집」 발제문，한국 법제연구원，（2012．6．11），pp．69－111．

이혜미，＂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에 관하여＂，「주요 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2차 워크숍 자료집」토론문，한국 법제연구원，（2012．6．18），pp．25－26

이희정，＂캐나다의 부정청탁방지법 관련 토론문＂，「주요 외국의 부정 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4차 워크숍 자료집」 토론문， 한국법제연구원，（2012．7．4），pp．38－39．

조지만，＂전통 동아시아법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법 토론문＂，「주요 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3차 워크숍 자료집」토론문，한국법제연구원，（2012．6．26），pp．92－93．

최준혁，＂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법（ㅍ）＂，「주요 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4차 워크숍 자료집」 토론문，한국법제연구원，（2012．7．4），pp．79－82．

최준혁，＂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자료－독일의 경우＂，「주요 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5차 워 크숍 자료집」 발제문，한국법제연구원，（2012．7．25），pp．1－22．

## ［자문서］

김대홍，「질의 및 답변서」，（2012．7．17）．
김문현，「질의 및 답변서」，（2012．5．21）．
이상현，「질의 및 답변서」，（2012．7．16）．
이천현，「질의 및 답변서」，（2012．7．10）．

유종남，「질의 및 답변서」，（2012．7．23）．
윤승기，「질의 및 답변서」，（2012．7．13）．
［번역문］

강지은，「프랑스의 공직자의 투명성과 이해충돌방지법（안），2011．10．19」， 번역문．
［국내 논문］

강홍진，「프랑스 부정청탁금지 관련 법제」，『최신외국법제정보』제4호 （2012．5），pp．22－33．

강홍진，「공직 활동 투명성 및 이해 충돌 방지에 관한 프랑스 법제」 미발표 원고，（2012．7．18）．

권은경•신동춘，「 OECD 뇌물방지 협정의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 연 구．국토연구원」，『국토（구 국토정보），（구 국토정보다이제스트）』 206，（1998．12），pp．52－53

김경석，「Bribery Act 2010의 시행과 우리기업의 대처방안」，『동아법학』 （53），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2011．11），pp．495－518

김용세，「뇌물규제를 위한 현행법제 ：내용과 한계」，『법학연구』9（1），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1998．10），pp．249－287

김일철，「뇌물행위에 대한 개념적분석」，『한국사회학』5，한국사회학회， （1970．10），pp．41－45

김재광，「부패방지 관련법제의 체계 및 평가」，『공법연구』 제 40 집 제 3 호， （2012．2），pp．1－31．

김준호，「뇌물죄 구성요건의 해석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석사학위 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2007）．

김홍준，「뇌물의 의미」，『저스티스』110，한국법학원，（2009．4），pp．121－179 도중진，「［제4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분야］$\Pi$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규정의 개정방안』，『형사정책연구』，Vol． 2009 No．12，한 국형사정책연구원，（2009）

박광섭•김용세，「뇌물의 직무관련성」，『법학연구』 $6(1)$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1995．12），pp．107－124

박주봉•김용세，「뇌물에 관한 일반인식 조사연구」，『법학연구』 $9(1)$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1998．10，pp．207－228

박흥식，「공직자 이해충돌 행위의 개선을 위한 연구」，『한국행정학보』， vol． 42 no．3，한국행정학회，（2008）

박희영，「독일에 있어서 부정청탁 금지 관련 입법사례 및 제도 현황」，『최신외국법제정보』제4호，（2012．5），pp．4－20

배종대，「공무원 직무범죄의 쟁점」，『고시 연구』vol． 21 no．11，（1994）
성낙현，「횡령의 객관적 구성요건의 실체』，『법조』，vol． 54 no． 10 ，법조 협회，（2005）

송삼현，「공직부패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비교형사법 연구』，제11권 제2호，（2009），pp．559－581

오영근，「공무원범죄와 양형」，『형사정책연구 $20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12），pp．93－126

유숙영，「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사회과학연구』vol．3，순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90）

윤종행，「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신뢰위반의 유형과 범위」，『신뢰연구』 제 16 권 통합본，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2006）

윤태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입법화과정에 대한 연구．」，『GRI 연구논총』，vol． 12 no． 3 ，경기개발연구원，（2010）

윤태범，「공무원 윤리 확보를 위한 직무상 이해충돌 회피에 관한 연구」，『한국인사행정학회보』，vol． 4 no．2，한국인사행정학회，（2005）

윤홍근，「미의회의 로비개혁논의와 로비규제법에 관한 연구」，『한국정치 학회보』， $30(1), 271-295$ ，한국정치학회，（1996．5）

이광수，「변호사법 제 111 조 제 1 항의 청탁•알선의 범위．」，『저스티스』， no．105，한국 법학원，（2008）

이규호，「형법상 공무원 직무범죄의 본질에 관한 연구」，『사법행정』 616，한국사법행정학회，（2012．4），pp．61－71

이동수，「미국 행정법상 행정기관의 입법적 및 사법적 기능」，『토지공 법연구』 제45집（2009．8．25），pp．433－453

이승호，「배임수증재죄의 본질과＂부정한 청탁＂의 판단기준」，『법조』 Vol． 56 No．11，（2007）

이준형，「고려시대 관료부패에 대한 실증적 연구」，『한국사회와 행정 연구』 16 （2），서울행정학회，（2005．8），pp．97－116

이준형，「한국사회와 뇌물죄」，『형사정책연구』 $28,5-37$ ，한국형사정책 연구원，（1996．12）

이천현，「벌금형의 규정방식에 관한 고찰」，『형사정책연구』 제 18 권 제 3 호，형사정책연구，통권 제 71 호，（2007•가을호）

이천현，「행정법규상 벌칙규정의 법정형」『형사정책연구』 제 20 권 제4호， 형사정책연구，통권 제 80 호，（2009 • 겨울호）

정봉진，「미국법조윤리상 판사의 일방적 의사교환의 금지」，『동아법학』 제42호，（2008），pp．2－32．

정영일，「횡령죄의 구성요건」，『고시계』 vol． 50 no．12，（2005）
지영환，「공무원범죄 통제를 위한 형사입법론적 연구 ：고위공무원 부패 범죄를 중심으로」，박사학위 논문，경희대학교 대학원，（2007）

진계호，「횡령의 죄와 그 문제점에 관한 연구．」，『비교법학』，vol．7，전주 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2007）

최관식，「형법상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의 개념고찰」，『법학논고』 16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2000．12），pp．165－187

최철환，「횡령죄에서의 대체물보관자의 지위，」『법조』 vol． 46 no．3，법조 협회，（1997）

하태영，「횡령죄에서＇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동아법학』 no．43，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2009）

한동효，「공공부문 뇌물 및 부패발생의 특성요인에 관한 비교연구」，『한국 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한국지방정부학회，（2011．8），59－92

## ［국내 단행본］

감사원，『2011 감사연보』，（2011）
감사원，『2010 감사연보』，（2010）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 심의 의결례집』（2011）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 심의 의결례집』（2010）
국회법제실，『입법이론과 법제실무』，（2008）

## ［외국 문헌］

GregoryJ．，Ph．D．Levine，The Law of Government Ethics：Federal，Ontario and British Columbia

Christine Trost(EDT), Alison L. Gash(EDT), Conflict of Interest and Public Life

Colin Nicholls QC, Corruption and Misuse of Public Office
Kevin T. Abikoff, Anti-Corruption Law and Compliance: Guide to the FCPA and Beyond

Mark Pieth(EDT), OECD Convention on Bribery
Mark Pieth, Harmonising Anti-Corruption Compliance: The OECD Good Practice Guidance 2010

Sebastian Wolf (2006), Modernization of the German Anti-Corruption Criminal Law by International Legal Provisions, German Law Journal, Vol. 07 No. 09

United Nations, Legislative Guid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판례 목록]

대법원 1982.9.28. 선고 82도1656 판결
대법원 1983.12.27. 선고 83 도 2472 판결
대법원 1984.1.31. 선고 83 도 3015 판결
대법원 1985.10.22. 선고 85 도 465 판결
대법원 1999.6.11. 선고 99 도 275 판결
대법원 1999.11.9. 선고 99 도 2530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 도 5130 판결
대법원 2003.6.13. 선고 2003 도 1060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 1656 판결
대법원 2006.6.15. 선고 2004도3424 판결

대법원 2007.6.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4도4959 판결 대법원 2008.6.12. 선고 2006도8568 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2009도5793 판결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11460 판결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8743 판결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 12313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도2453 판결 대법원 2011.8.18. 선고 2010도 10290 판결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헌법재판소 2005.06.30. 선고. 2004헌바4, 2005헌바44(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6.4.27.선고. 2006헌가5 결정

## [참고 온라인자료]

감사원, http://www.bai.go.kr/, 2012.7.21방문.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 2012.6.26방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2012.6.6.방문.
법제처, http://www.moleg.go.kr/, 2012.7.3방문.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2012.7.6방문.
헌 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2012.7.28방문.
African Union, http://www.africa-union.org/, 2012.7.4방문.
Australasian Government Comlaw, http://www.comlaw.gov.au/, 2012.7.2방문.
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www.austlii.edu.au/, 2012.7.26. 방문.

Bundesministerium der Jusdez, http://www.bmj.de/, 2012.7.1.방문.
Business-Anti-Corruption Potal, http://www.business-anti-corruption.com/, 2012.7.2. 방문.

참 고 문 헌

Council Foreign Relationship, http://www.cfr.org/, 2012.7.24방문.
Council of Europe-Treaty Office, http://conventions.coe.int/, 2012.7.6방문.
German Law Journal, http://www.germanlawjournal.com/, 2012.6.23방문.
Government of Saskatchewan, http://www.qp.gov.sk.ca/, 2012.6.23방문.
House Commitee on Ethics, http://ethics.house.gov/, 2012.6.8방문.
Ian Greene's Home Page, http://www.yorku.ca/igreene/, 2012.7.23방문.
OECD, http://www.oecd.org/site/anti-corruptioninitiative/, 2012.6.20방문.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Lobbying of Canada, http://ocl-cal.gc.ca/eic/site/ 012.nsf/eng/home, 2012.7.21방문.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Labour and Justice, http://www.gov. pe.ca/law/, 2012.7.23방문.

UK Parliament, http://www.parliament.uk/, 2012.6.23.
UK Public General Act, http://www.legislation.gov.uk/ukpga, 2012.6.16 방문.
Victorian Legislation and Parliamentary Documents, http://www.legislation. vic.gov.au/, 2012.7.16방문.

Wikipedia, http://en.wikipedia.org/, 2012.6.14방문.


[^0]:    수치는 총 접수사건 인원에 대한 기소율임.

[^1]:    23）채원호，「한겨레신문」（2012．4．12）

[^2]:    60）본 절의 관련 조선시대 법제에 관하여는，주로，김대홍，＂전통 동아시아법의 부정 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법＂，「주요 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3차 워크숍 자료집」 발제문，한국법제연구원，（2012．6．26），pp．11－36 및 동 저자， ＇분경금지제＇에 관한 「질의 및 답변서，내용을 참조 및 인용하며，이하의 구체적인 인용표시는 생략하기로 함．

[^3]:    74）본 절의 관련 국제협약에 관하여는，주로，박영길，＂국제협약상 부정청탁 및 이해 충돌방지 관련 내용＂，「주요 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 1 차 워 크숍 자료집」발제문，한국법제연구원，（2012．6．11），pp．9－24를 참조 및 인용하며，이 하의 구체적인 인용표시는 생략하기로 함．

[^4]:    75）Mark Pieth，Mark Pieth，Harmonising Anti－Corruption Compliance：The OECD Good Practice Guidance 2010，DIKE（2011），p．6．
    76）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77）유엔 조약정보 참조．（http：／／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 no＝XVIII－12\＆chapter＝18\＆lang＝en）2012．6．6 방문．

[^5]:    106）본 절의 관련 독일 법제에 관하여는，주로，박희영，「독일에 있어서 부정청탁 금지 관련 입법사례 및 제도 현황」，『최신외국법제정보』제4호（2012．5），pp．4－20．과 최준혁，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자료－독일의 경우＂，「주요 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5차 워크숍 자료집」 발제문，한국법제연구원，（2012．7．25）， pp．1－23．을 참조 및 인용하며，이하의 구체적인 인용표시는 생략하기로 함．
    107）구속력 있는 로비등록부（Lobbyregeister）는 아니지만，1972년 9월 21 일，연방의회
    의 결정으로 연방의회의 의장은 신청에 의해 연방의회 또는 연방정부에 대하여 이

[^6]:    119）이 조항은 1994．1．22．제28차 형법개정안에 재차 도입되었다．Jäckle，Abgeordnetenkor ruption und Strafrecht－Eine unendliche Geschichte？ZRP 2012，97，최준혁，위 발제문．

[^7]:    123）Gesetz zur Einrichtung und Führung eines Registers über korruptionsauffällige Unternehmen in Berlin，Korruptionsregistergesety，KRG

[^8]:    132）The Convention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ropean Communities（EC）or Official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in 1997.
    133）Loi no 2000－595 du 30 juin 2000 modifiant le code pénal et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134）본 절의 관련 프랑스 법제에 관하여는，주로，강홍진，＂프랑스 부정청탁금지 관 련 법제，＂최신외국법제정보，（2012．5），pp．22－35와 같은 저자，＂공직 활동 투명성 및 이해 충돌 방지에 관한 프랑스 법제＂（2012．7．18．），강지은 역，＂프랑스의 공직자의 투명성과 이해충돌방지법（안），2011．10．19＂을 참조 및 인용하며，이하의 구체적인 인 용표시는 생략하기로 함．

[^9]:    135）Loi $n^{\circ} 2007-1598$ du 13 novembre 2007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136）프랑스「형법」은 ‘공직자의 수뢰행위：공직 행사자（공공 기관 위탁인，공공 서비스 임 무 담당자 또는 공직 선출자）에 의한 수뢰＇（Trafic d＇influence par des personnes exerçant une fonction publique（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ou investie d＇un mandat électif public）라고 규정하고 있다．
    137）John Rason Spencer（Professor of Law，University of Cambridge）교수에 의한 프랑스형 법전의 영문번역본은 제432－11조의 영문번역을＂Passive corruption and trafficking influe nce by person holding public office＂라고 하고 있는데，이는 단순 뇌물의 개념을 넘어 공직상의 영향력의 부정한 행사（독직）를 의미하는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라고 파악된 다．（http：／／www．equalrightstrust．org／ertdocumentbank／french penal＿code＿33．pdf．）참조．

[^10]:    157) Loi organique $n^{\circ} 3838$ et Loi $n^{\circ} 3866$ sur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et prévention des conflits d'intéréts, Articles 7.
[^11]:    172）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Personnel
    173）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490
    174）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EESA
    175）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176）이 메모렌덤의 발표 이후 등록대상들 간의 형평성과 청원권 침해를 주장하며 오바마 정권의 로비활동 규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급증하였다．

[^12]:    182）이동수，「미국 행정법상 행정기관의 입법적 및 사법적 기능」，『토지공법연구』 제45집（2009．8．25），p．447참조．
    183）Administrative Procedure Act（5 U．S．C．Subchapter II），§551（14）
    184）Id．，§551（d）（1）．
    185）Id．，§554（d）（1）（A）．
    186）Id．，§554（d）（1）（B）．
    187）Id．，§557（d）（1）（B）．
    188）Id．，§554（d）（1）．

[^13]:    189）본 절의 관련 미국법제에 관하여는，주로，이성기，＂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 돌 방지법＂，「주요 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제1차 워크숍 자료 집」 발제문，한국법제연구원，（2012．6．11），pp．69－111．을 참조 및 인용하며，이하의 구 체적인 인용표시는 생략하기로 함．
    190）Act of Mar．3．1863．ch．76．s 6． 12 Stat．740（1863）．
    191）Bribery，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1962）， 18 USC Chapter11，Bribery， Graft，And Conflicts of Interest，§§201－227．

[^14]:    197) 예컨대, United States v. Crozier, 987 F.2d 893, 901(2d Cir. 1993); Unites States v. Williams, 705 F.2d 603, 622-23(2d Cir. 1983).
    198) United States v. Jennings, 160 F. 3d 1006, 1014(4th Cir. 1998).
    199) Sun-Diamond, 526 U.S. 398, 406
[^15]:    200) 18 U.S.C. §201(b)(2006); 18 U.S.C. §3571(b)(3)(2006).
    201) 18 U.S.C, 201(c).
    202) 18 U.S.C. §201(c): Whoever--
    (1) otherwise than as provided by law for the proper discharge of official duty--
    (A) directly or indirectly gives, offers, or promises anything of value to any public
[^16]:    224) 18 U.S.C. 208(a), Act Affecting a Personal Financial Interest.
    225) 18 U.S.C. §2: (a)
    226) 18 U.S.C. §208(3)
    227) 5 C.F.R, §2640. 103.
    228)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의 고위 공무원의 처가 자신의 고객(회 사)을 대신하여 국세청 공무원과 회의를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공무원의 처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되므로 공무원은 자신의 처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특정 사안에 관계하게 되는 것이다. 5 C.F.R, §2640. 103(a) Example 참조.
    229) United States v. Gorman, 807 F.2d 1303(6th Cir. 1986).
[^17]:    230) 18 U.S.C. §208(a); United States v. Conlon, 628 F.2d 150, 155(D.C. Cir. 2001).
    231) United States v. Sun-Diamond Growers of Cal., 526 U.S. 398, 408(1999)
    232) United States v. Paisley, 957 F.2d 1161, 1163(4th Cir. 1992).
    233) 18 U.S.C. 216(b).
    234) 18 U.S.C. 216(c).
[^18]:    239）「로비법 」제 5 조 제 1 항 \＆제 7 조 제 1 항．

[^19]:    240) Commissioner of Lobbying \& Office of Commissioner of Lobbying
[^20]:    241）Designated Public Office Holder Regulations（SOR／2008－117）．
    242）Lobbyists Registration Regulations（SOR／2008－116）．

[^21]:    279）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Act 1997.
    280）Proceeds of Crime Act 2002.
    281）The Amendment to the Criminal Code Bill．
    282）Unwarranted demands．
    283）section 139.1 을 참조할 것．
    284）section 139．2을 참조할 것．
    285）Part 7．5．
    286）section 139．1．

[^22]:    306）일본 「국가공무원윤리규정」，제3조 제2항．

[^23]:    307) 형법 제 123 조에 따르면, 직권남용죄는 5 년 이하의 징역,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 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    312 ）윤태범，「중앙일보」，（2012．6．30）．

[^25]:    342 ）김일수•서보학，『형법각론』，박영사（2004），pp．822－823，김홍준（2009．4），p．150에
    서 재인용．
    343）대법원 1981．4．28．선고， 80 도3323판결，대법원 1999．7．23．선고 99도1911판결，김홍 준（2009．4），p． 151.
    344）김용세＂뇌물과 사교의례＂，『대전대사회과학논문집』15권 1호，통권24호（1996）， 김홍준（2009．4），p．157．참조．

[^26]:    345) 대법원1977.11.8.선고, 77 도 231 판결.
    346) 대법원1982.9.14.선고, 81도774판결.
    347) 대법원1985.3.12.선고, 83 도 150 판결.
    348) 대법원1979.5.22. 선고, 79 도303판결.
    349) 대법원2003.2.28. 선고, 2002도5219판결.
    $350)$ 대법원1968.10.8.선고, 68 도 1066 판결.
    350) 대법원1984.4.10.선고, 83 도 1499 판결.

    352 ) 대법원2001.10.12.선고, 2001도3579판결.
    353 ) 대법원1982.9.28.선고, 82 도 1656 판결.

[^27]:    366) 이상현, 「질의 및 답변서」, (2012.7.13).
    367) Id.
[^28]:    368）배수벌금형제에 관하여는 주로，이천현，「벌금형의 규정방식에 관한 고찰」，『형사 정책연구』제 18 권 제 3 호，형사정책연구원，（2007，가을호），pp．467－486을 참조하였음． 상세한 인용은 생략함．

[^29]:    377）시민단체 합동 주최，「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토론회，자료집，（2012．6．21）， p．29이하 첨부 법률안．

[^30]:    378）François De Rugy，Yves Cochet，Noël Mamère et Anny Poursinoff，「Proposition de Loi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et la Prévention des Conflits d’Intérêts」，Rapport No3866，Assemblée Nationale，（19 Octobre 2011），pp．16－28，강지은 역，「프랑스의 공직자의 투명성과 이해충돌방지법（안）」，2011．10．19．＂

